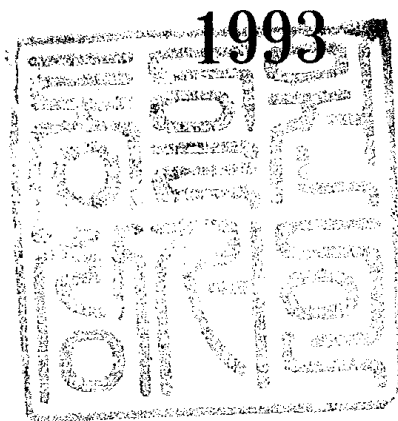


통분 93-12-81

'93 北韓·統一研究 論文集(Ⅳ)

北 韓 의 軍 事 分 野



統 一 院

당원에서는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전문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책의 일환으로 연구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3개의 연구과제를 위촉하였는 바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① 統一政策 ② 南北交流協力 ③ 北韓體制 및 政策變化展望 ④ 北韓의 軍事 ⑤ 韓半島 周邊情勢 ⑥ 北韓의 行政 및 法制 ⑦ 北韓의 經濟·社會·文化등 7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는 관련분야에 대한 참신한 문제 의식과 예리한 논증 등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당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통일 및 북한문제를 연구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 12월

통일원 정보분석실

〈收 錄 論 文〉

- ◇ 북한 핵문제의 상호인식과 갈등 1
박 주 식(고려대학교)
- ◇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한국정부의 대응책 53
전 용(연세대학교)
- ◇ 북한 핵문제의 구조와 성격 127
강 태 훈(단국대학교)
- ◇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 175
최 종 철(연세대학교)
- ◇ 북한의 군수산업 실태 및 민수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235
김 철 환(국방대학원)
- ◇ 북한의 군비통제 추진여건 평가 및 정책방향 판단 315
이 규 열(국방연구원)

北韓核 問題의 相互認識과 葛藤

研究責任者：朴 珠 植(高麗大學校)

목 차

〈要約文〉

I. 문제의 제기와 연구 방법	13
1. 문제의 제기	13
2. 연구 방법	14
II. 북한핵 문제와 관련국가의 입장	15
1. 북한의 입장과 쟁점	15
2. 남한과 미국의 입장	20
3. 북한핵과 동북아국가	22
III. 북한핵 문제의 상호인식 유형과 게임	23
1. 美-北韓 상호인식과 갈등	23
2. 북한핵 문제와 게임유형	27
3. 불완전 정보의 動的게임	34
IV. 불완전 정보게임과 北韓核	39
1. 완결 베이즈 게임과 확률적 상호인식	39
2. ‘획득’과 주관적 확률의 결정변수	47
V. 결 론	49
〈參考文獻〉	50

〈 요 약 문 〉

I. 문제의 제기과 연구 방법

북한의 핵개발능력의 점차적인 향상이 1980년대 말의 전세계적인 사회주의권의 몰락 내지는 변모로 더욱 의혹과 주목을 받고있다. 핵무기의 보유가 정말로 전쟁이나 기타 군사적 요인에 의하지 않는 체제의 내부적 몰락을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인 것으로 북한이 인식하는지는 북한이 핵억지의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하는가의 문제에 연결된다. 왜냐면 핵억지는 상대방의 군사적 도발이나 체제유지에 대한 직접적이며 공격적인 도전에 대해서 작용하지 내부적 요인에 의한 체제와해의 경우에는 핵무기의 사용대상이 즉 抑止의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동독이 체제유지에 실패한 것이 서독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도 아니며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서독에만 일방적으로 배치되어서도 아니다. 또한, 설령 동독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도 1989년의 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객관적인 판단을 떠나 북한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있는지가 북한 핵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우나 불완전정보 게임의 모델로 북한의 인식과 의도 및 관련국가들과의 상호인식의 여러 유형을 미-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970년대까지의 게임모델이 요구했던 완전정보 가정의 한계를 탈피해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가능한 상호 인식을 한 게임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불완전 정보에 의한 완결 배이즈 게임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 국내에서 흔히 소개되었던 靜態的인 비접자 게임(Chicken Game)과 죄수고민게임(Prisoner's Dilemma)의 한계를 벗어나 동적게임(Dynamic Game)을 제시한다.

II. 북한 핵정책과 관련국가의 입장

1. 북한의 입장과 쟁점

우리가 본연구에서 북한핵 문제를 북한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파악하는데 제기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 금지체제에 진정 어느정도 동조하는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할 때 의무조항과 탈퇴조항중 어느 조항에 보다 비

중을 두었으며 현재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만약 북한이 핵금지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2) 북한이 이미 핵개발을 결정하고 중장기적인 치밀한 계획과 압력에 대한 준비가 있다면 우선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책동만 없다면 끝까지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독을 위시한 동구라파에서 보였던 내부적 혼란과 몰락의 위험을 우려하는지 후자라면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보유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3) 북한이 핵개발을 결심하였다면 그 의지가 어느정도 확고한가? 타협을 한다면 그 최소 요구는 무엇인가,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완강히 나간 결과 그다음의 규제나 군사적 강제조치에 직면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NPT 탈퇴이후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기본전략은 시간벌기인가,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내는 협상 테이블로 임하는가? 이 경우 그들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1)북한의 핵개발 유인과 동기

(1)안보와 군사적 요인

한국전쟁 동안 미국은 공산군에 대해 핵사용의 위협을 해왔으며, 휴전후에도 미국은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에 바탕둔 억지 전략을 북한에도 적용하여 1957년경부터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함에 따라 북한은 종래의 핵무기에 대한 냉소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까지의 북한의 대응은 대외적 위협 즉 군사적 안보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핵무기는 군사력의 경제적인 強化 수단으로서 利點을 줄 수도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남한은 군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온 반면 북한은 군장비가 노후화 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개방 현대화 실용노선으로 고도의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현대식 무기체계를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에따라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에서 점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북한으로서 핵무기 개발은 하나의 가능한 선택일 수있다.

(2)정치적,체제적 요인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던 동구라파 공산체제의 와해와 변화 속에서 북한은 체제수호에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며 특히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에 대처하여 국내적으로

는 패배감을 일소하고 체제의 안정을 다지며 대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한 형편이다.

2)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지대안(Nuclear Free Zone)에 대한 그들의 입장으로 요약된다. 비핵화안은 핵무기의 域内에서의 실험, 생산, 배치 뿐만 아니라 외국 핵무기의 통과, 반입과 핵기지 설치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나가서 기존 핵국가의 핵사용 위협도 금지하여 先制不使用의 약속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非核化案의 요구와 미국의 핵억제 전략의 입장이 상충하는데 있으며,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한반도의 미국 전술핵무기에 대해 비핵지대론으로 공세를 퍼왔는데 미국의 對韓핵우산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저촉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2. 남한과 미국의 입장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自國이익의 심각한 침해로 보는 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이 고수하는 핵확산 금지체제의 실질적 와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기술을 제3세계로 이전하면 보다 심각한 핵확산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둘째로,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미국이 가장 꺼리는 사태이다. 더구나 소련의 해체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파트너로서의 효용성은 줄어든 반면 경제문제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문제등으로 미국의 假想敵이 될 수도 있는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과 함께 미국의 안보이익을 심각히 해친다. 또한 남한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게되어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가져온다.

세째로 세계적 핵확산은 당연히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위협하며 더우기, 미국을 난처한 상황에 빠트릴 개연성을 높인다.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국가와의 지역분쟁은 미국으로서는 보다많은 위험과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1983년부터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포착한 미국은 이에 대처하기위해 처음에는 소련과 중국을 통해 간접압력을 행사하다가 1988년 이후부터 북한과 외교접촉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미국은 북한이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한핵무기의 전술적 가치가 줄어들자 북한 핵재처리시설 포기 와 전술핵의 단계적 철수라는 부분적인 타협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未申告 핵시설문제가 사찰에서 쟁점으로 대두하자 미국은 IAEA 사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특별사찰을 주장하고 북한은 미국의 핵불사용 선언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여 이 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양국이 가진 협상에서 타협에 이르렀으나 세부항목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합의는 못된다.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1989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이래,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립 표명 못하는 것은 駐韓핵무기가 우리에게 복합적인 의미를 주면서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한에서는 우리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정립의 필요성 논의가 대두되었는데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론에서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나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 안보문제 더 나아가 통일문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귀착된다. 역시 사찰문제가 1991.12.31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구성된후 1992년 3월 이후 핵심의제로 대두되었는데 특별사찰, 비대칭사찰과 의심동시해소 원칙의 문제로 북한과 대립되는 입장이다.

3. 북한핵과 동북아국가

중국이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안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하는데는 핵무장국과 접경하는 것을 꺼리는 핵국가의 보편적 속성외에 또다른 이유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핵무장과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미국, 일본, 서방 그리고 한국의 요청을 일축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너무나 외교적 손실이 큰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첫째, 소연방의 해체이후 중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에 과도하게 밀착할 필요가 없게된 이상 북한의 비핵지대안 지지는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과도한 영향력 팽창을 견제하고 위신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준다. 둘째 북한은 비핵안은 중국의 핵 선제불사용 원칙과도 부합한다.

이와같은 입장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와 제제에 소극적인 반면 북한의 핵보유는 명확히 반대하며 더 나아가 북한 핵시설에 관한 사찰과 주한 핵무기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까지 표명하였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거부해오던 NPT 조약에 가입하여 핵확산 방지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 소련은 북한의 핵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북한의 비핵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원조 제공 약속과 함께 한소 수교가 임박하자 북한의 원자력 발

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하고 1991년 4월에는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과 핵연료제공을 연계시킨 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주한핵철수의 연계를 반대하였다. 그런한편 소련은 미국의 핵불사용 약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안'의 지지를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도 북한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되어 북한핵 문제에 중요한 이해관련국이 되는 일본은 IAEA의 역할을 강조하며 1992년 2월 IAEA 이사회에서 특별사찰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일본 역시 중국과 소련에게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협력등 수교문제와 핵문제를 연계시키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핵재처리 시설의 완전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여 주목되는데 이는 일본 자신의 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II. 북한핵 문제의 상호인식 유형과 게임

이상 앞장에서 본 북한과 동북아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바탕으로 미-북한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유형화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겁쟁이(Chicken)로 보는가 아니면 죄수고민의(Prisoner's Dilemma) 경기자로 보는가로 대별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핵사찰에 관련된 갈등이 전개(해소 또는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호인식이 중요한데 상호인식을 결정짓는 변수로는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장도 중요하다.

나의 전략이나 획득(Payoff)을 앞에 쓰고 상대를 나중에 쓴다면 '겁쟁이'게임과 '죄수고민'게임의 본질적 차이는 (협력, 비협력)과 (비협력, 비협력)이 주는 획득의 순서에 있다. '겁쟁이'의 경우에는 前者에 더큰 만족을 느끼고 '죄수고민'에서는 後者의 획득이 더 크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갈등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두 경기자 모두에게 '비협력'이 優越전략이라는 점이다.

첫째, 북한이 핵무장을 체제유지를 위한 필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어떠한 조치(군사적 조치 포함)에도 단호한 '죄수고민'인데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을 유약한 '겁쟁이'로 인식하는 경우 또는 어떤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합리적인 '겁쟁이'로 바꿀 수있다고 인식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측의 갈등은 빨리 해소되지않고 결국 무력 충돌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어느 단계의 게임에서 어느 한편 또는 상호양보에 의해 전면적인 군사대결을 피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협력' 선택이 손실을 야기하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군사조치 직전 단계에서, 방어력 수준으로 볼때 미국은 북한을 '집쟁이'로 인식하는데 북한 자신은 '죄수고민'으로 보거나 최소한 결연한 의지(Resolve)로 인해 '죄수고민'의 입장인 경우에도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된다. 이 경우 미국이나 북한중 어느 한편에서 '비집자'의 입장으로 바뀌어 양보하여 '협력'을 선택하면 최악의 파국을 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서로를 '비집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식의 '갈등의 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상대의 타입에 관한 불완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에 의존하기 때문에 종래의 '집쟁이'나 '죄수고민'게임같은 單一型의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게임들은 同時選擇型이어서 상대의 선택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連續型의 불완전정보 게임인 완결 베이즈게임(Perfect Bayes Game)이 요구된다.

IV. 불완전 정보게임과 北韓核

불완전 정보게임의 핵심은 상대의 타입에 대한 확률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데 있는데 문제는 그 인식을 결정짓는 변수가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연속형 완결베이즈게임으로 미-북한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갈등의 전개과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1)북한의 사찰에 대한 태도와 우리와 미국의 대응입장, (2)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결정과 미국의 대응, 그리고 (3)미국의 군사적 제재 여부와 북한의 대응양상이다. 여기서 (1)과 (2)는 구별없고 한 게임으로 묶을 수도 있으나 사찰의 수용/거부와 핵개발 포기/추진은 별개의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갈등의 강도는 (1)에서 (3)으로 점점 확대되어 간다.

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핵개발 의도의 판별과도 연계되어있는데 쟁점은 북한의 의심동시 해소원칙과 남한과 미국의 상호동수 원칙 그리고 미국의 특별사찰 요구와 북한의 거부로 요약된다.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중 한반도 비핵화의 확인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 요구는 전향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북한의 대응을 관찰함으로써 북한의 의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 합리적인 상호인식의 불완전 정보게임이 가능해진다.

사회주의권의 약화와 소련의 해체 중국의 개방, 개혁등으로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하다고 오인한다면 북한의 핵무장 욕구를 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러한 오인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오인 안하면 서도 이를 구실로 핵무장을 합리화 한다면 우리는 그런 구실을 제거해야한다. 그러면서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상대를 '겁쟁이' 타입으로 인식하는 변수들을 극소화 해야한다. 즉 위기의식을 없애주면서도 단호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이 체제내부의 붕괴를 방지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선택이 핵무장이라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매우 좁아진다. 미국으로서는 군사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그것이 오판이라고 설득하거나(동독이나 소련의 예를 들며) 그들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수용인데 후자는 통일문제의 미묘하고 복잡한 사안이어 핵문제와 간단히 연계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 핵무장이 곧 체제의 내부적 안정을 보장한다는 비합리적 판단을 할지 의문이다.

V. 결론

앞의 4장에서 제시한 불완전 정보게임의 '획득'과 '주관적 확률'을 결정하는 변수를 조정하여 북한핵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선 당장 현안인 사찰문제는 북한의 의심동시해소원칙을 수용하고 그대신 특별사찰을 관철시켜야한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비대칭사찰이라고 거부한다면 이는 비핵화의 진정한 확인을 외면한다는 의혹을 주게된다. 따라서 전면적인 완전한 의심해소 사찰은 못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이전의 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그런대도 북한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한다면 이것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의심동시해소 원칙에 모순되며 핵개발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할 수있다. 즉, 의심동시해소 원칙의 순수성 여부를 판단할 수있게 된다.

이와같은 사찰문제가 해결안되고 NPT를 완전히 탈퇴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개발 속도를 최대한 지체시키도록 또는 도중 포기토록 압력행사와 보상제공을 병행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기의 반입금지과 미국은 핵무기 선제불사용 선언도 고려해야한다. 이는 매우 미묘한 문제여서 간단히 제시하기 어려우나 북한의 위기의식(실재한다면)을 완화시키고 그들의 핵무장 구실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안합직하다. 팀스프리트 훈련의 성급한 재개도 다시 검토되어야한다. 그래도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그 선택의 부당함은 물론 무모성 내지는 무용성을 설득하고 손실이 이득보다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억지전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제 I장. 문제의 제기과 연구 방법

1. 문제의 제기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 그리고 동북아 주변지역과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있는데 특히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보여 북한 핵 문제가 남북한보다는 미-북한 관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통상, 어느 지역에서의 핵확산이던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핵보유국과 확산국 사이의 갈등과 또는 새로운 확산국과 이와 지역적 대립관계에 있어 연이어 핵개발을 하는 그다음의 확산국(N+1-th Country) 사이의 이해갈등이 문제가 되고, 다음으로 전세계적인 핵확산 방지가 주요 정책목표인 미국과 확산국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핵확산을 둘러싼 이와 같은 二重的인 갈등의 구조가 한반도에서는 지역당사자들 보다 미국과 N-th 국가(북한) 사이의 분쟁이 우선된다는 특색 이외에 북한핵 문제는 다음 몇가지 특색을 더하고 있어 주목된다.

첫째, 인도양이나 중부유럽 또는 남미의 어느 가상의 핵확산 지역에서의 새로운 핵국가와 달리 북한은 미국과 전쟁 경험을 가진 적대관계이며 또한 미국으로부터 핵무기사용에 관해 나름대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왔으며 둘째, 북한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근접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여 핵보유 자체가 자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은 핵확산 방지라는 중요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우기 북한의 핵개발능력(핵재처리 능력)의 점차적인 향상이 1980 년대말의 사회주의권의 몰락 내지는 변모로 더욱 의심과 주목을 받게하고있다. 핵무기의 보유가 정말로 전쟁이나 기타 군사적 요인에 의하지 않는 체제의 내부적 몰락을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인가는 다음번으로 논의될 문제이더라도 과연 북한이 진정 그렇게 인식하는지는 그 타당성을 떠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는 북한의 核武器觀과 핵억지이론의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하는가의 문제에 연결된다. 왜냐면 핵억지는 상대방의 군사적 도발이나 체제유지에 대한 직접적이며 공격적인 도전에 대해서 작용하지 내부적 요인에 의한 체제와해의 경우에는 핵무기의 사용대상이 즉 抑止의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동독이 체제유지에 실패한 것이 서독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도 아니며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서독에만 일방적으로 배치되어서도 아니다. 또한 설령 동독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1989년의 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

은 객관적인 판단을 떠나 북한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있는지가 북한 핵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 여러가지 가능한 북한의 인식과 의도 및 관련국가들과의 상호인식을 검토한다. 단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논의 대상은 미-북한과 남북한 관계가 중심이 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과제의 방법은 게임이론이 응용되는데 특히 과거 1970년대 게임모델이 요구했던 완전정보(Complete Information) 가정의 한계를 벗어난 불완전정보 게임을 소개하고 모델을 시도한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가능한 상호 인식을 한 게임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불완전 정보에 의한 완결 베이즈게임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 국내에서 흔히 소개되었던 靜態的인 '접쟁이'게임(Chicken Game)과 '죄수고민'게임(Prisoner's Dilemma)의 한계를 벗어나 동적게임(Dynamic Game)을 제시한다. 사실 국제적으로도, 경제학이나 산업공학, 경영과학등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된 動的게임이나 60년대에서야 개발된 불완전정보 게임이론이 정치이론 특히 갈등분석이나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국내에 소개 시도 되는 것은 본연구가 처음이다.

여기서 게임이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비판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이론(Social Theory) 특히 국제정치이론에서 모델의 의미나 역할에 관한 것이며, 기타 다른 사항들은 (1)완전정보 가정, (2)게임의 정태성(一回性 포함) (3)결정단위의 복잡성(Nonunitary Actor)들이 있다. 기타사항 세 가지중 앞의 둘은 본 연구에서 소개한 불완전정보 게임과 연속형 게임으로 극복이 시도되고 있으며 세번째 非單一행위자론은 게임이론에 의한 갈등분석을 부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면, 게임모델은 대통령이나 黨주석 한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구 안팎의 여타 개개인에도 모두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게임모델이 과연 국제관계에서 개인의 선택을 설명하는데 타당하고 유효한 도구가 되는가인데 이는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모델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핵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실제로 '획득행렬(Payoff Matrix)'을 만들고 미니맥스 전략에 따라 어떤 행동을 선택 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균형해인 접안점(Saddle Point)이 없을 때 주사위물 던져 혼합 전략(Mixed Strategy)을 채택하지도 않으며 베이즈 공식에 의해 다음단계나 경기

에서 事前확율을 事後확율로 변경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게임모델은 무의미하고 부적합하며 쓸데없는 설명인가?

이에 대해서는 프리드만의 ‘마치 —인것처럼(As if)’ 설명을 인정함으로써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 핵억지 상황이나 핵군축을 설명하는데 비접자게임이나 죄수고민게임이 타당한 것은 행위자들이 실제로 획득행렬을 가지고 미니맥스나 우월전략에 따라 게임을 실행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과 실제상황 사이에 유질동형적인(Isomorphic) 은유(Metaphor)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델은 실제로 작용하고있는 현실을 하나하나 그대로 재현(replicate)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작용가능한 논리를 재구성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로 실현될 수 있는 基底의 분석체계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냐가 문제이지 현실과의 세부적인 완전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연구는 이와같은 이론적, 방법론적인 측면외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상호 입장의 차이가 갈등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해결되거나 또는 심각한 문제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게임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여 북한 핵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제 II장. 북한 핵문제와 관련국가의 입장

1. 북한의 입장과 쟁점

우리가 북한핵 문제를 북한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다음의 여러 관점에 따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 금지체제에 진정 어느정도 동조하는가? 물론 어느 비핵국가이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배타적으로 보호 인정하는 核禁體制(NPT 체제)를 내심 인정하거나 묵종하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NPT 조약에서도 조약가맹국에게는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어 중요한 국가이익이 침해될때 언제라도 核主權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 있다(NPT 조약 10조). 여기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할 때 어느 조항에 보다 비중을 두었는지는 두고서도 계속 남는 질문은 과연 북한이 상대적으로 어느정도 핵금체제에 동조하였으며

?)Park, J. Rationality in Nuclear Deterrenc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991, pp. 4-5.

에서 事前확율을 事後확율로 변경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게임모델은 무의미하고 부적합하며 쓸데없는 설명인가?

이에 대해서는 프리드만의 ‘마치 —인것처럼(As if)’ 설명을 인정함으로써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 핵억지 상황이나 핵군축을 설명하는데 비접자게임이나 죄수고민게임이 타당한 것은 행위자들이 실제로 획득행렬을 가지고 미니맥스나 우월전략에 따라 게임을 실행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과 실제상황 사이에 유질동형적인(Isomorphic) 은유(Metaphor)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델은 실제로 작용하고있는 현실을 하나하나 그대로 재현(replicate)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작용가능한 논리를 재구성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로 실현될 수 있는 基底의 분석체계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현실과의 세부적인 완전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연구는 이와같은 이론적, 방법론적인 측면외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상호 입장의 차이가 갈등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해결되거나 또는 심각한 문제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게임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여 북한 핵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제 II장. 북한 핵문제와 관련국가의 입장

1. 북한의 입장과 쟁점

우리가 북한핵 문제를 북한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다음의 여러 관점에 따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 금지체제에 진정 어느정도 동조하는가? 물론 어느 비핵국가이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배타적으로 보호 인정하는 核禁體制(NPT 체제)를 내심 인정하거나 묵종하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NPT 조약에서도 조약가맹국에게는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어 중요한 국가이익이 침해될때 언제라도 核主權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 있다(NPT 조약 10조). 여기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할 때 어느 조항에 보다 비중을 두었는지는 두고서도 계속 남는 질문은 과연 북한이 상대적으로 어느정도 핵금체제에 동조하였으며

?)Park, J. Rationality in Nuclear Deterrenc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991, pp. 4-5.

현재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이다.

둘째, 만약 북한이 핵금지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 곧 핵무기 개발입장으로 전환되는가? 핵개발이라는 결정은 핵보유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고 효능이 있다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비합리적 행위자라더라도 핵무기 개발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때는 나름대로 그 결정이 습目的的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의 보유가 남한에 대한 군사적 핵억제 경우 이외에는 그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고 남한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낮게보아 핵개발의사가 없다면 근년에 북한이 보이는 사찰에 대한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태도의 진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미국과 우리의 합리적 대응을 보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세째로, 북한이 이미 핵개발을 결정하고 중장기적인 치밀한 계획과 압력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무슨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하는가와 현재의 개발능력과 여건에 맞추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북한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10여년 또는 그 이상의 中長期에서 어떤 형태의 도전이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가?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남한이나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그들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와 동기가 확고부동하여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책동만 없다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도 끝까지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팀스프리트 혼란에 보이는 과민한 반응은 엄살이고 진정 걱정하는 것은 동독을 위시한 동구라파에서 보였던 내부적 혼란과 와해인가? 후자라면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보유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네째로, 북한이 핵개발을 결심하였다면 그 의지가 어느정도 확고한가? 그들은 어떤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거나 타협을 거부할 것인가? 타협을 한다면 그 최저선은 어디인가, 그들이 요구하는 최저선이 수용되지 않아 완강히 나간 결과 그 다음의 규제나 군사적 강제조치에 직면할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NPT 탈퇴 이후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기본전략은 시간벌기인가, 아니면 그들의 최저 요구조건을 최대한 얻어낼 협상 테이블로 임하는가? 이 경우 그들이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이상의 네 항목으로 나눈 질문에서 첫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본연구의 기본질문들이 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검토 분석하

고 3,4 장에서 세째, 네째 항목을 중심으로 불완전 정보게임의 모델을 시도한다.

가. 북한의 핵개발 유인과 동기

핵시대에 있어 어느국가이던 핵 에너지 개발과²⁾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이다. 특히 핵무기 개발은 군사 안보적 필요와 정치적 동기에 의해 고려되어 출발하다가 중단 좌절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추진하여 핵실험에 성공하거나 핵무장에 들어간다. 여기서 북한이 현재 구체적으로 핵개발의 어느단계에 와있는지는 불확실하나 그들의 핵무기 보유결정을 유인하는 변수들은 객관적 상황에 미루어 짐작할 수있다. 이 변수들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안전보장과 군사력 증강을 위한 측면과 내부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고려로 나눌 수 있겠다.

(1)안보와 군사적 요인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받아왔으며 1957년 경부터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도입된 이후에는 방어수단으로서의 핵무기의 효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이 1950년대 지상군과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입안한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과 이에 바탕둔 억지 전략을³⁾ 북한에도 적용함에 따라 북한은 종래의 핵무기에 대한 냉소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⁴⁾ 보이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반핵운동과 병행하여 북한은 실제로 핵기술 습득에도 적극 나서 1956년에 소련과 원자력 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부터 매년 북한 핵물리학자들을 소련에 파견하였다.

1960년대 쿠바미사일 위기(1962년 10월)에서 소련의 후퇴를 목격한 북한은 소련의 핵우산을 의심하게 되었고 곧이어 심화되는 中蘇紛爭 속에서 자주국방 노선

2) 핵경제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는 핵에너지의 개발연구와 핵무기 개발의 구별이 완벽하고 공개된 査察이 아니고는 어려운데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이 평상시의 핵에너지 개발과 사용의 최대화를 기하면서 필요시에 최단시일내에 핵무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특이한 핵정책은 핵사찰과 별개로 두가지 문제가 매우 미묘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핵정책에 관해서는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 핵정책, 법문사, 1981.

3) NATO는 1950년 리스본 회의에서 유럽의 방위를 위한 전략으로 전술핵무기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4) 초기 대응은 1950년대부터 반복되어온 핵사용 위협의 부당성을 전세계에 여론화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된 이후에는 핵무기 반입을 쟁점으로 제기하여 한반도 비핵지대안의 공세를 전개했다.

을 강화하게 되어 핵개발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조성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1964년 2월 寧邊에 원자력 연구소를 완공하고, 김책 대학에 핵관련학과를 설치하는 한편 1965년에는 소련으로부터 1천 kw급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다⁵⁾. 또한 같은해, 김일성 자신도 연설을 통해 국방상 필요한 여러가지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⁶⁾.

한편,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의 핵무기 개발과 수폭의 성공적 실험에 자극받은 소련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핵확산 방지에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자⁷⁾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모색하여 1970년 중국의 핵실험을 견학하고 중국 핵물리학자들을 초빙하기도 하였다. 그런한편, 북한은 1974년 9월 드디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소련의 압력 또는 설득과 IAEA 가입이 핵기술 이전에 도움이 되고 상당기간은 핵개발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북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⁸⁾.

1970년대의 이와같은 북한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체제 내부의 붕괴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아니며 대외적 위협 즉 군사적 안보적 고려가 우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앞서 미국이 남한에 계속 제공한 핵우산은 남한의 단독 핵무장 의도를 포기시키기 위해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북한으로서도 이에 대응하는 안보 정책으로서도 핵무기 개발은 고려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不使用을 약속받지 못한 이상 핵무기 보유는 안보의 측면에서 항상 고려되는 한편 군사력의 경제적인 강화 유지의 관점에서 핵무기는 이점을 줄 수도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남한은 군현대화에 주력한데 반해 북한은 군장비가 노후화 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반면, 경제사정의 악화로 戰力증강에 어려움이 많아 보다 경제적인 군비확충의 방안으로 핵무장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더구나 1980년대에 와서는 중국은 중소평의 개방 현대화 실용노선으로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꺼리고 소련 역시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

5) 송영선, “북한의 핵안전조치 협정 미체결과 핵능력,”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1991년 봄/여름호, pp.141-142.

6)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196쪽

7) 실제로 소련은 북한과 1968년에 약속한 원자력 발전소 설립원조를 이행하지않았다. 송영선, 앞의 책, pp.141-142.

8)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서 핵실험의 성공적 이행은 같은 해 5월 인도의 핵실험 성공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이 이 기구에 가입하고도 여전히 핵개발에 미련을 가지고 있음은 그후 1980년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도 핵안전협정에 서명을 미루어온 것으로도 짐작할 수있다.

도의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현대식 무기체계를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에따라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에서 점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개발은 하나의 가능한 선택일 수있다.

(2)정치적,체제적 요인

사회주의권의 점차적인 개혁 개방의 결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던 동구라파 공산체제의 불안정과 변화는 급기야 1989년의 대변혁으로 끝났다. 몇 남지않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은 체제수호에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며 특히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에 대처하여 국내적으로는 패배감을 일소하고 체제의 안정을 다지며 대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한 형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가 북한에 어떤 효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고있는지의 의문이 남게된다.

나.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이 핵무기보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다음 제기되는 질문은 그들은 핵보유의 정당성을 어떤 관점에서 합리화 하는가이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북한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은 이 문제에 관련된 갈등이나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태도의 완강이나 그들이 지켜야할 당면 이익의 치열성(게임 모델에서 '획득'으로 표시)을 짐작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있고 둘째, 그 연장으로 그들이 취할 행동에 대해 요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의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세째로, 각국이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접근해보는 것도 갈등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북한, 남-북한은 상호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지대안(Nuclear Free Zone)에 대한 그들의 입장으로 요약된다. 원래 비핵지대안은 핵확산을 막으려는 기존 핵국가의 목표 및 입장과 非核地域 국가의 안전보장 요구 특히 핵보유국으로부터 先制 핵불사용의 완전한 보장 요구가 절충된 방안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 즉 이는 비핵지대의 지역국가는 핵무장 권리를 공동으로 핵확산 금지체제(국제 정치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Regime)에 이양하고 그대신 그 지역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존 핵국으로부터 핵사용에 의한 국가안전의 침해가 없도록 지원과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1958년 폴란드 외상 라파키(Rapacki)가 동서독을 포함한 중부유럽에서의 비핵지대안을 제안한 이래 모든 비핵화안은 핵무기의 域內에서의 실험 생산 배치 뿐만 아니라 외국 핵무기의 통과 반입과 핵기지 설치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기존 핵국가의 핵사용 위협도 금지하고 선제 핵불사용의 약속까지 요구하고 있다⁹⁾. 문제는 이러한 비핵지역의 요구와 미국의 핵억지 전략의 입장이 상충하는데 이는 미국이 라파키안에 부정적이고 그 이후 非核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 태도를 보이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도 1960년대부터 한반도의 미국 전술핵무기에 대해 非核地帶案으로 공세를 펴왔다. 이런 입장은 계속되어 1986년 소련안을 기초로 하여 '한반도 비핵지대안'을 제안하였는데 기본내용은 역시 한반도내의 핵무기반입, 핵기지 설치, 육해공군에 의한 핵무기 통과 금지에 있었다. 이런 반면 1991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관한 선언'은 외국핵무기의 반입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이 선언만으로는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요구하는데 명분이 약해 한미간의 협의 끝에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핵부재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남한 영내에 핵무기의 配備, 접수를 금지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요구 중 지역내의 관계국가들이 핵무기의 생산, 실험, 보유, 반입등을 공동으로 포기할 것은 수용하고 있으나 핵사용의 위협 금지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¹⁰⁾. 그러나 북한의 궁극적인 입장은 미국의 對韓핵우산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한다는 것이다.

2. 남한과 미국의 입장

가. 미국의 입장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북한의 불평처럼 유별나게 억제하려는 것은 핵확

9) 1961년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의하고 1974년에 결의한 선언이나 1967년 남미지역의 Tlateloko 조약안 모두 외국 핵기지 설치 금지와 핵사용 위협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단, 남미지역에서는 미 핵무기의 파나마 지역 통행을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카터 대통령은 이 예외를 철회하였다.

10) 핵사용 위협금지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이 북한이 非核化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을 두고 남한정부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종래의 비핵지대안을 철회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으나(Wishful Thinking의 예) 1992년 2월 북한은 별도의 '이행합의서' 형식으로 핵불사용 보장을 요구하였다.

산 방지라는 일반적 입장외에 미국의 對동북아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외교의 중요정책목표인 핵확산 금지체제의 실질적인 와해의 시발점이 될 수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硬貨획득을 위해 핵물질이나 핵기술을 제 3세계로 이전하면 보다 심각한 핵확산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에서의 자력에 의한 핵확산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등에서 외부의 기술원조에 의한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미국이 가장 꺼리는 사태이다. 더구나 소련의 해체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파트너로서의 효용성은 줄어든 반면 通商문제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문제등으로 미국의 假想敵이 될 수도 있는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과 함께 미국의 안보이익을 심각히 해친다. 즉, 핵국가 일본은 아시아 전역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며 반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의 외교 기본노선과 충돌한다¹¹⁾. 또한 북한이나 일본의 핵무장은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을 유발하여 남한에서의 미국 영향력의 감소를 가져오게된다.

세째로 세계적인 핵확산은 당연히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개연성을 높인다.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국가와의 지역분쟁은 미국으로서는 보다많은 위험과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적대관계인 국가가 그 지역내의 미국인이나 미군 또는 미군사시설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1983년부터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포착한 미국은 이에 대처하기위해 처음에는 소련과 중국을 통해 간접압력을 행사하다가 1988년 이후부터 북한과 외교접촉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미국은 북한이 의미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한핵무기의 전술적 가치가 줄어들자 북한 핵재처리시설 포기과 전술핵의 단계적 철수라는 부분적인 타협을 시사하였다¹²⁾.

11) 소련연방 해체 이후에도 미국은 패권장악에 이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있다. 이는 1992년 3월 NYT가 공개한 국방부의 '방위계획 지침'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세계정치에서 일본, EC등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12) 사실 미국으로서는 비핵지대안의 일반요건으로서의 외국핵무기의 주둔, 저장 금지와 핵사용의 위협 금지라는 북한의 요구를 외면한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에는 명분이 취약했다. 그런데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지니던 對蘇 전략적 가치가 소련의 해체와 체제변화로 인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세계적인 전술핵무기의 감축, 철수의 일환으로 비핵지대안의 요구조건 중 일부를 수용할 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未申告 핵시설문제가 사찰에서 쟁점으로 대두하자 미국은 IAEA 사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특별사찰을 주장하고 북한은 미국의 핵불사용 선언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여 이 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양국이 가진 협상에서 일부 부분적 타협에 이르렀으나 세부항목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합의는 못된다.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1989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이래,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립 표명 못하는 것은 駐韓핵무기가 우리에게 북합적인 의미를 주면서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다. 즉, 미핵무기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군사력의 열세를 보완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장의 구실을 제공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딜레마 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우리가 소유하거나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핵문제에서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위치에서 협상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우리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정립의 필요성 논의가 대두되었는데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론에서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나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 안보문제 더나가 통일문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귀착된다. 역시 사찰문제가 1991.12.31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구성된후 1992년 3월 이후 핵심의 제로 대두되었는데 특별사찰, 비대칭사찰과 의심동시해소 원칙의 문제로 북한과 대립되는 입장이다.

3. 북한핵과 동북아국가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안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하는데 이는 핵무장국과 接境하는 것을 꺼리는 핵국가의 보편적 속성외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핵무장과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마 미국보다더 일본의 재군비 특히 핵무장을 우려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일본에 대한 충분한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지위 상승을 매우 경계하고 있고 해군력의 증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미국, 일본, 서방 그리고 한국의 요청을 일축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너무나 외교적 손실이 큰것이다. 개방노선에 의한 경제개혁과 성장전략을 지속하는한 중국은 서방으로부터 기술, 자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에 있으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도 미국이나 일본등의 선진공업국과의 원만한 관계의 지속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 역시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소연방의 해체이후 중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에 과도하게 밀착할 필요가 없게된 이상 북한의 비핵지대안 지지는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과도한 영향력 팽창을 견제하고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신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준다. 둘째 북한의 비핵안은 중국의 핵 선제불사용 원칙과도 부합한다. 이는 제 3세계와의 특별한 관계를 중요시한 전통적인 외교노선을 변질,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와같은 입장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와 제제에 소극적인 반면 북한의 핵보유는 명확히 반대하며 더나가 북한 핵시설에 관한 사찰과 주한 핵무기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까지 표명하였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거부해오던 NPT 조약에 가입하여 핵확산 방지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 소련은 북한의 핵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북한의 비핵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원조 제공 약속과 함께 한소 수교가 임박하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하고 1991년 4월에는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과 핵연료제공을 연계시킨 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주한핵철수의 연계를 반대하였다. 그런한편 소련은 미국의 핵불사용 약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안'의 지지를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도 북한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되며 북한핵문제에 중요한 이해관련국이 된다. 그런데 일본은 IAEA의 역할을 강조하며 1992년 2월 IAEA 이사회에서 특별사찰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일본 역시 중국과 소련에게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협력등 수교문제와 핵문제를 연계시키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핵재처리 시설의 완전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여 주목되는데 이는 일본 자신의 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II. 북한핵 문제의 상호인식 유형과 계급

1. 美-北韓 상호인식과 갈등

앞서 보았듯이 미국과 북한은 각각 한반도에서의 핵확산과 비핵화에 대해 다른

절실히 필요한 입장에 있으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도 미국이나 일본등의 선진공업국과의 원만한 관계의 지속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 역시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소연방의 해체이후 중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에 과도하게 밀착할 필요가 없게된 이상 북한의 비핵지대안 지지는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과도한 영향력 팽창을 견제하고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신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준다. 둘째 북한의 비핵안은 중국의 핵 선제불사용 원칙과도 부합한다. 이는 제 3세계와의 특별한 관계를 중요시한 전통적인 외교노선을 변질,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와같은 입장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와 제제에 소극적인 반면 북한의 핵보유는 명확히 반대하며 더나가 북한 핵시설에 관한 사찰과 주한 핵무기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까지 표명하였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거부해오던 NPT 조약에 가입하여 핵확산 방지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 소련은 북한의 핵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북한의 비핵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원조 제공 약속과 함께 한소 수교가 임박하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하고 1991년 4월에는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과 핵연료제공을 연계시킨 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주한핵철수의 연계를 반대하였다. 그런한편 소련은 미국의 핵불사용 약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안'의 지지를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도 북한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되며 북한핵문제에 중요한 이해관련국이 된다. 그런데 일본은 IAEA의 역할을 강조하며 1992년 2월 IAEA 이사회에서 특별사찰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일본 역시 중국과 소련에게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협력등 수교문제와 핵문제를 연계시키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핵재처리 시설의 완전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여 주목되는데 이는 일본 자신의 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II. 북한핵 문제의 상호인식 유형과 계급

1. 美-北韓 상호인식과 갈등

앞서 보았듯이 미국과 북한은 각각 한반도에서의 핵확산과 비핵화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입장과 利害가 갈등 상태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두 당사자 사이의 상호인식에 바탕을 둔 게임의 상황으로 분석하는데, 갈등의 게임에서 핵심적인 두 모델은 ‘집쟁이’게임과 ‘죄수고민’게임으로 압축된다. 여기서 자신이 둘 중 어느 게임의 경기자가 되는가는 자신의 객관적 처지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상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나의 전략이나 획득(Payoff)을 앞에 쓰고 상대를 나중에 쓴다면 ‘집쟁이’게임과 ‘죄수고민’게임의 본질적 차이는 (협력, 비협력)과 (비협력, 비협력)이 주는 획득의 순서에 있다. ‘집쟁이’의 경우에는 前者에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죄수고민’에서는 後者の 획득이 더 크다. 즉 ‘집쟁이’게임에서는 상대의 강경, 입장고수, 비타협, 비협조적 선택(즉, 자동차를 비켜몰지 않고 직진하는 행위)에 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양보, 타협, 협조적 선택(차를 비켜 모는 행위)을 하는 것이 보다 득이 되는 반면 ‘죄수고민’ 게임에서는 前者의 선택에 보다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즉, ‘획득’이 더 크다). 이런 관계를 게임의 아래의 ‘획득행렬(Payoff Matrix)’을 가지고 표현할 수있다¹³⁾.

표-1. ‘집쟁이’게임과 ‘죄수고민’게임의 획득

	Chicken				PD				
	c		n		c		n		
c	3	3	2	4	c	3	3	1	4
n	4	2	1	1	n	4	1	2	2

획득(Payoff)의 크기를 무시하고 편의상 최상의 만족부터 순서대로 4,3,2,1을 주면 Chicken과 PD의 획득은 위의 도표처럼 나타난다. 여기서 ‘c’는 협조적 선택 즉 ‘집쟁이’에서는 차를 비키는 행동 ‘죄수고민’에서는 자백을 않고 침묵을 지키는 행동을 말하고 ‘n’은 그 반대의 선택을 말한다. 그러면 ‘집쟁이’에서는 (c,n)이 (n,n)보다 높은 효용을 주는데 ‘죄수고민’에서는 만족이 그 반대가 된다. 이것은 두 게임의 본질적인 차이인데 문제는 자신이 어느 유형의 게임의 당사자가 되는가이다. 이는 상대가 어떤 타입의 경쟁자인가와 자신의 입장이 어떤가의 두

13) Snyder, G.H. and Diesing, P.H. Conflicts among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ch.2. Rapoport, A and Guyer, M., "A Taxonomy of 2x2 Games" General System, 1966, v.11, pp.203-214.

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들면, 상대가 갈등 속에서 지키려는 이익이 치열하여 의지가(resolve) 결연하거나¹⁴⁾ 타협이나 후퇴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리하거나 강한 입장에 있으면 자신은 '겁쟁이'의 위치에 놓이기가 쉽게된다. 물론 자신의 입장은 상대의 타입과 별개로 본인의 수호이익의 치열과 그로인한 의지와 그것을 고수할 수있도록 하는 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상대의 타입에 관한 불완전 정보로 인해 자신이 '겁쟁이'나 '죄수고민'중 어느 유형의 게임을 하게되는지에 대한 확율이 중요한데, 또한 상대의 행위선택에 대한 확률도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즉 위의 표-1의 게임처럼 전략과 '획득'이 주어질때 각 행위자가 단순히 '미니 맥스'에 의하지 않고 기타 다른 선택기준¹⁵⁾ 특히 기대효용 극대화에 따라 선택한다면 미국이나 북한은 각기 상대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확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게된다¹⁶⁾. 우리가 확율加重 게임의 한 경기자의 득실을 크기순서대로 R_4, R_3, R_2, R_1 로 놓고 일반화시키면 두 전략의 기대이득비교 즉, $E(c)$ 와 $E(n)$ 크기의 비교에 따르는 c, n 의 선택에 관하여 아래의 결론이 나오게된다.

(명제.1) 동시선택형 겁쟁이게임에서 협조행위의 가능성이나 빈도는 상대의 협조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자신의 획득(Payoff)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R_2 - R_1$ 과 $R_4 - R_1$ 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위 결론은 $E(c) - E(n) = p[(R_3 - R_2) - (R_4 - R_1)] + (R_2 - R_1)$ 이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하는 변수중 $R_3 - R_2$ 가 $R_4 - R_1$ 에 비해 매우 미미한 역할을 하는데 기인한다.

14) 의지(resolve)가 갈등의 게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억지이론의 통설인데 포웰은 그런 상식과 다른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Powell, R. "Crisis Bargaining, Escalation, and MAD," APSR, 1987, 81:717-735. 그러나 이 결론은 획득의 크기가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안미치는 서수적 게임(Ordinal Game)에만 합당하다. 포웰의 분석은 불완전정보 게임을 시도하면서 기본적으로 서수적 효용에 의존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15) 기타 멕시멕스, 후회(손실) 최소화법, 호르위츠 지수법, 라플라스의 불충분이성원칙, 기대효용 극대화법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Luce, R and Raiffa, H. Games and Decisions, New York: Wiley, 1957 와 Park, J. Rationality in Nuclear Ceterrenc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991 참조

16) 이는 다니엘 엘스버그의 '결정적 위험모델(Critical Risk Model)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Ellsberg, D. "The Theory and Practice of Blackmail," in Young, O. (ed) Bargaining: Formal Theories of Negotiation, 1959. _____, "The Crude Analysis of Strategic Choice," AER, 1961, pp. 472-478.

협조전략 선택영역은 확률에 따라 변하게되는데 p값이 클수록 좁아지게된다. 즉 이는 상대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자신은 협조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려한다는 핵억지론의 상식적 가정을 뒷받침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위의 표-1에서 '최수고민'의 경우(PD)에 는 상대가 무슨 선택을 하던 상관없이 언제나 나는 비협조,비타협의 호전적 선택 (n)이 더 많은 획득을(즉, 4>3과 2>1) 가져다 준다. 이런 전략을 우월전략 (Dominant Strategy)이라 하는데 이 PD에서는 두 당사자 모두가 양보않는 선택을 우월전략으로¹⁷⁾ 가지고 있다. 이는 갈등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남북한 간의 게임이나 미-북한의 게임에서 상호인식의 결과 각자 자신의 입장을 '최수고민'으로 본다면 엘스버그의 결정적 위험모델은 필요없게 된다. 왜냐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확률적 추측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대에 대한 인식이 게임에서의 자신입장에 대한 확률적 판단을 결정지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北韓核 문제에서 美-北韓간의 상호인식의 유형은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째로, 북한이 핵무장을 체제유지를 위한 필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어떠한 조치(군사적 조치 포함)에도 단호한 '최수고민'인데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을 유약한 '집쟁이'로 인식하는 경우나 또는 어떤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합리적인 '집쟁이'로 바꿀 수 있다고 인식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측의 갈등은 빨리 해소되지않고 결국 무력 충돌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어느 단계의 게임에서 어느 한편 또는 상호양보에 의해 전면적인 군사대결을 피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협력' 선택이 보다 못한 획득을 야기하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북한이 느끼는 '획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核抑止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즉, 핵억지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도전이나 도발에 효력이 있는것이지 내부적인 체제 와해나 붕괴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련 연방이 해체된것이 핵무기가 없어서도 아니며 동독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을 면하지

17)상대와의 상호관련이 없는 1인 게임(Game against Nature)에서는 우월전략이 절대적인 합리성을 가지나 상대의 선택이 나의 선택과 함께 나의 획득을 결정짓는 2인 게임에서는 우월전략이라도 비합리적일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수고민'게임이다. 우리는 2인게임 상황에서 갈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 자신이 혼자 선택하고 상대의 선택은 마치 자연이나 어떤 우연의 선택처럼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프벨리스도 이점을 지적하여 '로빈슨 크루소 오류'라고 불렀다. Tsebelis,G."The Abuse of Probability in Political Analysis:The Robinson Crusoe Fallacy," APSR, 1989, v. 83, pp. 73-91.

는 못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번째 유형으로, 군사조치 직전 단계에서 방어력 수준으로 볼 때 미국은 북한을 '적쟁이'로 인식하는데 북한 자신은 '죄수고민'으로 보거나 최소한 결연한 의지(Resolve)로 인해 '죄수고민'의 입장인 경우에도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두 당사자 모두가 자신을 '죄수고민'으로 여겨 갈등의 해결이 어렵게 되며 단, 미국이나 북한중 어느 한편에서 '비적자'의 입장으로 바뀌어 양보하여 '협력'을 선택하면 최악의 파국을 면할 수 있다.

2. 北韓核 문제와 게임 유형

앞절에서 동시선택형 적쟁이 게임의 경우에는 각자의 선택과 상대의 선택이 결합한 결과 자신이 얻게되는 '획득'과 상대의 선택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게임의 결과를 결정지음을 보았고 일반 법칙으로서의 명제를 도출하였다. 그 명제는 엘스버그의 '결정적 위험모델(Critical Risk Model)'의 연장인데 이는 억지(Deterrence)의 본질적 문제인 불확실성에 따르는 위험과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의 조정을 설명하는 기대효용이론과 게임이론의 종합이라할 수 있다. 단순 비적자게임의 미니맥스전략은 항상 후퇴, 양보의 선택(c)인데 반해, 이 게임에서는 상대행동에 대한 확률과 그에 대응하는 획득을 加重평균한 기대값의 비교에 의해 비협조적인 행동을(n)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확률과 득실의 크기에 따라 다음 4 유형의 게임들로(G_1, G_2, G_3, G_4) 분류된다.

표-2. 2x2 게임의 결과유형

	c	n
c	G_2	G_4
n	G_3	G_1

만약 左下경기자가 미국이나 남한이고 右上경기자가 북한이라면 앞으로 전개될 各樣의 상황과 위기는 (c,c), (c,n), (n,c), 그리고 (n,n)型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 北韓核 문제의 게임이 이들 중에서 어느 유형이 될 것인지는 결국 획득과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 (n,c) 인 G_3 은 북한이 물러서는 게임이고 양측 모두 맞서는 갈등의 무력충돌은 G_1 형 게임에서만 일어난다. 미국의 n 행위는 종래의 단순형 게임에서

는 PD의 선택이라고 설명하는데 확률가중 모형에서는 '겉쟁이' 게임으로 그대로 설명될 수 있다. 만약 미-북한간에 획득과 확률에 심한 불균형이 있으면 G_3 과 G_4 중 어느 한 형태로 결말이 날 것이다.

여기서 상대의 선택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자신의 획득을 결정짓는 변수는 상대의 당면 이익의 치열성과 그 수호의지 및 그것을 뒷받쳐주는 힘에 대한 상호인식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힘이란 자국의 군사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와의 관계까지 포함된다. 미국으로서는 전세계적인 핵확산 금지체제의 유지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확산 방지를 위한 당면 이익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있고 북한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은 자신이 생각하는 불공정한 사찰이나 핵무장 포기를 강요받지 않거나 정당, 공정 여부를 떠나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핵선택(Nuclear Option)이 필수적이라 판단한다면, 자신의 '획득'이 그런 효용구조에 부합되게 결정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이에 대한 어떤 주관적 판단 즉 북한이 단호하게 나올 것인가(n) 또는 물러서는 선택을 할 것인가(c)에 관한 어떤 예측을 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엘스버그 타입의 확률가중 동시선택형 '겉쟁이' 게임은 이만 언급하고 상대의 타입이 '겉쟁이'인지 아니면 '죄수고민'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이 어느 유형의 입장이 될지에 대한 확률이 종합 가중되어 '획득'이 결정되는 불완전정보 게임을 중심으로 북한핵 문제의 게임을 유형화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서로를 '비겉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식의 '갈등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또는 상대의 타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종래의 '겉쟁이'나 '죄수고민' 게임같은 單一型의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불완전정보 게임은 연속형 선택(Sequential Choice)으로 나타나 상대의 선택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행위를 선택하여 두 당사자중 한쪽에게는 상대의 선택에 대한 확률이 필요없다. 예를 들면 미국은(또는 북한은) 북한이(미국이)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게임으로, 물론 먼저 행동을 개시하는 미국(북한)은 상대의 반응에 대한 확률적 계산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게임은 상대의 행동선택 보다는 타입에 대한 확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불완전 정보의 동적게임(Dynamic Game)이 된다. 구체적 모델은 다음 절에서 제시하기로 하고 북한핵 게임에서 위에서 제시한 단계별 문제중 우선 대두되는 핵사찰을 둘러싼 게임을 당사자들의 입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핵사찰을 둘러싼 미-북한, IAEA 입장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결국 1985년 12월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조약 가입국의 의무사항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18개월 내의 안전협정(Safeguard Agreement) 체결을 6년이상 미루어 오다가 결국 1992년 1월에 전년 7월에 가서명 한것을 정식 체결하였다. 이처럼 안전협정을 지연시킨 것이¹⁸⁾ 핵사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는 결국 핵무기 개발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북한이 안전협정 체결을 마무리 지은 시점이 오히려 그 이전 80년대 중반보다 체제유지와 군사안보의 측면에서 보다 위협을 느낄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90년대 그들이 IAEA 사찰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북한의 요구를 간단히 요약하면 핵사찰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한반도의 非核化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상호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에 북한이 보인 이런 입장이 순수하게 이해될 수도 있었으나 나중에 와서 군사시설이란 이유로 특별사찰을 반대하거나 제 3자의 조사 자료에 의한 IAEA 사찰을 거부하는 등 북한의 진의가 의심받게 되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직접 언급으로 핵무기 개발을 부인한 것은 1977년 10월 김일성의 일본 NHK 논설위원장과 회견에서였다¹⁹⁾.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언급과는 달리 미국은 1983년부터 북한의 핵개발 기도를 탐지하고 소련의 북한에 대한 핵개발 원조를 반대하는 외교각서를 전달하고 북한의 NPT 가입을 위한 압력행사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이에 맞서 이전부터 제기해오던 非核地帶論과 새로 대두한 査察의 공정성을 문제로 미국에 대해 공세를 취했다. 김일성은 1991년 9월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과의 대담에서 한반도의 비핵, 평화지대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²⁰⁾ 이야기 하면서 남한의 핵기지에 대한

18) 이는 IAEA가 북한에 안전협정 체결의무를 주지시키지 않은 데에도 책임이 있으나 통보를 받고도 계속 지연시켰다. Arms Control Reporter, Nov., 1989, p.457. 1991년 10월 당시 NPT 가입국 145개국중 50여국이 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있었다.

19) 여기서 김일성은 한반도는 협소하여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매우 적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이나 핵에너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그후 계속 1980년대 중반에도 반복되었다. 또한 김일성의 공식적인 핵무기 개발 부인발언은 1992년 4월 워싱턴 타임즈와의 회견에서도 반복되어 강대국이 수천, 수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두개의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단언하였다. The Washington Times, April 15, 1992.

20) 반면, 1년전인 1990년 9월초 韓蘇 수교가 임박하자 북한 외교부장은 소련외상과의 회담에서 핵무기 개발의사를 표명한적이 있다.

사찰이 없는 일방적인 사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한 핵기지에 대한 사찰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하고 이의 검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는 종전의 非核地帶案을 보다 강화하였다.

북한은 1980년 일본 社會黨과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1986년 소련안을 기초로 ‘한반도 비핵지대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과거 라파키案 이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NFZ나 중남미의 Tlateloko 조약(1967년)과 동일하여 한반도내의 핵무기 반입, 핵기지 금지와 陸海空에 의한 핵무기 통과 금지와 더나가 핵사용 위협 금지까지 포함하였다. 그러다 최근에는 핵우산 제공 협약 금지와 핵무기 사용 군사훈련의 금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1991년 10월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제의로 재확인 되었는데 더나가 IAEA에 의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북한에 의한 남한내 군사기지의 사찰을 동시에 실시 할것을 주장하였다²¹. 즉 IAEA 안전협정에 假署名한 북한으로서는 다가오는 IAEA 사찰을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와 그것을 확인하는 남한의 군사시설 사찰과 연계시켰다.

한편, 1991년의 걸프전 이후 UN 핵사찰단에 의해 이라크가 IAEA의 국제 사찰을 받으면서도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밀리에 보유, 핵개발에 진척을 보았음이 드러나자 미국과 IAEA는 안전검사(Safeguard Inspection)를 보강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따라 IAEA 사무총장은 핵관련 시설과 핵물질 모두를 사찰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소도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 및 제3국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정내용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는 특별사찰 개선안이 강구되었다²². 또한 IAEA 이사국들은 일반사찰 결과 의혹이 생길 경우 미 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권을 인정하고 IAEA 현장을 근거로 회원국의 인공위성 등으로 입수한 정보를 사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IAEA 사찰이 신고 대상에 국한되어 있는 일반원칙의 한계를 수정한 것이다.

이와같은 IAEA의 기능 강화와 국제적인 사찰압력 속에 북한은 결국 1992년 4월에 안전협정을 비준하였다. 5월부터 시작하여 여섯 차례에 걸친 IAEA 임시사찰 결과 영변에 건설중인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여러차례 플루토늄을 추출하였으며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IAEA 자체분석과의 불일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9월 3차 임시사찰부터 북한에 해명을 요구하고²³ 또한 1993년 1월말 제 6차 임시사찰에서

21) 전성훈,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입장과 非核化 전망, 민족통일 연구원, 1992, 6월, p.3.

22) IAEA는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UN 안보리에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있고 회원국은 핵발전소등 핵시설을 개선할 경우 최초 핵물질을 투입하기 180일 이전에 설계정보를 IAEA에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1, 12, 2.

두 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IAEA는 35개 이사국중 22국 공동발의로 특별사찰 수용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드러난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주목하고 전세계적인 핵확산 방지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의 핵확산 억지는 印度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폭발 실험에 성공하고난 이후로는 핵물질의 재처리 시설과 농축 우라늄에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미국이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정부의 핵개발 기도를 저지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위해 핵재처리 시설의 건설까지 규제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 KH11 정찰위성이 영변에 재처리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포착하자 핵안전 협정 체결과 IAEA의 사찰로 만족하지 않고 보다 강화된 남북 상호사찰까지 요구하였다.

북한이 제기하는 주한 핵무기 문제에 대해 미국은 NPT 가맹국의 핵안전협정 체결 의무와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1991년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안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직접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피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런 한편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핵문제의 해결이 미-북한 관계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5월에는 미 국방차관은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면 주한미군과 전술핵무기의 단계적 철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 문제는 몇달 후의 미소간의 전면적인 전술핵무기 감축합의와 이은 부시선언으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해공군에 의한 핵무기 반입 금지와 핵불사용의 법적 보장은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다²⁰.

나. 북한의 NPT 탈퇴와 한국 입장

북한은 핵안전협정 체결조건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지대 실현 즉 주한 미핵무기철수와 핵사용 위협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IAEA는 그 요구는 미-북한 사이의 문제이고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1990년 협정체결 이전에 IAEA 이사

23)북한은 이에 대해 IAEA 이사회에서 불일치점은 자신과 사찰단 사이의 계산방법과 해석,평가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며 그 차이는 사찰단이 북한 핵설비의 운영 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IAEA가 특별사찰 대상으로 지정한 2곳은 핵활동과 아무런 과학적 법률적 관련이 없는 군사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24)미국은 광도의 공군 전술핵에 의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발표이후 미-북한간의 협상에서 핵불사용 약속에 관한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 방식이나 내용에서 명확한 합의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회에서 북한은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NPT를 탈퇴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안전협정에 가입할 당시부터 강한 조건을 내걸어 후일의 탈퇴를 유보하는 선택을 하였고 이것이 IAEA의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응답으로 1993년 3월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북한의 NPT 탈퇴는 놀라운 것은 아니나 그 진의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태이다. 왜냐면 북한의 핵무장 선택이 확실하다면 탈퇴는 사찰의 회피에 있음이 명확하나, 핵무기 개발을 확정하지 않고있으며 사찰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사찰을 거부할 수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이 제시하는 NPT 복귀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탈퇴선언후 여러차례 제시한 조건은 크게 (1)주한 미군기지 사찰과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2)핵 불사용 약속과 핵우산제공 금지, (3)IAEA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찰운영, 그리고 (4)북한의 사회주의 존중등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1)(2) 항목들은 한반도 비핵지대안과 의심 동시 해소원칙에 의한 비대칭 사찰의 종전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이에 더해 IAEA가 미국 주도하에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핵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체제존중까지 거론하고있다.

만약 북한이 이미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고 나름대로의 치밀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면 위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만족하고 NPT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어느정도이며 이에 대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급박한 문제가 대두한다. 이는 또 다른 게임상황이 되며 다음에서 다룰 것인데 북한이 원래의 결정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북한은 핵개발 의도가 별로 없고 실제 능력도 낮은 수준인데 이를 고의적으로 모호한 상태로 둔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이는 객관적인 주변 여건과 북한의 요구중 일부는 객관적 명분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수긍이 간다. 특히 북한도 예외없이 합리적 선택 행위자(Rational Actor)라고 전제한다면 더욱 이럴 개연성은 크다. 북한은 탈퇴 발표후에도 군사시설 사찰거부가 곧 안전협정 불이행은 아니며 협정

25)북한은 이때 이 조건을 별도의 수정안으로 협정에 추가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정안은 (1)NPT 가입 핵국가의 가입 비핵국에 대한 위협 금지 (2)핵안전협정 체결후라도 한반도의 핵무기가 제거되지 않거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있을 경우 이 협정의 효력을 유보시킨다는 내용이다.

26)여기서 합리적이란 이성적, 자기절제적, 모험회피적, 윤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약여건과 불확실성에서 자신의 효용의 극대화나 목표획득의 최적화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상대를 비합리적 행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을 계속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등, 호혜원칙에 입각한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있다.

세번째의 가능한 해석은 위의 두 해석의 절충인데 두가지 가능한 상황이 있다. 그 하나는 북한은 원래 핵무기 개발에 비중을 더 두었는데 미국과 IAEA의 사찰체제의 강화로 포기하면서 활로를 모색하는데 명분과 실리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실리를 얻게 되면 반대급부로 특별사찰을 수용하여 핵개발 사실이 일부 탄로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 시키고 또 중도 포기하는 명분이 서기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요구하는 복귀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아래 협상을 복잡하게 장기적으로 끌어 시간을 최대한 벌고 또한 그들의 탈퇴및 핵무장 명분을 강화하는 것이다. 핵실험 성공도 배제하지는 않으나 여건이 그렇게 안되더라도 곧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북한이 손해볼 것은 없다. 왜냐면 첫번째 경우처럼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어느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어느 것이던 NPT 탈퇴 결정으로 북한이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명확하므로 그이유 하나만으로도 탈퇴가 설명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있는 구실을 제공한 미국이나 한국의 부적절한 대응정책이다. 북한의 주장이나 입장중 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적, 대응 못한 것은 그들의 요구중 우리가 수용할 수있거나 마땅히 수용했어야할 것을 선별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즉, 북한이 IAEA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그이유로 IAEA는 제 3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찰할 권리가 없다던가 핵활동과 관련없는 군사시설은 IAEA 안전협정에 따른 사찰대상이 아니라 주장했는데 앞서 보았듯이 사찰 정보의 외부의존이나 대상의 확대는 IAEA 사찰 강화를 위한 결의로 이미 제도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근거와 명분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안전협정 체결에서 조건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그 검증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별하여 허용했어야 마땅한데 사찰문제에서 너무나 경직된 자세를 보인 실책을 범했다.

남북한이 非核化 공동선언에서 상호핵사찰을 위한 사찰규정을 협상을 통해 만들 것에 합의할 때 우리는 북한이 종전의 비핵지대안을 수정하였다고 요망적인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않은 일방적인 자세이다. 북한의 의심등시 해소원칙은 그 진의가 어디에 있던간에 객관적으로 명분이 충분하고 합리적인 제안인 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를 적극 추진하여 북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현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었다. 북한이 설령 IAEA의 종전의 제한적인

사찰원칙을 고집하여 특별사찰을 회피하려 하더라도 IAEA 테두리 밖에서 남북한 사이에 상호주의에 따라 상호 특별사찰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비핵화의 진정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채 미국의 이기적 고려와 강대국적 권위의식 즉 他지역에로의 핵기지와 군사시설 사찰의 선례가 된다는데 집착하여 설득력도 없는 대칭사찰과 相互同數의 원칙만 고집하였다²⁷⁾. 비핵화의 내용은 다소 다르더라도 상호간에 핵무기 부재와 핵개발 부인을 설득력있게 확신시키려면 군사시설 검증과 특별사찰 모두를 포괄할 수있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의심동시 해소는 당연히 필요한것이다. 진정한 상호주의란 사찰의 본질적 내용에 있는 것이 지 민간시설 대 민간시설, 군사시설 대 군사시설의 형식적 대칭과 사찰대상 장소의 숫자만 동일하다고 공평한 상호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3. 불완전 정보의 動的 게임

게임에서 상대가 '겁쟁이'인가 '죄수고민'인가의 판단은 상대의 당면이익의 치열성 및 그 수호의지와 그를 지탱해줄 수있는 힘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 또한 자신의 당면이익과 그것을 수호할 수있는 힘은 자신의 타입을 결정하면서도 상대의 자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들 변수들은 엘스버그의 결정적 위험모델에서 나오는 상대의 행동선택(즉 n 또는 c)에 대한 확률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완전 정보의 動的게임은 한 당사자는 상대의 선택을 목격한 후 이에 대응 행동을 하는 연속형 게임이어서 확률은 상대의 타입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다. 완결 베이즈게임(Perfect Bayes Game)이나 크렙스와 윌슨의 연속게임(Sequential Game)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인 진입억지 게임(Entry Deterrence Game) 모두 상대의 선택에 대한 확률은 제외하고 오로지 상대의 타입에 관한 주관적 확률만 대상으로 한다²⁸⁾.

이런 게임에서 합리적균형은 '완결베이즈균형(perfect Bayesian equilibrium)'

27)북한도 탈퇴발표후 4월 UN 주재 차석대사가 제안한 5개 북귀 선결조건이 또한 특별사찰 수용에 대한 조건임을 명시했다.

28)Kreps,D and Wilson,R. "Sequential Equilibria," *Econometrica*,1982,v.50, pp.863-894. Kreps,Milgrom,and Wilson. "Rational Cooperation in the Finitely Repeated Prisoners' Dilemma," *Journal of Economic Theory*,1982, v.27,PP.245-252.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연속형이더라도 먼저 선택을 하는 경기자는 상대의 대응 선택에 대한 확률적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에따라 행동선택을 하는 상황을 모델에 반영한다.

으로 설명한다. 이 균형은 자신의 믿음(Subjective Probability)과 전략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바 상대의 전략이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최상의 대응행동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여기서 합리적 믿음이 합리적 선택의 요건으로서 중요한데 막연한 추측이나 직관, 그리고 요망적 판단(Wishful Thinking)을 떠난 정확하며 타당성이 있는 엄밀한(rigorous) 수학적 확률을 말하며 그 한 예가 베이즈 추론(Bayes Inference)이다. 이 추론 방식을 '완결 베이즈게임'에서 철저하게 적용한다면 경기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관적확률(prior probability)을 상대행위를 관찰한 다음 수학적인 일관성에 맞는 확률(posterior probability)로 변경하여(update)²⁹⁾ 새로운 주관적확률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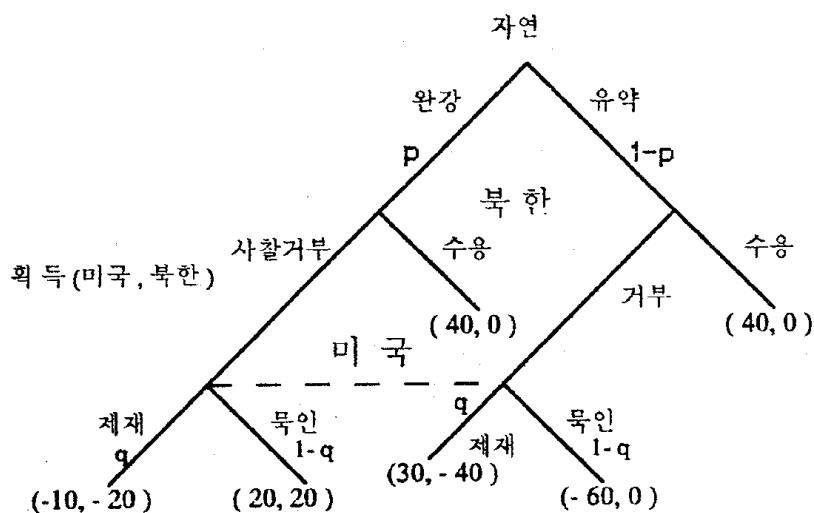


그림-1. 진입억지 게임과 북한핵사찰

29) 사전확률의 수정은 반드시 베이즈 공식에 의해서만 수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사찰 문제에서 매우 완강한 비타협적인 선택을 한 것을 관찰하고 그다음 단계의 보다더 심각한 갈등상황의 게임에서 북한의 타입에 대해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수학기식에 의한 추측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단, Kreps-Wilson의 '연속게임(Sequential Game)'은 합리적 믿음의 기준으로 확률의 일관성을 강조하는데 있어 베이즈 정리에 의존한다. Kreps and Wilson, 앞의 글.

이와같은 불완전 정보의 動的게임의 한 예인 진입억지 게임(Entry Deterrence Game)을³⁰⁾ 북한핵 사찰을 둘러싼 미-북한간의 게임에 응용하여 위의 그림-1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가지풀 게임(Game Tree)에서 미국의 정보조(Information Set)가 점선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은 미국이 선택할 순서에 왔을 때(when American choice node reached) 자신이 어느 경로를(tree branch) 통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해있는지를 모른다는 의미이다. 즉 북한이 완강(당면한 이익의 치열성, 정당성과 수호의지 등으로 tough)한지 아니면 유약한지(soft)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져 이에따라 자신의 획득이 불확실한 상황을 말한다.

위의 그림-1 모델에서는 경제학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진입억지게임과 달리 p (북한의 타입에 대한 미국의 주관적 확률)만 넣는 대신 미국의 대응행동에 대한 북한의 주관적 확률(q)도 고려하였다. 북한의 주관적확률이 1/5과 1/2을 경계로³¹⁾ 하여 0과 1/5사이일 때는 두 타입의 북한 모두 'n'을 선택(특별사찰 거부)하고 1/5과 1/2사이에서는 완강한 북한은 'n'을 유약한 북한은 'c'를 선택(사찰 수용)하고, 1/2과 1 범위에서는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 협조한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주어졌을때 미국은 북한의 타입에 관한 자신의 믿음(p)과 득실을 가지고 어떤 합리적 대응을 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미국의 합리적 대응을 전제할 때 북한의 처음 선택은 합리적인가 하는 일련의 검토들이 완결베이즈 게임의 기본논리이다.

미국은 북한의 도전에 맞서면 $-10p + 10(1-p) = -20p + 10$ 을 기대할 수 있고 묵인하면 $20p - 5(1-p) = 25p - 5$ 만큼의 획득을 기대할 수있다. 따라서 p는 1/3을 기준으로 미국의 선택이 결정된다. 만약 p가 0.2면 미국은 강경한 대응전략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n,n)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전략이 되는가? 아니다. 왜냐면 미국의 'n' 행위에 북한의 'n' 전략은 최상의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30)젤텐의(R.Selten) 연쇄점 역설(Chainstore Paradox)에서 시작된 動的게임인데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의 동태적 형태이다. 진입억지 게임에서는 기존의 대형상점인 연쇄점과(Incumbant) 이에 맞서 경쟁을 시도하려는 진입상점(Entrant)이 벌이는 갈등의 게임인데 이 게임 역시 완결 베이즈게임 또는 연속 게임이다. Selten,R. "The Chainstore Paradox," Theory and Decision,1978, v.9, pp.127-159.

31)북한이 완강한 경로에서는, 북한은 물려서면 "0"을 얻고 반대로 사찰을 거부하면서 버티면(진입억지 게임에서 연쇄점에 맞서 상가에 진입) 미국의 대응에 따르는 획득을 확률가중하면 $-20q + 20(1-q) = -40q + 20$ 이 된다. $-40q+20$ 과 "0"의 대소관계는 $q=1/2$ 을 경계로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유약한 경로에서는 $q=1/5$ 이 엘스버그가 말하는 결정적 위험치(Critical Risk)가 된다.

도전자의 도발과 이에 대응하는 역지자의 행동의 핵역지관계의 맥락에서 불대관심의 대상은 (역지자의 c, 도전자의 n)이나 (n, n)이 합리적 전략인가 아닌가에 있다. 이는 게임의 획득을 일반화한 아래의 정상형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표-3. 진입역지게임 1의 정상형

		완강한 도전자		유약한 도전자	
		c	n	c	n
역지자	c	R ₃ , C ₂	R ₂ , C ₃	r ₃ , C ₂	r ₁ , C ₃
	n	R ₃ , C ₂	R ₁ , C ₁	r ₃ , C ₂	r ₂ , C ₁

여기서 역지자의 $E(c) - E(n) = \Pi = pR_2 + (1-p)r_1 - [pR_1 + (1-p)r_2] = (p-1)(r_2-r_1) + p(R_2-R_1)$ 이 된다. 이 게임의 정상형(Normal Form)은 위의 표-3의 형태로 전개형(Extensive Form)은 그림-2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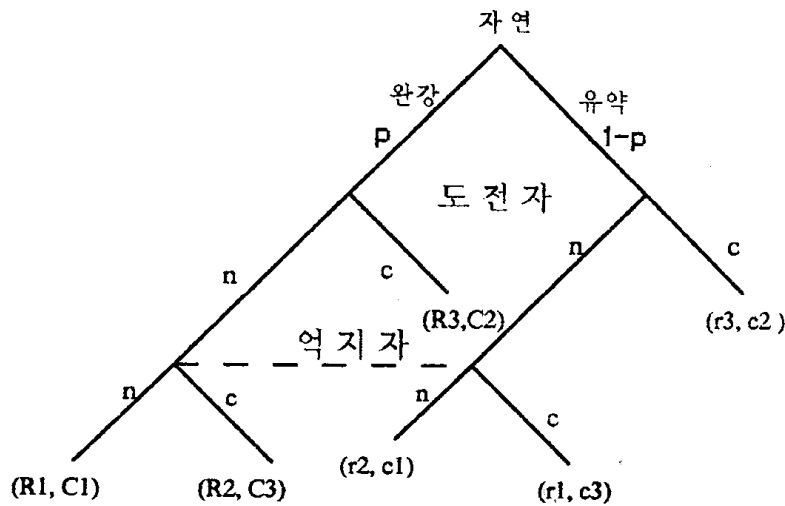


그림-2. 미-복한 사찰게임의 일반형

이런 진입억지게임1형에서 기대이익이 +, - 되는 영역은 기울기 $p/(1-p)$ 에 좌우된다. 즉 p 가 클수록 경계선의 기울기는 커져 협조적 행동 선택 영역이 좁아진다. 이는 앞의 동시선택 '겉쟁이 게임'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타입이나 행동에 대한 예측이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전개과정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

즉, 상대가 완강한 타입이어서 자신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자신의 위협이 상대에게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될수록 자신은 협조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위의 그림-2의 미-복한 사찰게임인 불완전 정보의 동적게임에서의 협조-비협조 전략의 선택영역은 다음의 명제-2에 의해 요약되며 아래 그림-3으로 표시된다.

(명제.2)진입억지 게임에서 협조적 선택은 상대가 완강한 타입일 확율을 높게 볼수록 보다 빈번해진다. 도전자(진입자)의 양보에서 기대되는 R_3 의 크기는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위의 명제.2는 진입 억지게임에서 상대의 타입에 대한 인식이 경기자의 선택과 게임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일반법칙을 확인시켜준다. 우리의 직관과 다른 점은 R_3 보다더 오히려 (R_2-R_1) 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도전자(진입자)의 양보가 가져오는 억지자의 만족은 상관없고 도전자의 도발적 선택에 대응하여 강경하게 대응하는가 또는 묵인하는가에 따르는 획득의 차이가 억지자의 선택에서 협조 또는 비협조를 결정짓는다. 물론 여기에 도전자의 타입에 대한 억지자의 주관적 확율이 함께 결정적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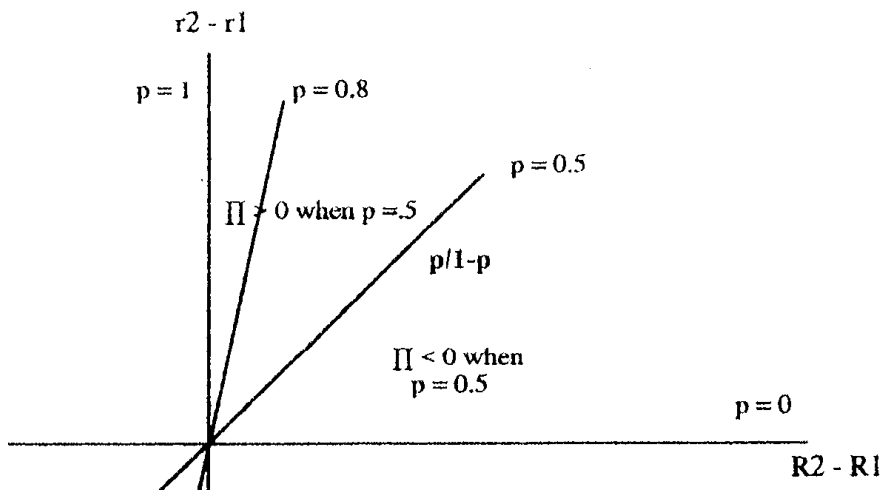


그림-3. 미-복한 사찰게임에서의 n,c 영역

IV. 불완전정보 게임과 북한핵

1. 완결 베이스 게임과 확률적 상호인식

앞에서 예로 든 북한핵의 불완전 정보게임은 도전자와 억지자의 획득의 순서를 단일한 형태로만 본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게임의 상황과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또다른 다양한 순서들을 생각해볼 수가 있다. 北韓核 문제는 (1)사찰을 둘러싼 입장과 이해의 대립과 (2)이것이 북한의 완강한 거부로 끝나고 북한이 핵개발 여부를 놓고 미국과 게임을 벌이는 단계³²⁾ 그리고 (3)이에 미국이 각종의 제재와 더 나가 군사조치의 통첩에 이르러 무력충돌 직전의 게임등 세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세 단계의 게임은 '획득'의 구성과 주관적 확률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고 그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고 몇가지만 검토한다.

가. 核査察 게임

앞의 제 3장에서 불완전정보의 動的게임의 예로 본 그림-1은 상황에 따라 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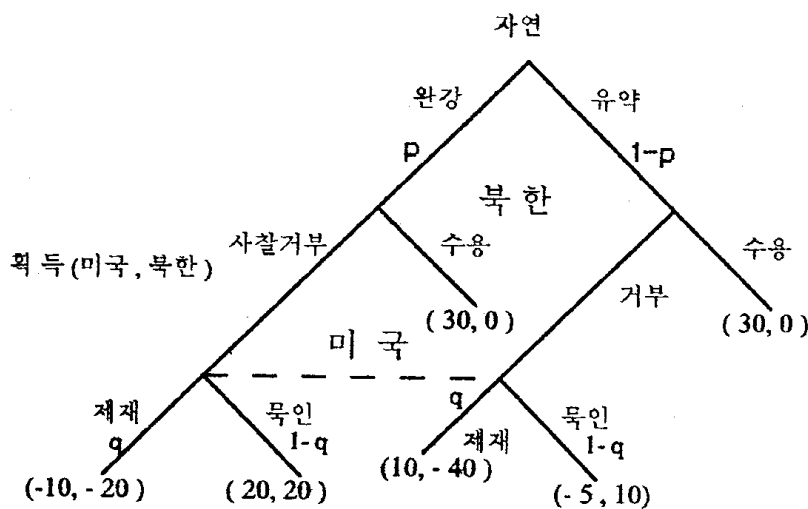


그림-4. 핵사찰 게임

32) 또는 핵사찰에서 일단 후퇴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기회에 따라 계속 은밀히 핵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게 나타날 수있다. 즉, '획득'의 크기만 아니라 순서까지 바뀌는 경우도 있겠으며 크기는 확률의 결정적 위험치(Critical Risk)도 변경시켜 갈등의 원만한 해결의 실현 여부를 결정짓는다.

위의 그림-4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완강한 태도를 지탱하는 북한의 입장과 아울러 이에 압력을 가하는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IAEA 안전협정 체결이전에 비핵화를 확보하는 쟁점조항 삽입을 요구한 북한은 이미 1991년 6월 IAEA 이사회 직후 김영남 외교부장을 통해 "IAEA와 안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국의 핵위협이 지속되는한 핵사찰을 받지않을 것"을 천명하였으며³³⁾ 7월 표준문안 합의후에도 계속 서명을 거부하였다. 또한 9월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과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및 핵부제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제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核不使用 보장과 주한 미핵무기의 실질적인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요구와 對韓 핵우산 안보공약과의 관계가 미묘한 문제로 남는다. 미국도 핵확산억제 정책을 고수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있던 핵사용 문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떤 非核國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먼저 군사적 공격을 하지않는한 그 非核國에게 핵공격을 않는다는 약속이다³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이 원칙의 적용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여기에 만족않고 무조건적인 핵선제 불사용을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지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이 진정 남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소극적 안전보장에 불만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확실히 소극적 안전보장을 법적 수준에서 제공하는데 계속 핵불사용 원칙을 고수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없다. 핵무장 선택은 오로지 방어적 동기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국제정의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그림-4의 核査察 게임에서는 북한의 획득(Payoff)을 결정 짓는 변수로서 소극적 안전보장 이상의 선제핵불사용은 큰 비중을 차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심해소 원칙에 의한 상호사찰 문제는 현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어 북한의 획득구성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이는 한국내에 미국 핵무기가 완전히 철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북한의 권리로서 미신고 시설에 대

33)Washington Post, June,22, 1991.

34)이에비해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은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받는 非核國을 돕기위해 유엔 안보이사회가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이다.

한 특별사찰이나 5MW 원자로의 연료봉에 대한 임시사찰을 관철하는 대가로 우리와 미국이 지불해야할 부담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은 분명한 '획득'의 기준이 있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양보는 미국이나 우리의 획득에 큰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상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확률적 상호인식에 바탕둔 완결베이즈 게임을 북한 핵사찰 문제에 응용하여 여러 가능한 상황을 모델로 만들 수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나 우리가 사찰문제에 대한 북한의 단호한 입장을 낮게 인식하여 그림-4에서 p 를 적게 계산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의 사찰에 관한 당면이해가 자신들만큼 치열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q 를 매우 낮게 본다면 이 게임은 북한의 사찰거부와 미국의 제재로 끝나게 된다. 단, 북한의 사찰 거부에 직면했을때 미국이 p 를 다시 매우 높게 수정하여 묵인하거나 p 나 북한의 획득에 수정이 가해지도록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타협을 제안하여 미국의 사찰수용을 유도할 수도 있다.

반대로, 게임초부터 미국이 비대칭 상호사찰을 수용하고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하면 북한이 일관된 핵무기 개발계획이 없는한 북한도 특별사찰과 임시사찰을 수용하는 식으로 게임이 종료될 것이다. 단, 북한의 핵무장 의도가 확고하다면 이 경우의 핵사찰게임은 무의미 한 것으로 북한의 사찰거부와 미국의 제제조치로 끝난다. 즉, 게임초나 이후의 미국의 유화책 모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사실 p, q 모두 의미가 없고 북한은 '죄수고민'의 완전정보의 게임으로 들어간다.

나. 핵개발 게임

위의 핵사찰 게임이 타협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나지 않는 다음 단계의 게임은 북한의 핵무장 선택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에대한 미국의 저지냐 묵인이냐가 관건이 되는 핵개발 게임이다. 이는 아래의 그림-5로 표현할 수있다. 여기서도 p 는 주관적 추측에 의존되는 불완전정보 게임이다. 물론 그 앞 단계의 핵사찰 게임에서 미국은 북한의 행위를 관찰하고 베이즈 定理에 의해 북한이 완강한 타입일 확율을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랩스나 윌슨이 말하는 베이즈 공식에 맞는 일관성 있는 확율은 동일한 한 게임의 경우에 적용할 성질이며 다른 상황에서의 상대의 타입에 관한 추측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연장 활용할 것은 못된다.

이 단계의 게임에서 북한은 우선 누가 자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보다도 누가 미국의 강력한 대응에 소극적으로 보조를 맞출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이에대한 판단이 그림-5의 북한의 획득과 미국의 선택에 관한 주관적 확율 q 그리고 그런 객관적 상황은 또한 북한의 타입에 대한 미국의 주관적 확율에도 어

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의 핵사찰 게임이 어떤 형태로 끝나서 현단계의 게임에 와있는가에도 좌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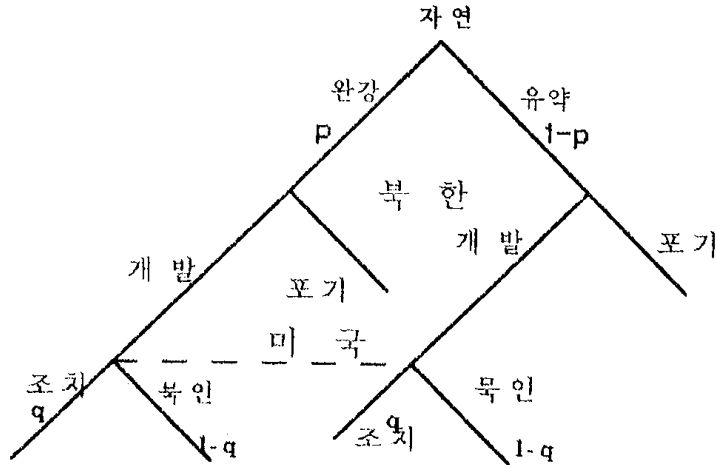


그림-5. 핵개발 완결 베이즈게임

만약 미국이 북한의 비대칭 상호사찰 요구를 거부했거나,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안하지 않은 결과라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반대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사찰을 거부하고 다른 구실로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물론 전자의 경우라고 북한의 핵무장 선택이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북한으로서는 명분이 후자의 경우보다³⁵⁾ 강하게 되어 미국의 북한의 타입에 대한 주관적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경우이던, 사찰문제에서 북한을 옹호하더라도 核開發은 별개라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이 모든 주변국가의 태도이다. 일본은 자신의 핵정책때문에 핵재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원천적 금지의 강경한 입장과는 거리가 멀고 실제

35) 이 경우에도 북한은 핵재처리 시설 옹호론과 102 조약 제 5조에서 허용하는 평화용 핵폭발 논리와 핵개발과 핵무기 개발의 구별논리로 합리화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런 논리로 실제 핵폭발 실험을 행한 인도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남아연방등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를 안하면서 유독 북한에만 불공정한 취급을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로 북한의 NPT 탈퇴 발표이전에 북한의 특별사찰 수락이 조·일 수교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³⁶⁾. 물론 이런 기본입장은 그후 여러차례 반복 견지되었으나 1993년 4월에 들어서서는 북한의 NPT 복귀에 비중을 두고있다. 일본은 IAEA가 북한 탈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문의 초안작성의 주요 이사국으로 참여하였고 對北韓 5개항 결의과정에도 적극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경제문제로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입장과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이해를 같이 하므로 4월 4일 마·러 벤쿠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안전협정 준수와 NPT 탈퇴 번복을 촉구하면서 NPT를 범세계적으로 無期限 유지, 강화시킬 것에 미국과 합의하였다³⁷⁾. 다만 다음 단계의 군사대응 게임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보조를 같이할지는 미지수나 묵인 내지는 방관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이사회가 북한 NPT 탈퇴를 다루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IAEA 이사회에서 북한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35개 이사국 중 리비아와 함께 반대투표를 하였다. 반면, 안보리의 5개항 결의³⁸⁾에 중국은 반대하지 않았으며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NPT 탈퇴 문제 해결에 노력할것을 합의하였다. 중국이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명백히 반대하나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은채로 핵사찰 게임이 끝나 북한이 NPT 탈퇴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핵재처리 시설을 고수할 때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지가 의문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의하고 남한의 군사기지 사찰을 수용했는데도 계속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포기않을 경우 중국은 이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에 적극 압력을 행사하여 사태해결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력을 보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때문이다. 이런 성격의 압력을 북한에 행사하여 북한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국의 국제적 지위는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북한에 배신감을 심어주거나 오히려 북한의 더큰 반발만 유발하여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어 중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 경우에도 북한을 설득하는데 주력하지 선뜻 압력 행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36) 한국일보, 1993, 3, 2.

37) 한겨레신문, 1993, 4, 6. NPT 조약은 1970년부터 발효하고 25년 기간이어서 1995년에 종료된다.

38) 5개항 내용은 1. 북한의 102 탈퇴에 대한 우려표명 2. 102의 중요성과 조약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3.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4.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101의 지속적 노력 권장 5. 북한 102 탈퇴에 대한 계속 주시이다.

그림-5의 핵개발 게임에서 미국은 앞의 핵사찰 게임에서 북한에 양보를 하였는데 북한의 핵개발 고수로 현재 게임에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비타협적인 자세로 핵개발 게임에 와있는가에 따라 북한의 타입에 대한 주관적 기대(p)가 달라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핵사찰 게임으로 돌아가 자세를 바꾸는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미국은 가능한한 강화된 IAEA 사찰체제의 성공적 실행과 이에 바탕을 두어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의도인데 북한핵 사찰의 성공은 하나의 중요한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계속 완강한 자세를 보여 그 결과로 다음 단계의 게임에 도달한 경우와 미국이 보다 타협적인 태도를 보여 북한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계속 사찰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용 이후 계속 핵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경우의 두가지 상황의 핵개발 게임은 모두 그림-5의 완결 베이즈게임 형식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두 경우의 차이는 결국 p 와 q 그리고 '획득'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고 이 게임의 결과를 결정짓게 된다. 전자의 핵개발 게임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무장 선택과 이에 대한 미국의 유화(즉, 앞서의 핵사찰 게임으로 회귀)로 가거나 또는 강경한 대응으로 다음 단계의 군사대응 게임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다. 군사대응 게임

이는 북한핵 문제로 인한 갈등의 마지막 단계 즉 무력충돌 일보직전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임인데 아래 그림-6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p, q 의 값과 획득의 크기는 그 앞 단계의 게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즉, 미국의 핵사찰게임에서의 비타협 → 북한의 사찰거부 및 핵무장 선택인가 아니면 미국의 양보 → 북한의 사찰거부 및 핵개발 고수인가에 따라 미국의 군사조치와 이에 맞서는 북한의 입장과 여건이 달라진다. 실제로는 북한핵 문제가 이 단계 이전의 게임에서 끝나고 군사 대응에 까지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양측이 기본입장에 아무 변화없이 대치하거나 한쪽의 양보에 상응하지 않는 행동 선택으로 대응하여 군사충돌 일보직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게임은 미국이 먼저 군사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북한이 대응하는 순서로 되어있다. 이 상황은 북한이 끝까지 사찰을 거부하고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플루토늄 추출을 계속하는 경우인데 북한과 미국의 자신의 당면이익의 수호의지와 상대의 그것에 대한 인식이 '획득'과 p, q 를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주변국가의 입장도 중요한 결정변수가 되는데 이는 북한과 미국의 상대적인 힘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이 과거 걸프전 때와 같은 지지와 지원을 서방이나 동북아 주변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군사행동의 범위는 무엇인가. 만약 단발성 대규모 공습이라면 그 군사적 효과가 어느정도 확실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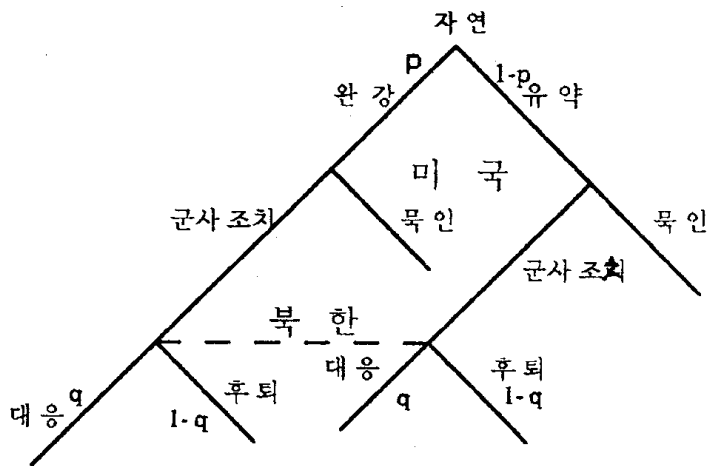


그림-6. 북한핵 군사대응 게임

이러한 여러가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를 유발하고 한반도에서의 확전의 위협을 내포하는 군사적 조치의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북한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예측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북한은 핵사찰 거부 및 재처리 시설 보유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며 또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인식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미국은 자신에 대해 걸프전에서와 같은 전면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위의 그림-6의 군사대응게임에서 북한은 미국이 완강한 타입일 확률(p)을 실제 이하로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사조치에 완강히

대응하는 전략의 획득을 사실보다 크게 계산할 여지도 있다. 미국이 소극적 안전보장도 제공않고 남한의 군사기지 사찰이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사찰을 강요당한다면 북한은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미국과 한국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킬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론과 북한핵 문제의 연결을 차단한채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미 전술핵무기의 철수 사실을 강조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무력사용을 함께 검토하거나 아니면 종전의 태도를 완화하여 북한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타협과 설득을 모색할 것이다. 어느 선택을 할것인가는 북한의 선택에 대한 미국의 주관적 확률(q)과 자신이 완강, 유약중 어느 타입에 놓일 것인가 또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 또한 미국 자신이 느끼는 '획득'이 중요한 변수인데 자신이 양보했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기도한다고 판단하면 실령 북한이 평화적 이용에 한 정해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묵인에 의한 '획득'은 자신의 군사조치와 북한의 완강한 대응이 가져오는 획득보다 못하다고 느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과 군사기지의 비대칭사찰을 수용했는데 북한이 계속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시도하여 그림-6의 게임에 직면한다면 북한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같은 유형의 게임이라도 '획득'과 주관적 확률이 앞의 경우와는 다른 값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익과 수호의지가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서 보다 단호한 '획득'구성을 가지고 북한의 타입이 유약한 상황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경우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對北 군사제재에 적극 동참은 안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북한의 군사행동은 반대하나 소극적 안전보장과 비대칭 상호사찰이 수용된 이상 북한에 NPT 체제에 복귀토록 압력과 설득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느정도까지 계속 완강한 타입으로 남게될지는 미국의 당면이익과 이를 관철하기위해 구사할 수있는 군사조치의 범위와 그 결과로 자신이 입을 손실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좌우된다.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보유와 핵무기 개발은 자신의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을 심각히 손상시킨다는 미국의 기본입장과 북한이 생각하는 공평과 국제정의의 기준이 어디에서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인데 여기서 북한 자신의 국가이익에 대한 합리적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획득'과 주관적 확률을 결정짓는 변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획득'과 주관적 확률의 결정변수

앞에서 본 세 단계별 게임에서 획득과 주관적 확률을 결정짓는 변수들을 보자. 우선, 핵사찰 게임에서 북한과 미국의 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자가 주장하는 입장의 정당성과 수호하는 이익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이의 상호인식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남북한간의 대칭적 상호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이 비대칭적 의심동시 해소사찰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특별사찰을 반대할 때 미국과 북한은 자신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가 또한 그것의 관철이 얼마나 중대한 이익인가에 따라 자신의 획득구성이 결정된다. 또한 상대가 정말 어떤 입장이고 당면이익이 어느정도 절실한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상대의 타입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결정한다.

아직 이 첫 단계의 게임에서는 제재의 실행 어려움이나 제재가 야기하는 손해에 대한 계산은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이 단계에서의 제재는 비교적 실행에 어려움이 적고 그로인한 타격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단계에서 중국은 북한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미국은 비군사적 제재의 어려움을 별로 예측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단계의 핵개발 게임에서의 획득과 주관적 확률은 이전의 핵사찰 게임이 어떤 양상으로 끝났는가에도 많이 좌우된다. 미국이 완강한 태도로 양보를 않고 북한의 요구가 거부된 상태의 연장이면 북한 역시 두번째 단계의 게임에서 비협조 선택의 '획득'이 증폭될 것이다. 미국 타입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베이즈적인 확률계산에서는 완강하게 볼 가능성이 높으나 당면 이익의 치열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는 다른 확률을 가질 수도 있다.

만약 핵사찰 게임에서 북한의 요구가 수용되었는데 북한이 계속 특별사찰을 거부하거나 핵개발을 추진한 결과로 야기되는 핵개발 게임에서는 미국은 비협조 선택에 상당한 '획득'을 부여할 것이다. 북한의 그런 태도로 보아 북한이 완강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관적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북한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독자적 핵개발 능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따라서는 확률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 경우의 핵개발 게임에서는 비합리적이긴 하나 북한이 대내적인 체제수호 수단으로서 핵무장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북한의 타입에 관한 미국의 주관적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핵개발 게임에서도 현단계의 게임 뿐만 아니라 이전 게임에서의 자신 입장의 정당성에 관한 평가에 따라 자신의 획득과 상대의 타입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달라지기도 한다.

마지막 세제 단계의 군사대응 게임에서 역시 앞의 두 게임들에서 작용하였던 변수들이 획득이나 주관적 확률의 크기나 방향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무력 충돌 직전까지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단계의 게임에서 '결의의 경쟁(Competition of Resolve)'이 가장 치열하고 엄청난 위험 속에 자신의 이익 수호를 위해 상대를 '겁쟁이'로 만들고 자신은 '최수 고민'의 입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 미국의 '획득'은 NPT 체제 수호와 동북아에서의 핵확산 방지가 어느정도 치열한 국가이익인가 그리고 그런 정책기조에서 北韓核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좌우된다.

이 막다른 단계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상당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미국은 군사적 제재로 북한핵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다면 저지를 위해 어느 수준의 군사적 행동이 요구되며 그 행동으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특질의 계산과 예상되는 한국의 반대속에 미국의 선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북한이 NPT 탈퇴를 고수하고 미국의 무력 제재를 받는 첫 케이스가 될 때 미국의 정치적 부담도 적지않을 것이다. 왜냐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것과 이의 관철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두 차례의 폭격으로 성공한다면 시도해볼 만하나 그렇지 않고 상륙전까지 필요한 경우 미국이 걸프전 당시와 같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미국이 핵사찰 게임에서 양보를 하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계속 핵개발 게임의 단계를 거쳐 무력대응 직전에 이른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가 수반된 미국의 군사행동은 명분이 강화되나 그래도 개별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무력으로 응징하는데 어느정도 지지를 보낼지 의문이다.

북한이 이러한 판단을 한다면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비협조적 선택의 '획득'이 상당히 높고 미국이 완강한 타입일 확률을 낮게보는 모험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확보해주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이다. 비록 김일성이 핵무기 한두발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언급하였으나 사실 핵무기가 지니는 군사적 억지력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 침략에 의한 정부, 국가의 소멸과 내부적 여인에 의한 체제의 변화는 전혀 다른 경우인 점을 인식한다면 핵무기 개발이 곧 사회주의의 안전한 유지라는 단순한 판단을 할지 의문이다.

V. 결론

앞의 4장에서 제시한 불완전 정보게임의 ‘획득’과 ‘주관적 확률’을 결정하는 변수를 조정하여 북한핵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선 당장 현안인 사찰문제는 북한의 의심동시해소원칙을 수용하고 그대신 특별사찰을 관철시켜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비대칭사찰이라고 거부한다면 이는 비핵화의 진정한 확인을 외면한다는 의혹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전면적인 완전한 의심해소 사찰은 못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이전의 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그런데도 북한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한다면 이것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의심동시해소 원칙에 모순되며 핵개발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의심동시해소 원칙의 순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사찰문제가 해결안되고 NPT를 완전히 탈퇴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개발 속도를 최대한 지체시키도록 또는 도중 포기토록 압력행사와 보상제공을 병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기의 반입금지과 미국은 핵무기 선제불사용 선언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매우 미묘한 문제여서 간단히 제시하기 어려우나 북한의 위기의식(실재한다면)을 완화시키고 그들의 핵무장 구실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안함직하다. 팀스피리트 훈련의 성공한 재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도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그 선택의 부당함은 물론 무모성 내지는 무용성을 설득하고 손실이 이득보다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억지전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 Ann, M. "The U.S. Prods IAEA about Safeguard for North Korean Nuclear Plants, Nuclear Fuel, April 3, 1989
- Axelord, 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 Bermudez, J.S. "N.Korea- Set to Join the Nuclear Club?" Japanese Defense Weekly, 1989, v.2 n.12.
- Brams, S. Game Theory and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75
- _____, The Superpower Gam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 Brodie, B. Escalation and the Nuclear Op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 Ellsberg, D. "The Theory and Practice of Blackmail," in Young, O. (ed) Bargaining: Formal Theories of Negotiation, 1959.
- _____, "The Crude Analysis of Strategic Choice," in American Economic Review, 1961, pp.472-478.
- Fudenberg and Tirole, "Sequential Bargaining with Incomplete Inform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83, v.50, pp.221-247.
- Gautier, D. "Deterrence, Maximization, and Rationality," in Ethics, 1984 v.94, n.3 pp.474-495.
- Green, P. Deadly Logic: The Theory of Nuclear Deterrenc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1966.
- Kreps, D and Wilson, R. "Sequential Equilibria," Econometrica, 1982, v.50, pp.863-894.
- Kreps, Milgrom, and Wilson. "Rational Cooperation in the Finitely Repeated Prisoners' Dilemma,"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82, v.27, PP.245-252.
- Luce, R and Raiffa, H. Games and Decisions, New York: Wiley, 1957.
- Park, J. Rationality in Nuclear Deterrenc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991
- Powell, R. "Crisis Bargaining, Escalation, and MAD," APSR, 1987, v.81, pp.717-735
- _____, "Nuclear Brinkmanship with Two Sided Incomplete Information," APSR, 1988, v.82, pp.155-178
- Selten, R. "The Chainstore Paradox," Theory and Decision, 1978, v.9, pp.127-159.

Tsebelis, G. "The Abuse of Probability in Political Analysis: The Robinson Crusoe Fallacy," APSR, 1989, v. 83, pp. 73-91.

- 곽태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1992 통권 14호.
- 김규두, 김성진.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에 대한 대응방향' 민족통일연구원, 1991.
- 김진철, '북한의 비핵지대론 분석' 국제문제연구소, 「국제문제」 1988, 10월.
- 김태우, '한반도 핵문제와 신국제 질서' 북한연구, 1992, 통권 8호.
- 박진구, '북한의 핵과 핵안전 협정' 국제문제연구소, 「국제문제」 1991, 10월
- 송영선,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미체결과 핵능력'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 정치」 1991, 봄/여름.
- 윤덕민, '북한의 NPT 탈퇴와 우리의 대응 방향' 외교안보연구원, 1993, 3월
-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일신사, 1990
- 이준근, 권만학, 이정민. 한반도의 핵문제, 세종연구소, 1992
- 이호재, '한반도의 핵논쟁과 비핵지대안' 이호재(편), 한반도 군축론, 법문사, 1989
- 전병완, 김민석.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 및 전망' 국방연구원, 국방논집, 1991, 봄
- 전성훈, '핵문제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非核化 展望' 민족통일연구원, 1992, 6월
-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3, 5월
-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나남, 1991

北韓의 核開發 現況과
韓國政府의 對應策

研究責任者：全 雄(延世大學校)

목 차

〈要約文〉

I. 序 論	63
1. 研究 目的	64
2. 研究 內容 및 研究 方法	65
II. 北韓 核問題의 現況과 展開過程	67
1. 北韓의 核開發 疑惑	67
2. 南北 非核化 共同宣言과 IAEA 安全協定 署名	69
3. 南北韓 相互核査察 協商의 進行	71
4. 特別核査察 拒否와 NPT 脫退	74
III. 北韓의 核武器開發狀況 評價	77
1. 核武器開發狀況 評價의 基準	78
2. 北韓의 核開發 能力 評價	80
3. 北韓의 核武器開發 意圖—動機誘發要因 및 抑制要素	87
IV. 北韓 核問題의 展望과 對策	97
1. 北韓 核問題의 展望	97
2. 韓國政策의 立場과 對應策	105
가. 韓國政府의 立場	105
나. 中短期 對策	107
다. 長期 對策	112
V. 結 論	116
〈參考文獻〉	120
〈附錄 1〉—北韓 核問題 關聯 日誌	123

北韓의 핵開發 現況과 韓國政府의 對應策

全 雄 (延世大 講師)

< 要 約 文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관해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기술능력이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는지를 평가해보고, 북한이 왜 핵개발을 지속하는 지 그 동기와 의도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새로이 조명해보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첫째, 서론부에서 북한 핵문제가 한국은 물론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았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그 동안의 경과와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셋째, 북한의 기술 및 경제적인 여건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지, 그리고 북한이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했는 지, 그 의도들을 평가해 보았으며, 넷째, 그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도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의 대응조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전망을 제시해 보았으며,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대북한 핵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들을 제시해 보았다.

1991년의 남북간 비핵화선언과 수 차례의 남북회담, 그리고 IAEA와 서방국의 맹렬한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기도를 전혀 포기하고 않고 있다. 북한은 IAEA가 요구하는 특별핵사찰을 거부하는 한편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마저 탈퇴하므로써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그들의 핵개발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켜왔다. NPT를 탈퇴한 이후 미국과 북한간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수 차례에 걸쳐서 열렸고, 북한은 일단 NPT 탈퇴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 기도를 아직껏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까지도 IAEA의 특별핵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은 현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민족의 생존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문제는 또한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두 정부의 숙제일 뿐만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통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지체되거나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한반도의 핵문제는 통일전뿐만아니라 통일후 동북아 지역내 주변 강대국들과의 새로운 전략적 구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핵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국익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겠다.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상이하게 평가를 내리곤 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증폭되어왔던 지난 2년동안 언론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정확하지 않는 자료들을 마치 신빙성 있는 자료인양 무분별하게 유용하여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과대 때로는 과소 평가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IAEA의 핵사찰 결과 드러난 사실 또는 자료들을 바탕으로하여 북한의 핵개발능력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자 시도하였는 바, 현재까지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북한이 현재 실제로 핵무기제조용 핵물질을 상당량 비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은 IAEA의 특별핵사찰이 실시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IAEA 특별핵사찰실시의 필연성과 중요성이 강조된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혹자는 북한의 핵개발동기는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외교적 협상의 카드로서 활용코자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따라서 핵무장을 통해서 체제위기를 극복코자하는 군사 안보적인 목적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핵무기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치 그 의도와 동기들도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며, 북한의 경우에도 단순한 외교협상용 이외에도 군사 안보적인 목적, 그리고 에너지원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히, 동북아 주변 정세가 북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한 군사안보적인 동기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변수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의 핵개발 전망에 관련하여, 북한은 자신의 군사 안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무기개발을 계속하여 강행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앞서 체제유지와 생존 문제가 북한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국가적 정책목표로서 대두 되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핵무기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통하여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충분한 외교적인 성과를 올렸는 바, 북한은 핵무기개발 옵션을 미국이나 한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군사 안보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북한에게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허용하여야만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제재 또는 군사제재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태를 계속하여 관망하면서 핵개발 옵션의 포기 댓가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반대 급부를 노릴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그리 많지 않다. 특별히,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된 현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무시한 채 우리 정부 나름의 독자적인 노선만을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핵문제로 인한 남북간 무력전쟁과 핵공격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북한 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해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에 관련하여 미국이나 IAEA를 비롯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에 협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1) 북한의 NPT 복구, 2) IAEA핵사찰의 수용, 3) 남북간 상호핵사찰의 실시 등의 3 가지 문제들이 조속히 달성되어야 할 우리 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써 대두되고 있는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들을 중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누어 조명해 보았다.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북한측이 NPT 복귀조건 또는 IAEA 특별사찰의 수용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주한 미군기지의 사찰, 핵무기위협 중지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 또는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핵문제에 관련된 주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감안, 단기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공조체제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현재 남북 대화가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대화 그 자체 남북간 긴장완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향후 어떠한

여건에서도 남북대화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남북대화에서 정부는 우선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한국정부가 대북한 협상의 제일 우선적인 당사자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남북협상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개입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입장과 위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첫째, 정부는 대북한 행정책에 있어서 담당 부서들간의 의견의 불일치 또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 등등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는 바, 장기적으로 정부 나름의 일관성 있고 창의적인 대북행정책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북한 핵문제의 국제화적인 성격을 감안, 단기적으로 국제적 공조체제에 동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제까지의 지나친 대미 의존도를 탈피 우리 정부 나름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행정책노선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존의 핵-경협 연계정책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점을 감안, 핵문제와는 별개로 정경분리의 입장에서 남북간 경협을 지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남북간 경협이 지속됨으로써 교류가 증대하면서 남북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고, 남북간 상호불신의 폭도 훨씬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전통적인 미국의 핵-경협 연계정책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해와 수용을 촉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바 충분한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 나름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행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 序 論

1. 研究 目的

1991년의 남북간 비핵화선언과 수 차례의 남북회담, 그리고 IAEA와 서방국의 맹렬한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기도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특별핵사찰을 거부하는 한편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마저 탈퇴하므로써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그들의 핵개발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켜왔다. NPT를 탈퇴한 이후 미국과 북한간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수 차례에 걸쳐서 열렸고, 북한은 일단 NPT 탈퇴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 기도를 아직껏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까지도 IAEA의 특별핵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은 현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민족의 생존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문제는 또한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두 정부의 숙제일 뿐만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통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지체되거나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핵문제는 우리의 국익과 생존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겠다.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상이하게 평가를 내리곤 했다.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와같이 서로 엇갈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개발활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 발표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관한 정

보들이 확실한 근거에 기초를 둔 것이기보다는 대부분 추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증폭되어왔던 지난 2년동안 언론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정확하지 않는 자료들을 마치 신빙성 있는 자료인 양 무분별하게 유용하여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과대 때로는 과소 평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남북간 협상이라든가 대북한 핵문제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 어느 수준의 핵개발능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내 핵무기를 생산 개발해낼 것 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혹자는 북한의 핵개발동기는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외교적 협상의 카드로서 활용코자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따라서 핵무장을 통해서 체제위기를 극복코자하는 군사 안보적인 목적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핵무기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치 그 의도와 동기들도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론은 핵무기 개발의 동기요소(incentives)와 억제요소(constraints)를 균형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경향이다. 관련하여, 북한의 핵개발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북한이 왜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 및 억제요소들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요구된다.

북한이 계속하여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개발의혹을 풀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간 비핵화선언과 남북간 군비통제협상의 추진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기도를 포기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돌연한 NPT탈퇴 선언에서 보았듯이 우리 정부의 그러한 노력이 전혀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다소 융통성 있고 유화적

인 한편, 북한은 이에 대해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핵문제가 전혀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대북한 정책의 문제점들을 재평가해보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관하여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는지를 평가해보고 북한이 왜 핵개발을 지속하는 지 그 동기와 의도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새로이 조명해보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2. 研究 內容 및 研究 方法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첫째, 서론부에서 북한 핵문제가 한국은 물론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았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그동안의 경과와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셋째, 북한의 기술 및 경제적인 여건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지, 그리고 북한이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했는 지 그 의도들을 평가해 보았으며, 넷째, 그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도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의 대응조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전망을 제시해 보았으며,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대북한 핵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들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의 핵개발현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장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평가해 볼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에 관하여서도 학자들의 이론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의도들을 억제요소와 동기요소로 구분,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해 득실을 평가하는 손익득실 기법(a cost-benefit analysis)에 입각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대북한 핵정책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나열한 다음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 서술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상황에 관하여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학자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상당 부분 모순되고 때로 전혀 상반된 입장을 진술하고 있기도 한다. 북한의 핵개발실태에 대한 평가 자료들로서는 일차적으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들의 기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자료로서 이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고도 선별적으로 활용코자 한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에서도 IAEA의 핵사찰 결과는 그런대로 신빙성있는 자료로서 고려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총 7 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IAEA의 사찰 결과와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관한 각종 증거 자료들,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장들을 조심성 있게 선별하여 북한의 핵개발능력을 평가함에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북핵정책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재고 되고 있다. 한동안 북한의 핵개발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호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빙성 있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이루어졌으며, 북한 핵개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토록 시도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北韓 核問題의 現況과 展開過程

본 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왔는지 그 전개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일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어떤 행동들을 취했고, 이에 대해 미국, 한국, IAEA 어떻게 대응해왔는 지 그 진행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진술해본다.

1. 北韓의 核開發 疑惑

1990년대초 걸프전쟁의 결과 드러난 이라크의 핵개발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진척되었음에 경색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의 핵확산 문제에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 언론들은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등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이 국가적 생존을 목적으로 핵개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게 되었다.

사실, 서방세계가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 북한이 영변에 자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원자로가 서방세계에 포착되면서부터였다. 북한은 1965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영변에 건설한 원자로를 가동시켜 오고 있었지만 1977년 12월 IAEA와 안전조치협정(INFCIRC/252)을 체결하고 그후 정기적으로 사찰을 받아왔기 때문에 동 원자로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다.¹⁾ 그러나, 1980년대 초 북한이 영변에 자체기술로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서방세계에 포착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한다는 의혹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북한은 NPT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 원자로에서 생산된 핵물질을 사용하여 핵무기를 제조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제도적으로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은 당시 소련 정부를 통해 북한이 NPT에 가입하

¹⁾김민석, "북한의 핵무기개발현황," 『북한연구』 8 (1992 여름), 29쪽.

도록 압력을 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게 된다.²⁾

북한이 소련의 압력에 굴복하고 NPT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NPT에 서명함으로써 장래 핵개발계획에 대해 소련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북한 나름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며, NPT에 가입함으로써 오히려 서방세계로부터의 핵무기개발의혹을 떨치고 보다 자유롭게 독자적인 비밀 핵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오판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북한이 일단 NPT에 가입하게 되자 북한 핵개발에 대한 서방세계의 주의와 관심이 한동안 멀어졌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서방세계의 의혹이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으면서도 협정의 의무사항으로 18개월만에 했어야 할 전면안전조치협정의 서명(1987년 6월 만료)을 1990년 당시까지 3년 6개월 이상이나 미루어 오고 있었다.³⁾ 북한이 이와같이 국제적인 조약의 의무까지 무시하면서 IAEA의 핵사찰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으로부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서방세계의 의혹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증가하면서 핵확산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서방 정보소식통들이 북한의 핵개발 실태에 대해서 면면히 파헤치기 시작 북한 핵개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추측들이 나오게 되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도는 북한이 당시 처해 있는 국내외적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서 인식되었다.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몹시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별히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동서 해빙무드가 확산되면서 동구공산권에 이어 소련이 붕괴하였으며,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는 등 국제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 남한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남

2) 박찬표, "북한핵문제: 현황과 과제," 『현안분석』, 제 63호 (1993. 7.), 3쪽.

3)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은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 1968년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핵보유 기득권을 인정하는 한편 제 3국의 핵무기보유를 금지하는 이른바 수평적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동조약은 핵강대국들의 핵무기 생산 및 비축, 즉 수직적핵무기확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조치를 행하지 않으면서 제 3국의 핵보유 포기를 금지하고 있어 핵의 남북문제를 유발시킨 차별적인 불평등조약의 성격을 지닌다. 어쨌든, 동조약에 조인한 국가는 IAEA의 규정에 따라 조약체결후 18개월 이내에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과 소련,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갔으며,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점차 어려워져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북한 지도자들 사이에 핵무기는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1990년대 초의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과 북한의 핵사찰의 의도적인 지연 등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 국가들의 대북한 핵사찰 압력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 南北 非核化共同宣言과 IAEA 安全協定 署名

북한이 계속하여 전면핵안전조치협정을 미루고 있는 한편 1990년 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이사회는 북한의 협정 미체결을 비난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IAEA 핵사찰 수용을 주한 미군의 전술핵과 연계시켜 주한 미군의 철수와 팀스프리트 훈련의 중지를 핵안전조치협정 서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⁴⁾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주한미군핵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NPT 가입국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주한 미군핵이 북한을 겨냥한 전술핵인만치 명분상으로도 남한의 핵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없이는 북한의 핵개발 중지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⁵⁾ 주한 미군핵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종래부터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⁶⁾에 입각하여 주

4)이 회의에 참석한 35개국 중 16개국이 북한의 협정 미체결을 비난했으나 북한측 대표 윤호진은 1) 주한미군핵무기 철거, 2) 한미합동 팀스프리트 훈련중지, 3) 핵무기 보유국가의 태도에 따라 북한이 체결한 핵안전협정의 효력이 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협정서에 밝혀줄 경우에만 이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안전조치협정 서명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송영선,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미체결과 핵능력」, 『한국과 국제정치』, 제 7권 제 1호 (1993년 봄/여름), 135-136쪽.

5)이준근, 권만학, 이정민, 「한반도의 핵문제」, 세종연구소, 『정세분석』, 통권 12호 (1992. 2.), 27-29쪽; 박찬표, 1993, 앞의 글, 3-4쪽.

6)「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안은 1956년 북한이 최초로 공식적인 반핵입장을 표명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은 1991년 10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제 4차 고위급회담에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 핵무기 시험 생산 반입 소유 및 사용 금지, 핵무기 배비금지과 핵무기를 적재한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및 영해 통과 착륙 및 기항 금지, 3) 핵우산 제공을 받는 협약체결의 금지, 4)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된 군사연습금지

한 미군핵의 철수와 연계시키면서 IAEA의 안전조치협정 서명을 계속 미루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면서 한국정부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소련등의 주변 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⁷⁾ 특히,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미루면서 핵사찰을 계속 지연시켜온 한편,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이 상반되어 남북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반도에서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해왔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1) 남한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의 철수, 2) 핵무기의 생산, 구입의 반대, 3)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와 함선의 한반도내 출입 및 통과 금지 등이다.⁸⁾ 북한측의 비핵지대화 제안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오던 한국과 미국정부는 북한이 핵무기개발의혹이 증가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정책적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러한 정책의 한 사례로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12일 전세계에 비치되어 있는 지상 전술핵무기를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부시선언에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한국은 농축과 재처리 시설의 포기를 포함한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및 사용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으며, 12월 18일 한반도 핵부제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다. 곽태환,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 4권, 제 1호 (1992 봄), 32쪽; 전성훈, “남북핵협상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창간호(1992. 6.), 민족통일연구원, 132-138쪽 참조.

7) 주변 4강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있어서 공통적인 입장을 취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지역의 핵확산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핵확산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에 대해서는 곽태환 교수의 논문속에서 잘 요약 논의되어 있다. 곽태환,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 4권, 제 1호 (1992 봄), 172-176쪽.

8) 위의 글, 177-178.

11.8 비핵화선언에서 제시된 남한의 비핵화 선언과 북한측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안은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만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반면, 북한측이 제시하는 비핵지대화안은 남북한의 비핵화 이외에 제 3국핵의 영토, 영해, 영공 통과와 출입까지도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같은 내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한측의 비핵화선언과 남한내 핵부재 선언은 북한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다소 완화 핵문제에 대해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쨌든,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책에 힘입어 북한은 더 이상 핵사찰을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었으며, 북한은 12월 23일 핵안전협정 서명 및 사찰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1991년 12월 31일 "남북 비핵공동선언"을 채택하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시킴으로써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북한은 또한 92년 1월 30일 핵안전협정에 정식 서명을 하였으며, 북한 최고 인민회의는 4월 9일 핵안전협정을 비준했다.⁹⁾ 이로써 북한 핵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3. 南北韓 相互核査察 協商의 進行

북한이 안전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1992년 5월부터 IAEA의 핵사찰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IAEA의 핵사찰이 가지는 여러가지 한계 때문에, 정기적인 핵사찰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IAEA의 핵사찰과 동시에 남북한 상호 핵사찰의 실시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남북한은 1991년 12월에 타결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근거로 7차례의 대표 접촉 끝에 1992년 3월 19일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로부터 2개월정도 내에 사찰 규정을 마련, 규정마련후 20일내에 최초로 남북상호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¹⁰⁾ 동년 3월 이후부터 10월까지 9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상

9) 『한국일보』, 1992. 4. 10.

10) 『한국일보』, 1992. 6. 8.

호사찰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이행합의서, 사찰 규정, 사찰 대상 및 횟수, 특별사찰 등에서 전혀 타결을 보지 못한 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상호사찰 협상에 있어서 남북간 이견의 핵심은 사찰대상의 수를 상호주의(相互主義)로 하자는 남측 주장과 북측의 의심동시해소원칙(疑心同時解消原則), 특별사찰제도의 도입문제 등이었다. 우선 사찰대상을 둘러싸고 남측은 상호동수주의(相互同數主義) 및 대칭사찰(對稱査察)의 입장에서 영변 일대 북측의 민간 핵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 조건으로 남측의 민간 핵시설의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면 북한도 같은 숫자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의심동시해소원칙에 따른 비대칭사찰(非對稱査察)을 주장하는 바, 상호의심지역인 북한의 영변 등 민간핵시설 대 주한 미군기지를 포함한 남한내 모든 핵시설을 사찰대상에 포함하여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특별핵사찰 문제 역시 협상의 중요한 걸림돌이었다. 우리 정부는 상호합의에 의해 연간 56개의 사찰장소를 선정(이중 20개가 군사시설)하여 이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되는 일반정기사찰 외에 일방이 24시간 전에 특별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지정 통고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 사찰을 수용하는 특별핵사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대외개방에 대해 불안한 입장에 있는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¹²⁾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군사기지 공개문제, 이에 상응하는 주한미군기지 공개문제 및 특별사찰 수용문제였는 바,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해 더 이상의 개방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기지사찰이나 불시 특별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고, 남한과 미국 정부도 한미간에 얽힌 정치적 문제의 타결이 없이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미군기지사찰에 대해 곤란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로는 첫째, 미군기지에 대한 공개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둘째, 미국의 일반적인 미군기지공개는 미

11) 『한국일보』, 1992. 6. 8.

12) 전성훈, 1992, 앞의 글, 148-150쪽.

국의 주권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미 의회와 여론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¹³⁾ 여기에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게 될 경우 미국이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북한이 미국이 참여하는 사찰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¹⁴⁾ 결국, 남북간에 이와같은 입장차이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상호사찰협상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남북간 상호핵사찰이 전혀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자 한미 양국은 1992년 10월초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및 제 14차 한미군사위원회에서 남북간 상호사찰의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2년 일시 중단시켰던 팀스프리트 훈련을 93년도에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¹⁵⁾ 한미 양국의 팀스프리트 훈련재개 결정에 대해 북한은 강력한 비난과 함께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남북간 대화창구를 폐쇄하였다. 여기에 「남한조선노동당」사건¹⁶⁾이 발표되면서 남북관계는 보다 더 악화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 선언에 대응하여 1992년 11월 3일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거부를 공식적으로 표명 하였다.¹⁷⁾ 또한, 92년 11월 6일 이전으로 예정된 남북간 직통전화 설치가 무산되었으며, 11월 개최 예정이던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 회의가 모두 무산되었다. 여기에 12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 9차 남북고위급회담마저 무산되었다.¹⁸⁾ 92년 10월을 마지막으로 9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남북간 핵통제공동위원회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마감하고 말았으며, 이로써 남북한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13) 위의 글, 151-152쪽.

14) 위의 글, 152쪽.

15) 『중앙일보』, 1992. 10. 5, 10. 8.

16) 국가안전기획부에 따르면 북한 권력서열 22위의 거물급 여간첩을 중심으로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 10여명의 장관급 수하 간첩을 거느리고 10여년간이나 활동해왔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또한 간첩망가담자는 무려 39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95명을 검거하고 62명이나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1992. 10. 7. 참조.

17) 『동아일보』, 1992. 11. 4.

18) 전성훈,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 분석 및 전망..” 『통일정세분석』 (93-02), 민족통일연구원, 1993. 6. 8, 4쪽.

4. 特別核査察 拒否와 NPT 脫退

1992년 10월 이래 상호사찰을 둘러싼 남북핵협상이 담보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AEA의 임시사찰을 예정대로 수용하여 93년 2월초까지 6차례의 임시사찰이 실시되었다.¹⁹⁾ 북한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협조적인 자세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에 응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결과 북한의 핵개발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술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낙후된 수준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로 나왔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친 IAEA 핵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은 북한측이 작성한 서류에 근거하여 사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이 고의로 중요 핵시설물을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사찰은 불가능하다. 또는, 북한은 사용후 핵연료를 비밀 장소에 은닉시켜 놓고, 적당한 시기에 재처리 하여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도 있겠다.²⁰⁾ 북한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제 2의 재처리시설을 비밀리에 숨겨놓고, 원자로 가동후 생기는 사용후 핵연료를 은닉한 다음 제 2의 재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²¹⁾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적인 핵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완전하게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19) 『한국일보』, 1992. 5. 26.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최초의 핵사찰은 5월 25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사찰 대상은 북한이 동년 4월에 IAEA에 제출한 14개 주요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해 한정하여 사찰을 실시했다. IAEA는 1993년 3월 현재까지 도합 6차례의 핵사찰을 실시하였다.

20)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채광 및 정련 시설을 이용하여 핵연료를 가공하기 때문에 생산된 핵연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IAEA 사찰이 대체적으로 북한이 작성해 놓은 기록에 의존하게 되므로 사용후 핵연료의 물질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김민석, 김태우, 전병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상과 저의,” 『통일문제연구』, 제 3권 제 4호 (1991 겨울), 155-156쪽.

21) 최근의 보도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IAEA의 사찰결과로서 드러난 바, 북한이 한번 추출했다고 신고한 플루토늄 샘플과 IAEA가 핵폐기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다른 것으로 판정되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비슷한 입장에서 핵확산 문제 전문가인 Spector교수도 북한이 영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1987년부터 가동해왔기 때문에 상당량의 사용후 핵연료를 비축해 두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은닉해둔 사용후 핵연료로 비밀리에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Leonard S. Spector, “Repentant Nuclear Proliferants,” Foreign Policy, No. 88 (Fall 1992), pp. 28-29; 한국일보, 1993. 2. 27일자 참조.

한편,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IAEA의 임시사찰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핵의혹이 점차 증가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92년 12월 초 미국의 첩보위성을 통해 촬영된 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영변 일대에 미확인 핵시설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²²⁾ 그래서, IAEA측은 제 6차 임시사찰 기간 중인 93년 1월 말 영변 핵단지 일대 두 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시설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치 않았었다.²³⁾ 이에 IAEA측은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을 통해 93년 2월 9일 북한에 정식으로 특별사찰실시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절대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반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IAEA는 2월 25일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3월 25일까지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달 내에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북한은 IAEA의 조치들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팀스프리트 야외기동훈련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월 8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3월 10일 IAEA 사무총장에게 특별사찰 거부를 공식 통보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NPT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북한은 NPT탈퇴선언문에서 한·미 양국의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와 IAEA의 특별핵사찰 강행에서 비롯된 바 북한의 최고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NPT탈퇴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²⁴⁾ 북한의 NPT탈퇴는 조약의 규정상 탈퇴 선언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²⁵⁾ 그래서, 북한의 NPT탈퇴 이후 UN과 IAEA 등의 국제기구와 한·미·중 등 관련국들은 NPT탈퇴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90일동안의 유예기간 내에 북한이 NPT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IAEA 특별이사회는 3월 18일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의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 1일부로 북한 핵문제를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5

22)『한국일보』, 1992. 12. 2.

23)『한국일보』, 1993. 2. 13.

24)『한국일보』, 1993. 3. 13.

25)NPT 10조 1항에서 조약을 탈퇴하려는 국가는 3개월 전에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에게 탈퇴를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탈퇴 선언 후 3개월이 지나야 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 NPT 본문 참조.

월 12일부로 북한의 NPT복구와 특별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²⁶⁾ 한편, 미국은 3월 17일 북경에서 북한과 접촉을 가지고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참사관접촉을 계속하였으며, 5월 10일 북경에서 제 33차 접촉을 통해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 1부부장을 양국대표로 하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6월 11일 제 4차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²⁷⁾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핵무기를 비롯한 무력의 사용과 위협의 반대, 공정한 핵사찰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보장과 상호주권의 존중,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세가지 원칙에 합의하였음을 밝히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국정부는 대등하고 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NPT탈퇴 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일방적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일단 북한을 NPT체제 속에 잔류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북한핵문제 해결의 성패를 가늠하는 최대의 관건인 특별핵사찰의 실시는 이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²⁸⁾ 한편, 북한은 NPT 의무이행의 조건으로 미국에게 경수로도입지원의 약속을 받아내는 외에도 NPT탈퇴 유보의 조건으로 북·미 회담의 지속을 보장받음으로써 차후 북·미 관계정상화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등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핵사찰 요구에 대해서는 IAEA의 불공정성만을 내세우며 전혀 수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후 IAEA의 제 7차 임시사찰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었으나 사찰장비에 부착된 필름의 교환 등의 일상적인 사찰임무만을 실시

26)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하고 중국과 파키스탄이 기권하여 가결되었다. 『한국일보』, 1993. 5. 12.

27) 공동선언 전문 내용은 『한국일보』, 1993. 6. 14 일자 참조.

28) 북·미 회담 발표문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에 대해 경수로 도입 지원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고, 북한은 IAEA와 빠른 시일내 핵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으며 남북한 회담이 빠른 시일내 시작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2 개월 이내에 제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 93. 7. 21.

했을뿐이었다. 이어서 제 2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북한과 IAEA 대표단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양에서 특별핵사찰 수용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나 북한은 종래의 IAEA 공정성 문제만을 거론하므로써 특별사찰 수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남북고위급 대표접촉 및 특사교환을 제안하는 등 남북대화 재개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²⁹⁾ 그러나, 북한측은 남한정부의 대북제의를 수락했다가 다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의 무성의와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 2차 회담에서 합의한 바 남북대화 와 IAEA 안전협상이 진전이 있을때까지 미·북 3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³⁰⁾

결국, 북한 핵문제는 한국, 미국, IAEA의 갖은 노력과 수 차례에 걸친 대북한협상에도 불구하고 원점을 맴돈 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장 큰 관건인 특별핵사찰의 실시가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그동안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 해서 핵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핵개발의 가능성만을 증가시키고 있다.

III. 北韓의 核武器開發狀況 評價

본 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능력과 의도를 평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과연 핵무기개발에 충분한 정도의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아직 개발하지 않았다면 언제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인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기가

29) 한국정부는 93년 5월 20일부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고위급 대표접촉을 제의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5월 26일부로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의하고는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일보』, 6. 27 일자 참조. 우리 정부는 이어서 8월 4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9월 1일 다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해놓고는 9월 7일 이를 또 다시 철회한 바 있다. 『조선일보』, 1993. 9. 1. 9. 7.

30) 『중앙일보』 1992. 9. 9.

했을뿐이었다. 이어서 제 2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북한과 IAEA 대표단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양에서 특별핵사찰 수용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나 북한은 종래의 IAEA 공정성 문제만을 거론하므로써 특별사찰 수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남북고위급 대표접촉 및 특사교환을 제안하는 등 남북대화 재개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²⁹⁾ 그러나, 북한측은 남한정부의 대북제의를 수락했다가 다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의 무성의와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 2차 회담에서 합의한 바 남북대화과 IAEA 안전협상이 진전이 있을때까지 미·북 3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³⁰⁾

결국, 북한 핵문제는 한국, 미국, IAEA의 갖은 노력과 수 차례에 걸친 대북한협상에도 불구하고 원점을 맴돈 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장 큰 관건인 특별핵사찰의 실시가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그동안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 해서 핵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핵개발의 가능성만을 증가시키고 있다.

III. 北韓의 核武器開發狀況 評價

본 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능력과 의도를 평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과연 핵무기개발에 충분한 정도의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아직 개발하지 않았다면 언제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인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기가

29) 한국정부는 93년 5월 20일부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고위급 대표접촉을 제의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5월 26일부로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의하고는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일보』, 6. 27 일자 참조. 우리 정부는 이어서 8월 4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9월 1일 다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해놓고는 9월 7일 이를 또 다시 철회한 바 있다. 『조선일보』, 1993. 9. 1. 9. 7.

30) 『중앙일보』 1992. 9. 9.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온갖 장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핵무기개발을 강행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다.

1. 核武器開發狀況 評價의 基準

어떤 국가의 핵무기개발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가지 변수, 즉,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요소를 고려한 균형 있는 평가가 요구된다. 핵무기개발상황 또는 핵무기확산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이와같은 두 가지 요소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핵무기확산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 또는 이론들은 크게 두가지로 대분하여 1) 기술적 접근방법과 2) 동기적 접근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³¹⁾ 두 가지 접근 방법은 상호대립적이기보다는 절충적 보완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바,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서 두 가지 요건들--기술 경제적 능력과 정책적인 동기유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첫째 조건으로서 국가의 경제력 기술 수준과 관련하여, 어떤 국가가 높은 수준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조건은 핵확산동기와 관련되는 바,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요소보다 훨씬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두 조건은 핵무기확산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

31) 핵무기확산에 관한 학자들의 접근방법은 크게 둘--(1)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핵무기 확산, (2) 동기적 측면의 핵무기확산--로 대별할 수 있겠다. 핵확산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은 주로 196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이 핵확산의 동기적 측면을 보다 더 강조하는 이론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로는 Leonard Beaton, John Maddox, C. F. Barnaby, Ted Greenwood, Albert Wholstetter 등등이 있고,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로는 George Quester, Mason Willrich, Theodore B. Taylor, Lloyd Jensen, Richard K. Betts, Ashok Kapur 등이 있으며, 이러한 두가지 관점에 대한 비판 및 평가들로서는 Cynthia Canizzo, "A Critique of the Technical Approach," in William H. Kincaid and Christoph Bertram, (eds.),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1980s: Prospectives and Proposal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p.173-193; Charles W. Kegley, Jr.,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rrelates of Nuclear Proliferation: A Comparative Analysis," Korea and World Affairs, Vol.4, No.1 (Spring 1980), pp.5-37; William C. Potter, Nuclear Power and Nonproliferation: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Cambridge, Mass.: Oelgeschlager, Gunn & Hain, 1982); Stephen M. Meyer,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등등을 참고할 것.

는 결정은 사실 이러한 단순한 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국가들은 국내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여러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 고려한 다음에 핵무기개발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들은 사실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며 각 국가마다 독특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국가가 핵무기개발을 결정할지는 그 국가의 주어진 상황들의 심층분석을 통하여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핵개발에 관한 동기유발요인과 억제요소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경우 어떤 국가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개발을 강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제재조치 등의 강력한 억제요소들이 작용하면 어느 단계에서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멈추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실례로서 캐나다나 스웨덴의 경우 한동안 핵개발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핵무기개발로 인하여 받게될 손해(예를 들어, 국제사회로부터의 평화적 이미지 등등)가 핵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많았기 때문에 핵개발을 쉽게 포기했다. 남아공화국의 경우 상업용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이라는 목적 외에도 외교협상용으로서의 핵무기개발을 시도했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 때문에 결국은 핵개발포기를 선언했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비밀리에 상당한 정도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들 국가들은 핵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자체적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군사안보의 위협이 상존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력했던 것으로 인정되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제적 제재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핵개발에 관련한 이와같은 역사적 또는 경험적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국가의 핵무기개발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 외에도 동기 및 억제요인 그리고 그 국가가 그 당시 처해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등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종속변수로

서의 핵무기개발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작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분석은 잠재적 핵보유국의 현재 핵개발상황에 대해 보다 나은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겠고, 앞으로의 전망과 그에 대한 대책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련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北韓의 核開發 能力 評價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상이하게 평가를 내리곤 했다.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와같이 서로 엇갈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개발활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발표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들이 확실한 근거에 기초를 둔 것이기보다는 대부분 추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자료들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적대감과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보기관의 첩보 및 정보활동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증폭되어왔던 지난 2년동안 언론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정확하지 않는 자료들을 마치 신빙성 있는 자료인양 무분별하게 유용하여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기도 하였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 핵무기개발의 결정적인 물증으로서 제시했던 바, 영변의 30메가와트급 제 2원자로 가동설은 실제와는 다르게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고위급회담의 이동북 남한측 대변인은 작년 5월 28일 북한 핵개발의 가장 확고한 물증으로서 북한이 198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영변 제 2원자로의 용량을 30메가와트급이라고 단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여 15kg의 플루토늄(히로시마에 투하했던 20Kt급 원자탄 2개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 추정한 바 있다.³²⁾ 물론, 이와 같은 자료의 근거는 서방측 전문가

32) 『한국일보』, 1992. 5. 29.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되었던 20Kt급 핵폭탄으로서 TNT 2만톤의 폭발력을 의미한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은 플루토늄탄이고, 나카사키에 투하된 것은 우라늄탄이다. 핵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핵분열물질의 초임계질량(Critical Mass)이 되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핵무기제조 기술이나 핵폭탄디자인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플루토늄탄의 경우 초임계질량이 플루토늄 7-11kg이고, 우라늄탄의 경우 초임계질량이 15-25 kg이다.

들의 주장에 기초한 것일 것이다.³³⁾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결과 영변 제 2원자로는 여태까지 주장된 용량의 1/6 규모에 불과한 5메가와트급의 소형원자로인 것으로 밝혀졌다.³⁴⁾ 그래서, 1992년 9월 무렵 IAEA를 비롯한 상당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예상보다는 저급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당시 북한의 핵개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미국측 고위관료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도 뒷바침되어졌다.³⁵⁾

그래서, 한동안 북한 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1993년 초 북한이 IAEA가 요구하는 특별핵사찰을 거부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다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리라는 추측과 함께 이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되었다.³⁶⁾ 특별히, 미국 클린턴정부의 새 각료로 임명된 CIA국장 제임스 울시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일부 핵무기개발시설들을 은폐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정황증거들이 있으며, 1만 5천톤의 우라늄 등 이미 최소한 1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대해 수개월 전에 미국이 가졌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엇갈린 주장을 폈다.³⁷⁾ 그동안 미국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핵에너지 기술 및 핵무기 제조 방법에 관해서는 Potter, 1982, 앞의 책, 59-98쪽에 잘 정리되어 있고, 국문 저서로는 이 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핵 정책--국제정치에 있어서 핵의 역할』 (서울: 법문사, 1987), 266-277쪽을 참조 바람.

33) 영변에 위치한 제 2원자로의 용량을 30메가와트급으로 추정했었던 대표적 자료로서는 핵확산전문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Leonard S. Spector의 저서 및 논문을 예로 들 수 있다. Leonard S. Spector, *Nuclear Ambition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9-1990* (Boulder: Westview Press, 1990), p.123, pp.138-140; Leonard S. Spector and Jacqueline R. Smith, "North Korea: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Vol.21, No.2 (March 1991), p. 9. 이밖에도 Ben Sanders, "North Korea, South Africa Ready to Tell All?"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Vol.47, No.7 (September 1991), p.9; Lewis A. Dunn, "Cont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delphi Papers*, 263 (Winter 1991), p.10 등등이 있다.

34) 『한국일보』, 1992. 6. 12.

35)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국 대사는 1992년 9월 18일 북한의 핵문제에 관하여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사찰 결과 미국이 당초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해 가졌던 우려보다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갖게 됐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국일보』, 1992. 9. 19일자 참조.

36)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한 서방 또는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들에 대한 요약 정리에 대하여는 박찬표, 1993, 앞의 책, 22-26쪽을 참조 바람.

첩보 및 정보 수집에 있어서 여타 어떤 국가보다도 정확도를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북한의 핵개발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백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⁸⁾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 미디어의 갖가지 추측과 전문가들의 상반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북한의 핵개발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IAEA의 핵사찰 결과는 어떤 자료보다도 신빙성있는 자료로서 고려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7 차례의 사찰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기초자료로 하여 나름대로 신빙성있고 정확하게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통해서 밝혀진 바, 북한에는 현재 3개의 원자로를 가동 혹은 건설중에 있으며, 2개의 우라늄 정련시설, 그리고 방사화학실험실로 알려진 1기의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한동안 북한은 평산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라늄 정련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⁴⁰⁾ 우라늄 농축시설은 고도의 과학기술 수준과 엄청난 시설비 부담을 요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과학기술 수준을 판단해 볼 때, 앞으로도 농축시설을 통한 핵무기제조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37) 『한국일보』, 1992. 2. 25.

38)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측에서는 북한이 IAEA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미 국무부측 관리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은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양을 훨씬 밑도는 70-80g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핵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엇갈린 주장으로 인하여 미국 클린턴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에 있어서도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1993, 2. 25, 2. 27일자 참조.

39)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1991. 6) 결과로 밝혀진 사실과 사찰 이전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1991. 4. 15)한 내용들의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으나, 나중에 문제가 된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해서는 사찰이전의 공식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92. 4. 15과 『동아일보』, 92. 6. 11일자 비교 참조.

40) 우라늄 정련시설은 우라늄 원광으로부터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으로 우라늄 농축의 전 단계 과정이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시설과는 구분된다. 북한은 박천에 1982년부터 우라늄 정련공장을 가동하였으며, 92년도까지 350톤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평산에 우라늄 광석을 채굴 정련하기 위한 광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재한 정련시설은 90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연간 186톤의 정련된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992. 6. 11.

북한은 현재 3개의 원자로를 가동 혹은 건설중에 있으며, 41) 제 1원자로 1, 2기는 소련에서 1965년에 도입하여 영변에 설치된 4메가와트급 소형 연구용 원자로로서 1977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한 이래 1년에 한번정도 정기적인 사찰을 받고 있다. 이 원자로는 연구 실습용으로 소규모인데다 1977년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IAEA의 사찰을 받아왔기 때문에, 동 원자로로부터 핵무기제조용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영변 2호로 불리우는 제 3기 원자로 는 1979년 북한이 자체 기술로서 영변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1986년 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5메가와트급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 는 그동안 핵무기제조용으로 강하게 의심받아온 원자로로서, 천연우라늄을 연료로하고 흑연을 감속재로 쓰며 탄산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한다. 이 원자로 는 일반 원자로 보다 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원자로 는 민간 상업용보다는 주로 핵무기제조용으로 이용된다. 42)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바, 북한이 이 원자로 를 이용하여 플루토늄을 추출, 몇개의 핵폭탄을 제조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43) 나머지 2기의 원자로 는 제 3원자로로 칭하는 바 구룡강변에 50메가와트급과 태천에 200메가와트급 원자로가 건설중에 있는데, 각기 95년과 96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44) 이 2기의 원자로가 완전가동된다면,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원자로 들은 5메가와트급 영변 2호를 그대로 확대한 것으로 국제기술수준보다

41) IAEA의 사찰에 앞서 북한이 신고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5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 1 원자로 는 제 1, 2 실험용 원자로를 합한 것으로서 통상 제 1원자로라고 칭한다. 그래서, 북한은 제 1 원자로 2기, 제 2 원자로 1기, 제 3원자로 1기, 그리고 발전용 원자로 1기를 합하여 총 5기의 원자로를 가동 또는 건설중인 것으로 보고했다. 『한국일보』, 1992. 4. 15.

42) 이 원자로 는 50년대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어, 안전성 결함이 있으며 (실제 대형 사고를 일으킨 소련 체르노빌원전이 바로 이와같은 흑연 감속가스원자로이다), 플루토늄 분리 효율이 높아 일반 상업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주로 핵무기제조용으로 쓰인다. 『한국일보』, 1992. 6. 16.

43) 이 원자로의 용량을 30메가와트급으로 가정했을 때, 1회에 천연우라늄 75톤을 장착하여 정상운행하게되면 1년간 연소시킬 수 있고, 북한이 만약 이것을 핵무기 생산목적으로 연간 2회까지 급속운행하면 1년에 15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할 수 있다. 이 원자로로부터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될 경우 연간 약 11Kg의 플루토늄(20kt원자탄 2개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자로의 실제 용량은 5메가와트급 소형연구용 원자로이고, 재처리시설이 완전가동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가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민석, 1992, 앞의 글, 44-46쪽 참조.

44) 『동아일보』, 1992. 6. 11.

는 훨씬 낙후된 것으로서, 원자로 자체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의문시되고 있어 실제로 가동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북한은 1985년 소련과 도입계약을 맺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함남 신포에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북한은 1992년 4월 IAEA사찰에 앞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시설들을 신고하면서 1977이래 IAEA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고 있는 제 1 원자로를 포함하여 모든 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고 하였다.⁴⁵⁾ 따라서,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물의 내용이 사실대로 정확하기만 하다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 문제가 된 '방사화학실험실'을 핵시설물목록에 빠뜨리고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핵개발계획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사용되는 바, 첫째는 천연 우라늄을 순도 90% 이상 농축시킨 고농축우라늄을 핵연료를 사용하는 우라늄탄 제조방법이 있고, 둘째는 원자로를 가동하고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생성된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플루토늄탄 제조방법이 있다.⁴⁶⁾ 앞서 언급했는 바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폭탄을 제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비교적 저렴한 경비에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용이한 기술수준으로도 가능한 방법으로써 원자로를 가동한 후에 생기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얻는 방식으로 핵폭탄을 제조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방사화학실험실'로 알려진 재처리 시설의 가동 상태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영변에 소재한 '방사화학실험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결과 87년부터 건설에 착수해 현재 외부시설은 80% 내부설치는 40% 공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⁴⁷⁾ 방사능공간인 이른바 핫셀(Hot Cell)의 주입로는 이미 설치 완료됐고, 여기에서 90년에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

45)『한국일보』, 1992. 4. 15.

46) 핵무기제조 방법과 과정에 관하여는 Potter, 1982, 앞의 책, 59-98쪽; 김민석, 1992, 앞의 글, 27-42쪽; 이호재, 1987, 앞의 책, 266-277쪽 등등을 참조.

47)위의 글.

출했는 것으로 밝혀졌다. 48) 이 '방사화학실험실'의 공사가 완료되어 완전 가동될 경우 다량의 플로토늄을 분리 추출 핵무기제조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이 핵무기제조용 재처리시설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북한이 이 실험실의 건설을 계속할 경우 대규모 핵무기용 재처리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언급한대로, 일반적인 사례에 어긋나게 북한이 소규모 시험생산단계(파일럿 플랜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규모 재처리시설을 건설한 점은 핵무기제조용 재처리시설로의 전용을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의 여지를 가지게 된다. 49)

특히, 이 실험실이 만일 재처리시설로서 인정된다면, 북한은 분명히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50) 남한측은 이 실험실이 핵무기제조용 재처리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실험실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평화용 에너지 자립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 실험실의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1) 그러나, 이 실험실은 현재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건설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기술 수준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볼 때 대규모의 실용적인 재처리시설로 전환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래서, 1992년 말 4 차례의 IAEA 대북핵사찰 결과로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북한의 핵개발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술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낙후된 수준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로 나왔다. 52)

지금까지 IAEA의 핵사찰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핵개발능력을 평가해보았다. 한편, IAEA의 핵사찰은 그 자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들어, IAEA 핵사찰은 북한측이 작성한 서류에 근거하여 사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이 고의로 중요 핵시설물을

48)위의 글.

49)『중앙일보』, 1992. 6. 11.

50)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전문에서 남과 북은 공히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이 재처리 시설로 인정되면 이는 명백히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51)『한국일보』, 1992. 6. 19.

52)IAEA 이사회의 남한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시도하다가 기술과 재원한계로 중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고, IAEA 이사국들 사이에서 북한 핵개발문제가 더 이상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못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2. 6. 17.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사찰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IAEA 사찰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1989, 1990, 1991, 1992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핵물질(사용후핵연료)을 생산해냈고, 여기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⁵³⁾ 즉, 북한은 제 2의 재처리시설을 비밀리에 숨겨놓고, 원자로 가동후 생기는 사용후 핵연료를 은닉한 다음 제 2의 재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IAEA가 북한에 대해 특별핵사찰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AEA 사찰팀은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2 개의 미신고 시설물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특별핵사찰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군사시설이라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적인 핵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완전하게 중단시키는 것은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한편, 최근 북한의 IAEA의 특별사찰 거부 및 NPT 탈퇴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면서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제조용 플루토늄을 보유해 두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들이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다. 다만, 현재 IAEA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특별핵사찰이 실시되면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한 시기 및 추출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EA의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확실한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바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북한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그러한 핵물질을 가지고 몇 개의 핵폭탄을 제조 또는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증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오로지 IAEA의 특별핵사찰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53)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1990년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손상된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추출해냈다고 신고한 플루토늄 성분과 핵폐기물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핵분열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메리슘(AM)을 플루토늄으로 나눈 비율이 일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를 경우 핵폐기물의 생산시기와 양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온다. 북한의 경우 북한측이 신고한 플루토늄 샘플에 묻어온 아메리슘 비율을 검토한 결과 그 비율이 일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북한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핵물질을 생산해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아일보』, 1993. 2. 22; 『한국일보』, 1993. 4. 29.

다만, 북한은 분명히 상당한 정도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 핵무장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는 바, 제임스 울시 미 CIA 국장의 주장대로 북한은 이미 1기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축해 두고 있거나, 핵개발 완성단계에 돌입해 있을런지도 모른다. 어쨌든, 북한이 핵개발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술 개발 및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한다면 최소한 수 년(2-3년)내에는 핵폭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은 기술적인 문제 이상으로 핵개발 의도 및 동기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에 관련하여 어떠한 의혹들이 있으며, 북한이 과연 어떠한 동기에서 핵무기를 개발코자하는지 그 의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3. 北韓의 核武器開發 意圖--動機誘發要因 및 抑制要素

어떤 국가든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손익계산(cost-benefit analysis)을 하게 된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핵무기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인하여 입게될 손해가 핵무기개발을 통하여 얻게될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기술능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핵무기개발을 억제하는 요소보다 훨씬 더 강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5대 핵보유강대국의 역사적 경험을 검토해 보면 이들 5개국 공히 핵무기를 개발코자하는 동기가 그 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주변의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적 제약 조건 등등의 억제요건들을 극복하고도 남을만치 강력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⁵⁴⁾

물론, 현재의 핵무기확산과정은 기존 핵보유강대국이 그 당시 경험했던 역사적 상황과는 여러가지로 다르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수의 국가들(15-20개국)이 자체적인 첨단 핵기술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필요하다면

54)Potter, 1982, 앞의 책, 145-154쪽 참조.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오늘날 NPT체제라든지 IAEA의 규제를 비롯한 국제적인 규범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었고,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핵무기확산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어 쉽게 핵무기개발을 강행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남아공화국이 핵개발을 포기하게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러한 제재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할만한 강력한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개발을 강행한 것은 국가의 최대 이익인 군사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재조치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 확보를 통해서만이 국가의 최대 이익인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⁵⁾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서 강행할 것인 지의 여부는 과연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또는 군사적 제재조치를 감수할 만치 강력한 동기유발요인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기거나 촉진시키는 변수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동기유발 변수들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감수할만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로부터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의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계속해서 관철해 나아갈 것인지, 혹은 협상을 통해서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국가든 핵개발을 강행하게 되는 데는 다양한 동기유발요인들이 있다. 그러한 동기유발요인들은 크게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의 2가지로 분류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군사안보적 차원과 외교 정치적인 목적의 2가지 동기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겠고, 국내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목적과 국내정치적 목적이라는 2가지 동기요인들이 일반적인 핵확산동기요인으로서 고려된다.⁵⁶⁾ 다음에서 위의 동기요인들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여 북

55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공히 지역분쟁의 와중에 있었고 지역안보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동기들 중에서 특히 군사 안보적인 목적에서 핵무기개발을 강행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용, "제 3세계의 핵문제," 『국방논집』 제 17호(1992 봄), 76-84쪽 참조.

한이 왜 핵무기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이와같은 다양한 동기요소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어떤 변수가 북한의 핵개발에 가장 결정적인 작용했는지를 검토해본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 및 동기에 대해서 전문가 또는 학자들간에 다양하면서도 때로 상반된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요소들은 대체로 3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자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군사안보적 동기가 북한 핵개발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NPT탈퇴성명 전문에서 밝혔는 바, NPT탈퇴 이유로서 남한과 미국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통해 북한에 핵공격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북한측의 미군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요구를 거부하고 있음으로써 북한이 부당하게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편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북한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사실 1953년 한국전쟁 당시 휴전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핵무기의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시작으로하여 수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에 전쟁재발시 핵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핵공격의 위협을 가해왔었다.⁵⁸⁾ 이후 미국은 실제로 남한내 미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두고 있었고, 남북한 관계가 긴장상태에 돌입할 때마다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서 선언었는 바, 이것이 북한측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핵공격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공산제국이 해체되었으며,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통일되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다. 여기에 남한 정부가 과거 북한의 동맹국인 러시아, 중국과 차례로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는 반면에 북한은 남한의 동맹국인 미국, 일본 등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56) 핵확산 동기 및 억제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Meyer, 1984, 앞의 책; Potter, 1982, 앞의 책, 145-154 참조.

57) 극동문제연구소 자료조사실, "북한, 핵확산방지조약 탈퇴성명(전문)," 『극동문제』, 통권 170호 (1993. 4), 144-147쪽 참조.

58) 송영선, 1992, 앞의 글, 39쪽.

아무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주변 상황에 불리해진 여건에서 북한은 체제붕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남한과 미국은 여전히 동맹국으로서의 결속을 보여주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방어목적의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최대규모의 병력과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실시되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북한측에게는 핵장비까지 동원된 북침공격훈련으로서 비추어졌을런지도 모른다. 어쨌든, 과거 동맹국인 소련, 중국과의 결속이 상당히 약화된 현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자들에게 핵무기개발은 자신의 군사안보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핵을 포함한 남한과의 군사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했었을 것이다. 특별히, 남한이 군비증강을 계속하게 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우위가 점차 감소될 전망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⁵⁹⁾ 북한의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핵무기는 적은 비용으로 남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⁶⁰⁾ 무엇보다도,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된 사건과 걸프전쟁에서 발현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목격한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붕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며, 핵무기는 북한의 그러한 국가적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국가적 생존과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weapons of last resort)으로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둘째, 상당수의 학자들이 군사안보적 목적 이상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정치적 협상용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핵무기개발 의사를 고집함으로써 미국 또는 남한과의 정치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시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하여 남한과의 정치적 협

59) Spector 교수에 따르면, 남한이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증강을 계속하게 되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불리한 입장으로 변화할 것이며,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핵무기 개발을 시도 했을런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Spector and Smith, 앞의 글, 10쪽.

60) Spector and Smith, 1991, 앞의 글, p.10;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83 (Summer 1991), p. 84.

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주한 미군핵과 연계시켜 지연시킴으로서 한반도내 주한 미군 지상핵철수라든가 팀스프리트훈련의 중단 또는 남한내 비핵화선언 등등을 유도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핵무기개발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이 처해 있는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목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개발에 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한편 핵문제 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협상들에서 다소의 양보들을 얻어냈으며, 그러한 시도들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핵개발동기가 군사안보용이라기보다는 외교 협상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혹자는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불가능하며 단지 정치적인 선전 또는 단순한 허세에 불과하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61)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 IAEA의 핵사찰 결과 한동안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북한의 핵기술수준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낙후되었으며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이 단순한 허세인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었다. 한편, 북한은 영변 근처에 핵뇌관실험을 통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수 십개의 고풍발 구덩이를 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62) 이는 북한이 핵무기개발 사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서방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정치적인 협상에 이용코자 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들은 북한이 단순한 허세 이상으로 실질적인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는 바 핵개발옵션을 외교협상용으로 사

61)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도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Andrew Mack 교수를 들 수 있다. Mack 교수는 북한이 지하 핵시설을 하지 않은 점, 북한에는 핵기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 핵확산 금지협정(NPT)에 서명한 점, 핵무기를 보유해봤자 북한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점, 등등의 이유를 들어 군사 전략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 협상을 목적으로 핵카드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 일반적인 견해는 북한이 충분한 핵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핵개발의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Mack, 1991, 앞의 글, 92-93쪽.

62) 『세계일보』, 1989. 7. 6.

용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별히, IAEA의 사찰이 계속되면서 드러났는 바 북한의 핵기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상당량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리라는 주장들이 보다 신빙성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⁶³⁾ 한편, 북한은 50년대부터 소련의 드브나연구소 등지에 200여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을 파견, 훈련시켜 왔으며, 자체 기술개발계획에 의해 2,500명의 전문가들이 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⁴⁾ 또한, 5메가와트급 영변 2호는 물론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들을 외국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독립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기술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허세 이상으로 실질적인 핵무기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자신의 핵무기개발옵션을 부수적인 외교협상용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견해로서 생각된다.

세계, 북한의 핵개발은 국내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국내외 주변상황의 변화와 함께 현재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북한 지도자들간에 핵무기개발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고려되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동서 해빙무드가 확산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다. 중국과 소련의 군사 경제적인 지원이 감소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 또한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별히,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원유를 국제시세의 반 값으로 공급받고 있었으나 중국과 소련이 원유공급에 대하여 경화로 결제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에너지·수급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석유에너지는 북한의 대외 총수입

63) 예를들어, IAEA 주변에서는 북한이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추출했다고 하는 플루토늄 샘플을 정밀분석해본 결과 당초 북한이 추출했다고 신고한 수 Mg보다 훨씬 많은 양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플루토늄의 질로 봐서도 북한이 예상보다 고도의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설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한국일보』, 93. 2. 13.

64) 鄭魯官, “북한의 핵개발과 그 의미,” 『극동문제』, 총권 158호(1992년 4월호), 22쪽.

량의 제 1위를 차지하고 있을만치 비중이 크다. 외환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석유 대금의 지불은 북한 경제에 크나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흑자는 북한이 순수하게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의 자체 건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정련시설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핵에너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IAEA의 사찰 결과 북한의 핵시설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낙후되어 방사능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측은 평화용 핵에너지 개발계획에 대한 남한, 미국, 일본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는 바, 한동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순수한 목적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핵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제 2차 미·북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은 미국측에 경수로 지원을 요청했는 바 이는 북한이 평화용 핵에너지개발 계획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 진실로 순수한 평화용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 구태어 자신의 핵개발계획을 은폐시키려 기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순수하게 핵에너지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북한이 어찌서 NPT에 가입하고 나서 NPT의 의무사항인 IAEA 안전조치협정의 서명 기한을 무려 4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더욱기 북한은 수 차례에 걸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서도 단지 한 차례 실험용으로 소량(90 m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이 만일 순수한 평화적인 목적의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 IAEA 사찰을 성실히 받고 자신의 핵시설을 완전히 공개하므로써 오히려 서방세계로부터의 핵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의 핵시설에 대한 공개적인 사찰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북한이 순수하게 에너지 수급을 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결여된다.

이상으로 북한의 핵개발 동기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 바, 어떤 변수가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가에 대해서는 의

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국가든 외교정책 수행상 최상의 목표는 국가적 생존과 안정이다. 북한의 경우 소련, 중국을 비롯한 과거 동맹국들의 지원이 약화된 한편 서방세계와도 고립되어 체제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국가적 생존을 위한 군사 안보적 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1950년대 말 이래 30여년간에 걸쳐 엄청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자한 북한의 핵개발계획이 한가지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군사안보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핵무기개발의 추진과 동시에 핵개발옵션을 외교적 협상에도 이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북한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비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핵무기개발을 통해서 극복해 보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남한이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비 투자를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북한의 군사 전략적 우위는 점차적으로 감소되리라 예상되었다.⁶⁵⁾ 핵무기개발은 재래식무기에 대한 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플루토늄을 추출 플루토늄탄을 개발하게 될 경우 개발 소요 비용은 그들이 연간 국방비 가운데 1-2%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따라서, GNP 규모면에서 한국과 비교해 엄청난 열세의 상황에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비율을 국방비에 할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군사력 우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처하여 북한 지도층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핵무장옵션을 고려했었을 것이다.

65) 『국방백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남북한 군사력은 병력과 장비면에서 북한이 남한의 약 1.5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남북한 군사력 평가에 관한 자세한 비교는 『국방백서』, 1992-1993, 대한민국 국방부, 56-63쪽을 참조할 것. Mack교수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GNP의 20-25%를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고 남한은 약 5%만을 지출하고 있으나, 현재 남한의 국방비 총액은 북한의 2배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1990년대 말경에는 남한이 군사적으로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Mack, 1991, 앞의 글, 93-94쪽.

66) 정노관, 1992, 앞의 글, 22쪽.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 동기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 바, 북한이 핵 무기개발을 강행하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요소는 군사 안보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계획은 군사 안보적 목적 이외에도 외교적 협상 또는 경제적인 동기유발요소들이 상호 보완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자할 때,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자하는 동기가 있더라도 핵무기개발을 막는 제약조건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핵무기개발에 성공할 수 없다.⁶⁷⁾ 비록, 북한이 정치적, 군사적인 동기에서 핵무기를 개발코자하는 강한 동기가 있지만,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는 바, 북한이 아직은 충분한 기술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한동안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예상보다 저급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이를 어느 정도 입증한다. 그러나, 북한은 사정거리 1천 Km 이상의 노동 1호를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무기 기술에 관한 한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⁸⁾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북한이 충분한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이미 핵무기개발 완성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재처리 방법으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노동 1호의 개발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북한이 최소한 초보적인 단계의 핵무기개발을 성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당한 수준의 경제력도 핵무기개발의 필수 요건인데 북한은 현재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연구용 원자로로부터 시작하여 재처리시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도의 핵시설 하부구조(nuclear infrastructure)를 충분히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핵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순수하게 핵무기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67) 핵무기개발의 동기적 또는 억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Potter, 1982, 앞의 책, 131-145쪽; Meyer, 1984, 44-74쪽을 참조바람.

68) 1993년 9월 14일 미하원 외무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1991년 무렵에 사정거리 1,000-1,300 Km의 노동 1호로 불리는 스킵 D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사정거리 1,500-2,000Km의 노동 2호(스킵드 E)를 개발하고 있어 95년 무렵에는 신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1993. 9. 16일자 참조.

북한의 연간 국방비의 1-2%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핵무기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북한에게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핵무기개발을 통해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절감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남한과의 군사력의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어찌거나, 경제적인 비용은 북한의 핵개발에 그다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력이나 경제력은 북한의 핵개발에 큰 제약조건이 되지 못하며, 설령 다소의 제약이 되더라도 북한이 온 노력을 집중시킨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억제요소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IAEA나 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강력한 핵사찰 실시 요구 및 대응태세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반발, 또는 정치적, 경제적 제재조치일 것이다. NPT 탈퇴후 IAEA는 북한에 대해 특별핵사찰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의 1차 결의안이 이미 채택되었다. 북한이 끝내 특별핵사찰 실시를 거부할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적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이라크에게 했던 것과 같이 군사력에 의한 제재조치까지 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만일 핵무기개발을 강행하려면 미국의 군사적 제재조치와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실시된 IAEA의 제 7차 핵사찰에서 사찰팀이 확인했는 바, 북한이 지난 1월 이래 더 이상의 핵개발 활동을 추진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쨌든, IAEA의 핵사찰 및 미국의 군사적 제재조치의 가능성 등등은 향후 북한의 핵개발에 강력한 억제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핵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통한 서방국가들의 감시감독 및 제재조치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개발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조만간에 획득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적 생존 또는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여 어느 정도의 제재조치를 감수하

는 한이 있더라도 핵개발을 강행할 강력한 동기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들에게 핵무기개발은 국가적 생존이 달려 있는 최고의 정책목표로서 추진되고 있는 바, 자신의 안보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떠한 어려움 또는 제약조건이 있더라도 기필코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이다.

IV. 北韓 核問題의 展望과 對策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했는 바 북한 핵개발의 현황에 대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 인지를 조명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들을 제시해 본다. 특별히 북·미 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 핵문제의 근래 진행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련된 당사국들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책은 어떠한 것인지 등등의 문제들에 관점을 두어 분석해본다.

1. 北韓 核問題의 展望

북한이 NPT를 탈퇴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금주가 고비 또는 향후 2-3주가 고비라는 등의 전망이 미국측 또는 우리 정부 고위급 관료를 통해서 제시되었고, 그래서 며칠 내 모종의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정작 예상했던 기간이 지나도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못한 채 해결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7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게재한 글 속에서 “앞으로 1-2개월 내에 북한이 IAEA 사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UN의 제재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개월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UN 제재조치는 커녕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화

는 한이 있더라도 핵개발을 강행할 강력한 동기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들에게 핵무기개발은 국가적 생존이 달려 있는 최고의 정책목표로서 추진되고 있는 바, 자신의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떠한 어려움 또는 제약조건이 있더라도 기필코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이다.

IV. 北韓 核問題의 展望과 對策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했는 바 북한 핵개발의 현황에 대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조명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들을 제시해 본다. 특별히 북·미 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 핵문제의 근래 진행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련된 당사국들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책은 어떠한 것인지 등등의 문제들에 관점을 두어 분석해본다.

1. 北韓 核問題의 展望

북한이 NPT를 탈퇴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금주가 고비 또는 향후 2-3주가 고비라는 등의 전망이 미국측 또는 우리 정부 고위급 관료를 통해서 제시되었고, 그래서 며칠 내 모종의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정작 예상했던 기간이 지나도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못한 채 해결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7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게재한 글 속에서 “앞으로 1-2개월 내에 북한이 IAEA 사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UN의 제재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개월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UN 제재조치는 커녕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화

창구인 북-미 고위급회담마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⁶⁹⁾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은 남북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IAEA, UN 등의 국제기구들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등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차후 협상의 진행이라든가 해결책을 모색해 나아감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같이 다양한 변수와 행위자들이 관련된 한편 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화 창구가 미-북한 고위급회담임을 감안 우선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를 전망해본 다음, 그 밖에 IAEA와의 협상, 남북한간의 협상, UN의 제재조치 가능성, 일본, 중국의 반응 등등의 변수들을 차례로 고려 북한 핵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알아본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화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나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북한을 일단 NPT체제에 묶어두는데 성공한 것이 지금까지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룬 유일한 가시적 성과로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해소시키고 핵문제 해결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인 영변 핵단지 일대 2 곳의 미신고시설에 특별사찰의 실시와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문제로서 남북간 상호사찰의 실시라는 2가지 중요한 과제는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1992년 10월 북한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결정 이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모든 남북대화 및 접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후 남북대화마저 중단된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현재까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창구가 되어왔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1단계를 거쳐 2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지만 북한의 NPT 탈퇴 유보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69) 『조선일보』, 1993. 7. 22.

미국은 1단계 회담에서 NPT 탈퇴유보를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했는 바 내정불간섭 및 주권상호존중을 통해 북한체제를 묵시적으로 인정했으며,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북한이 요구했던 '핵무기불사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이는 당초 미국이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과 NPT 복귀 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면서 협상조차 거부했던 기존의 입장을 크게 양보한 것으로서 회담 결과를 놓고 미국의 양보와 북한의 일방적 승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로 나왔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범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기 때문에 우선 1단계 회담을 통해 북한을 NPT체제 내에 묶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었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1단계회담에서 북한을 일단 NPT 체제에 묶어 두고, 2단계회담에서 특별핵사찰요구를 비롯한 핵사찰 압력을 본격화한다는 2단계 전략을 세웠던 것 같다.⁷⁰⁾ 그러나,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2단계협상에 들어서서도 특별사찰의 실시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북한에게 경수로 교체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협상의제를 첨가시키는 등 북한에게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더 주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였다.⁷¹⁾

한편, 미국은 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3단계회담의 선행조건으로서 북한이 IAEA와 사찰에 관하여 협상할 것과 남북간 상호사찰의 실시를 위한 남북협상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얻어냈다. 이와같은 2단계 회담의 합의 사항에 따라 북한과 IAEA간에 핵사찰 재개를 위한 1차 협상이 평양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었다.⁷²⁾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IAEA와의 협상에서 IAEA 핵사찰의 불공정성만을 거론한 채 실질적 사찰 수용을 위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한편, 남북협상의 재개를 위하여 그동안 남한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남북대화

70) 박찬표, 1993, 앞의 글, 20쪽.

71) 예를들어, 워싱턴 소재 핵통제연구소의 폴 레벤탈 소장은 "핵사찰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은 비밀핵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이제 미국의 입장은 아주 어렵게 됐고 선택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1993. 7. 21, 22일자 참조.

72) 『동아일보』, 1991. 9. 1.

를 재개하자고 제의 했으나 북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다. 73)

북한은 단지 외견상으로만 IAEA와 남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를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의 명분축적용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0월 1일 IAEA 정기총회의 대북결의안이 채택되고 난 다음날인 10월 2일 남한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여태까지 거부해왔던 남북대화를 조건없이 일단 재개하자고 제의해왔다. 그래서,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차관급 실무대표접촉이 10월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74) 북한이 조건없는 남북대화재개를 제의한 배경에는 IAEA의 강경 대북결의안이 채택되고,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이 어려워진 상황에 처하여 궁여지책으로 남한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시간을 벌어보자는 계산인 듯하다. 이러한 태도로 임하는 북한측과의 남북대화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남북간 협상과 IAEA와의 협상이 지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한편 미국과 북한은 뉴욕에서 비밀 실무회담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75) 그러나, 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의 개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은 북한이 IAEA와 남한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3단계회담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남한과 IAEA와의 협상에 현재까지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3단계회담의 조건 요구시 NPT탈퇴유보마저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76)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보아 앞으로의 남북대화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북·미 3단계 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오든지간에 미국이나 북한에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또는 단계로서 생각된다. 미국

73) 그동안 남북간에는 24차례의 서한 및 전화통지문 공방이 오갔으며, 북한은 8월 31일 남북대화를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했다가 우리측이 이에 응하기로 결정하자 9월 7일에 다시 핵전쟁 연습 및 국제공조체제 유지의 중지 요구에 대한 남한측의 태도 표명을 요구하여 사실상 특사교환 실무접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 『조선일보』, 1993. 9. 7.; 『동아일보』, 1993. 10. 3.

74) 『동아일보』, 1993. 10. 6.

75) 『조선일보』, 1993. 9. 28.

76) 『중앙일보』, 1993. 9. 23.

의 입장에서 볼 때 3단계회담은 대북한 유엔 제재조치를 취하기 앞서 대내외적인 명분축적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해 오는 한편 대북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축적해왔다. 예를들어, 북미 2단계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인 북한과 IAEA간 핵사찰을 위한 협상과 남북간 핵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미국은 갈루치 국무차관보의 명의로 북한과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가질 수 없다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⁷⁷⁾ 미국이 이와같이 서한을 보낸 것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기록으로 분명히 해두자는 의미 이외에도 차후 유엔을 통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대한 명분을 축적해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성급하게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회담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간에 3단계 회담은 반드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필요성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북한에게 더욱더 절실할 것으로 추측된다.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비롯하여 외교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별히, 북한측 입장에서 볼 때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긴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현재 북한이 중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동맹체제가 무너진 상황에 처하여 있는 반면 남한의 동맹국인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북한에게 실질적 또는 심리적인 안보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93년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은 그러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켰고 북한이 NPT 탈퇴라는 초강경책을 쓰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겠다. 북한이 NPT탈퇴 유보조건으로서 미국에게 사회주의 체제 인정 및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요구한 것은 북한이 처해 있는 어려운 군사 안보상황을 개선코자 하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77) 『동아일보』, 1993. 9. 19.

북한은 또한 경제적인 목적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정책에 따라 대외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자립경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총수입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더우기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간 경협이라든가 일본과의 수교회담을 진전시키는 선결조치가 되기 때문에 더욱 긴박하게 요구되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서 설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창구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북한이 남북대화나 IAEA회담에 앞서 미국과의 회담만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과의 회담에서 핵문제의 해결방향이 잡혀질 때까지는 IAEA회담도 남북간 대화도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협상을 벌이기 보다는 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한 명분을 축적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이 북한과 IAEA와 남한과의 핵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여 개최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대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막후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이 없이 IAEA나 남한과의 협상은 아무런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만은 기필코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9월 21일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에게 IAEA 핵사찰 수용과 관련 “오로지 사찰 장비의 유지-교체를 위한 사찰만을 받아들일 것이다”고 통보하여 일반사찰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⁷⁸⁾ 한편, 9월 21일 부터 23일까지 개최된 IAEA 정기 이사회에서는 북한핵문제를 IAEA 총회의 추가의제로 상정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서 9월 28일

78)『조선일보』, 1993. 9. 22.

IAEA 정기총회에서 북한핵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⁷⁹⁾ 이어서 IAEA 정기총회는 폐막에 앞서 10월 1일 핵안전협정의 전면적이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⁸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IAEA의 정기총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핵사찰 전면거부 및 IAEA와의 2차협상마저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⁸¹⁾ IAEA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은 북한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는 강경제재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⁸²⁾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불행스럽게도 향후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은 당사자인 남북간의 협상을 통해서보다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미국은 상당한 인내를 갖고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제 미국의 인내도 한계에 달한 듯하다.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 차관보는 9월 13일 “만일 북한이 계속 미국과의 협상재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에 북한 핵문제를 공식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레스 에스핀 미국방장관도 9월 27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이 현재와 같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미 고위급회담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가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⁸³⁾ 어쨌든, 미국은 향후 몇 주내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핵협상을 계속하든가 아니면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 모종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로 가기까지는 아직은 시기 상조로서 예상되며,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든간에 유엔의 제재조치를 취하기 앞서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로서 생각된

79) 『조선일보』, 1993. 9. 29.

80) 『동아일보』, 1993. 10. 3.

81) 『조선일보』, 1993. 9. 29.

82)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9월 25일 북한핵문제와 관련, “독일등 서방 국가들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미국도 강경론이 우세해지는 등 앞으로 2-3주일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3. 9. 26.

83) 『조선일보』, 1993. 9. 14, 29.

다.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핵문제를 계속 지연시키게 될 경우 미국은 유엔을 통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 제재조치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앞서서 일단 제재조치의 가부를 결정하기까지 아직 취해야 할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우선, 유엔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 남북간 무력전쟁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게 될 남한 정부가 현재 유엔 제재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이 일단 남북대화를 재개하기로 제의한 이상 한동안 남북대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아직 북한-IAEA와의 협상도 남아 있다.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당장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⁸⁴⁾ 따라서, 유엔 제재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아직도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은 상당부분 미·북한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어떻게 전개될 지의 여부에 달려 있겠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핵문제의 결론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겠다. 현재로서 북한의 기본 전략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핵개발만큼은 기필코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IAEA, 미국, 남한 정부의 대북한 제재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하여 북한도 이제는 가부간에 자신의 태도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입장에 처해 있다. 북한으로서는 특별사찰을 수용할 경우 핵카드의 효용성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특별사찰 수용에 관한 협상시한을 계속 늦추면서 핵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UN 안보리나 미국의 제재조치가 발동될 때까지 자신의 외교적인 목적을 최대한 관철하고자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임박해지면 북한은 NPT탈퇴 유보를 철회할런지도 모르겠다. 북한은 NPT탈퇴를 유보한 상태이므로 다시 NPT탈퇴를

84)『동아일보』, 1993. 9. 14.

선언하게 되면 지난 번처럼 협상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3개월의 유보 기간 없이 곧바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⁸⁵⁾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처음부터 군사적 무력 제재조치로 시작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제재조치로부터 시작되는 제재조치가 군사적인 제재조치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최소한 수 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남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견딜 수 있는 마지막까지 견뎌본 다음 협상에 응해도 늦지 않으리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도 북한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핵개발을 강행할 것이다. 제재조치가 시작되기까지 북한은 최소한 핵개발의 거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실제로 수기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게 될 런지도 모른다.

2. 韓國政府의 立場과 對應策

가. 韓國政府의 立場

이제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는 그것 자체만으로 분리해서 고려될 수 없으며, 우리의 대북한정책의 기본전제와 단계적 궁극적 목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관련국과의 관계 등등의 복합적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동적인 분석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대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하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영향력의 범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북한 핵문제에 관련하여 IAEA와 유엔 안보리 등의 국제기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한편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영향력과 역할을 그 비중에 따라서 살펴보

85) 박찬표, 1993, 앞의 글, 30쪽.

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⁸⁶⁾ 첫째, 북·미 고위급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대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며 회담의 당사국들인 북한과 미국이 결국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특별히, 회담의 결과 또는 성사 여부는 상당부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관점에서 북한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서 고려된다. 둘째, IAEA와 한국의 대북한 협상은 북·미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다소의 중요성을 가지나 북한이 한국 또는 IAEA를 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으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양국 사이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북·미 고위급회담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북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러시아와 일본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되어 있고 그 역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현재로서는 기대하는 바 보다 다소 제한적인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익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한 핵문제를 조정해 나아가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우선 단계적이고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대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정책 노선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 방향에 의거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미 국제문제로 비화된 북한 핵문제의 성격상 우리 정부의 독자노선은 이제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해결책도 못된다. 따라서, 정부의 핵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과의 관계, IAEA 또는 유엔 안보리 등등 국제기구들을 통한 제재조치 가능성, 대북한 제재조치에 따른 남북간 무력분쟁의 가능성 등등의

86) 전성훈, 1993, 앞의 글, 17쪽.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 판단에 기초를 두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재개된 남북대화와 조만간에 개최될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 대비하여, 그리고 북한측이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들--예를들어, 주한 미군기지의 사찰,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적 중지, 미국의 핵 공격위협 중지 등등--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중단기적인 행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조명된다.

나. 中短期 對策

(1) 南北對話의 持續 必要性

우리 정부의 당면한 현안은 남북대화의 진행이다. 향후 북한 핵문제의 향방은 북·미 3단계회담의 성패에 달려 있겠으나, 미국이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에게 IAEA와 남한과의 협상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요구했는 바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북간 협상은 북한측이 남한 정부를 협상의 당사자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단지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의 명분 축적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협상 그 자체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남북한은 1993년 1월 이래 8개월간이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대화의 단절로 인하여 남북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 사항으로서 북한에게 상호사찰의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일단 시작된 남북간 대화가 또 다시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상호사찰의 수용 조건으로서 주한 미군기지의 사찰,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적인 중지, 주한 미

군 철수 등등을 요구해 왔었는 바 이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우리 정부의 장단기적 행정책과 관련하여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韓美 共助體制의 維持 必要性

현재의 상황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대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 공조체제, 특별히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견지해야 한다. 일부 학자 또는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노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만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대북한 핵문제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한 공조체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우리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관련국들의 입장을 무시할 경우 자칫 관련국들로 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때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한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면서 대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남한 정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제한시켰다. 특별히, 미국은 북한이 NPT를 탈퇴한 직후 당사자인 남한정부를 배제한 채 북경에서 북한과 비밀회담을 계속함으로써 핵문제에 관한 남한 정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제한시켰었다.⁸⁷⁾ 그러나, 미국은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며, 수차례에 걸쳐 대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미 공조체제의 견고함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미국은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간 대화 및 협상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내세웠는 바 이는 미국이 대북한 핵문제에서 다소 소외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조치로서 인정된다.

87)미국과 북한은 지금까지 29차례나 북경에서 참사관급회담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태까지 미국은 사절에 우리 정부에게 회담개최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사후 회담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공개하거나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3. 3. 19.

따라서, 미국과 한국 정부간에는 대북한 협상의 방식이라든지 협상의제를 놓고 때때로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양 정부 공히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하여야 한다는 방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어쨌든, 북한과의 협상을 비롯한 대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는 주변국가들의 입장을 고려 이들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당사국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협조 속에서 남북대화과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팀스피리트 訓練의 中止 檢討

정부는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하면서, 탈퇴철회조건의 하나로 팀스프리트 훈련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비록,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팀훈련이 공격목적이 아닌 방어목적의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측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수 마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합동훈련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팀스프리트 훈련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과 함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1992년 팀스프리트 훈련의 중지는 북한이 남북대화나 핵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조를 보여준데 대한 댓가로서 취해졌지만, 어쨌든 한동안 남북대화나 IAEA의 핵사찰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는 어느 때보다도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1993년 팀스프리트 훈련이 실시되면서 북한은 남북대화는 물론 핵사찰까지 거부하였으며, NPT를 탈퇴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므로써 이제까지 남북한 협상이나 핵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을 일시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결국, 팀스프리트 훈련이 군사적으로 북한의 남침야욕을 억제하는 데 다소의 효과를 가져왔을 망정, 남북대화를 후퇴시키는 등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⁸⁸⁾

따라서, 정부는 팀스프리트 훈련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 북한에 의한 남침도발의 우려가 없는 한 핵문제 또는 남북대화의 원만한 진전을 위하여 팀스프리트 훈련의 영구적인 중지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팀스프리트 훈련의 중지 결정에 앞서서 북한 측으로부터 이에 대응할만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이의 일괄적인 타결을 꾀하는 방향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팀스프리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팀스프리트 훈련이 방어목적임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북한측의 의심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서 팀스프리트 훈련에 북한 측 시찰단의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어쨌든, 한국 정부는 미국측과 합의하여 팀스프리트 훈련을 중지시키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駐韓美軍基地 査察과 核武器 先制不使用 宣言의 檢討

한국 정부는 북한측이 NPT탈퇴 철회 또는 특별핵사찰의 수용조건으로서 제시했는 바 주한 미군기지 사찰과 핵무기 불사용 요구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적극 수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한 미군기지 사찰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수용할 의사를 비춰왔으며, 한국정부와 미국이 이미 합의했는 바 IAEA를 사찰팀으로 하여 주한 미군기지를 포함한 남북한 군사기지에 대한 상호사찰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사찰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북한측이 협상을 통해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할 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⁸⁹⁾ 어쨌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상호 합의하여 북한측이 의심하고 있는 바를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겠다.

88)미 아시아 협회,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관한 제언," 『극동문제』, 통권 17호 (1993. 4.), 73-74쪽.

89)주한 미군기지 사찰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성훈, 1993, 앞의 글, 29-32쪽 참조.

한편, 미국은 이미 북·미 1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NPT 유보조건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여 북한이 요구했던 '핵무기 불사용'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약속한 것은 비핵국가에 대한 미국의 기존 핵정책인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을 재확인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북한이 요구하는 핵무기의 무조건적 불사용 요구와는 엄격히 구분된다.⁹⁰⁾ 차제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상대방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핵무기로 대응하는 “핵선제불사용”(no-first-use)선언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여 협상타결을 용이케 할 수 있겠다. “핵선제불사용선언”을 통해 남북한 공히 상대방으로부터의 핵공격 위협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에게 만족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⁹¹⁾

요컨대,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의 동맹관계가 이완된 상황에서 현재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군사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로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한에게 최대의 군사 안보적 위협인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위협은 주한 미군기지의 사찰,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핵선제불사용 선언 등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측이 제시한 IAEA 특별사찰과 남북간 상호사찰의 수용조건도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NPT탈퇴 철회, IAEA의 특별핵사찰 수용, 남북간 상호 핵사찰의 수용 등등의 문제는 이와같은 중단기적 대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90) 「조건부 적극적 안전보장」의 의미는 미국이 자국이나 자국의 동맹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거나 지원을 받는 비핵국에 의해 공격받지 않는 한 해당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에 입각한 것으로서, 북한의 경우 핵을 보유한 중국 및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게 된다.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전 성훈, 1993, 앞의 글, 23-25쪽 참조.

91) 위의 글, 25쪽.

다. 長期 對策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단시일내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체제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사찰의 수용을 통하여 자신의 핵개발 상황이 드러날 경우에 파생될 체제붕괴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특별히, 북한측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철수 문제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지 요구는 남한측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한국, IAEA는 대북한 제재조치와 같은 강경책과 경제협력과 대북한 관계개선이라는 유화책 사이에서 정책적 방향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은 북한대로 '주는 것'(핵투명성 보장)과 '받는 것'(대미·대일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사이의 적정수준을 놓고 장기간에 걸쳐 미국, 남한, IAEA와 끈질긴 협상의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 섣불리 특별핵사찰의 수용을 통해 자신의 핵개발 상황을 대외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아니라, 협상 시한을 끌면 끌수록 핵무기보유의 모호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어쨌든, 대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장기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도 당면 현안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對北 核政策의 一貫性 維持

우선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최근, 뉴스 미디어의 논평이나 전문가들의 비평에서 새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이 일관성 있는 정책노선이나 방향이 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과 여론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⁹²⁾ 새 정부의 초기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다분히 낙관적인 전망을 견지

92) 『조선일보』, 1993. 7. 23.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NPT탈퇴라는 철퇴를 얻어 맞고나서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변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정부는 한승주 외무장관을 미국과 일본으로 파견하여 북한 핵문제에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시켰으며, 4월 말경 통일관계 장관회의에서는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간 경제협력을 유보한다는 식의 신중하면서도 다소 강경한 정책노선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원, 외무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 담당관료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표면화 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뚜렷한 정책 노선이라든가 방향이 없이 때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는 한편 일각에서는 UN제재를 통한 강경책을 언급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 미디어를 통하여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⁹³⁾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수 개월이 지났다. 거듭된 시행착오를 통해 담당 관료들도 이제 북한 핵문제의 현실과 우리 행정책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경험하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히, 핵문제를 비롯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대미 의존도, 핵문제에 관련된 부서간의 의견 불일치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별히, 그동안 새 정부의 대북한 행정책이 일관된 노선과 방향이 없이 포류해온 점을 감안 대북한 행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2) 獨自的 核政策의 必要性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 단기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공조체제에 동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정부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행정책노선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한 핵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93)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1993. 7. 2 일자 참조.

실제로 북한측은 남한 정부를 협상의 당사자로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을 살펴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나름의 독자적인 정책이 없이 미국측 입장을 거의 맹목적으로 순응해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핵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여타 외교정책들을 결정할 때마다 대체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관행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래서, 북한측도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을 협상과 대화의 상대자로서 지목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미국은 때때로 우리의 이익과 입장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미국측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벌리기도 하였다. 대북한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가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외교정책상의 입장과 권위를 무시하고, 자국의 필요와 이익에만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왔다. 북한의 NPT탈퇴 직후 미국이 남한 정부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남한정부를 배제한 채 북경에서 북한 관료와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⁹⁴⁾

어쨌든, 정부는 현실 상황을 감안 단기적으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북한측에게 우리가 남북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분명히, 대북한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권위를 회복함이 없이는 남북간 대화와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충분한 결실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核-經協 連繫政策의 再考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핵정책의 부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핵-경협 연계정책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소위 핵-경협 연계정책을 고

94)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이 1993년 3월 17일 북경에서 참사관 접촉이 이루어진 사실만을 통고받았을뿐, 이틀이 지난 3월 19일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접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소위 핵-경협 연계정책을 고안한 것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한국일보』, 1993. 3. 18, 19일자 참조.

수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인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관한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교류를 연계시키는 정책이었다.⁹⁵⁾ 이와는 상반되게 서구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경제 교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그러한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었다.⁹⁶⁾ 사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통합이론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교류를 확장하고 그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군사 안보 및 정치적인 영역으로의 교류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서 통합의 목적을 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⁷⁾ 남북간 핵문제는 두 체제간 가장 이익이 상충되는 군사 안보의 영역으로서 쉽게 이익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반면,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는 남북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문제가 우리 민족의 생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자신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제에 미국이 의도했ند대로 경협과 핵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이 순순히 핵무장을 포기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만일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자 한다면 핵문제와 함께 남북간 경제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호 이익조차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

더우기,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협과 핵문제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권을 미국이나 일본이 선점하게 될 수도 있겠다. 과거 미국은 서구 유럽국가들의 대 공산권 경제교류를 통제하는 한편, 모순되게도 자국은 필요에 따라서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를 계속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수행했었다. 그래

95) 대공산권 교류 및 무역에 관한 미국과 유럽국가의 상반된 입장에 관하여는 Reinhard Rode, "East-West Trade and Detente," Reinhard Rode and Hanns-D. Jacobsen, (eds.), *Economic Warfare or Detent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5)를 참조 바람.

96)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동서무역에서의 대표적인 갈등은 1981년 11월에 소련과 유럽국가들간에 체결된 시베리아 천연가스공사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측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를 반대했었다. Friedermann Muller, "Energy," Rode and Jacobson, 앞의 책, 73-83쪽.

97) David Mitrany,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24, London (1948), pp. 350-360; Reinhard Rode, "East-West Trade and Detente," Rode and Jacobsen, 1985, 앞의 책, 4쪽.

서, 서구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대 공산권 수출규제정책이 미국의 상업적인 이익을 추진시키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해왔었다.⁹⁸⁾ 비슷한 예로서, 핵-경협 연계정책을 주장해왔던 미국이 모순되게도 한국정부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북한과 최근 수년간에 걸쳐 비밀리에 상당량의 무역을 계속 해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⁹⁹⁾ 그러므로, 비록 미국이 현재 남한정부로 하여금 핵문제를 경제교류문제와 연결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국면을 보이게 되면 북한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앞장서서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장단기적 경제적 이익과 남북대화의 지속을 위해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장기화될 전망이다. 북한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경제적 제재조치로 부터 군사적 제재조치에 이르는 강경책을 취할 것인지 조만간에 모종의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한 행정책은 강경책, 온건책, 또는 강경과 온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절충책 등으로 나뉠 수 있겠다. 대체로, 정부의 대북한 행정책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추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난 10월 5일 정부는 북한측의 제의에 응하여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였는 바, 이는 우리 정부가 강경 제재조치를 취하기 앞서 일단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다. 그러나, 8개월여만에 재개된 남북대화에서 북한

98) 서구 유럽국가들은 미국이 전략적인 이유로 서구 유럽국가들의 대공산권 무역을 규제하면서 자국은 아무런 규제 없이 공산권국가들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등의 이중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난해왔다. Peter Knirsch, "Summary of Economic Relations," Rode and Jacobson, 1985, 앞의 책, 86-98쪽.

99) 『한국일보』, 1992, 일자 미확인.

서, 서구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대 공산권 수출규제정책이 미국의 상업적인 이익을 추진시키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해왔었다.⁹⁸⁾ 비슷한 예로서, 핵-경협 연계정책을 주장해왔던 미국이 모순되게도 한국정부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북한과 최근 수년간에 걸쳐 비밀리에 상당량의 무역을 계속 해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⁹⁹⁾ 그러므로, 비록 미국이 현재 남한정부로 하여금 핵문제를 경제교류문제와 연결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국면을 보이게 되면 북한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앞장서서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장단기적 경제적 이익과 남북대화의 지속을 위해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장기화될 전망이다. 북한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경제적 제재조치로 부터 군사적 제재조치에 이르는 강경책을 취할 것인지 조만간에 모종의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한 행정책은 강경책, 온건책, 또는 강경과 온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절충책 등으로 나뉠 수 있겠다. 대체로, 정부의 대북한 행정책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추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난 10월 5일 정부는 북한측의 제의에 응하여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였는 바, 이는 우리 정부가 강경 제재조치를 취하기 앞서 일단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다. 그러나, 8개월여만에 재개된 남북대화에서 북한

98) 서구 유럽국가들은 미국이 전략적인 이유로 서구 유럽국가들의 대공산권 무역을 규제하면서 자국은 아무런 규제 없이 공산권국가들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등의 이중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난해왔다. Peter Knirsch, "Summary of Economic Relations," Rode and Jacobson, 1985, 앞의 책, 86-98쪽.

99) 『한국일보』, 1992, 일자 미확인.

측은 한국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인 '국제 공조체제의 포기'와 '핵전쟁연습 중지' 요구를 되풀이해서 주장하는 등 현재까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빈에서 IAEA와 북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 2차 핵협상도 무산되었다. 이와같이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강경책을 취하자는 입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국가적 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협상 카드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협상시한을 가급적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서 몇 기의 핵무기를 제조하여 비밀리에 비축해 두든가, 아니면 시간을 지연시킨 만큼 핵무기 보유 여부의 모호성(NCND 정책)을 증가시켜 이를 자신의 외교정책적인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어쨌거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간이 경과하는 만큼 북한이 핵무장했을 가능성 또는 확률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북한 강경제재조치는 북한 핵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간 무력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서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게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대북한 유화책은 핵문제 해결을 장기화시켜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는 데 요구되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협력과 같은 대북한 유화책을 통해 남북한 공히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을 한층 더 대외적으로 개방시킴으로써 남북간 신뢰구축 기반이 증대될 수 있는 등등의 여러가지 장점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크게 2가지로 조명된다. 정부는 대북한 강경책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과 무력전쟁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단기간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 아니면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다소 용인하면서 남북간 경제교류와 같은 유화책을 통해 북한을 개방화시켜 통일을 위한 기반을 중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 지 양자 중에 모종의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태까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대북한 핵정책의 결과가 고작 북한의 NPT탈퇴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자명하다. 어차피 우리는 핵무기의 위협속에 살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등의 핵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세계 최첨단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핵무장은 시간상의 문제이며, 일본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변 핵강국의 핵무기 위협속에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처지를 면치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다소 용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 대안으로 고려된다. 남북간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이 좀더 개방화됨에 따라 남북간 신뢰가 보다 확대됨으로써 북한 핵개발의 투명성이 오히려 증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한편, 우리의 당면 현안인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한다. 북한의 NPT 복귀, IAEA의 특별사찰, 남북간 상호사찰은 북한 핵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에 동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 나름의 독자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외교정책 노선은 미국 정부와의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겠고, 우리의 오랜 동맹국으로서의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우리의 대북한 안보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미국 주도의 대북한 핵정책의 결과가 고작 북한의 NPT 탈퇴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한 행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요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바 충분한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 나름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행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參考 文獻 >

< 國文 文獻 >

- 곽태환(1992),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4권, 제 1호, 161-194.
- 국방백서(1992-1993), 대한민국 국방부.
- 김민석, 김태우, 전병완(1991), “북한의 핵무기개발 실상과 저의,” 『통일문제연구』, 제 3권, 제 4호(겨울), 130-163.
- 김민석(1992), “북한의 핵무기 개발현황,” 『북한연구』 8, 26-50.
- 김태우(1991 a),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핵의 남북문제,” 『국방논집』 14호.
- 김태우(1991 b), “핵의 세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허와 실,” 『통일문제연구』, 통권 11호(여름), 187-223.
- 김태우(1992 b), “한반도 핵문제와 신세계질서,” 『북한연구』, 제 3권, 제 2호(여름), 52-89.
- 미국 아시아 협회(1993),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안 (1),” 『극동문제』, 통권 170호, 67-76.
- 박찬표(1993), “북한핵문제: 현황과 과제,” 『현안분석』, 제 63호(7월), 국회도서관.
- 송영선(1991),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미체결과 핵능력,” 『한국과 국제정치』, 제 7권, 제 1호, 127-159.
- 오관치(1993), “북한의 핵개발현황과 대응책,” 『통일문제연구』 제 5권 1호, 59-89.
- 이삼성(1993),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제 8회 국내학술회의(1993. 5. 12), 『북한핵문제: 전망과 과제』, 49-112.
- 이춘근, 권만학, 이정민(1992), “한반도의 핵문제”, 세종연구소, 『정세분석』, 통권 12호.

- 이은철(1991), "북한의 핵개발 잠재력 평가," 『북한학보』, 제 15집, 1-13.
- 이호재(1987), 『핵의 세계와 한국핵정책』, 법문사.
- 전성훈(1992), "남북 핵협상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창간호,
민족통일연구원.
- 전성훈(1993),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 분석 및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93-02), 1-48.
- 전 응(1992), "제 3세계의 핵문제," 『국방논집』, 통권 제 17호, 57-89.
- 정노관(1992), "북한의 핵개발과 그 의미," 『극동문제』, 통권 158호(4월호),
13-26.
- 통일원(1992), 『남북대화관련 국내주요신문기사집』, 1992. 12. 17.
- 하영선(1991),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나남.
- 함택영 외(1992),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英文 文獻>

- Cotton, James(1993),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Adelphi Papers, 275(March).
- Dunn, Lewis A. (1991), "Cont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delphi Papers, 263(Winter), 3-75.
- Kincade, William H. (1993), "Lessons of North Korean Crisis,"
Arms Control Today, Vol.23, No.6(July/August), 8-12.
- Knirsch, Peter(1985), "Summary of Economic Relations," Reinhard Rode
and Hanns-D. Jacobsen, (eds.), Economic Warfare or Detent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86-98.
- Mack, Andrew(1993),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33: 4(April), 339-359.

- Mack, Andrew(1991),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83(Summer), 87-104.
- Meyer, Stephen M.(1984),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trany, David.(1948),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24(London), 350-360.
- Potter, William C.(1982) , Nuclear Power and Nonproliferation: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Cambridge, Mass.: Oelgeschlager, Gunn & Hain.
- Rode, Reinhard(1985), "East-West Trade and Detante," Reinhard Rode and Hanns-D. Jacobsen, (eds.), Economic Warfare or Detent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16.
- Sanders, Ben(1991), "North Korea, South Africa Ready to Tell All?"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Vol.47, No.7(September), 8-23.
- Spector, Leonard S., and Smith, Jacqueline R.(1991), "North Korea: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Vol. 21, No.2.(March), 8-13.
- Spector, Leonard S.(1990), Nuclear Ambition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0.

< 附錄 1 >: 北韓核問題 關聯日誌

1974. 9. 16. IAEA 가입
1985. 12. 12. NPT 가입
1991. 7. 16. IAEA와 核安全協定 표준문안에 최종합의, 가서명
1991. 7. 30. 북한, 한반도 非核地帶化 공동성명 제안
1991. 8. 2. 외무부, 남북한 당사자간 핵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
1991. 9. 12. IAEA이사회, 對北韓 早期협정서명 촉구결의안
1991. 9. 27. 부시, 전술핵무기철폐 발표
1991. 11. 8. 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1. 11. 25. 북한 외교부 성명: 주한미군핵무기가 철폐되면 핵안전 협정에 서명, 주한미군핵무기와 북한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 실시 주장
1991. 12. 12-14.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 정부, 비핵화공동선언 제의, 남북상호사찰제의, 남북한, 핵문제협의 위한 대표 접촉을 12월에 판문점에서 갖기로 합의.
1991. 12. 18. 노대통령, 핵부재 선언
1991. 12. 21. 부시, 주한미군핵 철폐 사실상 확인
1991. 12. 23. 북한외교부 성명, 핵안전협정서명과 IAEA사찰 수용 천명
1991. 12. 31. 남북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2. 1. 7. 북한, 1월말 핵협정서명 천명
1992. 1. 7. 국방부, 92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발표
1992. 1. 30. 북한, 핵안전협정 서명
1992. 2. 18-21.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발효
1992. 2. 25. IAEA이사회, 특별사찰제도 확립
1992. 2. 25. 북한, 4월 핵안전협정비준, 6월초 IAEA핵사찰 수락 천명

1992. 3. 14. 남북한, 「핵통제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5월 20일까지 상호핵사찰규정안 마련, 6월 10일경
상호사찰 실시하기로 합의
1992. 3. 1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1차회의. 이후 9월 30일까지 8차
회의 핵통제공동위 전체회의 진행
1992. 5. 4. 북한, IAEA에 사찰대상이 될 핵시설·물질의 목록을 담은
「최초보고서」 제출
1992. 5. 11-16. IAEA사무총장 북한 방문
1992. 5. 25. IAEA 제 1차 임시사찰. 이후 7월 제 2차 임시사찰, 9월에
제 3차 임시사찰 진행
1992. 7. 10. IAEA와 보조약정 체결
1992. 9. 15-18. 제 8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 발효
1992. 10. 6. 국가안전기획부, 「남한조선노동당」 대규모 간첩단 사건
발표
1992. 10. 7-8. 제 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제 14차 한미군사위원회,
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재개 결정
1992. 10. 12. 북한 외교부 성명, 팀스피리트훈련재개 비난
1992. 10. 27. 북한 당정사회단체연석회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시
고위급회담 등 모든 남북대화 접촉 중단 결정
1992. 11. 제 4차 IAEA 임시사찰
1992. 12. 제 5차 IAEA 임시사찰
1993. 1. 제 6차 IAEA 임시사찰
1993. 2. 9. 한스블릭스 IAEA 사무총장, 북한에 특별사찰 요구
1993. 2. 25. IAEA, 북한에 대해 3월 25일까지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
하는 결의안 채택
1993. 3. 12. 북한, NPT탈퇴 선언

1993. 3. 17. 북-미, 북한의 NPT탈퇴후 최초로 북경에서 참사관 접촉
(제 30차 참사관 접촉). 이후 3월 19일과 5월 5일에 각각
제 31차, 제 32차 참사관 접촉
1993. 3. 27. 워싱턴 한미외무장관 회담
1993. 4. 1. IAEA, 북한을 핵안전협정 불이행국으로 규정, 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는 결의안 채택
1993. 4. 8.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1993. 5. 10. 북-미, 제 33차 참사관 접촉(북경)에서 고위급회담 개최
원칙에 합의
1993. 5. 11. 유엔 안보리, 대북한 결의안 (UN안보리 결의안 제 825호)
채택
1993. 5. 17.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한 제 1차 예비접촉(뉴욕)
1993. 5. 20. 황인성 총리, 핵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
1993. 5. 25. 북한, 부총리급 특사교환 위한 실무접촉 제의
1993. 6. 2. 북-미, 워싱턴에서 제 1차 고위급회담
1993. 6. 4. 북-미, 워싱턴에서 제 2차 고위급회담
1993. 6. 10. 북-미, 워싱턴에서 제 3차 고위급회담
1993. 6. 11. 북-미, 워싱턴에서 제 4차 고위급회담, 북-미 공동성명
발표, 북한 NPT 탈퇴유보 결정
1993. 6. 26. 북한, 강성산 총리 담화에서 남부간 특사교환 무산선언
1993. 7. 14-19. 북-미, 제네바에서 2단계 고위급회담, 「북-미 합의서」
발표
1993. 8. 4-11. 제 7차 IAEA 임시사찰
1993. 8. 4. 황인성 총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개 제의
1993. 8. 31. 북한, 남북대화를 위한 특사교환제의
1993. 9. 1-3. IAEA-북한, 핵사찰 재개를 위한 1차 협상
1993. 9. 6. 북한 강성산 총리 전화통지문, 남북대화를 위한
특사교환 실무접촉 거부

1993. 9. 15. 미국 갈루치 차관보, 제 35차 미-북한 참사관급 접촉에서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 없다”는 서한을 북한에 발송
1993. 9. 22. IAEA 이사회, 북한 핵문제를 IAEA총회(9. 27-10. 1)의
의제로 상정하는 결의안 채택
1993. 9. 27. 북한, 북한-IAEA 2차협상(10. 5-8 예정) 거부
1993. 9. 28. IAEA 총회, 북한 핵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승인
1993. 10. 1. IAEA 총회, 전면핵안전협정의 조속이행을 촉구하는
대북한 결의안 채택
1993. 10. 2. 북한 강성산 총리, 대남 전통문을 통해 남측이 제시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제약에 동의
1993. 10. 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차관급 실무대표접촉
1993. 10. 9-12. 미국,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게리 에커먼
미하원 아태소위원장 평양방문

* 자료 출처: 박찬표, “북한핵문제: 현황과 과제,” 『현안분석』, 제 63호,
국회도서관, 44-47쪽; 신문기사자료(1991-1993. 10.) 모음.

北韓 核問題의 構造와 性格

研究責任者：姜 泰 勳(檀國大學校)

목 차

〈要約文〉	
I. 문제제기	137
II.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138
1. 핵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과정	138
2.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利害	141
III. 북한의 핵기술 현황과 핵능력	144
1. 북한의 원자력 기초지식	145
2. 원자로	147
3. 우라늄 농축시설	149
4. 재처리시설	149
IV. 북한의 핵정책	151
1.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카드’	152
2.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미-북한 1단계 고위회담	153
3. 미-북한 2단계 고위회담과 경수로 기술 제공문제	156
V. 북한의 권력승계와 핵문제	158
1. 대내적인 통치수단으로서의 핵문제	158
2. 위기의식의 증폭과 후계체제 구축	160
VI.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국제적 대응	162
1.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협상	162
2. 미-북한간의 외교적 접촉	164
3. 한국의 대응	166
VII. 결 론	168
〈參考文獻〉	171

북한 핵문제의 구조와 성격

姜太勳(檀國大)

< 요약문 >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6차례의 임시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더 복잡한 양상마저 띠고 있는게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0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3년여에 걸쳐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특히 매시기별 핵문제와 관련한 '쟁점사항'이 바뀌면서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 북한, 미국의 대립구조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바로 이처럼 남북경협과 관계개선, 또한 미-북한·북한-일본간의 관계개선과 국교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핵문제의 성격과 구조를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핵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즉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어떤利害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 둘째, 북한의 핵기술 현황과 핵능력 셋째, 북한의 핵정책 넷째, 해결방안 제시라는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기조로는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핵무기의 寡占'은 그 첫째 조건에 해당한다. 사실 소련의 붕괴 이후 점증되어가는 미국의 단일한 영향력에 대항할 나라는 없다. 단지 통일된 유럽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아시아

에서 주도권을 확장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북한이 핵무기 하나를 보유했다고 해서 남침을 강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핵무기 확산의 방지'라는, 말하자면 전세계적인 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다시말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및 제3세계에서의 핵무장 확산을 가져와 이에 따른 자국의 정치·군사적인 안보이익이 붕괴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질서'의 한반도 적용을 가로막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다시말해 현상적으로 '핵 개발 가능성'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북한간의 대립은, 사실 신세계질서를 한반도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북한간의 대립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관철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馴致시켜 자신들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핵사찰 압력은 미국의 '동북아 사회주의 분열정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핵사찰 수락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나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등은, 핵문제가 사회주의권의 연대를 가로막는 좋은 '지렛대'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利害가 위와 같다고 할 때, 동시에 북한의利害 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고찰하는 것은, 당연히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핵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핵능력에 대한 판단이 전제될 때 만이, 북한이 정말 국제적인 고립을 무릅쓰고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혹은 과장된 선전'을 통해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핵능력을 종합할 때 첫째, 북한이 원자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둘째,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우라늄의 채광·정련능력을 갖고 있고 넷째,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이었

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적어도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기술로 당장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근거 없는 보도들이 모두 꼬리를 감춘 것도 핵문제의 초점이 조만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을 때,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왜 북한은 그동안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지연시켜왔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여기서 “북한이 핵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 특히 미국에 알림으로써 무언가를 이루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의 근거가 주어진다.

북한의 핵정책은 다시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정치적인 ‘핵카드’로서의 핵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은 핵안전협정 서명을 지연시키고 그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을 수용치 않으면서 자신들의 핵개발 기술에 대한 서방측의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켜 전술핵무기 철수, 1992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등 애초의 목적을 달성했다. 또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과 무력의 불사용, 상호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더욱이 북한은 이후의 지속적인 고위회담의 개최까지 보장받아 미-북한 관계를 일거에 ‘적대관계’에서 ‘정치적 관계’로 바꿔놓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 북한이 세계적으로 핵무기 개발의혹을 사면서도 그동안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미뤘었던 것은, 이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생존권’을 보장받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이 핵기술을 개발했던 초창기에는 그 목적이 핵무기 개발에 두어졌던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핵기술 개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미비, 자체기술의 한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오랜 기간의 실험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려는 애초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북한은 1991년들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던 석유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소련의 붕괴로 그동안 원조의 형태로 제공되던 석유를 달러를 구입하면서부터 극심한 전력난에 봉착했다. 북한의 전력난이 점점 심화되자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기술은 핵무기 개발과 함께 전력개발의 과제를 떠안

은 것 같다. 북한이 지난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국과의 2단계 고위회담에서 경수로 기술지원을 요구한 것은 핵을 전력개발에 이용하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은 이에 앞서 1992년 6월 10일 리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발전용 경수로기술 등의 기술협력을 제공한다면 북한은 재처리시설의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원자력발전을 위한 핵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최근 핵개발 가능성에 따른 위기의식의 고조는 통일문제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이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 지배층은 그동안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구호 아래 수령-당-대중의 일치단결을 통해 사회주의권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통일’이라는 구호의 확산을 통해 한반도통일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참아내야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 북한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한계에 다다르자 북한은 핵개발 가능성으로 국제적인 비난이 높아가는 것을 역이용, 인민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내적 통합성을 높여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고 김정일이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자 북한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입대를 자원했다는 보도는, 핵문제를 통한 위기의식의 고조가 어떻게 북한의 내적인 통치기재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미-북한 1단계 고위회담에서 한국의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북한에 대한 핵불사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어떻게 하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씻자는 자신들의利害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특히 미국은 핵무기의 과점체제를 인정해주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을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다시말해 그렇지 않아도 1995년이면 핵확산금지조약 자체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의 탈퇴에 이은 제3세계국가들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결국 미국의 핵무기 과점을 인정해주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정치적으로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이해가 서로 다

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현실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핵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理解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주창하면서 미국의 주장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가능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위기의식을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화하고 내적 통합성을 높이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 핵문의 해결방안은 바로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붕괴의 위기의식을 해소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체제위기의식은 첫째, 경제적 어려움 둘째, 흡수통합의 가능성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해 부분적으로 개혁·개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걸 어디까지나 외부로부터 가해지고 있는 압력을 피하자는 것일 뿐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발전 노선을 개혁·개방으로 바꿨다는 징조로 파악할 수는 없다. 더욱이 북한은 경제교류보다 합작사업을 더 희망하고 있어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에 따른 자본주의 사상의 도입과 결국 이것이 체제붕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합작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합작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실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이제 재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최근들어 한국에 의한 흡수통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연형묵 前 총리가 남북고위급회담의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이 흡수통합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발표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흡수통합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는 속에서 그들이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를 떨쳐 버리고 남북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신들의 목표가 최소한도로 충족되지 않는 한 핵문제는 계속 우려곡절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배층이 체제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협력을 통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핵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남북문제를 핵문제와 모두 연결시켜 스스로 자기발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I. 문제제기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6차례의 임시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는 과거와도 크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지난 6월 초 미-북한간의 1단계 고위 회담을 통해 유보됐지만, 이것으로 문제의 발단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문제가 본격 부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초래했던 두 곳의 미신고지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나아가 남북한 상호사찰문제 등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유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0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3년여에 걸쳐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특히 때시기별 핵문제와 관련한 '쟁점사항'이 바뀌면서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 북한, 미국의 대립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핵문제는 남북경협과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미-북한, 북한-일본간의 관계개선과 국교정상화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무엇보다 통일논의의 진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위치지워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핵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문제이다.

1)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이와 관련한 쟁점사항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사찰 수용 -> 핵재처리시설 폐기 여부 -> 상호핵사찰(사찰대상 선정 및 사찰방법과 관련한 대립) -> 두 곳의 미신고지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여부 -> 특별사찰과 상호사찰 등으로 바뀌어왔다.

핵문제가 3년여에 걸쳐 제기되고 있고 시기별로 쟁점사항이 변화한 만큼 이를 시간별 혹은 사건별로 구분해 검토·분석하는 것²⁾은 무의미할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핵문제의 본질³⁾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이해구조,⁴⁾ 그리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유의미성을 가질 것이다.

요컨대 핵문제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해결방안은 최근에 일어난 몇몇 현상, 이를테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특별사찰 결정이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통해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핵카드'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최소·최대치의 목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利害, 남북한의 역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II.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1. 핵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과정

북한은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했다. 그 후 미국의 군사첩보위성 KH-11이 북한의 원자로 건설을 포착, 이를 소련에 통보하자 소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그 결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⁵⁾

2)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한 이후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기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전개과정을 검토·분석한 것으로는 전성훈,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북한 핵문제:전망과 과제』, 민족통일연구원 제8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1993.5.12.)이 있다.

3)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 제8회 국내학술회의(1993.5.12.)에서 발표된 이삼성,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 『북한 핵문제:전망과 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필자는 핵문제의 본질을 미국의 '핵억지정책' 고수와 북한의 '비핵지대화론'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4)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利害와 관련해서는 이장춘, 「북한의 핵무기와 동북아세아의 안보」,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 (세종연구소, 1993), 167~203쪽 참조.; 곽태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1992 봄), 161~194쪽 참조.

핵문제가 3년여에 걸쳐 제기되고 있고 시기별로 쟁점사항이 변화한 만큼 이를 시간별 혹은 사건별로 구분해 검토·분석하는 것²⁾은 무의미할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핵문제의 본질³⁾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이해구조,⁴⁾ 그리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유의미성을 가질 것이다.

요컨대 핵문제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해결방안은 최근에 일어난 몇몇 현상, 이를테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특별사찰 결정이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통해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핵카드'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최소·최대치의 목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利害, 남북한의 역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II.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1. 핵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과정

북한은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했다. 그 후 미국의 군사첩보위성 KH-11이 북한의 원자로 건설을 포착, 이를 소련에 통보하자 소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그 결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⁵⁾

2)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한 이후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기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전개과정을 검토·분석한 것으로는 전성훈,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북한 핵문제:전망과 과제』, 민족통일연구원 제8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1993.5.12.)이 있다.

3)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 제8회 국내학술회의(1993.5.12.)에서 발표된 이삼성,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 『북한 핵문제:전망과 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필자는 핵문제의 본질을 미국의 '핵억지정책' 고수와 북한의 '비핵지대화론'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4)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利害와 관련해서는 이장춘, 「북한의 핵무기와 동북아세아의 안보」,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 (세종연구소, 1993), 167~203쪽 참조.; 곽태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1992 봄), 161~194쪽 참조.

핵확산금지조약 제3조 4항에 따르면 가입국가는 180일간의 교섭을 거쳐 18개월 안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난 1990년까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안전협정을 조기에 체결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북한에게 부정확한 핵안전협정 문서를 보내 서명하도록 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다.⁵⁾ 둘째, 1987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확한 문서를 다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후인 1988년 12월까지 북한은 핵안전협정 문서인 INFCIRC/153의 내용⁷⁾에 두 가지 추가조건을 제시하면서 서명을 지연시켰다. 다시말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거듭된 문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은 핵비보유국에 핵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⁸⁾과 △핵안전조치 가입 이후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있을 경우 협정의 유효성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정 체결을 지연시켰던 것이다.⁹⁾

결국 북한이 1988년 말까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5) 송영선, 「한반도의 핵」, 『신동아』, 1991년 6월호, 204쪽 참조. : The Arms Control Reporter (1991), 457쪽 참조.

6)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Summer 1991), 90쪽 참조.

7) 이는 국제원자력기구가 1971년 4월 20일에 발표한 97개조의 상세한 양식으로 구성됐다. 豊田利幸, 「NPT體制とは何か」, 『世界』, 1993년 5월호, 179쪽.

8) 미국은 북한의 핵불사용 요구에 대해 1978년 6월 12일 당시 사이런스 국무장관이 '대통령선언'으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guarantee)을 제시했다. 여기서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미국은 핵안전협정이나 그와 유사한 국제적 약속에 들어 있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핵보유국과 연합하여 미국이나 그 우방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arry A. Nic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5, 1991, 10쪽.

9) Andrew Mack, 앞의 논문, 91쪽.

이처럼 1988년말에 이미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10월에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의 핵문제가 지면위로 떠오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1990년 10월을 전후해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 10월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

첫째, 1990년 10월은 북한이 제2차 남북고위회담을 통해 기습적으로 '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시했던 시기이다. 여기서 북한이 주장했던 불가침선언 채택은 묵시적으로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그리고 팀스피리트훈련의 폐지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흘린 것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불가침선언 채택을 막기 위해, 더 정확하게는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를 개시하기 위해 3당간의 선언을 발표한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다.¹¹⁾ 북한의 입장에서 3당 선언은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국교 수립과 그에 따른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토대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은 물론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일본간의 국교정상화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유포한 사실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고 경제력 회복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유지·강화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¹²⁾

10) 물론 미국은 이에 앞서 1989년 6월 인준 청문회 당시, 솔로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제안한 '5개항의 선결조건' 가운데 '북한의 핵사찰'을 강조하면서 이를 북한-미국간 관계개선의 관건적인 문제로 취급, 북한에게 '고립'이나 '굴복'이냐의 선택을 강요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이라도 북한의 핵무기 제조가 1994~1995년에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대한 논란이 1990년 10월을 전후해서 본격화 된 점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의 유포를 통해 미국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1) 이삼성, 앞의 논문, 11쪽 참조.

12) 서인석,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통일의 필수조건」, 『월간 사회평론』, 1991년 11월호, 69~70쪽.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의 理解에 따라 급속히 국제문제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미국은 그동안 '외교적 공세'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군사적 제재론'까지 제기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강제하고 나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사찰을 관철시켰다.¹⁴⁾ 다시말해 핵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추적해보면 여기에는 미국의 利害가 직·간접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利害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이해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핵무기의 寡占'을 그 첫번째 이해로 거론할 수 있다.

지금 소련의 붕괴 이후 점증되어가는 미국의 단일한 영향력에 대항할 나라는 없다. 단지 통일된 유럽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장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북한이 핵무기 하나를 더 보유했다고 해서 남침을 강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집착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특별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또 다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핵무기 확산의 방지'라는, 말하자면 전세계적인 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⁵⁾ 요컨대 미국이 1991년 9월 18일 전세계적인 전술핵무기의 철수·폐지를 단행하면서까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봉쇄하려고 했던 것은 '寡占'을 위한 핵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이해를 전제할 때만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이 실질적으로 남한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핵개발 능

13)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한 나라도 미국이고 이 문제가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이다. 이장춘, 앞의 논문, 173쪽 참조.

14)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핵정책 전개과정은 서인석 「동북아 핵정치와 한반도」, 『월간중앙』, 1992년 1월호, 383~388쪽 참조.

15) 이삼성, 앞의 논문, 9쪽 참조.

력 포기를 추구해왔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1970년대 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던 점은, 미국이 핵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핵개발을 거부해왔던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¹⁶⁾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이는 일본에게도 핵무장을 촉진시킬 것이다”¹⁷⁾라고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및 제3세계에서의 핵무장 확산을 가져와 이에 따른 자국의 정치·군사적인 안보이익이 붕괴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둘째, 핵문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질서의 한반도 적용을 가로막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요컨대 현상적으로 ‘핵 개발 가능성’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북한간의 대립은, 신세계질서를 한반도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북한간의 대립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관철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馴致시켜 자신들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한축을 이루었던 소련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단일패권이 관철되는 ‘신세계질서’의 구축을 가능케 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전략을 과도한 군사력 배치를 기초로 한 전진배치전략에서 지역분쟁에 대처하는, 이른바 ‘긴급유연전략’으로 변화시켜 갔으며, 동북아전략 변화도 이에 발맞추어 진행됐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전략의 성패는 중국과 북한, 특히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지역적 강국으로 남아 있는 북한에 대한 처리문제와 직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북한이라는 동북아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는 미국의 신세계질서 구축이 동북아에 관철될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⁸⁾

16) Peter Hayes,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 in Korea』, (Lexington: D.C. Heath and Company 1991), 203쪽 참조.

17) Leonard S. Spector & Jacqueline R. Smith, 『North Korea: The Nuclear Nightmare ?』, 『Arms Control Today』, (March 1991), 8쪽.

바로 이런 점에서 소연방 붕괴 후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적 구도는, 자신의 정치·군사적 주도하에 일본에게 일정한 역할을 분담케 하고 중국과 북한을 자본주의 진영으로 이끌어내면서 궁극적으로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아시아지역의 여러 국가들을 아펙(APEC)이라는 지역적 통합체 아래 단일한 세력으로 묶어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¹⁸⁾

그러므로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 강제사찰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려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북한정책'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유폐시켰던 것은 북한-일본 관계개선을 저지시키고 아울러 북한을 고립화시키기 위한 것과 밀접히 관련돼 있었다. 미국이 압도적인 선전술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여론화하는 데 성공, 마침내 제한적인 군사공격의 정당성까지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¹⁹⁾

18) 미국은 1991년 9월 소련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직후 중국에게 5주일 안에 시장개방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겠다고 발표, 중국이라는 '최후의 목표물'을 향한 자본주의적 공세를 강화했다.

19)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현,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치군사질서의 변화와 미일의 패권전략」, 『동향과 전망』, (백산서당, 1992 봄), 68~82쪽 참조.

20)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피폭을 경험한 나라다. 이는 자연스럽게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핵무기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수교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핵무기에 대한 국민정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북한과의 수교를 진행시킬 수는 없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유폐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일본간의 관계개선 논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었다.

21) 이호재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지나치게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킨 것은 여러가지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첫째, 한국의 북방외교와 남북대화에 미국의 주도적 영향력 확대 둘째,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안보체제 유지를 위한 보다 많은 방위비 분담 요구를 위한 명분과 조건 조성 셋째, 무역상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미국 외교의 지렛대 강화 넷째,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핵 대권주의 유지와 강화라는 네가지 '이기적인 계산' 때문이라

셋째, 북한에 대한 핵사찰 압력은 미국의 '동북아 사회주의 분열정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²²⁾ 주지하다시피 소련의 붕괴는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유대를 가능케 했다. 1991년 10월 4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백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수행원을 이끌고 10일간 중국을 공식방문하고 경제협력 문제와 더불어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결속 강화를 다지고 돌아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³⁾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공세를 재정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이러한 필요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근거로 구체화됐다. 요컨대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빌미로 소련과 중국을 북한으로부터 일정 정도 떨어뜨려 놓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해 소련이 이미 오래전부터 핵사찰 수락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나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²⁴⁾

Ⅲ. 북한의 핵기술 현황과 핵능력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위와 같다고 할 때, 동시에 북한의 이해 또

고 주장하고 있다. 이호재, 「북한의 핵문제와 한국의 새로운 대응책 모색」, 외무통일위원회 공청회, 1993년 7월 12일, 23쪽.

22) 서인석, 「동북아 핵정치와 한반도」, 380쪽 참조.

23) 소련사태가 북한에게 미친 영향으로는 우선 북한의 '경계심'을 자극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조-소간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관계경색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북한으로 하여금 유일한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중국과 연대체제를 보다 강화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4) 물론 이같은 세 가지 분류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방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남북간의 핵무기 개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한쪽의 군사력의 현저한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어느 한쪽의 핵무장화가 동족간에 공멸을 자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핵문제는 무엇보다 민족문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북한에 대한 핵사찰 압력은 미국의 '동북아 사회주의 분열정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²²⁾ 주지하다시피 소련의 붕괴는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유대를 가능케 했다. 1991년 10월 4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백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수행원을 이끌고 10일간 중국을 공식방문하고 경제협력 문제와 더불어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결속 강화를 다지고 돌아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³⁾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공세를 재정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근거로 구체화됐다. 요컨대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빌미로 소련과 중국을 북한으로부터 일정 정도 떨어뜨려 놓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해 소련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핵사찰 수락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나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²⁴⁾

Ⅲ. 북한의 핵기술 현황과 핵능력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위와 같다고 할 때, 동시에 북한의 이해 또

고 주장하고 있다. 이호재, 「북한의 핵문제와 한국의 새로운 대응책 모색」, 외무통일위원회 공청회, 1993년 7월 12일, 23쪽.

22) 서인석, 「동북아 핵정치와 한반도」, 380쪽 참조.

23) 소련사태가 북한에게 미친 영향으로는 우선 북한의 '경계심'을 자극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조-소간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관계경색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북한으로 하여금 유일한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중국과 연대체제를 보다 강화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4) 물론 이같은 세 가지 분류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방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남북간의 핵무기 개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한쪽의 군사력의 현저한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어느 한쪽의 핵무장화가 동족간에 공멸을 자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핵문제는 무엇보다 민족문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핵능력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북한이 정말 국제적인 고립을 무릅쓰고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선전'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핵문제의 해결과정은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에 대한 사찰과 추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핵능력에 대한 판단은 핵문제 해결의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은, 북한의 핵개발을 주장하는 근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핵개발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판가름 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의 원자력 기초지식

영변에는 핵물리연구소, 방사능화학연구소, 핵전자연구소, 기초물리연구소를 포함한 핵관련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소에 설비나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공장들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원자력기술을 개발해온 결과에서 비롯됐다. 북한의 원자력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²⁵⁾

- 1956년 2월 28일 소련과 「연합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 체결.
- 1959년 9월 「조-소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 1962년 영변에 북한 원자력연구소 설립.

25) 이와 관련한 대표적 학자로는 Andrew Mack을 들 수 있다. Mack은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둘째,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왜 서방의 감시를 피해 지하에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며 셋째, 비핵지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에도 대치되며 넷째, 핵보유는 협상카드로 더 유용하고 다섯째,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무모한 공갈(desperate bluff)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ndrew Mack, 앞의 논문, 92~93쪽 참조.

26) 김민석, 김태우, 전병완, 「북한의 핵무기개발 실상과 저의」, 『통일문제 연구』, (통일원, 1991 겨울), 133쪽 참조. : 전병완, 김민석, 「북한의 핵무기개발 능력 및 전망」, 『국방논집』, (1991 제13호), 194~195쪽 참조.

- 1965년 6월 IRT-2000이라는 연구용 원자로를 소련으로부터 도입.
- 1973년 김일성 대학과 김책공과대학에 핵관련 학과 설치.
-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 가입.
- 1984년부터 1994년 완공을 목표로 제2원자로의 개량형과 유사한 제3원자로 건설(연간 18~50kg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
- 1985년 12월 25일 소련으로부터 가압수형원자로 4기 도입(1기당 44만KW) 협정 체결.
- 1987년 10월부터 3만KW급 원자로 가동.
- 1987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 1987년 6월부터 핵안전조치협정 체결교섭 시작.
- 1987년 제2원자로 완성(핵무기 1개분의 연간 7kg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
- 1990년 7월 소련은 설계단계에 들어간 가압수형원자로 건설계획에 대한 기술지원 중단.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원자력 기술개발과정을 통해 핵폭탄 개발의 3대 요소인 군수용원자로, 기폭장치, 재처리시설을 자체 개발해왔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은 원자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²⁷⁾.

그러나 이 정도의 지식과 기술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과의 비교를 위해 초기 한국의 원자력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56년 2월 3일 미국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정부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1959년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청 설치, 원자력연구소 설립
- 1962년 원자력 발전 조사위원회 설립
- 1968년 원자력 발전 진흥위원회 설립
- 1970년 고리 1호기 건설 추진.
- 1970년 6월 23일 피 웨스팅 하우스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일괄발

27) Leonard S. Spector & Jacqueline R. Smith, 앞의 논문, 9쪽.

주계약 체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원자력 개발을 바탕으로 1970년대 말에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다가 미국의 반대에 직면한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미국은 핵확산방지차원에서 한국에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소련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그동안 북한에게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핵무기 기술을 이전했다는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2. 원자로

영변에는 3기의 원자로가 존재하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965년에 완공된 제1원자로의 출력은 2MW로서 198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력을 증강시켜 현재는 8MW에 이르고 있다. IRT-DPRK라는 공식명칭을 받은 이 원자로의 정상상태에서 열출력 4MW를 유지하며, 20~80%의 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한다. 이 핵연료의 대부분은 소련에서 수입되며, 사용된 핵연료는 소련으로 회수된다. 이 제1원자로의 목적이 연구실습용이기 때문에 1977년 12월 14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INFCIRC/252)이 체결됐으며, 그 후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있다.²⁸⁾ 따라서 이 제1원자로의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제2원자로의 1987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자로의 가스냉각로로서 프랑스의 G-1형과 그 특성이 유사하다.²⁹⁾ G-1형 원자로의 1958년 프랑스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다가 폐기된 것으로, 플루토늄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지극히 비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자로의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며, 공기로 냉각한다.³⁰⁾ 북한은 1987년에 제2원자로가 자체적으로 건설되어 가동 중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했다.

28) IAEA 자료, 김민석, 김태우, 전병완, 앞의 논문, 133~134쪽 재인용.

29) 전병완, 김민석, 앞의 논문, 195~196쪽.

30) 송영선,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미체결과 핵능력」, 『한국과 국제정치』, (1991 봄·여름), 146쪽.

제3원자로는 1994년에 완공될 예정³¹⁾이라고 하나 정보가 부족해 다양한 추론을 낳고 있다. 다만 이 제3원자로도 프랑스의 G-2형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제1원자로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정기사찰을 받고 있는 만큼, 제2원자로와 제3원자로만이 문제시돼 왔다.³²⁾ 그동안 제2, 제3원자로가 핵무기 제조용이라고 추정됐던 근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³³⁾

첫째, 사찰을 받지 않는다.

둘째, 외국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건설됐고 또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핵연료로 우라늄 235의 비율이 0.711%인 천연우라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에 매장된 우라늄으로 충당할 수 있다.

넷째, 프랑스에서 1950년대 핵무기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폐기한 G-1, G-2형 원자로와 특성이 유사한데다, 이는 플루토늄 생산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지극히 비경제적이다.

다섯째, 송전시설이 없고 방공포로 무장돼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로 평가된다. 더욱이 북한에 매장된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북한이 핵보유에 근접해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가능케 한다. 즉 북한이 자체 매장된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원자로를 독자적으로 건설·운영하는 것은 원자로의 연료를 대외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다시말해 이른바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이라는 북한의 독특한 경제노선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지도 모른다.³⁴⁾ 더욱이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부터 송전선이나 배전선을 주로 땅에 묻어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송전시설이 없으므로 군사용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독특한 전력공

31) 「Nuclear Jitters」, Newsweek, 1991.4.29. 8쪽.

32) 북한의 각 원자로의 성능 및 諸元에 대해서는 김민석, 김태완, 전병완, 앞의 논문 135쪽 참조.

33) 전병완·김민석; 앞의 논문, 195~197쪽 참조.

34) 도요다 유시오키는 '독자성'과 '자립성'을 북한 핵정책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豊田利幸, 앞의 논문, 180~181쪽 참조.

급방식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방공포로 무장됐다는 사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제한적인 군사공격설'이 논위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나라건 자신들에 대한 군사공격설이 나돌고 있는 마당에 그냥 앉아서 당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제한적인 군사공격설보다 방공포로 무장된 것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선후를 따지는 것은 결국 달같이 먼저냐 답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원자로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사실만을 놓고 이를 곧바로 핵무기의 개발 내지 보유로 단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3. 우라늄 농축시설

북한의 흥남, 평산, 응기 등에는 양질의 우라늄이 상당량 매장돼 있다. 북한 원자력공업부 김철기 과학국장은 북한에 우라늄을 정련하여 정광을 추출하기 위한 시범공장이 세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³⁵⁾ 따라서 북한이 우라늄의 채광, 정련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여 가동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으로, 북한의 핵기술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를 건설하거나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농축시설은 필요치 않다. 오히려 북한의 원자로 특성상 천연우라늄을 정제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이 더 필요하다.

4. 재처리시설

재처리시설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처리시설은 핵무기의 핵심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재처리시설을 1989년 1월에 건설 중

35) 시사저널, 1991.10.31. 27쪽.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³⁶⁾

그동안 영변에 재처리시설이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³⁷⁾

첫째, 지상 10미터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프랑스 SPOT 위성이 1989년 9월에 찍은 사진과 1986년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그 사이 핵재처리시설 특유의 길쭉한 직사각형모양의 핵관련건물³⁸⁾이 들어섰다.

둘째,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체결을 미루는 것은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6차례의 임시사찰 결과 북한의 재처리시설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³⁹⁾ 따라서 이제 재처리시설도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북한이 첫째, 원자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둘째, 원자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우라늄의 채광, 정련능력을 갖고 있고 넷째,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앞서의 논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적어도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기술을 가지고 당장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⁴⁰⁾도 사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만들 것⁴¹⁾이라는 근거 없는 보도들이 모두 꼬리를 감춘 것⁴²⁾도 핵문

36) 한국일보, 1989.1.28.

37) 김민석·김태우·김병완, 앞의 논문, 139~140쪽 참조.

38) 그러나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 가짜 건물(dummy facilit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1990년 5월 9일자에서 밝혔다. Andrew Mack, 앞의 논문, 92쪽.

39) 6차례에 걸친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영변에 건설중인 재처리시설은 외부공정 80%, 내부공정 40%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 북한에 핵기술을 제공해온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자체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앞으로 1~2년 안에는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 원자력부의 크이 초프 국제관계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의 주요 부분인 핵기폭장치 개발에 실패한 점을 들어 몇년 안에 북한이 핵탄두를 개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한겨레신문, 93.9.23.

41) 게이츠(Robert Gates) 前 CIA 국장은 1992년 2월 25일 미 하원 외교위

제의 초점이 조만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을 때,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왜 북한은 그동안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지연시켜왔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 특히 미국에 알림으로써 무언가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논의의 근거가 주어진다.

IV. 북한의 핵정책

논의를 잠시 환원하여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놓고 미국에 제시했던 두 가지 추가조건을 환기해보자.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핵보유국은 핵비보유국에 핵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둘째, 핵안전조치 가입 이후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있을 경우 협정의 유효성을 보류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만한 사실은, 먼저 북한이 핵문제의 해결과정을 군사적

청문회에서 “북한이 몇달 내지 1~2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on Oberdorfer, 「key questions unanswered about N.K. N-program:Gates」, Washington Post, January 14, 1993.

42) 물론 게이츠에 이어 CIA 국장을 맡은 울시(James Woolsey)는 1993년 2월 24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어도 한개의 핵무기 생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이미 생산했을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USIA Wireless fil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March 2, 1993, 23쪽.). 그러나 울시의 이러한 평가는 미국내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며, 다만 1992년 2월 게이츠의 발언과 1993년 2월 울시의 발언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북한의 핵능력을 과장해 국방예산·정보기관 예산의 대폭 감축을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한겨레신문, 1993.2.26.). 실지로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전 백안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의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으나 그렇다고 울시 국장이 증언한 것처럼 핵무기 한 개를 만들 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한국일보, 1993.3.6.).

제의 초점이 조만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을 때,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왜 북한은 그동안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지연시켜왔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 특히 미국에 알림으로써 무언가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논의의 근거가 주어진다.

IV. 북한의 핵정책

논의를 잠시 환원하여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놓고 미국에 제시했던 두 가지 추가조건을 환기해보자.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핵보유국은 핵비보유국에 핵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둘째, 핵안전조치 가입 이후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있을 경우 협정의 유효성을 보류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만한 사실은, 먼저 북한이 핵문제의 해결과정을 군사적

청문회에서 “북한이 몇달 내지 1~2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on Oberdorfer, 「key questions unanswered about N.K. N-program:Gates」, Washington Post, January 14, 1993.

42) 물론 게이츠에 이어 CIA 국장을 맡은 울시(James Woolsey)는 1993년 2월 24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어도 한개의 핵무기 생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이미 생산했을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USIA Wireless fil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March 2, 1993, 23쪽.). 그러나 울시의 이러한 평가는 미국내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며, 다만 1992년 2월 게이츠의 발언과 1993년 2월 울시의 발언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북한의 핵능력을 과장해 국방예산·정보기관 예산의 대폭 감축을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한겨레신문, 1993.2.26.). 실지로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전 백안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의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으나 그렇다고 울시 국장이 증언한 것처럼 핵무기 한 개를 만들 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한국일보, 1993.3.6.).

인 제재론이 제기되는 상황까지 물고가면서도 첫째 조건이 부분적으로 충족되고 나서야 그동안 지연시켜왔던 핵안전협정 서명을 비로서 단행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둘째 조건을 적절히 이용, 그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선언을 통해 마침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카드'를 통해 어떤 정치적 성과를 이루려고 했는지, 즉 북한 핵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핵안전협정 서명,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미-북한 1단계 고위회담, 2단계 고위회담을 거치면서 명확히 드러났다.

1.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카드'

일찍이 북한은 1976년 '한국문제에 관한 도쿄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이후 북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를 거론하면서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요컨대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이를 철수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핵무기의 배치, 저장, 통과시킬 수 없는 비핵지대화를 실시하고자 주장했던 것이다.⁴³⁾

이런 상황에서 1991년 1월에 전격적으로 전개돼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걸프전은 '북한의 위기의식'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걸프전 기간에 10여년간이나 실시하지 않았던 공습훈련을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는 보도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북한이 느꼈을 위기의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⁴⁴⁾ 그러므로 북한이 걸프전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30일 외교부성명을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를 비핵지대화로 만드는 데 합의하고 이를 '공동선언'할 것 △미국·소련·중국 등 주변 핵무기 보유국들은 '공동선언'이 채택될 경우 이를 법으로 보장할 것 △아시아의 비핵국가들은 한반도의 비핵지

43) 한반도비핵지대화 혹은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는 김태우, 「핵의 세계와 한반도비핵화의 허와 실」,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1991 가을), 210~223쪽 참조.

44) 걸프전 기간동안 이루어진 북한의 공습훈련과 관련해서는 마이클 브린, 「평양의 방공 사이렌」, 『월간조선』, 1991년 4월호, 198~217쪽 참조.

대화를 지지하고 그 지위를 존중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항의 새로운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을 제기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이 제의한 한반도비핵지대화안이나 핵안전협정 조항에 추가로 요구한 두가지 중 하나인 '핵보유국은 핵비보유국에 핵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서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팀스피리트훈련 철폐는 표현방식만 다를 뿐 모두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북한은 자신들에게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축소되지 않는한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기회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왔던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이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 발표,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핵부재 선언, 1992년 1월 7일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결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요컨대 북한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미국의 군사위협이 최소화되는 것을 계기로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역설적으로 핵안전협정 서명을 지연시키고 그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을 수용치 않으면서 자신들의 핵개발 기술에 대한 서방측의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켜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등 애초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세계적으로 핵무기의 개발의혹을 사면서도 그동안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미뤄왔던 것은, 결국 이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생존권'을 보장받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미-북한 1단계 고위회담

한편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핵사찰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하자 지난 3월 12일 마침내 핵안전협정의 탈퇴⁴⁵⁾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언했다. 그 결과 북한의 탈퇴 이유가

45) 한겨레신문, 1991. 7. 31.

46) 1992년 11월 13일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은 당시 평양을 방문중이던 헤이즈(Peter Hayes)에게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면 국

국제사회의 일차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의 탈퇴 결정이 발표되자 이와 관련, 대다수 언론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기정사실화 했다. 요컨대 각 언론들은 어차피 특별사찰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바에야 아를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북한이 탈퇴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탈퇴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의 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방적인 특별사찰 결정이 탈퇴 이유라고 설명했다.⁴⁷⁾

북한은 지난해 1월 30일 핵안전협정에 가입한 후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사찰을 받아왔다. 그 결과 북한의 핵문제는 커다란 문제없이 해결과정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별어려움 없이 해결될 것 같던 북한의 핵문제는, 지난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가 특별사찰을 결정함에 따라 돌연 예기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별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결과와 미국의 '서방정보'에 의거해 결정됐다. 미국은 북한 핵폐기물이 신고 하지 않은 '두 시설'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도 지난해 말의 사찰과정에서 얻어진 플루토늄을 분석한 결과와 북한이 보고한 내용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the significant inconsistencies)가 존재한다는 결론⁴⁸⁾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은 특별사찰 결정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⁴⁹⁾하는 한편, 2월 22~26일까지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 이사회 직전에 최학근 원자력공업부장을 파견, 국제원자력기구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끝내 국제원자력기구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⁵⁰⁾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Peter Hayes, 『Nuclear Inspections in Korea: Rough Waters Ahead?』, (Berkeley, CA: Nautilus Pacific Research), November 1992, 1쪽.

47) 한겨레신문, 1993.3.13.

48)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에서 1990년에 한번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밝혔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에서 채취한 플루토늄 샘플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적어도 1989~1991년 세차례에 걸쳐 최소한 148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im Hyeh-won, 「Pyang agree on IAEA examination of N-samples」, Korea Herald, March, 6, 1993.

49)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1993.3.1. 참조.

50)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이사회에 북측대표로 참석한 김계관 순회대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특별사찰을 결정,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 부쳤다.

이와 관련,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특별사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미국이 제기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요컨대 특별사찰은, 북한이 신고한 핵추출물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직접 실험을 통해 밝힌 핵추출량과의 차이⁵¹⁾가 있던 차에 그렇기 때문에 핵폐기물처리장일 가능성이 높은 두 지역을 반드시 사찰해야 한다는 미국의 강한 주장을 국제원자력기구가 받아들여 결정됐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본질적으로 자신들에 가해지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반발'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적어도 북한은 탈퇴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설혹 자신들이 특별사찰을 수용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남북한 상호사찰, 인권문제, 미사일 수출 금지 등의 추가조건을 제시하면서 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 직접 교섭하지 않는 한 당장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나면 또 무엇을 요구할지 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핵사찰 수용으로 관계개선의 조처라는 '반대급부'를 기대해 온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재개되고 특별사찰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이 '북한 목조르기'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과의 직접협상만이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라는 카드를 사용했던 것이다.⁵²⁾

이러한 사실은 미-북한간의 1단계 고위회담을 통해 여실히 판명됐다. 우선 북한과 미국은 공동성명을 발표, △핵과 무력의 불사용 △상호자주권 존중 △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하겠다는 2개의 장소는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군사대상으로서 불일치점과 이 군사시설 사이에는 어떠한 과학적, 법률적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 1993. 2. 24.

51) 북한은 플루토늄 조성비가 폐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적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1975년 플루토늄추출의 기초실험을 할 때 생긴 용액을 해당 폐수탱크에 함께 넣었기 때문에 생겼던 차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1993. 3. 1.

52) 이삼성, 앞의 논문, 8쪽 참조.

내정불간섭 등을 합의했다. 더욱이 북한은 이후의 지속적인 고위회담의 개최까지 보장받아 미-북한 관계를 일거에 '적대관계'에서 '정치적 관계'로 바꿔 놓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미-북한관계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개선될 것인가는 앞으로 계속 열릴 고위회담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1차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라는 카드로 큰 성과를 거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1993년 1월 틱스피리트 훈련 재개 발표와 끝이은 특별사찰 결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집중됐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북한이 획득한 성과는 더욱 분명해진다.

3. 미-북한 2단계 고위회담과 경수로 기술 제공문제

북한이 핵기술을 개발했던 초창기에는 그 목적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두어졌던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특히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미군 핵항공모함이 동원되고,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전투폭격기들이 휴전선 상공을 비행하자 북한의 핵개발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곧 이어 1978년 남한이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의 자체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군사용 원자로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기술 개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미비, 자체기술의 한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장기간의 실험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북한은 1991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석유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소련의 붕괴로 그동안 원조의 형태로 제공되던 석유를 달러로 구입하면서부터 극심한 전력난에 봉착했다. 일본 등 외국자료를 의하면 북한

53) 북한의 주요에너지 수입원인 소련(소련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120만톤 가운데 절반을 차지)은, 그동안 자국으로부터 북한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50% 이상을 원조의 형태로 제공했으며, 나머지도 물물교환 방식인 바터제로 거래해왔다. 그런데 소련은 1991년 1월부터 북한과의 무역을 경화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원조 형태의 에너지 제공을 중단했다. 중국 또한 1990년 12월 당시 북한의 연형묵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무역결제방식을 경화 결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의 생산시설가동률이 전력부족 등의 이유로 5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⁵⁴⁾ 이밖에 김일성 주석은 1992년, 1993년의 신년사⁵⁵⁾를 통해 석탄생산의 증대를 강조, 간접적으로 북한이 겪고 있는 전력난의 심각성을 시인했다.

북한의 전력난이 점점 심화되자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기술은 핵무기 개발과 함께 전력개발의 과제를 떠안은 것 같다. 사실 핵무기 개발과 원자력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듯이 핵기술 또한 전력용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북한이 지난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국과의 2단계 고위회담에서 중수로 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로로 교체하는 기술을 요구한 것은, 핵을 전력개발에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수로는 중수보다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훨씬 떨어지고 열효율이 높아 전력개발에 더 적합하다.⁵⁶⁾

이에 앞서 1992년 6월 10일 리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발전용 경수로기술 등의 기술협력을 제공한다면 북한은 재처리시설의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⁵⁷⁾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무기 개발보다는 원자력발전을 위

서인석, 「김일성 신년사 분석」, 『월간 읍서버』, 1992년 2월호, 432~433쪽 참조.

54)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1회 국제학술토론회, 1991년 10월 28~29일, 3쪽.

55) 김일성은 1992년 신년사를 통해 “발전시설을 잘 정비 보강하고 만부하(滿負荷)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며 지금하고 있는 발전소 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그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새로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56) 중수로는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사용, 플루토늄 생산에 적합하고 비용이 많이드는 복잡한 농축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재처리시설을 통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적합한 원자로이다. 한국 정부가 1970년대 중반 중수로인 캐나다 칸두형 원자로를 도입하려다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경북 경주의 월성 2호기를 제외하고 한국의 원자로가 모두 경수로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7) 교토통신, 1992. 6. 10.

해 핵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앞으로 첫째, 경수로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어렵고 둘째, 북한에 농축시설이 없어 다른 나라에서 농축한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북한의 핵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북한에게 경수로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에 이은 제1단계 고위회담을 통해 달성하고,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발전용 핵기술의 이전을 제2단계 고위회담을 통해 약속받았던 것이다.

V. 북한의 권력승계와 핵문제

1. 대내적인 통치수단으로서의 핵문제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붕괴 이후 북한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들어서는 식량부족⁵⁸⁾으로 인해 폭동의 조짐까지 보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부족으로 암거래가 성행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⁵⁹⁾

사실 굳이 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북한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내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계획경제에 따른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김일성-김정일 승배를 위해 지난 30여년간 계속된 기념관과 구조물 건립은 가뜰이나 부족한 재화와 물자의 낭비를 가져와 북한 경제

58) 김일성은 1992년 신년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같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당면한 중요한 목표이다”라고 언급, 북한이 식량문제 뿐만 아니라 의복, 주택문제에서도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59) 이와 관련해서는 김용, 「북한, 뇌물이 말하는 공화국」, 『신동아』, 1992년 3월호, 394~405쪽 참조.

해 핵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앞으로 첫째, 경수로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어렵고 둘째, 북한에 농축시설이 없어 다른 나라에서 농축한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북한의 핵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북한에게 경수로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에 이은 제1단계 고위회담을 통해 달성하고,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발전용 핵기술의 이전을 제2단계 고위회담을 통해 약속받았던 것이다.

V. 북한의 권력승계와 핵문제

1. 대내적인 통치수단으로서의 핵문제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붕괴 이후 북한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들어서는 식량부족⁵⁸⁾으로 인해 폭동의 조짐까지 보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부족으로 암거래가 성행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⁵⁹⁾

사실 굳이 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북한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내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계획경제에 따른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김일성-김정일 승배를 위해 지난 30여년간 계속된 기념관과 구조물 건립은 가뜰이나 부족한 재화와 물자의 낭비를 가져와 북한 경제

58) 김일성은 1992년 신년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같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당면한 중요한 목표이다”라고 언급, 북한이 식량문제 뿐만 아니라 의복, 주택문제에서도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59) 이와 관련해서는 김용, 「북한, 뇌물이 말하는 공화국」, 『신동아』, 1992년 3월호, 394~405쪽 참조.

를 마이너스성장⁶⁰⁾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북한은 계기만 주어진다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 지배층은 주체사상을 더욱 강조하면서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부조리 현상을 은폐하거나 혹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주체사상을 수정하여 개혁·개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⁶¹⁾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에서 북한이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을 외쳐온 북한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은 바로 자신들의 경제건설노선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김일성의 모든 업적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또한 지난 20여년 이상 이러한 김일성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북한의 지배층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매번 똑같은 강도의 충격을 받다보면 나중에는 이를 일상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듯, 주체사상을 통한 사상교육 강화는 이미 십수년에 걸쳐 진행됐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북한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 사회주의를 여타의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⁶²⁾

사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통일문제'와 '우리

60) 지난 6월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국민총생산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가 1990년과 1991년 각각 3.7%, 5.2%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데 이어 지난해에는 성장감소폭이 7.6%로 더욱 커졌다(한겨레신문, 1993. 6. 8.). 최근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실상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1993. 3. 31 참조.

61)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양호민 외, 「북한체제의 변화」,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한반도통일의 현실과 전망』, (나남, 1992), 67~99 쪽 참조.

62) 1991년 5월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대화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논문을 발표. 처음으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대항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론을 정형화, 구체화했다.

식 사회주의'를 통치이데올로기로 이용한 것⁶³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말해 북한 지배층은 그동안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구호 아래 수령-당-대중의 일치 단결을 통해 사회주의권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하자는 이데올로기를 유포, 사회·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것이다.⁶⁴ 바로 여기서 최근 핵문제가 통일문제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이은 '통치이데올로기'로 사용되는 근거가 주어진다.

2) 위기의식의 증폭과 후계체제 구축

논의의 단순화를 무릅쓰다면, 핵문제는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고 남 북한 상호사찰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질 수 있다. 더욱이 몇달간 특별사찰을 지연시킨다고 해서 그 사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북한이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면서 핵문제를 끌고가는데는 분명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을 것이다.⁶⁵

특히 북한은 최근들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지연시키고 동시에 남한과의 대화를 외면, 미-북한 2단계 고위회담의 합의사항을 파기하면서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다. 2단계 고위회담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결국 제3단계 미-북한 고위회담이 성사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9월 27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63)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의 기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통일문제에 대해 물어보기만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1995년까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한결같이 '통일의 꽃' 임수경과 문익환 목사를 왜 감옥에 가뒀냐고 하는 것 등은, 통일문제가 어떻게 통치이데올로기로 사용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64) 이러한 사실은 첫째, 북한이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을 '물건의 빈곤'에서 찾기보다는, '공산주의 사상의 빈곤'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고 둘째, 모든 언론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해 사회주의를 신념화·도덕화함으로써 사상적인 배신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65)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이삼성, 앞의 논문, 18쪽 참조.

때,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분명 그냥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배태되는 위식의식이 북한의 내부적인 통합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통치이데올로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지난 3월 8일 김정일이 팀스피리트 야외기동훈련(3.9~18)에 대항하는 조치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자 북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입대를 자원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은 핵문제에 따른 위기의식의 고조가 권력승계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 2월 3대혁명소조발기 20주년행사⁶⁶⁾,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 8차대회⁶⁷⁾ 등 자신의 권력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사를 주도했다. 곧이어 김정일은 3월들어 자신의 명의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한 위기의식을 최고조로 불러일으킨 다음,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4월 9일 국방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7월 23일 6·25전쟁 참전 원로장성 99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⁶⁸⁾하는 한편, 처음으로 휴전일을 '전쟁승리기념일'로 제정하여 7월 27일에 대대적인 행사를 치루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그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조는, 결국 2월의 3대혁명소조발기 20주년 행사, 사로청 8차 대회 -> 4월 9일 김정일의 국방장관 취임 -> 7월 27일 '전쟁승리기념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굳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66)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3년 2월 12일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의 발의로 시작됐다. 그러나 1973년 9월 당 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의 수행 정형문제」가 토의된 것을 계기로 김정일이 주도했으며, 그 결과 이 운동의 전개는 김정일의 정치기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67) 사로청은 북한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로 만 14~30살까지의 청년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현재 맹원수는 3백8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사로청은 "혁명의 대를 이어갈 청년들의 전투적 조직체"로서 3대혁명소조운동과 함께 김정일의 주요한 권력기반이다.

68) 중앙일보, 1993. 7. 26.

다시말해 북한은 핵문제를 통해 체제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을 최대한 고조시킴으로써, 설혹 있을지도 모를 권력승계에 대한 반발을 애초부터 무마시켜 김정일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할 때 핵문제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최종목표는 명확해진다. 요컨대 북한은 단기적으로 핵문제에 따른 위기의식을 통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권력승계'와 이의 '대내외적인 인정'은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 얻으려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북한이 원하는 최대치와 최소치,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정치적 목표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VI.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국제적 대응

핵문제는 민족적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한 대응은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돼왔다. 이는 다시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수준으로 분류된다.

핵문제의 '민족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가 그 첫째이다. 다음으로 누구보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통해 세계적인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의 과점'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두번째 축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사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간의 대화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먼저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을 살펴보자.

1)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협상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던 지난 3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핵

다시말해 북한은 핵문제를 통해 체제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을 최대한 고조시킴으로써, 설혹 있을지도 모를 권력승계에 대한 반발을 애초부터 무마시켜 김정일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할 때 핵문제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최종목표는 명확해진다. 요컨대 북한은 단기적으로 핵문제에 따른 위기의식을 통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권력승계'와 이의 '대내외적인 인정'은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 얻으려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북한이 원하는 최대치와 최소치,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정치적 목표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VI.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국제적 대응

핵문제는 민족적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한 대응은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돼왔다. 이는 다시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수준으로 분류된다.

핵문제의 '민족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가 그 첫째이다. 다음으로 누구보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통해 세계적인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의 과점'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두번째 축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사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간의 대화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먼저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을 살펴보자.

1)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협상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던 지난 3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대화는 별 무리없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어려움은 있더라도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사찰로 해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두 개의 미신고지역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정하고, 2월 9일 한스 브릭스 사무총장이 북한에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냄에 따라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차례의 미-북한간 고위회담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선언이 유보됨에 따라 임시사찰과 함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으나 양자간의 대화는 아직까지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1차 회의에서는, 애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의 근거가 됐던 두 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정성 문제'가 집중 논의돼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들어 빈에서 갖기로 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2차회의(10.5~8)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 더 이상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상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협상은 지난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요컨대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협상을 거부함으로써, 또다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직접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던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사찰이 미-북한간 고위회담의 결과에 따라 재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말해 세계적인 핵확산금지에 가장 발벗고 나서야 할 국제원자력기구의 활동이 미-북한간의 대화에 종속됐던 것이다.⁶⁹⁾ 이는 핵확산금지조약 자체가 강대국 중심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를 실행하는 실무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북한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제원자

69) 사실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정성 문제'는 남한에도 특별사찰을 실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한지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은 '미국의 收容'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대립은 본질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대립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력기구와의 핵협상을 거부하고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이제 핵문제는 또 다시 미국과 북한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2) 미-북한간의 외교적 접촉

핵문제에 대한 국내·국제적 대응의 세가지 수준 가운데 미-북한간의 핵협상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협상, 그리고 뒤에 논술될 한국-북한간의 핵협상은 사실상 미-북한간의 핵협상에 종속내지 부차화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 '국제적 공조'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핵정책 부재와 단순한 미국정책의 추종 둘째,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문제가 당사자인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에 해결되기보다는 미-북한간의 고위회담을 통해 해결된 것에서 확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는 미-북한간의 협상 여하에 따라 浮沈을 거듭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본질적인 利害는 어떻게 하든 핵무명성을 높여 '핵개발 의혹'을 씻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북한의 이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정치·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미-북한간의 이해를 외견상으로만 보면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북한간의 이해간에는 서로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 배경이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미국이 세계적인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무기의 과점을 확보하겠다는 자신들의 핵정책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핵위협 제거, 관계개선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이 1단계 고위회담을 통해 커다란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에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국지전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이를 계기로

핵무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 전술핵무기 철수를 단행하면서까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⁷⁰⁾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역이용, 1단계 고위회담에 앞서 지금이야말로 '핵카드'의 효용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 '현재의 핵체계'를 유지하려는 미국으로부터 커다란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더욱이 오는 1995년을 끝으로 핵확산금지조약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의 갱신⁷¹⁾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통한 정치적 양보 획득이라는 북한의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실 그동안 제3세계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⁷²⁾은 강대국 중심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이에 대한 제3세계의 불만은 높았다.⁷³⁾ 반면 지금의 핵확산금지조약이 '핵의 과점'이라는 자신들의 이해를 가장 잘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핵확산금지조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동안 미-북한간의 핵협상이 언제나 서로의 이해가 교차되는 시점, 즉 북한을 현재의 핵체계에 붙잡아 두어야 하는 미국의 입장과 대신 미국의 이해를 인정해줌으로써 관계개선 등의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입장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개최됐던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간의 정치적 이해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한 미-북한간의 핵협상과 이에 따라 북한-국제원자력기구간의 대화, 한국-북한

70) 이라크의 핵개발이 걸프전 발발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제3세계로의 핵무기 확산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는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71) 핵확산금지조약은 1965년 미·소 군축협상의 일환으로 미·소 양국이 각자의 초안을 제시하고 18개국으로 구성된 군축위원회가 이를 결의한 후 제22차 유엔총회에 제출·채택(제2373호)됨으로 25년을 기한으로 1970년 3월 5일 발효됐다.

72) 핵확산금지조약은 핵을 가진 나라들이 자기들의 핵무기보유를 합법화한 것이며, 반면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못하게 하는 체제를 조약화한 것이다. 豊田利幸, 앞의 논문, 178쪽.

73) K. Subrahmanyam, 'The Nuclear Issue and International Securit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33-2(Feb.1977), 17~21쪽.; 豊田利幸, 앞의 논문, 179쪽 참조.

간 대화의 종속은 계속 될 것이다.

특히 설혹 핵문제가 안보리에 넘겨져 경제제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강구되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 핵문제는 결국 미-북한간의 핵협상을 통해 해결의 과정을 걸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이관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부의 보도와 같이 쉽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안보리로의 이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설혹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회원국이 이를 따르도록 권하는 내용일 뿐 이를 강제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회원국이 어느 정도 준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여러 핵무기 개발국들은 아무런 문제의 대상도 되지 않는데 핵무기 개발의 '의혹'만 있는 북한에 대해 유독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경제제재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무력제재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2백만으로 중무장된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⁷⁴⁾

3) 한국의 대응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에 끼여 핵문제와 관련한 독자적인 정책을 입안, 실행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상당부분 미국의 정책기조에만 의존했을 뿐,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기초로 북한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데 소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김영삼 대통령이 미-북한 1차 고위회담과 관련, 영국 BBC-TV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⁷⁵⁾

74) 이 경우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이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먼저 국교수립을 제의, 핵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직접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5) 그동안 진행된 남북한 핵협상과 관련해서는 전성훈, 「남북 핵협상 현황

따라서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핵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理解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선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문제의식을 전제로 미국과의 협력방법과 한계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동북아지역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관철키 위한 미국의 핵정책을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더욱이 어떤 경우 북한에 대해 군사적 제재론이 논의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민족적 이해를 추구하고 공멸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핵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가능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위기의식을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화하고 내적 통합성을 높이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 핵문의 해결방안은 바로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붕괴의 위기의식을 해소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체제위기의식은 첫째, 경제적 어려움 둘째, '흡수통합'의 가능성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해 부분적으로 개혁·개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걸 어디까지나 외부로부터 가해지고 있는 압력을 피하자는 것일 뿐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발전 노선을 개혁·개방으로 바꿨다는 징조로 파악할 수는 없다. 더욱이 북한은 경제 교류보다 합작사업을 더 희망하고 있어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에 따른 자본주의 사상의 도입과 결국 이것이 체제붕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합작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이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합작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한국 정부도 "북한이 핵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과감히 보

상해줌으로써 포위멘탈리티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을 합리적인 대화 상대자로 유도해내야 하며, 대북정책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⁷⁶⁾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들어 한국에 의한 흡수통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연형묵 前 총리가 남북고위급회담의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이 흡수통합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발표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흡수통합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는 속에서 그들이 흡수통합⁷⁷⁾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자신있게 남북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신들의 목표가 최소한도로 충족되지 않는 한 핵문제는 계속 우려곡절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배층이 체제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협력을 통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핵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VII.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핵문제를 통한 북한의 정치적 의도는 첫째,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국제적 고립 탈피 둘째, 체제유지 보장 셋째,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과 이의 대내외적인 인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이해는 첫째, 핵 투명성 확보 둘째, 제3세계로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이런 가운데 1995년으로 다가온 핵확산금지조약의 갱신을 통해 핵무기의 과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76) 장달중,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외무통일위원회 공청회, 1993년 7월 12일, 7쪽.

77) 남한의 흡수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인석, 「흡수통합 지향하는 남한의 통일정책」, 『동향과전망』, (백산서당, 1992 가을), 104~116쪽 참조.

상해줌으로써 포위멘탈리티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을 합리적인 대화 상대자로 유도해내야 하며, 대북정책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⁷⁶⁾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들어 한국에 의한 흡수통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연형묵 前 총리가 남북고위급회담의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이 흡수통합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발표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흡수통합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는 속에서 그들이 흡수통합⁷⁷⁾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자신있게 남북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신들의 목표가 최소한도로 충족되지 않는 한 핵문제는 계속 우려곡절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배층이 체제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협력을 통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핵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VII.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핵문제를 통한 북한의 정치적 의도는 첫째,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국제적 고립 탈피 둘째, 체제유지 보장 셋째,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과 이의 대내외적인 인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이해는 첫째, 핵 투명성 확보 둘째, 제3세계로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이런 가운데 1995년으로 다가온 핵확산금지조약의 갱신을 통해 핵무기의 과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76) 장달중,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외무통일위원회 공청회, 1993년 7월 12일, 7쪽.

77) 남한의 흡수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인석, 「흡수통합 지향하는 남한의 통일정책」, 『동향과전망』, (백산서당, 1992 가을), 104~116쪽 참조.

한편 그동안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이해 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돼 왔다. 우선 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핵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우리의 정치·군사적 이해에 기반한 독자적인 정책 내지 외교로 표명되지 못함에 따라 종속화가 더욱 가속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국제적인 공조 못지 않게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외교와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북한이 핵카드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최종목적을 한국 정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핵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를 내적 통합성을 높이고 정치체제의 유지를 보장받으며 나아가 후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담보'로 판단, 결국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대신할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침체와 흡수통합에 대해 북한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은 핵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요컨대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면 자연 북한의 체제는 안정화될 것이며 이는 동시에 북한의 급속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굳이 독일의 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흡수통합에 따른 폐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통일한국'을 생각할 때도 좋을 일이다. 북한의 경제가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붕괴되고 그 결과 흡수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한국이 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일본의 대북한 위탁가공무역이 한국보다 15배나 앞섰다는 보도⁷⁸⁾는 우리가 먼저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행하지 않으면 북한 시장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결코 기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협력으로 핵문제를 해결

78) 한겨레신문, 1993. 3. 6.

하겠다는, 즉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안정을 돕고 이를 계기로 핵문제를 통해 내적 통합성을 높이려는 북한의 정책을 무위로 돌려 버리는 방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정부는 남북문제를 핵문제와 모두 연결시켜 스스로 자기발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태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1992 봄)
- 김강녕, 「핵확산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인천대논문집』, 1987.
- 김민석, 김태우, 전병완, 「북한의 핵무기개발 실상과 저의」,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1991 겨울)
- 김 용, 「북한, 뇌물이 말하는 공화국」, 『신동아』, 1992년 3월호.
- 김정현,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치군사질서 의 변화와 미일의 패권전략」, 『동향과 전망』, (백산서당, 1992 봄)
- 김태우, 「핵의 세계와 한반도비핵화의 허와 실」,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1991 가을)
- 김태우,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핵의 남북문제」, 『국방논집』, (1991 제14호)
- 마이클 브린, 「평양의 방공 사이렌」, 『월간조선』, 1991년 4월호.
- 서인석, 「흡수통합 지향하는 남한의 통일정책」, 『동향과전망』, (백산서당, 1992 가을)
- 서인석,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통일의 필수조건」, 『월간 사회평론』, 1991년 11월호.
- 서인석 「동북아핵정치와 한반도」, 『월간중앙』, 1992년 1월호.
- 송영선, 「한반도의 핵」, 『신동아』, 1991년 6월호.
- 송영선,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미체결과 핵능력」, 『한국과 국제정치』, (1991년 봄·여름)
- 신정현, 『한반도의군비통제: 평화와 통일의 새국면』, (예진출판사, 1990)
- 아이단 포스터 카터, 「북한사회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1회 국제학술토론회, 1991년 10월 28~29일.
- 양호민 외, 「북한체제의 변화」,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한반도통일의 현실과 전망』, (나남, 1992)
- 오꼬노끼 마사오, 「북한의 정책변화와 북·일 국교교섭」,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1년 10월 28~29일.
-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일신사, 1988)

- 이기택, 「새로운 외교정책과문제점」, 외무통일위원회 공청회, 1993년 7월 12일.
- 이삼성,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 『북한 핵문제:전망과 과제』, 민족통일연구원 제8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1993년 5월 12일.
- 이삼성, 「탈냉전시대 미국외교와 세계질서」, 『한국과국제정치』, (1991 가을 · 겨울)
- 이상우, 「남북한 군사갈등과 군축」, 『한국정치학회보』, 1980.
- 이장춘, 「북한의 핵무기와 동북아세아의 안보」,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 (세종연구소, 1993)
- 이호재, 「북한의 핵문제와 한국의 새로운 대응책 모색」, 외무통일위원회 공청회, 1993년 7월 12일.
- 이호재, 『한반도 군축론』, (법문사, 1989)
- 장달중,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외무통일위원회 공청회, 1993년 7월 12일.
- 전병완, 김민석,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 및 전망」, 『국방논집』, (1991년 제 13호)
- 전성훈, 「남북 핵협상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민족통일연구원, 1992.6)
- 전성훈,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북한 핵문제:전망과 과제』, 민족통일연구원 제8회 국내학술회의, 1993년 5월 12일.
- 정천구, 「핵전략의 도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985)
- 통일원, 『'92 북한개요』, 1993.
-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나남, 1991)
-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군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Summer 1991)
- David Albright and Mark Hibbs, 「North Korea's Plutonium Puzzl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November 1992)
- Jon Jennekens, 「IAEA Safeguards What they are and What they do」, 『Disarmament』, (1990)

- Jon Wolfshtal, 'IAEA to Implement 'Suspect Site' Inspection Powers',
『Arms Control Today』, (March 1992)
- Joseph Bermudez J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Jane's
Intelligence Review』, (September, 1991)
- K. Subrahmanyam, 'The Nuclear Issue and International Securit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33-2(Feb.1977)
- Larry A. Nic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5, 1991.
- Leonard S. Spector & Jacqueline R. Smith, 'North Korea:The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March 1991)
- Peter Hayes, 『Nuclear Inspections in Korea:Rough Waters Ahead?』,
(Berkeley, CA:Nautilus Pacific Research), November 1992.
- Peter Hayes, 『Pacific Powderkeg:American Nuclear Dilemma in Korea』
(Lexington:D.C. Health and Company), 1991.
- 豊田利幸, 「NPT体制とは何か」, 『世界』, 1993年 5월호.
- 豊田利幸, 「核擴散問題について」, 『軍縮問題資料』, 1992年 8월호.

北韓의 武器移轉政策

研究責任者：최 종 철(延世大學校)

목 차

〈要約文〉

I. 서론 : 제3세계 국가의 무기이전의 정치-경제	187
II. 북한의 변화 : “국제 부랑아(pariah state)”로	196
III. 북한의 무기산업과 최근 무기이전 현황.....	200
1. 북한의 무기산업.....	200
2. 최근의 무기이전 현황	205
IV. 북한의 무기이전의 동기와 목적	210
1. 경제-산업적 목적	214
2. 정치-군사적 목적	217
V. 결론 : 북한 무기이전정책의 전망과 영향	222
〈參考文獻〉	227

북한의 무기이전정책

최종철(연세대학교)

〈요 약 문〉

국제정치의 행위자들— 국가 및 비국가 조직체— 사이의 전쟁 수단의 이동현상은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국가간 무기 및 무기체계의 이전은 공급국과 수요국 모두에게 복지와 안보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전자제품 등 여타의 인적 물적 교류대상들과 다른 취급을 받아왔고 1960년대 말 이래 국제무기시장의 활성화 즉 수요국과 공급국의 수의 증가, 거래무기의 첨단화, 무기거래액의 폭발적 상승 등에 의해 국제정치-경제관계의 핵심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요 선진 무기공급국들이 무기를 판매 혹은 무상공여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상업적 이익은 물론 보다 중요한 정치-군사적 이득을 획득하려하고 수요국은 무기를 이전받음으로써 자국의 정치-군사적 안보를 확보하는 데서 무기이전이 국제관계의 필연적 산물이 된 것이다.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무기없는 외교는 악기없는 음악과 같다”는 프리리히 대제의 설파에서 관찰되듯이 어떤 국가에게나 무기는 자국 안보는 물론 대외관계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또한 도덕적 규범이 지배하는 세계라면 몰라도 무정부적 분쟁의 세계에서 군비를 해제할 수 없는 만큼이나 무기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평화를 논하면서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구입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무기이전 자체가 힘— 행위에 작용하는 힘(behavioral power)과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중간 수준의 국가라 할 지라도 군대와 무기산업 없

이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무기판매와 방위산업의 증강은 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입장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무기이전 현상은 국제정치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국제정치의 필연적 산물인 동시에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서 그리고 힘의 원천으로서의 무기이전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선진 산업국들 즉 자국군의 소요분 이상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능력을 가진 국가들의 대외 정치-경제정책상의 문제로 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들 중에는 주로 패권적 이익——수요국에 대한 영향력과 외교 목적 달성을 위한 지렛대 획득, 나아가 자국 및 수요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미국과 러시아: 패권적 이전국가)가 있는가 하면, 기타의 서유럽 선진 공업국들(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경제 혹은 산업적 이전국가)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무기시장을 석권하고(세계 무기공급의 80-90%를 차지함) 있었기 때문에 양국간의 무기이전을 통한 패권적 이익 추구 경쟁이 이 분야의 지배적 관심 대상이었다.

1970년대 이미 무기 양산체제를 구축했고 1980년대에 독자 무기개발체제를 다진 북한은 경제적 곤궁과 개방화 및 정치적 개방을 둘러싼 강, 온의 대립 등 국내정세의 불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재편, 국제적 고립, 핵무장 등의 문제로 인한 남한과의 긴장관계 지속 등의 불확실한 대외관계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해외 이전을 강화하는 정책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외화획득 등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중국적인 목적으로서 정치-전략적 의도와 목적이 함께 혹은 더 우선적인 목적으로 무기수출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의 문제에 대한 탐구가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특히 최근 뚜렷이 보이고 있는 국제부량아로서의 행동은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의 목적을 분석하는 데 준거가 된다. 즉 국제부량아의 정책수단으로서의 무기이전에 관한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3세계의 선진 개발도상국들이 정치 및 상업적 이유로 말하자면 자주 방위와 군사수입대체(Military

Import Substitution: MIS)는 물론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방위산업을 일으키고 무기수출을 위해서 점차 국제 무기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까지는 제3세계의 무기 생산 및 수출은 거의 무시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SIPRI가 제공하는 주요무기의 이전 통계에 의한 제3세계(혹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무기공급은 1971-1975 동안 약 1%에서, 1976-1980 약 3%, 1981-1985 약 5%, 그리고 1986-1990에는 약 7%로 증가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요 무기생산 및 공급국의 수에 있어서도 괄목할 성장이 있었다. 1950년대에는 아르헨티나와 북한이 중요한 무기생산국이었으나 1960년대초에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1960년말에는 브라질과 이스라엘이, 1970년대초 한국과 대만이,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제3선의 무기공급국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1980년대에는 중국, 이집트,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등이 제3세계의 중심적인 무기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제3세계의 무기 공급국들은 세계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이 10%(주요무기 공급의)미만인 데다 공급무기의 대부분이 토착무기가 아닌 타국 즉 선진 제1, 제2선의 무기공급국들로부터 수입 또는 공여받은 무기를 재수출하는 것들이다. 게다가 제3세계가 제공하는 무기가 고기술의 첨단무기가 아니어서 유입되는 지역의 세력균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3세계의 무기공급이 북한, 중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급국 자신의 국내정치-경제에나 세계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브라질과 같이 철저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든, 칠레,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같이 실질적 혹은 예상되는 무기금수에 대항하거나 아르헨티나과 인도처럼 주요 산업화된 무기공급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정치적 이유에서든 무기를 생산, 판매하려는 제3세계의 국가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판매무기가 점차 고도화하고 있는 한 제3세계의 무기 수출은 제3세계 무기공급국과 수요국간의 관계, 선진 무기공급국들과 제3세계 무기공급국들과의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 지역분쟁의 결과, 그리고 재래식 무기이전통제(conventional arms transfer control) 노력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 신 세계질서의 형성과 걸프전쟁을 거치면서 전후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어 온 세계 무기이전 현상은 새로운 특징적 양상들을 띄고있다. 하나는 무기이전 모순적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 상업적 이익 추구에 치중해 온 제3세계의 무기공급국들이 정치적 고려에 점차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무기이전의 모순적 현상은 미국 등 5대 무기공급국들이 재래식 무기이전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무기수출 촉진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시작된 미사일 기술이전 통제(Missile Technology Transfer Control: MTCR) 제정을 1993년 통제범위와 파트너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강화하고, 부쉬 대통령의 중동에 대한 5대강국 무기이전 금지 제안, 1991년 런던 G-7 정상회담에서의 재래식 무기이전 및 화생방 비확산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Conventional Arms Transfers and NBC Non-Proliferation), 1988년 유엔의 무기거래등록 실시안(1991년부터 시행) 등 여러 노력과 조치들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중국 및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 확대, 미국의 무기판매고의 상승, 중국의 적극적 무기판매 전략 등 강대국들의 경쟁적 무기시장 확대 노력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아이러니는 제3세계국가들의 국방비는 감소추세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무기구입비는 줄어들 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걸프전이후 이들의 첨단무기 구입에 대한 열의는 더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무기공급의 특징적 양태는 정치적인 고려 혹은 목적을 위해서 무기를 제3국에 제공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이 무기조달의 해외의존의 탈피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방위산업을 육성, 확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무기수출에 있어서도 정치적 동기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후 무기수출이 무기상의 손에서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느 국가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다. 병행해서 무기이전이 정부의 대외정책과 직접적으로 배치될 때는 실현되지 않는 현상이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아직도 외화를 버는 등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무기수출이 지배적이

기는 하나 대외정책적 목적을 위한 무기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경향은 사회주의권 공급국가에서 더욱 뚜렷하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무기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지속시켜 왔다. 지속적인 중공업 우선정책과 경제과 국방의 병진정책 노선의 채택 등으로 1970년대에 상당한 수준의 자체 무기생산 능력을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는 첨단 무기의 생산 및 수출에 전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생산,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무기 생산 능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북한의 무기 이전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1970년대의 북한의 무기수출 실적은 하잘 것이 없었다. 소총, 포, 탄약, 소형함정 등 기본병기들이 무기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또 상당 부분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것들을 재수출하는 수준이었다. 이 기간동안 북한의 주요 고객은 탄자니아와 자이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주요 무기 일체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음은 물론 미사일과 같은 첨단 대량파괴 무기를 자체 생산,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들의 해외 판매 실적도 병행해서 제3세계 무기수출국중 선두그룹에 들게 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 년평균 5억달러의 무기 판매 수입을 올렸고 후반기에는 년 평균 4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는 정상적 무역거래외의 수입중 제일 조총련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 년 평균 6-7억달러, 다음으로 많은 수입이었다. 이 기간의 북한의 무기 및 무기체계는 주로 중동 지역으로 공급되었다(총 무기수출의 94%).

북한이 총수출액의 23%(1980년대 평균)에 해당하는 무기 및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이전 목적은 국제사회의 한 행위자로서의 북한이 최근(1980년대 중반이후) 국제 부랑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타의 제3세계 무기이전 국가들과 다른 점이 있다. 부랑아로서 북한은 일차적으로 '외화벌이'를 위해서 무기를 수출한다. 최근 북한이 식량등 기초 생필품, 석유 등 산업자원,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무기판매는 외환의 획득을 위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기타 대부분의 무기이전 국가들이 추구하는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무기를 판

매한다.

북한이 무기를 이전하는 이유로 상업적 목적이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 부랑아 국가의 일반적 행위 특성으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기이전을 국가간의 관계를 유지 내지는 돈독히하는 데 이용했다(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 같은 부랑아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일시적 접근도 미사일 수출능력이 매개가 되었으며 국내정치의 안정과 김일성체제의 우월성 과시에도 무기생산 및 수출능력이 이용되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의 수출은 이 지역에서의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무기이전 능력의 과시는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기술 지원 및 수교 협상에도 지렛대로 이용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종합하면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은 주체사상의 정책적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다. 북한에게 무기이전은 국방에서의 자주와 경제의 자립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방/산업정책의 요체로 자리잡았으며 나아가 대외정책의 수단으로까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들어서 국제부랑아의 입장에서 북한은 무기이전을 국제고립의 탈피는 물론 경제제재 등의 위기를 대비하는 탈출구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외화획득과 군사수입대체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무기수출을 시작했으나 점차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무기산업과 무기수출 정책에서 돋보이는 것은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전략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사일 개발분야가 그것이다. 1960년대말 소련으로부터 FROG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미사일 개발은 1993년 현재 사정거리 1,500-2,000km의 노동-2호를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여러 타입의 Scud 혹은 노동 미사일을 중동 산유국들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 이전정책은 외화획득과 석유대금 결제의 수단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것과 동시에 정치적 수단으로 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Scud-D 혹은 노동-1호의 생산, 보유 및 해외수출은 이미 정치적 무기로서의 가치를 발휘했다. 예로 이스라엘과의 접촉이 노동-1호의 대 아랍국 수출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북한이 제3세계중에서 선두의 무기이전국이며 무기이전을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세계무기생산 및 이 전체계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계층화되어 있는 국제무기생산 및 수출체계속에서 현재 북한이 점하고 있는 제3선의 무기이전국의 수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제1, 2선의 무기이전국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를 생산, 수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둘째로 무기를 수출한 후 부품의 공급이나 사후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확신할 만큼 국제무기시장에서 신용을 얻고 있지 못하다. 셋째 무기공급 조건에서 선진 산업국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즉 싼이자의 신용공급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넷째 최근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군사기술 이전을 포함한 보상구매(offset)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무기이전을 통한 정치-경제적 이득을 확장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의 무기나 무기체계에서는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지라도 기술과 가격면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수준에 맞는 무기와 무기체계를 생산, 수출함으로써 제3선의 무기수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미사일 개발 전략에서 보인 바와 같이 특정 분야의 무기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집중전략을 계속한다면 국제무기시장에서의 지위는 공고화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북한은 무기이전을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둘것이 분명하다.

1. 서론: 제3세계국가의 무기이전의 정치-경제

국제정치의 행위자들— 국가 및 비국가 조직체— 사이의 전쟁 수단의 이동현상은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1970년대 이래 국제정치학의 하나의 하위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가간 무기 및 무기체계의 이전¹은 공급국과 수요국 모두에게 복지와 안보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전자제품 등 여타의 인적 물적 교류대상들과 다른 취급을 받아왔고, 또한 1960년대 말 이래 국제무기시장의 활성화 즉 수요국과 공급국의 수의 증가, 거래무기의 첨단화, 무기거래액의 폭발적 상승 등에 의해 국제정치-경제관계의 핵심적 현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소련이 2차대전이후 무기이전을 패권적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무기이전의 중요성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²

¹ 미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국(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ACDA)에 따르면 무기이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무기이전 (무기수출 및 수입)은 전쟁무기, 그 부품, 탄약, 지원장비, 기타 군사 목적의 상품들을 포함하는 "재래식" 군사 장비의 (공여, 신용, 바터 혹은 현금 거래에 의한) 국제적 이전을 의미한다. 포함되는 품목중에는 전술 유도미사일 및 로켓트, 군수차량, 통신 및 전자 장비, 포, 보병병기, 소규모 병기, 탄약, 기타 병기, 낙하산과 유니폼 등이 있다. 이중 용도 dual-use장비는 그 일차적 사명이 군사용이면 포함된다. 방위 생산설비 건설 및 면허료 (군사설비생산을 위한 로얄티로 지불되는)는 군사 이전 계약에 속한 것이면 무기이전에 포함된다.

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WMEA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7), p. 144.

² 미국과 소련의 패권적 무기이전정책에 대해서는 Jong Chul Choi, *U.S. Arms Transfers and Global Hegemony: An Analysis of their Global Scale and the Regional Context of Japan and Korea*,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May 1992; David J. Louscher, "The Rise of Military Sales as a U.S. Foreign Assistance Instrument," *Orbis*, Vol. 20, No. 4 (Winter 1977); 933-965; William H. Lewis, "Emerging Choices for the Soviets in Third World Arms Transfer Policy," in U.S. ACDA, *WMEAT*, 1985, pp. 30-34; William H. Lewis and Stephen C.

주요 선진 무기공급국들이 무기를 판매 혹은 무상공여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상업적 이익은 물론 보다 중요한 정치-군사적 이득을 획득하려 하고 대부분의 제3세계 수요국들은 무기를 이전받음으로써 자국의 정치-군사적 안보를 확보하려는 데서 무기이전이 국제관계의 필연적 산물이 된 것이다.³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무기이전의 중요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 예로써 걸프전쟁 직후 재래식 무기 이전통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거래는 위축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⁴ 오히려 동아시아에로의 무기 유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무기없는 외교는 악기없는 음악과 Moss, "The Soviet Arms Transfer Program,"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Fall 1984): 3-15; Synthia A. Roberts, "Soviet Arms-Transfer Policy and the Decision to Upgrade Syrian Air Defences," *Survival*, Vol. 25, No. 4(July/August 1983): 154-164를 참조할 것.

³ 정치적 이익으로는 수요국의 지도자나 엘리트에 대한 영향력 획득, 안보와 안정에 대한 상징적 공약, 정권의 안정에 기여, 외교목적을 위한 지렛대 확보, 지역 세력균형 등이 있고, 경제적 이익에는 외화 획득 및 국제 수지균형에 도움, 자국군의 무기비용 삼축, 군수산업의 고용 증대, 연구 개발 비용 보상, 산업발전 자극 등이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 기지나 특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대체물로, 새 무기체계의 테스트를 위해, 그리고 동맹국 방위 등을 위해 무기를 이전한다. 보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Michael T. Klare, "Political Economy of Arms Sal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32, No. 4(1976); Andrew J. Pierre, *The Politics of Arms Sales*(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pp. 14-27; Keith Ktause, "The International Trade in Arms," Background Paper of Canad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rch 1989, p. 4.를 참조할 것.

⁴ 걸프전이후 무기이전통제에 대한 관심은 아래의 연구서 및 기록들에 잘 나타나 있다. U.S. ACDA, "Big Five Initiative on Arms Transfer and Proliferation Restraints," *WMEAT*, 1990, pp. 23-26; William D. Hartung, "Breaking the Arms-Sales Addiction: New Directions for U.S. Policy," *World Policy Journal*(Winter 1990-1991): 1-26; Janne E. Nolan, "The Global Arms Market After the Gulf War: Prospects for Control," *Washington Quarterly*, Vol. 14, No. 3(Summer 1991): 125-138; John McCain, "Controlling Arms Sales to the Third World," *Washington Quarterly*, Vol. 4, No. 2(Spring 1991): 79-89; William D. Hartung, "Prospects for Multilateral Arms Transfer Restraint in the Wake of the Gulf War," Paper prepared for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tlanta, Georgia, March 31-April 4, 1992.

같다”는 프리리히 대체의 결과에서 관찰되듯이 어떤 국가에게나 무기는 자국 안보는 물론 대외관계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왔다.⁵ 또한 도덕적 규범이 지배하는 세계라면 몰라도 무정부적 분쟁의 세계에서 군비를 해제할 수 없는 만큼 무기의 흐름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평화를 논하면서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구입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무기이전 자체가 힘—행위에 작용하는 힘 (behavioral power) 과 구조적 힘 (structural power)⁶—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한 국가가 무기 및 무기체계를 이전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힘의 과시인 동시에 무기거래로 형성되는 수요국과의 정치, 군사적 연계는 영향력 행사의 통로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중간 수준의 국가라 할 지라도 군대와 무기산업없이 국제정치에서 자국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해 왔다. 나아가 무기판매와 방위산업의 증강은 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입장권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⁷ 이런 맥락에서 무기이전 현상은 앞으로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되고, 국제정치에서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의 무기이전의 중요성은 강화될 것이다.

국제정치의 필연적 산물인 동시에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서 그리고 힘의 원천으로서의 무기이전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선진 산업국들 즉 자국군의 소요분 이상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능

⁵ Richard Whittle, "Reagan Policy Renews Arms Sales Debate," *Congressional Quarterly*, April 3, 1982, p. 719.

⁶ 힘의 두 개념에 대해서 Peter Bachrach and Morton Baratz, *Power and Power: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Susan Strange, *States and Market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Basil Blackwell, 1988), 제2장; Cheryl Cheistensen, "Structural Power and National Security," in Klaus Knorr and Frank N.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127-159;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pp. 31-34. 참조할 것.

⁷ Frederic S. Pearson, "'Necessary Evil': Perspectives on West German Arms Transfer Policies,"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12, No. 4 (Summer 1986), p. 526.

력을 가진 국가들의 대외 정치-경제정책상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들 중 미국과 소련은 주로 패권적 이익——수요국에 대한 영향력과 외교 목적 달성을 위한 지렛대 획득, 나아가 자국 및 수요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무기를 공급했고(패권적 이전국가), 기타의 서유럽 선진 공업국들(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무기를 수출했다(경제 혹은 산업적 이전국가).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무기시장을 석권하고(세계 무기공급의 80-90%를 차지함) 있었기 때문에 양대국간의 무기이전을 통한 패권적 이익 추구 경쟁이 이 분야의 지배적 관심 대상이었다.⁸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3세계의 선진 개발도상국들이 정치 및 상업적 이유로 말하자면 자주 방위와 군사수입대체(Military Import Substitution: MIS)는 물론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방위산업을 일으키고 국제 무기수출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세계의 군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⁹ 1960년대 초까지는 제3세계국가들의 무기 생산 및 수출은 거의 무시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SIPRI가 제공

⁸ 무기이전 국가들의 형태 분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의 분석에 따른 것임. SIPRI, *The Arms Trade with the Third World*(London: Paul Elek, 1971; Edward A. Kolodziej, "Arms Transfers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Interdependence of Independence," in Stephanie G. Neuman and Robert E. Harkavy, eds., *Arms Transfers in the Modern World*(New York: Praeger, 1980), p. 3.

⁹ 세계의 군사화(global militarization) 혹은 제3세계의 무기산업의 확산에 대해 U. Albrecht, D. Ernst, P. Lock, and H. Wulf, "Militarization, Arms Transfer and Arms Production in Peripheral Countr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2, No. 3 (1975): 195-212; Edward A. Kolodziej, "Why a Look at Global Militarization," and Stephanie G. Neuman, "Trends in the Conventional Arms Trade," and Nicole Ball, "The Growth of Arms Production in the Third World," *National Forum*(The Phi Kappa Phi Journal), Vol. 56, No. 4(Fall 1986): 2-4, 20-23 and 24-27; Helga Haftendorn, "The Proliferation of Conventional Arms," *Adelphi Paper*, No. 133(1977): 33-41; Alex Glikzman, "Arms Production Spread: Implications for Pacific Rim Security," in Dora Alves, ed., *Evolving Pacific Basin Strategies: The 1989 Pacific Symposium*(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0): 60-76 참조.

하는 주요무기¹⁰의 이전 통계에 의한 제3세계(혹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무기공급은 1971-1975 동안 약 1%에서, 1976-1980 약 3%, 1981-1985 약 5%, 그리고 1986-1990에는 약 7%로 증가하였다. 주요 무기 생산 및 공급국의 수에 있어서도 괄목할 성장이 있었다. 1950년대에는 아르헨티나와 북한이 중요한 무기생산국이었으나 1960년대초에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1960년말에는 브라질과 이스라엘이, 1970년대초 한국과 대만이,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제3선의 무기공급국의 대열에 가담하였다.¹¹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는 중국, 북한, 이집트,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등이 제3세계의 중심적인 무기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제3세계의 무기 공급국들은 세계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이 10%(주요무기 공급의)미만인 데다 공급무기의 대부분이 토착무기가 아닌 타국 즉 선진 제1, 제2선의 무기공급국들로부터 수입 또는 공여받은 무기를 재 수출하는 것들이다. 게다가 제3세계가 제공하는 무기가 고기술의 첨단무기나 대량파괴 무기가 아니어서 유입되는 지역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킬만큼 위력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3세계의 무기공급이 북한, 중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급국 자신의 국내정치-경제에나 세계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브라질과 같이 철저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든, 칠레,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같이 실질적 혹은 예상되는 무기금수에 대항하거나 아르헨티나와 인도처럼 주요 산업화된 무기공급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정치적 이유에서든 무기를 생산, 판매하려는 제3세계의 국가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판매무기가 점차 고도화하고 있는 한¹² 제3세계의 무기 수출은 제3세계 무기 공급국과 수요국간의 관계, 선진 무기공급국들과 제3세계 무기공급국들과의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 지역분쟁의 결과, 그리고 재래식 무기이전통제(conventional arms transfer control) 노

¹⁰ 주요 무기는 전투기, 군함, 미사일 그리고 탱크를 포함한다.

¹¹ Mich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Arms Transfers to the Third World, 1971-1985*(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112.

¹² Ibid.

력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고조, 확산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1980년대 후반과 특히 1990년대초 신 세계질서의 형성과 더불어 2차대전후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어 온 세계 무기이전 현상은 두가지의 새로운 특징적 양상들을 띄고 있다. 하나는 상대적 군사비의 감소추세와 걸프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무기의 흐름이 약화되지 않고 있는 무기이전의 아이러니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 상업적 이익 추구에 치중해 온 제3세계의 무기공급국들이 정치적 고려에 점차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무기이전의 아이러니는 세계 주요 무기공급국들의 상반된 무기공급정책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동시에 대립과 갈등의 냉전시대가 쇠퇴하고 이에 따른 국방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기구입비는 상응한 감축을 보이고 있지 않는 현상이다. 특히 걸프전을 주도했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바로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한 5대 무기공급국이었는데 대한 세계여론의 비난과 함께 재래식 무기이전통제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기수출 촉진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결국 지역 분쟁의 가능성을 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무기이전 강대국들은 1987년 시작된 미사일 기술이전 통제(Missile Technology Transfer Control: MTCR)레짐을 1993년 통제범위와 파트너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강화하고, 부쉬 대통령의 중동에 대한 5대강국 무기이전 금지 제안, 1991년 런던 G-7 정상회담에서의 재래식 무기이전 및 화생방 비확산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Conventional Arms Transfers and NBC Non-Proliferation), 1988년 유엔의 무기거래등록 실시안(1991년부터 시행) 등 여러 노력과 조치들¹³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중국 및 아시아국가들

¹³ 무기이전통제에 관한 전반적 논의를 위해서는 Christian Catrina, *Arms Transfers and Dependence*(New York: Taylor & Francis, 1988), chapter 7: 124-144를 참조하고, 최근의 무기이전통제 노력에 대해서는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Guidelines Revised,"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Vol. 4, No.3 (January 18, 1993), pp. 41-42; SIPRI, *SIPRI Yearbook 1992*, pp. 291-301; Anthony

에 대한 무기판매 확대, 미국의 무기판매고의 상승, 중국의 적극적 무기 판매 전략 등 강대국들의 경쟁적 무기시장 확대 노력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¹⁴ 이와 함께 또 다른 아이러니는 제3세계국가들의 국방비는 감소추세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무기구입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걸프전이후 이들 의 첨단무기 구입에 대한 열의는 더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¹⁵

다른 무기이전의 특징적 양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무기를 공급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이 무기조달의 해외의존의 탈피라는 정치적 Sampson, "A Last Cnance to Call a Halt," *Newsweek*, April 8, 1991, p. 29; Andrew J. Pierre, "How to Curb Mideast Arms Sales," *New York Times*, June 28, 1991, op-ed; Alan Riding, "Talks Begin on Arms Sales to 3d World," *New York Times*, July 9, 1991, A3 and "Big 5 Pledge for Mideast: Ban Devastating Arms," *New York Times*, July 10, 1991, A9; Eric Ehrmann and Christopher Barton, "Controlling Missile Exports-A Catch-22?" *Christian Science Monitor*, March 19, 1991, 19; David Sanger, "Japan Will Offer Arms Control Plan," *New York Times*, July 3, 1991; Kensuke Ebata, "Japan Joins the World Arms Control Lobby," *Jane's Defence Weekly*, January 23, 1993, p. 5를 참조할 것.

¹⁴ Michael T. Klare, "Arms Sales Blast New World Order," *Christian Science Monitor*, October 17, 1990, 18; Michael Richardson, "Russia Arms Spillover Chills East Asia," *International Herad Tribune*, April 15, 1993; 송대헌, "미-러 새 갈등 요인 등장," *세계일보*, 1993. 6. 25; Stephen Zunes, "Arms Sales Ironies," *Christian Science Monitor*, October 14, 1992, 18; Peter Grier, "Cnina Arms Policy Puzzles West,"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3, 1992; "미사일 수출에 중국 혈안," *Newsweek* (한국판), 1993. 9. 8. p. 21

¹⁵ Sheila Tefft, "Arms Sales Take Off in Asia As China Bids for Supremacy," *Christian Science Monitor*, October 5, 1992; Michael Wines, "Third World Seeks Advanced Arms," *New York Times*, March 25, 1991; Robert Templar, "S.E. Asia Tempted by Russian Weapons Technology," *Korea Herald*, February 4, 1993; T. Y. Wang, "Why Taiwan Should Get F-16s," *Christian Science Monitor*, August 13, 1992; "Asia Replaces Middle East as Largest Arms Market," *Korea Herald*, May 1, 1993; 윤득헌, "아시아는 무기 황금시장," *동아일보*, 1993. 5. 10; 조환민, "아시아 군비경쟁 가열," *동아일보*, 1992. 11. 11; "아랍국 무기도입 경쟁," *동아일보*, 1993. 2. 28에서 최근의 추세를 다루고 있다.

동기에서 방위산업을 육성, 확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무기수출에 있어서도 정치적 동기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차대전후 무기수출이 무기생산 수출업자의 손에서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느 국가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다(물론 프랑스와 같은 예외가 있음). 일부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무기이전이 정부의 대외정책과 직접적으로 배치될 때는 실현되지 않는 현상이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아직도 외화를 버는 등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무기수출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대외정책적 목적을 위한 무기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경향은 현재의 국제체제내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는 국가와 국제 부랑아적 성격을 가진 국가들에서 더욱 뚜렷하다.¹⁶

한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다. 1970년대말 중국은 등소평의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무기수출정책도 일신시켰다. 이후 중국은 경화를 벌어들이고 해외기술 획득의 수단으로 무기수출을 증대해 나갔다.¹⁷ 최근에는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은 인민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미사일 등 무기수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¹⁸ 나아가 근대화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동 지역 국가들, 이란, 이라크, 사디 아라비아에 미사일 기술, 선진무기 및 핵기술을 판매하려 한다고 국제에너지경제학회 회장 페라이던 패사라키(Fereidun Fesharaki)씨는 관측하고 있다.¹⁹

이와같이 중국의 무기수출이 주로 경제적 고려 특히 외화 획득을 위해 추구되고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하거나 전략적 이익을

¹⁶ Christian Catrina, *Arms Transfers and Dependence*, pp. 73-74.

¹⁷ 최근 중국의 무기이전 정책에 대해서 Richard A. Bitzinger, "Chinese Arms Sales to the Third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2(Fall 1992): 85-111; R. Bates Gill, "Curbing Beijing's Arms Sales," *Orbis*, Vol. 36, No. 3(Summer 1992): 379-391 참조할 것.

¹⁸ Peter Grier, "China Arms Policy Puzzles West,"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3, 1992.

¹⁹ Michael Richardson, "Energy Needs of China Fuel Weapons Scenario,"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5, 1993.

차지하려는 동기에서 무기를 이전하는 경우가 최근 돋보이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CSS-2 미사일 이전, 이란-이라크 전쟁후의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과 태국에 대한 무기이전은 외교관계 수립, 지역영향력 확보와 걸프만과 같은 전략적 지역에 있는 우방국 지원, 예상되는 위협 세력(인도와 베트남) 견제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 등 정치-전략적 고려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러한 정치-전략적 고려에서의 무기이전은 앞으로 더 중요하게 취급되리라 전망된다.

같은 사회주의권의 국가로서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이 1980년대말-1990년대초 국제정치적의 하나의 영향변수로 더욱 중요하게는 남북한 관계의 맥락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의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시점과 맞물려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수출 관련 보도가 동지역의 안보전략가는 물론 정치지도자들의 이목을 빼앗고 있다. 더우기 북한은 탈냉전 시대의 시작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및 기타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결여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그 위상은 위축되는 "국제 부랑아(international pariah)"²¹로 행동하고 있다. 국제 부랑아로서의 북한은 1980년대 후반 년 평균 4억불을 수출하는 세계 20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²² 중동지역에 대한 탄도 미사일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어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²³

1970년대 이미 무기 양산체제를 구축했고 1980년대에 독자

²⁰ R. Bates Gill, "Curbing Beijing's Arms Sales," pp. 391-392.

²¹ 부랑아 국가 또는 죠지 퀘스트의 "범외 방치 국가(outlaw state)"의 개념 및 구체적 설명은 George Quester, *What's New on Non-proliferation*(Aspen, CO.: Aspen Institute for Humanistic Studies, 1975)와 Robert E. Harkavy, "The Pariah State Syndrome," *Orbis*, Vol. 21, No. 3(Fall 1977): 623-649를 참조할 것.

²²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WMEAT) 1990*, pp. 12-17.

²³ 북한의 미사일 판매에 관한 Peter Hayes의 논문이 주목을 끈다. Peter Hayes,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0, No. 1(Summer 1993): 207-239.

무기개발체제를 다진 북한은 경제적 곤궁과 개방, 개혁을 둘러싼 강, 온 의 대립 등 국내정세의 불안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재편, 국제적 고립, 핵무장 등의 문제로 인한 남한과의 긴장관계 지속 등의 불확실한 대외관계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해외 이전을 강화하는 정책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외화 획득 등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종국적인 목적으로서 정치-전략적 의도와 목적이 함께 혹은 더 우선적인 목적으로 무기수출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의 문제에 대한 탐구가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결부해서 이러한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이 남북한 관계 및 남한의 방위 전략에 그리고 동북아 지역 정세 및 국제적 재래식 무기이전 통제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려는 것이 부차적 목적이다.

바로 이인 제2장에서 북한 무기이전의 동기와 목적 분석의 예비적 단계로 국제 행위자로서의 북한의 성격을 국제 부랑아로 규정하고 이를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북한 무기이전의 기술/산업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무기산업의 발달과정과 무기생산능력을 검토해 보고, 1980년대와 그 이후의 북한 무기이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4장은 북한의 무기이전 동기와 목적을 분석한다. 국제 부랑아의 성격을 띠면서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기이전을 강조하고 있음을 찾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골자를 요약하고, 북한 무기이전 정책의 전망과 영향을 논할 것이다.

II. 북한의 변화: “국제 부랑아(pariah state)”로

1980년대에 국제체제에서 한 행위자로서의 북한은 국제 부랑아의 모습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외교관의 밀수행위, KAL기 폭파와 같은 국제테러 행위, 최근의 NPT조약 서명국으로서 조약의무 불이행 등 수 많은 국제법과 예약을 지키지 않아 왔다. 여기에 경제적 궁핍과 불안정한 국내 권력승계 문제, 남한과의 정치, 경제적 격

무기개발체제를 다진 북한은 경제적 곤궁과 개방, 개혁을 둘러싼 강, 온 의 대립 등 국내정세의 불안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재편, 국제적 고립, 핵무장 등의 문제로 인한 남한과의 긴장관계 지속 등의 불확실한 대외관계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해외 이전을 강화하는 정책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외화 획득 등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종국적인 목적으로서 정치-전략적 의도와 목적이 함께 혹은 더 우선적인 목적으로 무기수출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의 문제에 대한 탐구가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결부해서 이러한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이 남북한 관계 및 남한의 방위 전략에 그리고 동북아 지역 정세 및 국제적 재래식 무기이전 통제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려는 것이 부차적 목적이다.

바로 이인 제2장에서 북한 무기이전의 동기와 목적 분석의 예비적 단계로 국제 행위자로서의 북한의 성격을 국제 부랑아로 규정하고 이를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북한 무기이전의 기술/산업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무기산업의 발달과정과 무기생산능력을 검토해 보고, 1980년대와 그 이후의 북한 무기이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4장은 북한의 무기이전 동기와 목적을 분석한다. 국제 부랑아의 성격을 띠면서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기이전을 강조하고 있음을 찾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골자를 요약하고, 북한 무기이전 정책의 전망과 영향을 논할 것이다.

II. 북한의 변화: “국제 부랑아(pariah state)”로

1980년대에 국제체제에서 한 행위자로서의 북한은 국제 부랑아의 모습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외교관의 밀수행위, KAL기 폭파와 같은 국제테러 행위, 최근의 NPT조약 서명국으로서 조약의무 불이행 등 수 많은 국제법과 예약을 지키지 않아 왔다. 여기에 경제적 궁핍과 불안정한 국내 권력승계 문제, 남한과의 정치, 경제적 격

차의 확대, 동맹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소원, 고립을 촉진하는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 등이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생존 전략에 몰두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국내외정세는 북한을 국제 부랑아로 몰아가고 있다.

먼저 국제 부랑아라 하면 2차대전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대만, 그리고 한국(1980년대 부랑아 이미지 점차 불식)의 예가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극단적인 외교적 고립과 범세계적으로 알려진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불명예는 경제적인 지위나 경제체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얻게 된 것이다. 국제 부랑아 국가들은 적대적인 이웃국가와의 재래식 전쟁능력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속에서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강대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은 약화, 쇠퇴 혹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고 나아가 재래식 무기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재래 군사력에 압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균형자(equalizer)로 핵무기 보유에 관심을 보이거나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²⁴

로버트 하카비(Robert E. Harkavy) 교수는 부랑아 국가를 아래에 열거한 특성(반드시 전부는 아님)을 보이는 국가로 정의한다. 첫째, 후원자 강대국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적대적인 국가들로 둘러싸인 약속국이다. 둘째, 부랑아 국가는 그 기원과 정통성이 의문시된다. 국경문제, 국가의 내부분열, 혹은 민족 자결, 인종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때문에 현재의 국가적 지위가 문제시 되는 국가들이다. 셋째, 객관적으로 빈약한 외교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서 주요 강대국으로부터 좋은 동맹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부랑아 국가는 과거에 맺은 동맹관계의 모멘텀이나 신용 혹은 색바랜 정서적 유대 혹은 전략적 군사기지의 가용성과 같은 객관적 요소 등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불안정하고 대단히 제한된 해외 무기공급원을 가지고 있고 자체무기 수요의 상당부분을 제공할만큼 기술, 산업 능력도 없는 국가이다. 또한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무기제공을 거부당하게 되면 쉽게 위기에 빠져버릴만큼 취약한 무기조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강대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

²⁴ Robert E. Harkavy, "The Pariah State Syndrome," p. 624.

이다. 요약하면 부랑아 국가는 자신의 운명을 한계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로, 중립을 지키거나 비동맹을 추구하며 유화책을 쓴다고 해서 안보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음을 물론 믿을 만한 강대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약소국이다.²⁵

이러한 부랑아 국가들의 국제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도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안보측면에서 항상 위협과 위기속에서 자기 생존을 위한 방책 강구에 몰두하고 있는 부랑아 국가들은 균형자로 사용하기 위한 핵무기 획득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거의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진 부랑아 국가에게 재래 군사력의 균형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항구적이며 평화적인 해결책이 요원하거나 거의 나타나리라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핵무기 획득의 전략적 이유는 뚜렷하게 대두하게 된다. 국제 부랑아 국가에게 항구적인 위협과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유일의 가능한 길은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이다.²⁶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부랑아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소외된 자신들의 입장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즉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랑아 국가는 다른 부랑아 국가와 연대를 맺는 것은 물론—— 예로,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및 한국과 대만—— 같은 협내의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려 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는 온건한 아프리카 정권들과 데탕트를 모색했으며, 이스라엘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쿠르디스탄, 이란, 이디오피아에서 약한 카드를 사용했다. 또한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과 연계를 쌓으려 했으며 남아프리카는 천연 우라늄 판매와 이란의 농축시설 투자를 포함한 핵유대를 이란과 구축하려 했다.²⁷

이외에도 부랑아 국가간 관계(interpariah relationships)는 군사적 협력을 도모하고 경제적 봉쇄와 보이콧에 대비한 무역 탈출구(trade outlet)를 제공한다. 군사분야에 있어서 부랑아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이전이나 공동생산을 위한 투자, 전략적 기지 제공과 군사 주둔

²⁵ Ibid., p. 627.

²⁶ Ibid., pp. 640-644.

²⁷ Ibid., pp. 644-645.

지원, 그리고 핵기술 개발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스라엘의 남아프리카와 대만과의 무기 및 무기기술(핵 혹은 재래식 군사부문에서) 이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대 남아프리카 미사일 초계 보우트의 판매, 남아프리카의 대 이스라엘 무기산업에의 투자,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간의 핵기술 개발 협력, 이스라엘의 대대만 샤프리(Shafir) 미사일 및 최근의 Kfir-C7 전투기 판매, 남아프리카의 대대만 천연 우라늄 판매 등— 경제분야에서도 이들간에 뚜렷한 경제교류의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²⁸

이와 같은 국제 부랑아의 정의와 이들의 공통된 행동 양태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 국제 부랑아의 일원이 되었다는 주장이 근거를 가지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위의 5가지 부랑아 국가의 요건을 완전하게는 아닐 지라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 2200만의 약소국으로서 북한은 전통적인 중국과 소련/러시아로부터의 독자노선 추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최근 체제적 혼란에 빠진 러시아와 근대화를 위한 국내경제 부흥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 장기간의 폐쇄경제, 테러 수출국으로의 낙인, 피폐한 국내경제 등으로 외교적 지렛대를 거의 상실한 처지에 있다. 지정학적 위치가 전통 우방국의 군사(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중간 기착지와 항공이월권의 제공 등)적 관심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경제적 파트너의 가치는 거의 상실한 처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사회에서 존립의 정통성이 허약했던 북한은 안보를 위한 무기의 대부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구입해 왔으며 이 두 전통 맹방이 무기 공급(주요 고기술 무기)을 중단할 경우 심각한 안보위기에 빠질 수 있다. 불문가지의 사실로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과 대치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의 한, 미, 일의 강한 안보결속과 미, 일의 경제제재와 제한적 경제교류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무엇보다도 부랑아 국가의 가장 특징적 행동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열정으로 볼 때 북한은 체제생존과 고립 탈피의 절대적 수단으로 취한

²⁸ Ibid., pp. 645-647 and SIPRI, *SIPRI Yearbook 1992*, p. 348.

핵선택은 전형적인 부랑아 국가임을 증명할만 한 것으로 간주된다.²⁹

뿐만아니라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사한 부랑아 국가나 부랑아적 성격의 국가들과 교류를 유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의 적극적 접촉 시도나 최근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논의 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이 국제 및 지역체제에 도전적인 이란,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등과 무기이전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도 부랑아 국가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북한의 무기산업과 최근 무기이전 현황

1. 북한의 무기산업

최근 북한이 국제 부랑아 국가로 변모함으로써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은 부랑아 국가의 특징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국제 부랑아 국가로서의 북한이 얼마만큼의 무기산업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무기 및 무기체계를 공급했는가를 파악한다.³⁰ 즉 북한의 무기가 특정의 지역에 편중 수출되는가, 특정의 무기 및 무기체계가 집중적으로 수출되는가, 수출되는 무기가 주요 무기인가 아닌가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무기산업과 무기이전 현황에 대한 검토는 다음 장에서 다룰 북한 무기이전의 동기와 목적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연구이다.

북한은 이념적 통치의 기초인 주체사상을 실천하는 정책으로서의 국방/산업 병진정책에 따라 무기산업을 발전시켰고 1970년대 토착

²⁹ 북한의 핵문제 특히 그 저의와 동기는 Tae Woo Kim, "South Korea's Nuclear Dilemmas," *Korea & World Affairs*, Vol. 16, No. 2 (Summer 1992); 김민석, 김태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실상과 저의,"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4호, 1991년 여름; 김태우, "한반도 핵문제와 동북아 신질서," 북한연구, 제3권 제2호, 1992년 여름에서 잘 분석되어 있다.

³⁰ 무기생산 능력이 높은 국가가 반드시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무기 생산기술 및 산업능력이 낮거나 없는 국가도 무기의 재수출 (retransfers)을 많이 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무기의 재수출에 대해서는 Chritian Catrina, *Arms Transfers and Dependence* (New York: Taylor & Francis, 1988), pp. 115-123.

핵선택은 전형적인 부랑아 국가임을 증명할만 한 것으로 간주된다.²⁹

뿐만아니라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사한 부랑아 국가나 부랑아적 성격의 국가들과 교류를 유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의 적극적 접촉 시도나 최근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논의 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이 국제 및 지역체제에 도전적인 이란,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등과 무기이전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도 부랑아 국가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북한의 무기산업과 최근 무기이전 현황

1. 북한의 무기산업

최근 북한이 국제 부랑아 국가로 변모함으로써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은 부랑아 국가의 특징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국제 부랑아 국가로서의 북한이 얼마만큼의 무기산업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무기 및 무기체계를 공급했는가를 파악한다.³⁰ 즉 북한의 무기가 특정의 지역에 편중 수출되는가, 특정의 무기 및 무기체계가 집중적으로 수출되는가, 수출되는 무기가 주요 무기인가 아닌가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무기산업과 무기이전 현황에 대한 검토는 다음 장에서 다룰 북한 무기이전의 동기와 목적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연구이다.

북한은 이념적 통치의 기초인 주체사상을 실천하는 정책으로서의 국방/산업 병진정책에 따라 무기산업을 발전시켰고 1970년대 토착

²⁹ 북한의 핵문제 특히 그 저의와 동기는 Tae Woo Kim, "South Korea's Nuclear Dilemmas," *Korea & World Affairs*, Vol. 16, No. 2(Summer 1992); 김민석, 김태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실상과 저의,"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4호, 1991년 여름; 김태우, "한반도 핵문제와 동북아 신질서," 북한연구, 제3권 제2호, 1992년 여름에서 잘 분석되어 있다.

³⁰ 무기생산 능력이 높은 국가가 반드시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무기 생산기술 및 산업능력이 낮거나 없는 국가도 무기의 재수출(retransfers)을 많이 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무기의 재수출에 대해서는 Chritian Catrina, *Arms Transfers and Dependence*(New York: Taylor & Francis, 1988), pp. 115-123.

무기생산 체제를 확립하여 무기판매를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제적 주체인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룩하고자 한 것이다.³¹ 1962년 4대군사노선의 채택으로 시작한 1960년대의 자립경제와 자위국방 건설의 병진정책과 함께 북한의 무기산업은 본격화 되었다.³² 그러나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아르헨티나와 함께 제3세계 국가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생산국가였었다.³³ 북한이 주요 무기생산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해방직후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하면서 무기산업을 일으킬 구상에 따라 일제시대의 육군조병창(평양 소재)과 흥남의 화학공장 등 30여개의 병기공장을 복구하였으며, 무력남침을 준비하면서 전쟁물자 생산을 위한 국영기업 복구에 주력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후에도 북한당국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을 수립, 중공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군수산업 복구에 주력하였다. 1950년대 말에도 중공업 중심의 정책은 계속되어 1958년 65호공장(7.62mm AK 소총 생산공장)을 자강도에 건설하는 등 19개의 병기공장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은 1960년대 이전에 무기산업의 기반을 다졌다.³⁴

196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무기산업은 소련과 중국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면허생산 및 모방개발에 주력한 결과 무기체계의 독자적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소화기를 자체생산하고 박격포

³¹ 국방에서 자위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건설의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즉 군사기술 원조 및 군사 지원을 외국 특히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받지 않으므로써 군사적 예속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함으로써 경제적 예속 또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리*(서울: 백산서당, 1988), pp. 136-137.

³² 경제 및 국방 병진정책에 대해서는 정용관, "북한 국방정책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연구," *북한 연구*, 제2권 제3호, 1991년 가을호: 182-204 참조할 것.

³³ Mich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Arms Transfers to the Third World, 1971-85*(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117.

³⁴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산업은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88)과 장명순, "북한의 군편제와 무기체계," *북한 연구*, 제3권 제3호, 1992년 가을호: 79-107; 최성빈,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북한 연구*, 제3권 제3호, 1992년 가을호: 108-124를 주로 참고한 것임

(82mm 및 120mm), 무반동 포(82mm B-10), 방사포(발사관 수 12개의 107mm), 소형어뢰정(P-4, P-6) 및 로켓트(40mm RPG-2) 등의 생산체계를 갖춘 것이 이때였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중, 소로부터 무기 및 무기생산기술을 도입하면서 4대군사노선에 따른 획기적인 군사력 증강조치를 취함으로써 무기산업과 군사과학기술을 크게 확장시켰다.

계속된 경제와 국방 건설의 병진정책에 따른 무기산업의 확장으로 1970년대의 북한의 무기산업은 북한형 중화기와 주요 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의 무기산업 능력은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의 지상무기와 잠수정, 고속정 등의 전투함정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주목할 것은 유도무기(AT-3, SA-7 및 SA-2) 생산체제를 1970년대말에 갖추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해군무기에 있어서도 북한은 소련제 KOMAR급 유도탄경비정과 중공의 기술 지원으로 소련이 설계한 R급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항공분야를 제외한 전분야에서 북한은 무기 양산체제를 확립했고 더우기 자체개발 능력을 더욱 공고화한 시기가 1970년대였다.

북한의 무기산업에 있어서 1980년대는 실로 거의 완성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현재 중, 하위급 무기는 완전 자급의 단계—— 화포는 100%, 전차 및 장갑차는 90%(특수장갑, 정밀기기 제외)——에 들어섰고, 제1, 2선의 무기생산국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일부 고도정밀 무기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요 무기의 전부를 독자 혹은 면허 생산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제3선의 무기생산국중 선두그룹을 점령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에 치중하면서 고도정밀 무기생산에 집중하고 있다.³⁵

최근 1980년대의 북한의 무기산업은 고도정밀 무기를 선별, 집중 개발 생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유도무기 및 항공기 분야에 집중적인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유도무기의 경우 AT-3(Sagger) 대전차 유도탄, SA-7 지대공 유도탄을 조립생산하게 되었고, 1976년 이집트로부터 도입한 소련제 Scud-B 미사일을 1980년대 중반에는 모방 생산한 후 사정거리를 500km로 확장한 북한

³⁵ 최성민,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p. 112.

형 Scud-B를 생산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능을 개선한 북한의 독자형 노동1호를 생산 수출하고 있다.³⁶ 항공기의 경우에도 소련제 MI-2 헬기, MIG-21 전투기, Yak-18 훈련기를 조립 생산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표 1 참조).

표 1. 북한의 무기산업 발달과정

시 대	내 용
유1950년대 기반 조성기 (소련제 무기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도발을 위한 2대년 단기경제계획과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기로 1차 5개년 계획 기간 - 8.15직후, 군수산업 관련기관 및 생산시설의 국화 및 공장복구 - 6.25직전, 소련의 원조로 소량의 소총 탄약생산 - 6.25직후, 소총과 탄약의 자체생산 - 1958년 AK자동소총 생산, 북한 기본화기로 사용
1960년대 소화기 중심 확장기 (모방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7개년 계획기간 - 군수산업의 기반이 크게 조성 - 소화기의 자체생산 및 박격포, 무반동총, 방사포 로켓트까지 자체생산 - 전반기 연대급 작전가능한 병기생산, 후반기는 사단급 작전가능한 병기생산
1970년대 중화기 중심 확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년 경제계획기간 - 기술혁명과 함께 서방기술 도입 - 중장비 생산에 박차 - 북한형 병기개발에 주력

³⁶ 최근의 북한 미사일 개발, 생산 및 수출에 대해서는 Peter Hayes,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5, No. 1 (Summer 1993); 207-239; *Korea Herald*, "Report on N.K. Missile not Confirmed," September 17, 1993; *조선일보*, "북한 미사일," 1993. 9. 16; *중앙일보*, "북 미사일 노동1호: 북경, 대만까지 사정권," 1993. 9. 16 참조할 것.

(북한형 개발 생산)	- 중공제 개조 M-1973 장갑차, K-61 수륙양용장갑차 생산
	- T-59 전차 모방생산
	- '78년 소련 T-55 전차의 개량형인 T-62 양산
	- '72년 고속정, 구축함 건조, 1974년 잠수함 건조
	- 항공기 및 유도무기분야, 부분적 기술개조 및 부품제작
1980년대 전환기 (신형무기 생산/도입)	- 양적 확산에서 질적 개선에 주력
	- 항공기 및 유도무기 개발계획의 적극화

자료: 전략기획(육군대학, 1988), p. 485.

특히 1990년대초에 주목을 끄는 것은 완전 독자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이다(표 2 참조). 이는 북한이 정밀무기 자체개발, 생산을 위한 집중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79년 중반부터 미사일 자체 개발을 시작했다. 1984년 소련제 Scud-B미사일을 소량 복제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아 1986년 Scud-B 미사일을 100% 독자적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89년에는 Scud-B를 개량한 Scud-C 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91년 사정거리 1,000-1,300km의 Scud-D 혹은 노동1호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보도에 의하면 1995년에는 사정거리 1,000-2,000km의 Scud-E 혹은 노동-2호의 시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발전된 북한의 무기산업은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건설하려는 산업 정책에 대한 북한 지도층의 의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무기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결과이다. 전략적으로 무기산업의 특정한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집중계획(concentrated program)'은 미사일 개발 생산에 성공적 결과를 낳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표 2.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

	DF-61	스커드-B (R-17 E)	스커드-A (개량형)	스커드-B (개량형)	스커드-C (개량형)	스커드-D (로동1호)	스커드-E (로동2호)
사정거리 (km)	600	280-300	280-300	320-340	500	1,000- 1,300	1,500- 2,000
탄 두 (kg)	1,000	1,000	1,000	1,000	700-800	800	?
생산연도		1981	1984	1985	1989	1993	1995

자료: 미의회 보고서, 1993.

2. 최근의 무기이전 현황

북한의 무기산업이 자위국방의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과 병행해서 북한은 국민총생산의 상당부분을 무기의 해외이전으로 벌어들였다. 1990년대초 현재 북한은 세계 20대, 개발도상국중 5대 무기수출국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이 수출한 무기 및 무기체계의 대부분은 소련이 설계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병기, 소형 무기, 포, 소형 함정 등이었다. 1970년대에도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잠수함이나 전투기와 같은 다소의 주요 무기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었으나 수출 무기의 대부분은 국내생산한 기본적인 소화기들이었고 일부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공급된 무기의 재수출이었다.

37

1970년대말까지 북한은 무기수출의 여력이 충분하지는 못했으나 전세계에 걸쳐 정부와 게릴라 운동단체 어디에나 군사전문기술, 소

³⁷ 북한의 수출무기 대부분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의 재수출이라는 사실로 북한의 무기수출의 의미를 가볍게 보는 관찰이 있다. Michael Brzoska, "Other Countries: The Smaller Arms Producers," in Mich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eds., *Arms Produc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Taylor & Francis, 1986), pp. 260-264.

형무기, 여분의 포와 해군장비를 공급하는 데 전력을 투구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의 거두지는 못했다. 제3세계국가들의 무기 대부분이 국제 무기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 북한은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무기를 공급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SIPRI의 1971-1985 제3세계 무기이전국의 실태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 지역, 특히 짐바브웨와 자이레에 집중적으로 무기를 제공했다(표 3참조). 기타 마다스카르, 탄자니아, 베닌, 이란, 구아나, 니카라구아 등이 북한 무기의 주요 고객들이었다.

표 3. 북한의 제3세계 무기공급 현황, 1971-1985

무기명	국가명
BRDM-1	SC Zimbabwe(s)
BRDM-2	SC Zimbabwe(s)
BTR-152	APC Zimbabwe(s)
BTR-60P	APC Zaire(s)
D-30 122mm	TH Zaire(s)
F-6	Fighter Iran(s)
M-1938 122mm	TG Zaire(s)
M-46 130mm	TG Madagascar(s)
MiG-17	Fighter Madagascar(s)
MiG-21	Fighter Madagascar(s)
Nampo Class	LC Madagascar(s); Tanzania
P-4 Class	FAC Benin(s)
P-4 Type	FAC Zaire
SA-2	SAM Iran(s)
Sin Hung Class	FAC Guyana; Nicaragua
T-55	MBT Zimbabwe(s)
T-62	MBT Iran(s)
Type-531	APC Zaire(s)

Type-59/1 130mm	TG	Madagascar(s)
Type-60 122mm	TG	Madagascar(s)

SC	:	APC	:
TG	:	TH	:
Fighter	:	LC	:
FAC	:	SAM	:
MBT	:		

자료: Mich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Arms Transfers to The Third World 1971-8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301

이러한 북한의 대 아프리카 무기수출 편중현상은 1980년대에 들어 오면서 점차 약화되고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전반기의 북한 무기수출 동향을 분석해 보면 전체 무기수출의 94%가 중동지역으로 이전했다(대중동 무기수출의 존도 1위 국가인 파키스탄은 96%를, 3위국은 중국으로 85%를 중동지역에 공급했다). 특히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란의 주요 무기공급국이었고 현재도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및 무기기술과 부품의 주요 시장은 이란이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산 무기에 맞는 부품을 생산, 제공하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미국 등 서구국들도 대중동 수출비중이 높음)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중동지역이 세계시장의 4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중동 수출비중이 94%라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 분석을 할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무기수출 총액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최근 개발도상국(중국 포함)중에서 3위를 점하고 있고(89년 통계), 세계 20대(1989년 세계 11위) 무기수출국중의 하나다.³⁹ 1980년대 전반기 동안에는 년 평균 5억

³⁸ 한남성, "제3세계 국가의 무기생산과 수출추세," 한국국방연구원, *무기체계와 군수관리*, 국방강론, 제2집 3호, 1990, pp. 236-237.

³⁹ 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p. 17.

불 정도를 수출했었고, 후반기에는 년 평균 4억불을 해외에 이전했다. 1980년대의 최고 기록은 1982년 약 7억 9,000만불을, 최저는 1983년 2억 7,000만불의 무기 및 무기체계를 판매했다(1989년 경상가격). 더욱 의미있는 것은 북한의 무역 규모에 비해 무기수출액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표 4에서 보듯이 1982년 한때는 무기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37%를 차지할만큼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분야로 인식 되고 있다. 1980년대 동안 무기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3%나 되고 있어 남한의 평균 1.2%와 비교하여 불때 북한에게 무기수출로 인한 외화의 획득이 얼마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4. 북한의 무기이전 및 총거래액, 1979-1989

년 도	무기수출	총수출	무기수출/총수출
1979	145	2122	6.8%
1980	324	NA	NA
1981	672	1895	35.5
1982	789	2147	36.8
1983	268	1703	15.7
1984	674	1876	35.9
1985	398	1571	25.4
1986	277	1887	14.7
1987	430	NA	NA
1988	489	2498	19.6
1989	400	NA	NA

자료: ACDA, WMEAT, 1990, p. 111.

마지막으로 북한의 최근 무기이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가 미사일 이전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북한의 1993년

현재 다양한 미사일을 자체 개발,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중동의 주요 고객 국가들—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 등—에게 미사일은 물론 미사일 생산 및 조립 기술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산 미사일의 제일의 고객은 이란이다.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중에 북한과 미사일 기술 상호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란은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은 Scud-B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1993년 북한을 방문한 이란의 대표단은 부품조립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한다고 알려졌다.⁴⁰ 미국 하원 외무위 국제안보, 국제기구 및 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1991년에 이미 이란은 북한의 Scud-C 미사일 100여기와 미사일 기술을 구매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Scud-B 미사일은 이미 1987년 7월부터 1988년 2월까지 100기가 이란에 인도된 바 있다.⁴¹ 이중 약 77기가 이란-이라크전서 발사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시 1993년초 미국 국방성 관리는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1,000km 사정거리의 노동 1호(Scud-D)를 “1993년말까지 분명히” 구입하리라고 믿고 있다(인용은 원본의 것).⁴²

북한은 다른 중동 국가들,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등에도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기술을 공급했다. 한국의 연합통신은 북한이 1988년 100기 이상의 Scud 미사일을 이라크에 판매했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시리아와는 1991년 Scud-C 미사일 100기와 발사기 20대를 이전하기로 계약한 바 있으며 이중 이미 60기의 미사일과 12대의 발사기를 전달했다.⁴³ 리비아 역시 북한으로부터 Scud-C 미사일을 구매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⁴⁴ 또한 북한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삼국에 미사일 생산설비를 수출했거나 조립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⁴⁰ Douglas Jehl, "Iran Said Acquiring N.K. Missiles," *Korea Herald*, April 9, 1993.

⁴¹ 조선일보, "북한 미사일," 1993. 9. 16.

⁴² Douglas Jehl, "Iran Said Acquiring N.K. Missiles," *Korea Herald*, April 9, 1993.

⁴³ SIPRI, *SIPRI Yearbook 1992*, p. 284 와 중앙일보, "북 미사일 노동 1호: 북경, 대만까지 사정권," 1993. 9. 16.

⁴⁴ 조선일보, "북한 미사일," 1993. 9. 16.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이들 국가들에 미사일 조립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이유는 서방국가들에 노출되지 않고 더 많은 미사일 부품들을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미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래니 너시 박사는 보고 있다.⁴⁵

IV. 북한 무기이전의 동기와 목적

무기이전을 국가 목적의 산물로 보는 입장에서⁴⁶ 북한의 무기이전의 동기와 목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먼저 무기이전 국가의 형태를 분류, 관찰해 보고 다음에 무기수출 선진국과 제3세계의 무기이전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제, 정치-군사적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북한의 무기이전의 목적 분석의 준거로 삼기 위함이다.

무기를 판매 혹은 무상공여할 때 추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불분가지의 사실이다. 어떤 국가는 정치적인 목적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다. 폐권적 무기이전 국가로 불리는 미국과 소련이 그런 국가들이다. 미국과 소련은 다른 이익 보다도 무기 및 무기체계를 수출 또는 무상공여함으로써 수요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와 그 수요국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자국은 물론 수요국의 안보 특히 군사적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공급한다. 두번째 타입은 경제적/산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는 무기이전 국가가 있다. 이 범주에는 대부분의 서구 무기이전국들이 포함된다.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태리 등 제2선의 무기생산 및 수출국들이다. 제3선의 후발 개발도상의 무기이전국들도 거의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주요 제3세계 무기이전국들, 중국,

⁴⁵ 조선일보, "북, 노동 1호 리비아 판매 추진," 1993. 7. 20; Douglas Jehl, "Iran Said Acquiring N.K. Missiles," *Korea Herald*, April 9, 1993.

⁴⁶ 이는 SIPRI의 입장이다. Edward A. Kolodziej, "Arms Transfers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Interdependence of Independence," in Stephanie G. Neuman and Robert E. Harkavy, eds., *Arms Transfer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Praeger, 1979) p. 3.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이들 국가들에 미사일 조립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이유는 서방국가들에 노출되지 않고 더 많은 미사일 부품들을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미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래니 너시 박사는 보고 있다.⁴⁵

IV. 북한 무기이전의 동기와 목적

무기이전을 국가 목적의 산물로 보는 입장에서⁴⁶ 북한의 무기이전의 동기와 목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먼저 무기이전 국가의 형태를 분류, 관찰해 보고 다음에 무기수출 선진국과 제3세계의 무기이전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제, 정치-군사적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북한의 무기이전의 목적 분석의 준거로 삼기 위함이다.

무기를 판매 혹은 무상공여할 때 추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불분가지의 사실이다. 어떤 국가는 정치적인 목적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다. 폐권적 무기이전 국가로 불리는 미국과 소련이 그런 국가들이다. 미국과 소련은 다른 이익 보다도 무기 및 무기체계를 수출 또는 무상공여함으로써 수요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와 그 수요국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자국은 물론 수요국의 안보 특히 군사적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공급한다. 두번째 타입은 경제적/산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는 무기이전 국가가 있다. 이 범주에는 대부분의 서구 무기이전국들이 포함된다.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태리 등 제2선의 무기생산 및 수출국들이다. 제3선의 후발 개발도상의 무기이전국들도 거의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주요 제3세계 무기이전국들, 중국,

⁴⁵ 조선일보, "북, 노동 1호 리비아 판매 추진," 1993. 7. 20; Douglas Jehl, "Iran Said Acquiring N.K. Missiles," *Korea Herald*, April 9, 1993.

⁴⁶ 이는 SIPRI의 입장이다. Edward A. Kolodziej, "Arms Transfers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Interdependence of Independence," in Stephanie G. Neuman and Robert E. Harkavy, eds., *Arms Transfer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Praeger, 1979) p. 3.

이스라엘, 북한, 브라질, 유고슬라비아, 남한, 대만, 남아프리카, 이집트, 칠레 등이 주로 상업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기를 해외에 판매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과 같은 제한적 무기이전 국가가 있다. 이부류의 국가들은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의 국가들(테러리스트들에게는 물론)에게는 전쟁물자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따른다.⁴⁷

위의 무기이전 국가의 분류에서 암시되어 있다시피 무기이전의 주요 목적 혹은 이익에는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전략적) 목적 그리고 경제적 목적 크게 세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⁴⁸ 그러나 이들의 목적들이 상호 중복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특정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가. 정치적 목적 혹은 이익

- 동맹국과 우방에 대한 지원: 무기이전을 통해서 우방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공급국과 일치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려 한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직접적인 군사개입보다 값이 싸다.
- 상징성: 무기이전은 그 상징적 중요성 때문에 비록 그 무기이전의 군사적 중요성이 별것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공약을 하는 것으로 혹은 우호관계를 강

⁴⁷ SIPRI, *The Arms Trade with the Third World* (London: Paul Elek, 1971).

⁴⁸ Christian Catrina, *Arms Transfers and Dependence* (New York: Taylor & Francis, 1988), p. 71. 무기이전의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Michael T. Klare, "Political Economy of Arms Sales," *Economic Forum*, Vol. 13, No. 1 (Summer 1982): 33-46; Andrew J. Pierre, *The Global Politics of Arms Sal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pp. 14-38; Geoffrey Kemp, "The Arms Transfer Phenomenon," in Andrew J. Pierre, ed., *Arms Transfer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9); Keith Klause, "International Trade in Arms," *Canad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Ground Paper*, No. 28 (March 1989), pp. 4-5를 참조할 것.

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영향력**: 무기이전은 공급국에게 영향력을 제공한다: 이 영향력은 대체로 외교, 안보정책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것이거나 한 이슈에 한정된 구체적인 것이다. 영향력은 우호 협력적인 여건에서 매일 매일의 접촉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지렛대**: 무기공급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급국은 구체적 정책 이슈에 인팩트를 가할 수 있다. 영향력과 비교하여 지렛대는 손익 평가(cost-benefit evaluation)에 근거하여 작용한다. 그리고 그 여건은 영향력 행사시 보다 덜 협력적이다.

나. 군사적 목적 혹은 이익

- **군사기지 사용, 시설 이용, 및 이월권에 대한 댓가**: 무기이전 특히 우호적인 조건하의 무기이전은 공급국이 해외 시설이나 군사기지에 대한 항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주요 교환의 수단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비핵확산의 전략**: 무기이전은 때로 심각하게 핵선택을 고려할 때의 주 동기가 되는 수요국 정부의 안보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 **전투장비의 시험**: 전투환경에서의 무기 사용은 공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유용성은 다른 환경, 전술, 그리고 운용적, 기술적 적성의 수준에 의해 감소된다.

다. 경제적 목적 혹은 이익

- **국제 수지균형**: 다른 수출과 마찬가지로 무기판매도 수지균형을 호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이득을 얻는 것은 판매조건과 연계되어 있다. 현금이나 시장가격 신용판매가 우호적 조건으로 안보지원(security assistance)을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
- **고용 증대**: 무기 수출은 토착 무기조달과 같이 방위산업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비록 고용증대의 효과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적다하더라도 방위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
- **단위 비용 절감**: 국내 소요분 이외에 수출을 함으로써 단위당 생산가격을 줄일 수 있다.
- **방위산업 기반**: 무기수출은 생산율을 고르게 하고, 생산라인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국내소비가 감소한 때에 군수기업의 사업상 어려움을 덜어 준다. 수출함으로써 더 장기간 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고 이는 단위당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한다(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고정가격의산).
- **군사판매와 상업 판매의 연계**: 무기이전에 의해서 협력적인 정부간 관계가 조성되면 공급국은 수요국을 비군사적인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자원공급의 안정적 확보**: 바터 협정이나 구체적인 대응구매(offset)협정은 무기공급국에게 자원, 특히 방위산업에 필수적이고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자원의 공급에 있어서 추가적인 안보를 제공해 준다.

위의 다양한 목적들이 함께 동시에 추구되기 때문에 무기이전

사례들마다 어느 특정의 목적을 다른 목적들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무기의 이동이 있을 당시의 공급국의 무기수출 및 공여의 관행, 수요국과의 관계, 국내외 환경과 정책 등에 견주어 우선적인 목적을 판별해 내는 것은 가능하다.

1. 경제/산업적 목적

제3세계 국가들이 무기산업을 시작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이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경우처럼 무기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돈벌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기산업을 시작하는 주된 동기는 정치적이다. 즉 칠레,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의 예에서 보듯이 실질적 혹은 예상되는 금수조치(embargos)에 대항하거나 아르헨티나와 인도의 경우처럼 선진 무기 수출국으로부터의 정치-군사적 독립을 위해서 자체 무기생산을 시도한다. 말하자면 상업적, 경제적 고려는 이차적이고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기 산업에 투자한다.⁴⁹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제3세계의 일반적 과정을 답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방 및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은 무기산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초기에 북한의 무기산업은 무기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 철저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책의 차원에서 실현한다는 의도아래 경제의 자립과 병행해서 국방의 자위를 실천하려는 데서 모방, 면허, 및 자체개발 단계를 거치는 무기산업을 성장시켜 온 것이다. 이는 곧 군사부문에 있어서 중국과 소련의 지원과 간섭을 벗어나 독자적 군사 안보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장한 무기산업은 세계무기시장에의 진출 욕구를 동하게 했다.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을 시작한 1970년대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의 재수출을 중심으로 자체 생산한 기본적인 무기 및 전투장비의 판매로 점차 무기수출을 확대해 나갔다. 세계무기시장에 진출을 시작하면서 북한은 애초 정치적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독자적 무기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기수출을 확대해 나간 것

⁴⁹ Mich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Arms Transfers to the Third World, 1971-1985*, p. 112.

이다. 이는 개발도상의 무기이전 국가들의 일반적 현상이며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말하자면 북한도 무기 및 무기체계를 판매하여 생산체제를 장기간 유지시키고, 생산 무기의 단위당 비용을 줄이며, 연구 개발비용을 충당하고자 했다. 또한 무기 판매로 벌어들인 외화를 불안정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코자 했다.⁵⁰ 둘째로 북한은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안정적 자원의 확보를 꾀하고자 했다. 특히 중동지역 국가들에 무기를 공급할 때 이 목적은 주효했다. 대표적으로 이란에 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대가로 북한은 석유의 공급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¹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기 판매로 인한 외화 수입은 총 무역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정부가 무기 수출로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무기수출로 인한 외화의 가득은 대외 무역을 중시하지 않는 자급자족의 북한 경제의 특성에 비추어 경화를 버는 수단이 제한된 북한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최근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무역외 경화 수입원은 제일 조총련 단체가 음성적으로 송금하는 년 6-7억달러 다음으로 무기판매로 획득하는 년 4-5억달러가 두번째로 중요한 달러 수입원이 되고 있다.⁵² 이처럼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려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나치게 과중한 국방비 부담을 덜어 보려는 것이었다. 1960년대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정책을 채택하여 국방에서의 자위력을 증강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는 큰 피해를 입었다.⁵³ 김일성은 이러한 국방비의 부담을 줄이는 탈출구로 무기수출에

⁵⁰ Andrew L. Ross, "Full Circle: Conventional Proliferation, the International Arms Trade, and Third World Arms Exports," in Baek, Kwang-Il, Ronald D. Mclaurin, and Chung-in Moon, eds. *The Dilemma of Third World Defense Industries: Supplier Control or Recipient Autonomy?* (Boulder: Westview Press, 1989), p. 5.

⁵¹ Douglas Jehl, "Iran Said Acquiring N.K. Missiles," *Korea Herald*, April 9, 1993 and *Korea Herald*, "North Korea Missile Sale," 1992. 11. 4.

⁵² 조선일보, "조총련 자금, 북한경제 '생명선,'" 1993. 11. 3.

⁵³ 북한의 국방비 부담에 대해 김일성은 1970년 11월 2일 조선노동당

역점을 둔 것으로 믿어 진다. 게다가 1970년대말 이래 남한과의 군비경쟁은 국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기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만들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이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은 무엇인가? 국제 부랑아 북한이 총 무기수출의 20%에⁵⁴ 해당하는 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을 특별히 중동지역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이유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는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이 최근 부랑아 국가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외환 획득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군 중장 김홍래 정보본부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정거리가 1,000-2,000km인 노동1, 2호는 방위전략상 북한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수출용으로 판단된다.⁵⁵ 수출용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미국 CIA의 보고에서 노동1호의 실험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의 고객에게 과시하기 위한 무기 발표회와 같은 것이라는 분석이다.⁵⁶ 석유달러가 풍부한 이란과 같은 산유국에 미사일을 수출하려는 목적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둘째, 중동의 석유산유국들에 판매무기의 94%를 공급하고 있는 북한이 대부분의 미사일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등 중동 산유국에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현재 소비하고 있는 석유의 40%를 의존하고 있는 이 제5차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보고에서 솔직한 연설을 했다. "국방공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은 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둘째개정집부,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서울: 돌베개, 1988), pp. 286-287.

⁵⁴ 공군 중장 김홍래 정보본부장의 신문 회견. *Korea Herald*, "Report on N.K. Missile Not Confirmed," September 17, 1993.

⁵⁵ 한국일보, "북한노동1, 2호 수출용 판단," 1993. 9. 17.

⁵⁶ 발사장치가 지하(3개의 보유)가 아닌 그래서 미국의 위성관찰이 가능한 지상 발사기지인 노동에서 실험을 한 사실이다. 미하원에서 조셉 비류데즈는 이란의 시찰단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장소에 있었다고 증언함. *조선일보*, "미-러 첩보망 북한 노동1호 발사 '순금 보듯,'" 1993. 9. 10; *세계일보*, "북 미사일 노동1호 성능: 미-일 전문가 엇갈린 평가," 1993. 9. 22.

란과는 긴밀한 미사일 공급-수요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부랑아 국가의 처지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예상되는 경제제재 조치 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럴 경우 이란 등 미사일 수요국들은 북한의 무역제재 탈출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셋째, 두번째와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은 미사일과 석유를 서로 맞바꾸는 형식도 취하고 있다. 그리고 1986년 12월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으로 진 부채를 상환하는 일정을 재조정받기도 했다.⁵⁷

넷째, 미사일 판매에 적극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전 회계적자를 보상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축된 국방예산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대는 국가예산을 배정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독자 재정으로 꾸려나간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북한군은 미사일 판매를 포함한 산업기반의 주요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⁵⁸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북한이 미사일 판매를 적극 추진하는 중요 이중의 하나가 위축된 국방예산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정치-군사적 목적 혹은 이익

일반적으로 서구의 무기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제3세계 국가들은 정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무기를 이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언급된 정치적 이익들 즉 수요국의 지도자와 엘리트에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그리고 수요국의 국내외 정책을 공급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지렛대로, 혹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무기이전을 이용하는 것은 패권적 무기이전국인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 주장했다시피 주로 패권적 무기이전국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개발도상의 무기이전국들도 획득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고 실제로 그러한 국가도 있었다. 브라질과 인도는 지역과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정치적 지위와 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했었다.

⁵⁷ Peter Hayes,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p. 216.

⁵⁸ Ibid., p. 213.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위계적인 국제정치체제상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데 무기이전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들과 관계를 다변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수출을 이용했으며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기 판매를 활용한 적이 있다.⁵⁹

국제 부랑아 북한은 어떤가? 물론 1980년대 이전에는 북한은 정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무기를 판매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후 최근까지 특히 미사일 이전과 관련하여 북한의 무기를 수출하는 의도에 큰변화가 있었다. 더우기 핵무장의 문제와 병행해서 무기(특히 최근의 미사일)를 수출하는 북한의 의도가 정치적 고려쪽으로 많이 경사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이 정치적 고려를 점차 중시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념적 통치철학으로서의 주체사상과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비동맹 외교노선,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지도층의 "투쟁과 대립"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국제정세관 등이 자리잡고 있다.⁶⁰ 뿐만아니라 1980년대에 미, 소간의 신데짱뜨와 소련과 동구의 몰락, 독일의 통일 등으로 대변되는 신국제질서가 태동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응의 실패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부랑아 국가로 전락하고, 여기로부터 탈출하려는 몸부림 또한 무기이전의 목적의 추를 정치적 이익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끝으로 안보, 국제적 승인, 경제적 번영 및 정통성의 대외정책 목표⁶¹의 달성도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이전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

⁵⁹ Andrew L. Ross, "Full Circle: Conventional Proliferation, the International Arms Trade, and Third World Arms Exports," p. 6.

⁶⁰ 1992년 김일성 신년사에 나타난 국제정세관은 일관되게 변함이 없다.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제국주의자들은 냉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만 국제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상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국제정세관의 불변성을 분명히 했다. 노동신문, 1991. 1. 1. 김경용,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방향과 그 영향관계 연구," 북한연구, 제3권 제 2호, 1992년 여름호, p. 130에서 재인용함.

⁶¹ Byung-joon Ahn,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 Overview," in Jae Kyu Park, Byung Chul Koh and Tae-Hwan Kwak, eds.,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Boulder, CO.: Westview Press, 1987), p. 24. 북한 대

도록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을 구현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북한 자체의 힘의 배양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는 무기를 수출하여 경제적 힘을 기르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정치-외교적 힘도 기르고자 한 것이다. 오늘날 고도 정밀 무기와 대량파괴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들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는 곧 강대국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주요 무기 모두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이들을 타국에 이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무기이전의 능력은 중국과 소련에 대한 군사적 의존에서 탈피하고, 자주적 노선과 자치의 여지를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제3세계에 북한의 독립성 내지는 주체성을 과시하는 것이 된다.

“죽음의 상인(merchants of death)”의 시대가 아닌 2차대전 이후의 시대에 즉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이 합리적인 값을 지불하면 누구에게나 무기를 판매하는 것⁶²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적 관계가 먼저 맺어진 국가나 단체에게 무기를 이전하는 시대(말하자면 무기의 정치화 시대)에 북한의 무기도 정치적 연계를 타고 이동했다. 앞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탄자니아와 자이레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무기를 제공한 것은 제3세계에서 지도적 국가로 굴림하려는 정책에 따라 이들과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북한은 이들에게 무기를 이전한 것이다. 1980년대 중동지역 국가들에 무기판매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제3세계를 상대로한 비동맹 외교를 강화, 확대하고 전반적인 외교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무기이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에 대한 북한의 무기수출은 “사외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있지는 않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허문영,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방향 연구(서울: 통일원, 1991), pp. 328-339를 참조할 것.

⁶² H.C. Engelbrecht and F.C. Hnighen, *Merchants of Death*(New York: Dodd, Mead and Co., 1934)를 볼 것.

회주의 나라, 블록 불가담 나라를 비롯한 진보적 세계 인민들과의 친 선 협조 관계와 남남협조를 발전”(1990년 김일성 신년사)⁶³시키려는 대외 정책상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남북한의 관계에서 보면 남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대남 외교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하겠다.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부랑아 국가로서 북한은 남한이 우월한 경제적 힘과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외교력에 대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교 지렛대가 없는 마당에 무기이전은 최상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노동 미사일 발사실험 및 대중동 지역 미사일 이전의 목적을 살펴보면, 정치적 목적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목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되나, 먼저 군사적으로는 북한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남한의 미사일에 대응키 위한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효과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군사적 목적은 모두 미국과 같은 패권적 무기이전 국가에 해당하는 것들 일뿐 사실 제3세계 무기이전 국가가 다른 제3세계 국가에게 무기 판매를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기실험의 목적은 북한이 이미 성취했으리라 생각된다. 북한은 1988년에 이라크에 100기의 Scud 미사일을 판매했었다.⁶⁴ 그중 일부(77기)가 걸프전쟁에서 사용됨으로써 Scud 미사일의 실전에서 기 능에 관한 정보를 회수하여 Scud 미사일 성능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정치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북한 정부의 독립성과 김부자체제의 우월성을 국내외에 과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대량과 괴무기로서 그리고 핵탄두 탑재시 정치전략적 병기로서 자체 개발한 미사일의 보유 및 수출은 북한의 방위는 중, 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⁶³ 김경웅,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방향과 그 영향관계 연구,” *북한연구*, 제3권 제 2호, 1992년 여름호, p. 134.

⁶⁴ Peter Hayes,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p. 233.

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된다. 이는 곧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북한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노동미사일의 위력을 김부자의 주체사상과 연결하여 은연중 김부자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려 했다. 노동미사일의 생산, 판매를 통해서 북한의 자주성과 김부자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는 1992년 8월 25일 김정일의 내부교시에서 읽을 수 있다.

러시아는 의지가 없고 중국도 점점 의지를 잃어 가고 있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 첫째는 정신적 원자폭탄, 즉 김일성 주체사상인 국가주권에서 자위, 군사에서 자위, 민족자결 사상이다. 두번째는 현재 제조중인 원폭과 "노동3호"이다.⁶⁵

둘째, 대외 관계의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남한과는 물론 미국, 일본 나아가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대남 정치협상시 어떤 양보를 얻어내거나, 미국, 일본과의 수교문제 등을 협상할 때 "엄포"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제1차 미국과의 핵협상 10여일전 5월 29일에 노동미사일을 실험함). 보유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외교력과 비례한다는 의미에서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1호(2호는 개발중)를 보유한 북한은 특히 제3세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미사일의 대이란, 이라크, 리비아 및 시리아 이전 이익은 자명하다.

셋째, 국제적 고립 탈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대립과 갈등으로 뒤엉킨 냉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타협과 협력의 신국제 질서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나 지역 분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하급 무기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늘어날 것인 바 그렇게 되면 미사일을 수출하여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교류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중, 소로부터의 지원 중단 등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를 보상하

⁶⁵ 이제호, "최대거리 1,500km... 일전역-중무한까지 사정권," 세계일보, 1993. 1. 28.

는 차원에서 북한은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비롯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에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과 이스라엘간의 성과 없는 일시적 접근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이를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 중동국가에 노동 1호 미사일을 수출하면 이스라엘의 안보가 치명적으로 위협받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노동미사일을 이들 국가들에 팔지 않는 대가로 북한에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시하였고 이에 북한은 1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금광개발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고 보도되고 있다.⁶⁶ 이스라엘과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이익 즉 이스라엘로부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광개발을 위한 투자를 얻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랑아 국가들의 특성적 행위라 할 수 있는 같은 부랑아 국가와의 관계 수립내지는 유대 강화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며, 현재의 경제적 궁핍을 극복하고 있을 수 있는 경제적 봉쇄를 타개하기 위한 사전안전 장치 즉 안보는 물론 무역에서의 탈출구(outlet)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믿어 진다.

끝으로 북한은 미사일을 수출함으로써 지역 강대국의 이미지를 개발도상국사이에 특히 중동지역에 심어두고자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국외에 제공하는 중거리 미사일 그 자체가 강대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것이다.

IV. 결론: 북한 무기이전정책의 전망과 영향

무기를 이전하는 국가의 목적은 다양하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 혹은 이익이 그들이다. 일반적으로 무기를 판매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 즉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을 증대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다지며, 무기이전과 다른 상업적 거래와의 연계,

⁶⁶ 중앙일보, "북한, 이스라엘, 현안 해결위한 일시 접근," 1993. 7. 26; 신상인, "'동상이몽'으로 끝난 '이' 북한 접촉," 세계일보, 1993. 8. 18; 김진홍, "이스라엘외무 왜 북한일까," 국민일보, 1993. 6. 21.

는 차원에서 북한은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비롯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에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과 이스라엘간의 성과 없는 일시적 접근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이를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 중동국가에 노동 1호 미사일을 수출하면 이스라엘의 안보가 치명적으로 위협받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노동미사일을 이들 국가들에 팔지 않는 대가로 북한에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시하였고 이에 북한은 1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금광개발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고 보도되고 있다.⁶⁶ 이스라엘과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이익 즉 이스라엘로부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광개발을 위한 투자를 얻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랑아 국가들의 특성적 행위라 할 수 있는 같은 부랑아 국가와의 관계 수립내지는 유대 강화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며, 현재의 경제적 궁핍을 극복하고 있을 수 있는 경제적 봉쇄를 타개하기 위한 사전안전 장치 즉 안보는 물론 무역에서의 탈출구(outlet)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믿어 진다.

끝으로 북한은 미사일을 수출함으로써 지역 강대국의 이미지를 개발도상국사이에 특히 중동지역에 심어두고자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국외에 제공하는 중거리 미사일 그 자체가 강대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것이다.

IV. 결론: 북한 무기이전정책의 전망과 영향

무기를 이전하는 국가의 목적은 다양하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 혹은 이익이 그들이다. 일반적으로 무기를 판매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 즉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을 증대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다지며, 무기이전과 다른 상업적 거래와의 연계,

⁶⁶ 중앙일보, "북한, 이스라엘, 현안 해결위한 일시 접근," 1993. 7. 26; 신상인, "'동상이몽'으로 끝난 '이' 북한 접촉," 세계일보, 1993. 8. 18; 김진홍, "이스라엘외무 왜 북한일까," 국민일보, 1993. 6. 21.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럽의 선진산업 무기이전국가들과 대부분의 제3세계 무기수출국가들의 경우에 경제적 이익이 기타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산업적 무기이전국가로 불린다.

그러나 무기이전은 일반적 상품의 거래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무기이전과 함께 안보의 이동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힘의 원천으로서의 무기 및 무기체계의 흐름은 국제체제상의 지위의 변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무기의 생산능력과 그 보유가 힘의 원천인 동시에 무기이전 자체 또한 힘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무기의 이전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 같은 패권국가들이 주로 무기이전을 통한 정치적 이익에 더 높은 중요성을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들은 패권적 무기이전 국가로 불린다.

제3세계의 무기이전국가들은 대부분 무기이전의 목적을 경제/산업적 이익 추구에 두고 있으나 점차 정치적 목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무기산업을 일으킬 때의 중심적 동기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군사적 수입대체(military import substitution) 전략에 따라 군사적 안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통상금지(embargos)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극복 혹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의 자국내 생산체제를 갖추려 한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의 무기생산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무기수출도 증대해 왔으며 세계 무기시장에서의 이들의 몫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들의 목적도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처음 무기의 수출을 시작할 때는 선진 무기수출국들이 2차대전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상업적 목적에서 시작했다. 최근에는 제3세계 국가들도 무기이전을 외교관계를 시작하거나 확대하며 기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그리고 협상테이블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교섭의 최후수(bargaining chip)로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었다시피한 수요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지역안보나 세력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이전을 최근에는 제3세계 국가들도 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무기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지속시켜 왔다. 지속적인 중공업 우선정책과 경제과 국방의 병진정책 노선의

채택 등으로 1970년대에 상당한 수준의 자체 무기생산 능력을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는 첨단 무기의 생산 및 수출에 전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생산,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무기 생산 능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북한의 무기 이전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1970년대의 북한의 무기수출 실적은 하잘 것이 없었다. 소총, 포, 탄약, 소형함정 등 기본병기들이 무기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또 상당 부분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것들을 재수출하는 수준이었다. 또 일부는 중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하는 무기수출 중개상의 역할도 했다. 이 기간동안 북한의 주요 고객은 탄자니아와 자이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주요 무기 일체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음은 물론 미사일과 같은 첨단 대량파괴 무기를 자체 생산,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들의 해외 판매 실적도 병행해서 제3세계 무기수출국중 선두그룹에 들게 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 년평균 5억달러의 무기 판매 수입을 올렸고 후반기에는 년 평균 4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는 정상적 무역거래외의 수입중 제일 조총련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 년 평균 6-7억달러, 다음으로 많은 수입이었다. 이 기간의 북한의 무기 및 무기체계는 주로 중동 지역으로 공급되었다(총 무기수출의 94%).

북한이 총수출액의 23%(1980년대 평균)에 해당하는 무기 및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이전 목적은 국제사회의 한 행위자로서의 북한이 최근(1980년대 중반이후) 국제 부랑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타의 제3세계 무기이전 국가들과 다른 점이 있다. 부랑아로서 북한은 일차적으로 '외화벌이'를 위해서 무기를 수출한다. 최근 북한이 식량 등 기초 생필품, 석유 등 산업자원,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무기판매는 외환의 획득을 위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기타 대부분의 무기이전 국가들이 추구하는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무기를 판매한다.

북한이 무기를 이전하는 이유로 상업적 목적이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 부랑아 국가의 일반적

행위 특성으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기이전을 국가간의 관계를 유지 내지는 돈독히하는 데 이용했다(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 같은 부랑아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일시적 접근도 미사일 수출능력이 매개가 되었으며 국내정치의 안정과 김일성체제의 우월성 과시에도 무기생산 및 수출능력이 이용되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의 수출은 이 지역에서의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무기이전 능력의 과시는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기술 지원 및 수교 협상에도 지렛대로 이용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종합하면 북한의 무기이전 정책은 주체사상의 정책적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다. 북한에게 무기이전은 국방에서의 자위와 경제의 자립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방/산업정책의 요체로 자리잡았으며 나아가 대외정책의 수단으로까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들어서 국제부랑아의 입장에서 북한은 무기이전을 국제고립의 탈피는 물론 경제제재 등의 위기시를 대비하는 탈출구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외화획득과 군사수입대체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무기수출을 시작했으나 점차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무기산업과 무기수출 정책에서 돋보이는 것은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전략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사일 개발분야가 그것이다. 1960년대말 소련으로부터 FROG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미사일 개발은 1976년 이집트로부터 Scud미사일을 도입하여 1984년에는 자체생산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1993년 현재 사정거리 1,500-2,000km의 노동-2호를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여러 타입의 Scud 혹은 노동 미사일을 중동 산유국들에 판매하고 있다.⁶⁷ 이들 미사일 이전정책은 외화획득과 석유대금 결제의 수단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것과 동시에 정치적 수단으로 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Scud-D 혹은 노동-1호의 생산, 보유 및 해외수출은 이미 정치적 무기로서의 가치를 발휘했다. 예로 이스라엘과의

⁶⁷ 조셉 버뮤데즈(Joseph Bermudez)는 1995년이 되어서야 노동-2호의 표준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함. *Korea Herald*, "P'yang Could Be Developing 2,000km Range Missiles: Expert," 1993. 9. 16.

접촉이 노동-1호의 대 아랍국 수출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의 핵협상에서도 최후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북한이 제3세계중에서 선두의 무기이전국이며 무기이전을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세계무기생산 및 이 전체계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계층화되어 있는 국제무기생산 및 수출체계속에서 현재 북한이 점하고 있는 제3선의 무기이전국의 수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⁶⁸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제1, 2선의 무기이전국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를 생산, 수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둘째로 무기를 수출한 후 부품의 공급이나 사후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확신할 만큼 국제무기시장에서 신용을 얻고 있지 못하다. 셋째 무기공급 조건에서 선진 산업국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즉 싼이자의 신용공급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넷째 최근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군사기술이전을 포함한 보상구매(offset)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무기이전을 통한 정치-경제적 이득을 확장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의 무기나 무기체계에서는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지라도 기술과 가격면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수준에 맞는 무기와 무기체계를 생산, 수출함으로써 제3선의 무기수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⁶⁹ 더우기 북한이 미사일 개발 전략에서 보인 바와 같이 특정 분야의 무기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집중전략을 계속한다면 국제무기시장에서의 지위는 공고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무기이전을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 분명하다.

⁶⁸ Stephanie G. Neuman, "International Stratification and Thied World Military Indus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Winter 1984): 167-197 참조.

⁶⁹ 제3세계 국가들의 방위산업이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Ronald D. McLaurin, "The Gulf Crisis, 'Hi-Tech' War and Third World Defense Industries," *Pacific Focus*, Vol. 7, No. 2(Winter 1992): 5-45 and Stephanie G. Neuman, "International Stratification and Thied World Military Industries," 참조.

참고자료

-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88.
- 김경웅.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방향과 그 영향관계 연구." 북한연구, 제3권 제2호, 1992년 여름호.
- 김민석, 김태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실상과 저의."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4호 1991년 여름호.
- 김태우. 한반도 핵문제와 동북아 신질거." 북한연구, 제3권 제2호, 1992년 여름호.
- 돌베개편집부.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리. 서울: 백산서당, 1988).
- 장명순. "북한의 군편제와 무기체계." 북한연구, 제3권 제3호, 1992년 가을 호.
- 정용관. "북한 국방정책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 제2권 제3호, 1991년 가을호.
- 최성빈.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북한연구, 제3권 제3호, 1992년 가을 호.
- 한남성. "제3세계 국가의 무기생산과 수출추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강론: 무기체계와 군수관리, 제2집 제3호, 1990.
- 허문영.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방향 연구. 서울: 통일원, 1991).
- Newsweek* (한국판). "미사일 수출에 중국 혈안." 1993. 9. 8.
- 동아일보. "아랍국 무기도입 경쟁." 1993. 2. 28.
- 세계일보. "북 미사일 노동1호 성능: 미-일 전문가 엇갈린 평가." 1993. 9. 22.
- 조선일보. "북한미사일." 1993. 9. 16.
- 조선일보. "북, 노동1호 리비아 판매 추진." 1993. 7. 20.
- 조선일보. "조총련 자금, 국한경제 '생명선.'" 1993. 11. 3.

조선일보. "미-러 첩보망 북한 로동1호 발사 '손금보듯.'" 1993. 9. 10.

중앙일보. "북 미사일 노동1호: 북경까지 사정권." 1993. 9. 16.

한국일보. "북한노동1, 2호 수출용 판단." 1993. 9. 17.

부지영. "일 '북한 미사일 신드롬.'" 조선일보, 1993. 6. 16.

송대현. "미-러 새 갈등요인 등장." 세계일보, 1993. 6. 25.

윤득현. "아시아는 무기 황금시장." 동아일보, 1992. 5. 10.

조환민. "아시아 군비경쟁 가열." 동아일보, 1992. 11. 11.

Albrecht, U., D. Ernst, P. Lock, and H. Wul.,
"Militarization, Arms Transfer and Arms Production
in Peripheral Countr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2, No. 3(1975).

Alves, Dora, ed. *Evolving Pacific Basin Strategies: The
1989 Pacific Symposiu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0.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91*.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Asia's Arms Race." *The Economist*, February 20, 1993.

Bachrach, Peter and Morton Baratz. *Power and Povert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Baek, Kwang-Il, Ronald D. Mclaurin, and Chung-in Moon,
eds. *The Dilemma of Third World Defense Industries:
Supplier Control or Recipient Autonomy?* Boulder:
Westview Press, 1989.

Ball, Nicole. "The Growth of Arms Production in the Third
World." *National Forum*(The Phi Kappa Phi

Journal), Vol. 56, No. 4(Fall 1986).

- Bitzinger, Richard A. "Chinese Arms Sales to the Third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2(Fall 1992): 85-111.
- Brzoska, Michael and Thomas Ohlson. *Arms Transfers to the Third World, 1971-8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 *Arms Produc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Taylor & Francis, 1986.
- Catrina, Christian. *Arms Transfers and Dependence*. New York: Taylor & Francis, 1988.
- Choi, Jong Chul. *U.S. Arms Transfers and Global Hegemony: An Analysis of their Global Scale and the Regional Context of Japan and Korea.*,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May 1992.
- Ebata, Kensuke. "Japan Joins the World Arms Control Lobby." *Jane's Defense Weekly*, January 23, 1993.
- Engelbrecht, H.C. and F.C. Hanighen. *Merchants of Death*. New York: Dodd, Mead and Co., 1934.
- Gill, Bates. "Curbing Beijing's Arms Sales." *Orbis*, Vol. 36, No. 3(Summer 1992).
- Haftendorn, Helga. "The Proliferation of Conventional Arms." *Adelphi Paper*, No. 133(1977).
- Gregory, William H. "Offsets and Technology Transfer."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July 26, 1982.
- Hagelin, Bjorn. "Submarine Complexities." *Pacific Research*, Vol. 5, No. 4 (November 1992): 3-6.
- Harkavy, Robert E. "The Pariah State Syndrome." *Orbis*, Vol. 21, No. 3(Fall 1977): 623-649.
- Hartung, William D. "Breaking the Arms-Sales Addiction: New Directions for U.S. Policy." *World Policy Journal*(Winter 1990-1991).

- _____. "Prospects for Multilateral Arms Transfer Restraint in the Wake of the Gulf War." Paper prepared for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tlanta, Georgia, March 31-April 4, 1992.
- Hates, Peter.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0, No. 1(Summer 1993).
- Janne E. Nolan, "The Global Arms Market After the Gulf War: Prospects for Control," *Washington Quarterly*, Vol. 14, No. 3(Summer 1991).
- Katz, James E. ed. *The Implications of Third World Military Industrialization: Sowing the Serpents' Teeth*. Lexington, MA. : D.C. Heath and Company, 1986
- Kim, Tae Woo. "South Korea's Nuclear Dilemma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6, No. 2(Summer 1992).
- Klare, Michael T. and Daniel C. Thomas. *World Security: Trends & Challenges at Century's En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 Klare, Michael T. "Political Economy of Arms Sales." *Economic Forum*, Vol. 13, No. 1(Summer 1982): 33-46
- _____. "The Unnoticed Arms Trade: Exports of Conventional Arms-Making Technolo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8, No. 2(Fall 1983): 68-90.
- _____. "Gaining Control: Building a Comprehensive Arms Restraint System." *Arms Control Today*, Vol. 21, No. 15(June 1991): 9-13.
- Klouse, Keith. "The International Trade in Arms." *Background Paper*, Canad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rch 1989.
- Knorr, Klaus and Frank N.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Lawrence, K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 Kolodziej, Edward A. "Why a Look at Global Militarization." *National Forum* (The Phi Kappa Phi Journal), Vol. 56, No. 4 (Fall 1986).
- Laurance Edward J. "Political Implications of Illegal Arms Exports from the United State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7, No. 3 (Fall 1992): 501-33.
- Lewis, William H. "Emerging Choices for the Soviets in Third World Arms Transfer Policy." in U.S. ACDA, *WMEAT*, 1985, pp. 30-34.
- _____. and Stephen C. Moss. "The Soviet Arms Transfer Program."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Fall 1984).
- Louscher, David J. "The Rise of Military Sales as a U.S. Foreign Assistance Instrument." *Orbis*, Vol. 20, No. 4 (Winter 1977); 933-965.
- McCain, John. "Controlling Arms Sales to the Third World." *Washington Quarterly*, Vol. 4, No. 2 (Spring 1991).
- McLaurin, Ronald D. "The Gulf Crisis, 'Hi-Tech' War and Third World Defense Industries." *Pacific Focus*, Vol. 7, No. 2 (Winter 1992): 5-45.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Guidelines Revised." *U.S. Department of States Dispatch*, Vol. 4, No. 3 (January 18, 1993).
- Neuman, Stephanie G. and Robert E. Harkavy, eds. *Arms Transfer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Praeger, 1979.
- Neuman, Stephanie G. "International Stratification and Third World Military Indus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Spring 1985): 167-197.
- _____. "Coproduction, Barter, and Countertrade: Offsets in the International Arms Markets." *ORBIS*, Vol. 29, No. 1 (Spring 1985): 183-213.

- "Offset in the International Arms Market." *WMEAT*, 1985.
- "Trends in the Conventional Arms Trade." *National Forum*(The Phi Kappa Phi Journal), Vol. 56, No. 4(Fall 1986).
- Nye, Joseph S.,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 Park, Jae Kyu, Byung Chul Koh and Tae-Hwan Kwak, eds.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7.
- Pearson, Frederic S. "Necessary Evil: perspectives on West German Arms Transfer Policies."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12, No. 4(Summer 1986).
- Pierre, Andrew J. ed. *The Global Politics of Arms Sal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 *The Politics of Arms Sal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 ed. *Arms Transfers and Americal Foreign Poli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9.
- Quester, George. *What's New on Nonproliferation*. Aspen, CO.: Aspen institute for humanistic Studies, 1975.
- Roberts, Adam. "Conversion Concepts and Approaches." *Disarmament*, Vol. 14, No. 1(1991): 71-94.
- Roberts, Synthia A. "Soviet Arms-Transfer Policy and the Decision to Upgrade Syrian Air Defences." *Survival*, Vol. 25, No. 4(July/August 1983).
- Sampson, Anthony. "A Last Chance to Call a Halt." *Newsweek*, April 8, 1991.
- SIPRI. *SIPRI Yearbook: World Armament and Disamamrnt 1992 and 199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and 1993.

- . *The Arms Trade with the Third World*. London: Paul Elek, 1971
- Strange, Susan. *States and Market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Basil Blackwell, 1988.
- U.S. ACDA, "Big Five Initiative on Arms Transfer and Proliferation Restraint.," *WMEAT*, 1990.
- U.S. Department of Stat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Guidelines Revised."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Vol. 4, No.3 (January 18, 1993): 41-2.
- Ehrmann, Eric and Christopher Barton. "Controlling Missile Exports— A Catch-22." *Christian Science Monitor*, March 19, 1991.
- Grier, Peter. "China Arms Policy Puzzles West."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3, 1992.
- Jehl, Douglas. "Iran Said Acquiring N.K. Missiles." *Korea Herald*, April 9, 1993.
- Klare, Michael T. "Arms Sales Blast New World Order." *Christian Science Monitor*, October 14, 1992.
- Korea Herald*. "Asia Replaces Middle East as Largest Arms." May 1, 1993.
- . "Report on N.K. Missile not Confirmed." September 17, 1993.
- . "North Korea Missile Sale." November 4, 1992.
- Pierre, Andrew J. "How to Curb Mideast Arms Sales." *New York Times*, June 28, 1991.
- Ricgardson, Michael. "Russia Arms Spillover Chills East Asi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5, 1993.
- . "Energy Needs of China Fuel Weapons

北韓의 軍需産業 實態 및 民需
産業으로의 轉換 可能性

研究責任者：金 鐵 煥(國防大學院)

목 차

〈要約文〉

I. 序 論	245
II. 北韓의 軍需産業 政策	247
1. 軍需産業의 發展過程	248
2. 軍需産業政策	258
3. 軍需産業의 運營體系	260
III. 北韓의 軍需産業 實態	263
1. 軍需産業의 現況	263
2. 軍需産業의 立地	269
3. 北韓의 武器體系	271
4. 北韓의 武器輸出 實態	278
5. 軍需産業의 展望	282
IV. 北韓 軍需産業의 民需轉換 可能性	284
1. 民需轉換 概要	284
2. 民需轉換類型 및 限界	292
3. 社會主義 國家의 民需轉換 事例	295
4. 民需産業의 民需轉換 可能性	299
5. 北韓의 軍需産業 民需化 展望	303
V. 結 論	308
〈參考文獻〉	312

北韓의 軍需産業 實態 및 民需産業으로의 轉換 可能性

金 鐵 煥(國防大學院)

〈要約文〉

北韓의 軍需産業은 「軍備 指向型 重工業 優先政策」에 의하여 건설·확장되어 왔으며, 그 발달과정은 經濟開發計劃과 연계되어 해방후의 準備期를 거쳐 1950년대에는 軍需産業 基盤造成期로서 구일본 陸軍 造兵廠을 비롯하여 37개의 軍需工場을 개인 소유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소련의 技術支援 및 資料支援으로 새로이 19개의 兵器工場을 건설하여 AK小銃 및 對戰車 火器 등을 자체생산 하기 시작 하였다.

1960년대에는 基盤擴大期로서 북한이 4大 軍事路線의 채택과 더불어 이른바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竝進策을 당의 기본적인 전력방침으로 내세워 小火器를 계속 개발하는 한편 非反動砲, 迫擊砲, 放射砲 등 重火器의 생산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여 地上軍 師團級 편제 기본화기를 자급하였다.

1970년대에는 經濟開發 6個年計劃(1971-76)에서 제시된 重工業 基本課業 8개 항목중 冶金工業은 병기생산, 船舶工業은 군함생산, 化學工業은 화약생산, 그리고 採掘工業은 소재의 확보 수단으로서 각각 軍需産業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驅逐艦을 비롯하여 潛水艦, 高速上陸艇 및 艦砲 등을 자체건조하였고 T-54, T-55 탱크의 自體生産 및 MIG-19 전투기를 실험생산 하였다. 한편 70년대에 중국과 이집트로부터 미사일에 대한 技術導入을 시작하고 77년에는 소련으로부터 免許를 얻어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에는 銃砲工場 17개소를 비롯하여 彈藥工場 35개소, 戰車, 裝甲車工場 5개소, 化生武器工場 8개소, 艦艇建造所 5개소, 航空機工場 9개소,

誘導武器工場 3개소, 通信裝備工場 5개소, 기타공장 47개소 등 총 134개소의 兵器工場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AT-3 대전차 미사일과 SA-7 지대공 미사일을 조립생산하는 한편 Scud-B 改良型(射程 320-340km, '85년 생산) 및 Scud-C 改良型(射程 500km, '89년 생산)등 地對地誘導彈을 생산하고 있고, 헬기, 훈련기의 組立 및 模倣生産과 1986년 방현의 戰鬥機工場 완공으로 MIG-21/29기의 생산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核武器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93년에 Scud-D형(노동 1호; 射程 1000-1300km, 彈頭 800kg)의 생산에 들어 갔으며, 오는 95년에는 Scud-E형(노동 2호; 射程 1500-2000km)의 시제품이 완성될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93.9.20)가 나오고 있는등 군수산업의 자립 및 선진화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北韓의 軍需産業 政策은 “現代戰에서의 勝敗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人的, 物的資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軍事 戰略上 중요한 지대들을 잘 보호하고 軍需工業을 발전시켜야하며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조성해야한다. 또한 일단 유사시에는 모든 경제를 급속히 戰時體制로 개편하여 戰時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平時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金日成 敎示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가지의 基本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군사기자재의 自給自足 체제확립, 둘째 군사기자재에 대한 發展策 강구, 셋째 군수산업 시설의 戰略的 배치, 넷째 군사산업 시설의 地下化 추진, 다섯째 戰時 轉換體制 확립, 여섯째 戰略物資의 비축이다. 이상과 같은 기존 정책에 따라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 軍需産業은 軍需産業 시설의 증설 및 기존 시설의 확장, 軍需品 品種 확대, 군수 물자 및 장비의 대외의존 탈피전략, 物資 備蓄量 증대 그리고 주요 산업시설의 전시 생산 대비책

강구 등이다. 또한 최근 北韓이 주력하고 있는 軍需産業 重點 施策은 新銳 裝備 및 電子裝備 개발 시도, 北韓의 地形과 體質에 맞는 武器의 開發, 비 정규군용 및 대남 침투장비 생산, 化學 및 生物學 무기 생산, 그리고 核武器 개발 시도 등이다.

北韓의 軍需産業은 그들 체제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 군수산업을 일사불란한 指揮 및 統制體制 하에 운용하고 있다. 즉 黨, 軍, 行政系統이 동시에 참여하는 三元化 體系를 이루고 있는데, 勞動黨 군사중앙위원회는 軍需産業 關聯 政策決定, 생산 및 개발업무의 조정 통제를 맡고, 당중앙위원회의 인민무력부는 軍需産業의 기술지도 및 시설의 경계, 保安統制, 생산품의 性能 檢査를 담당하고, 정무원 산하 機械工業 委員會(또는 제 2 경제위원회)는 軍需産業 관련 生産管理, 技術指導, 요원확보 및 교육훈련, 原料 및 原子財 調達, 시설 및 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北韓의 군수산업 시설은 一般 軍需工場 26개소와 基幹産業중 22개의 戰時 轉換工場을 갖고 있으며, 兵器工場 134개소와 軍裝備 部品工場 114개소, 그리고 군단위 中小地方工場들이 유사시 手榴彈, 帶劍등을 제작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무기생산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機動裝備 분야로는 戰車를 포함한 裝甲車輛의 免許生産을 1969년에 개시하여 1979년부터 自體 生産하여 오고 있는데, 현 北韓의 主力 戰車인 T-62는 1980-89년까지 622대를 생산하였다. 艦艇은 1957년부터 自體建造하기 시작하였으며, 小型 戰鬪艦은 독자설계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潛水艦은 部品免許 生産段階에 이른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電子部門의 製作과 武裝(포 및 미사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航空機는 1976년에 MIG-19기가 試驗生産 되었으며 戰鬪機 및 제트 練習機는 1975년에 생산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며, 헬기와 훈련기등을 組立, 模倣生産하고 있고 1986년에 方峴 戰鬪機 工場의 완공으로 MIG-21기 試製品 生産이 가능한 상태이다. 미사일 분야는 1975년에 소련이 AT-3 Sagger 對戰車 미사일의 免許를 제공한바 있으며 1976-89년간 1,400기를 생산 하였고, 1988년에 지대공 미사일인 SA-7 Grail의 免許를 供與하여 1986-89년간 400기를,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Scud-B의 면허를 1977년에 공여하여 1987-89년간 136기를 생산하였고 그중 100기정도를 이란에 수출했다. 한편 '93년에는 勞動 1號(Scud-D 형)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核 및 化學武器 搭載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속적으로 '95년에는 勞動 2號(Scud-E 형)를 개발 완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軍需産業에 의한 武器輸出面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攻勢指向的(offensively) 軍備增強段階에 진입하면서 무기생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武器輸出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1975년부터 北韓의 武器輸出은 급속히 증가하였을 뿐만아니라, 北韓의 總 輸出에 대한 武器輸出의 비율은 1982년의 경우 무려 36.8%로서 世界 最高의 수준을 나타냈고 1988년에는 19.6%로서 開途國 전체의 0.9%(세계 전체는 1.7%) 보다도 18.7% 포인트나 상회하고 있다. 이는 北韓의 貿易構造面에서 군사화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동안 北韓이 추진해온 經濟開發計劃이 軍備 指向的 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있다.

그리하여 北韓은 1988년에 世界 第 9位の 武器輸出國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란-이라크 전쟁의 초기 3년간 이란에 근 10억불에 이르는 武器를 수출하였고 이는 이란이 동 기간에 구매한 총 26억불의 1/3이상이 되는 금액이다. 특히 87-89년사이에 이란에 Scud-B를 약 100기를 輸出하는등, 그동안 北韓

이 輸出한 主要武器는 Towed Gun (130mm 59타입), T-62 戰車, 스킵 B 미사일, AT-3 Sagger 對戰車 미사일, SA-7 그레일 SAM 미사일등과 122mm 로켓포 및 輕量火器등이었다. 북한의 주요 輸出對象國들은 이란, 시리아, 니카라과, 구아나, 수리남, 자이레, 모잠비크, 우간다, 짐바브웨등이고 그 대금으로는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外換 또는 石油같은 물자로 받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國際社會에서 필요시 政治外交的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목적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北韓 軍需産業의 민수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東歐의 극적인 政治的 變化와 蘇聯의 붕괴, 그리고 武器統制 協商의 진전등 세계적인 화해분위기의 확산과 北韓自身的 經濟的 침체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앞으로 高度精密武器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民需轉換(Conversion)의 概念은 군수산업의 勞動力, 機械, 設備, 技術등의 대상을 部分 또는 完全轉換의 폭으로 설비나 기술 또는 경영등의 轉換方式에 따라 민수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民需轉換類型에는 자본주의형과 사회주의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북한은 민수화를 추진한다면 사회주의형 중 중국형으로 민수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에서는 민수전환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산업의 民需轉換法(Law on Conversion of Defense Industries)」을 만들어 지금까지 축적해온 尖端技術, 高級人力, 最新設備들이 들어있는 軍産複合體의 효율적인 民需化 政策을 국가 기본정책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도 방위산업의 民需轉換法案(Defense Conversion Bill)을 제정하여 民需化를 促進하는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軍需産業의 民需化 방향전환을 종용하고 있으며, 軍事技術의 開發 보다는 民·軍 兼用技術(dual-use technology)의 開發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北韓도 이러한 世界技術環境의 변화물결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도 體制變化나 開放政策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이 舊蘇聯이나 東歐圈 국가들의 붕괴와 변화모습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을 것이며, 가속되는 경제침체를 타개할 방법중의 하나는 바로 軍需産業의 民需化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北韓은 舊蘇聯과 중국들의 軍需産業 民需化 過程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나, 社會主義 經濟體制下的 사고와 관념의 틀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며, 특히 金日成이나 金正一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준비와 이를 실현가능케 하는 고정된 「軍備增強政策」의 틀을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전쟁로비완료기간으로 예상되는 95년까지 軍需産業을 확장하는 고삐를 늦추지않고 중동이나 파키스탄등 동남아시아, 남미국가와 아프리카 국가군 또는 아시아지역 반정부군과 세계 테러 국가들에게 스커드 미사일과 自主砲등 在來式武器는 물론 필요시 化生武器를 포함한 武器 輸出戰略을 강화하면서 軍需産業의 民需化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世界情勢變化와 북한의 입지를 고려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그들의 軍需産業中 輸出性向이 크고 북한의 戰力構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主要 武器分野는 확장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며, 반면에 輸出展望이 적고, 自國의 軍事力建設에 적게 영향을 주는 武器分野는 선별적으로 民需化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아, 北韓의 軍需産業 民需化는 2元化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이 開放과 함께 世界平和 무드에 동참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민수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첫째, 輕工業 확장관련 군수산업의 민수화 둘째, 戰時轉換 工場의 민수화 그리고셋째, 軍需 및 兵器工場의 민수화로 민수산업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I. 序 論

한 나라의 軍需産業은 자국군의 소요충족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나, 지속적인 무기생산의 확대는 국내수요와 함께 해외수출을 통한 軍備擴張으로 연결된다.

탈냉전이후 선진국들의 軍事費 및 武器獲得規模의 감소추세는 세계적으로 軍需業界를 불황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방산시장의 침체현상으로 인하여 기술선진국들은 防衛産業體들의 생존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국방과학기술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民需産業으로 轉換시키는 문제와 함께, 國防力과 産業競爭力을 동시에 제고시키기 위한 “民·軍共用技術”(dual-use technology)을 개발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先進國 軍需産業들간의 국제협력 강화, 기업간의 매수·합병, 기업내부의 인원감축을 통한 규모 축소, 수출시장 개척 및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軍需産業의 再編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對南赤化統一의 야욕을 버린적이 없으며, 인민생활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며 戰爭準備를 督勵해 왔다. 이를 위한 엄청난 軍事費의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경제발전의 沈滯現狀은 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正統的이고 極左的인 教條的 社會主義 노선을 고집하면서 혁명전쟁의 수출이나 테러행위만을 恣行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脫이데올로기와 화해무드에 입각한 平和共存趨勢에도 역행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好戰的 「이미지」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최근의 북한 핵문제와 노동 1, 2호의 개발과 수출문제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軍事政策과 軍需産業(북한에서는 국방공업 또는 병기공업이란 용어로 사용) 政策은 본질적으로 체제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적인 安保環境評價 및 開放程度에 따라 변화가능성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안보환경 평가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하며,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이들의 전략은 철저한 攻勢戰略 概念으로 全力을 투입, 남한의 전지역 또는 수도권 등 제한된 지역을 단시일내에 석권하는 速戰速決 戰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계화 및 기갑화 부대를 증강시켰다. 또한 땅굴을 굴착, 우리측 후방지역으로의 침투 및 교란을 계획하고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편성하여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두가지 전쟁형태를 배합시킬 능력을 갖추어 왔다.

한편 자체적인 安保環境 評價面에서 작용할 수 있는 단기적 요인으로는 국제정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대책, 현대식 병기의 부속품 확보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의 뒷받침이 없이는 앞서 열거한 전략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간파한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계없는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하기위해 군비지향적인 軍需産業의 擴大政策을 통해 현대식 병기 및 부품을 상당수준까지 국산화했다.

본고에서는 북한 軍需産業의 發達過程과 政策, 軍需産業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軍需産業의 民需産業化 가능성과 그 전망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이해와 각 분야의 對北 政策樹立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北韓의 軍需産業 政策

북한은 1953년 휴전 이후 1960년까지 5개년계획('57-'60)에 의한 전후복구를 마치고, 1960년대 이후부터는 國防·經濟 竝進路線의 기치아래 제1차 7개년계획(1961 - 1970년)을 비롯해서 6개년계획(1971 - 1976년) 그리고 제2차 7개년계획(1978 - 1984년)과 제3차 7개년계획(1987 - 1993년)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종일관 군비를 증강하여 왔다. 이같은 일련의 군비증강과정을 미국의 「올슨」(Edward A. Olsen) 교수는 60년대와 7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60년대중의 군비증강은 中·蘇分爭, 「쿠바」위기 등 북한에게 있어 불확실성이 큰 시기어었던 만큼 기본적으로는 防衛의 立場에 선 것이었다고 보고 70년대 이후의 軍備增強은 그러한 방위의 입장에서 攻勢의 立場으로 전환된 것으로 특징지우고 있다.¹⁾

최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공세적 입장에서의 군비증강은 계속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공세적 입장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강화되고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軍備增強은 그동안 북한이 경험하여왔던 것처럼 1984년에 종결된 제2차 7개년계획과 1987년 4월에 발표한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제약함은 물론이고, 또 북한경제가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1) Edward A. Olsen, "North Korea", Arms P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sis of Decision Making, (Ed.) by James Everett Katz, D.D. Health & Company, 1984, pp.236-237.

1. 軍需産業의 發展過程

북한의 軍需産業은 8.15 해방 직후부터의 「軍備指向型 重工業 優先政策」에 의하여 건설·확장되어 왔으며, 그 발달과정은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대체로, 해방후부터 한국전쟁까지를 군수산업의 準備期로 볼 수 있으며, 1950년대까지를 基盤造成期, 1960년대는 基盤擴大期, 1970년대를 擴張期, 1980년대 이후는 自立 및 先進化期로 군수산업의 발전과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가. 軍需産業의 準備期(1950년대 이전)

북한의 軍需産業은 해방후 2개년계획(49-50년)을 세워 일제시대에 건설된 평양의 육군 조병창과 홍남의 화학공장등 30여개의 병기공장을 복구하고, 소련의 부품과 원자재 및 기술원조를 받아 소화기와 탄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북한은 1946년, 중요산업에 대한 國有化措置過程에서부터 軍需産業의 진흥을 인식하고, 동년에 발표된 「개인소유권을 확보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創發性を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의 제3항²⁾에 의하면, 조선인과 일본인이 과거에 공동투자한 회사 가운데, 「무기·군용 피복·군장·통신자료·군용수송기관 및 기타 軍需品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는 個人所有權 보호대상으로부터 제외하였던 것이다. 한편 대부분이 파괴되어 있었던 평양의 구 일본육군 造兵廠을 비롯하여 홍남화학공장 등 수개의 병기제조공장을 복구하여 소련의 기술과 자재원조에 힘입어 제한된 소량의 소화기와 탄약 등 기초적인 軍需要의 일부를 충족 시켰다.³⁾ 이 시대의 軍需生

2)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下卷, 1974, pp.275-276.

3)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 1968, p.334.

産에 대하여 김일성은 1948년 2월 8일의 북괴군 閱兵式에서 『노동자들은 군대에 훌륭한 병기와 군복, 일용품들을 제때에 충분히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농민들은 군대의 식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듯이 초기의 軍需生産은 기초적인 軍需要의 충족에 불과하였다.

북한은 1949년에 시작한 2개년계획(1949-50년)에 있어서도 전쟁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국영기업소의 복구에 주력하여 무력남침 준비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6.25 전쟁을 시작한 1950년에도 전쟁의 후반기를 대비하여 소규모의 武器生産과 軍需物資 生産에 착수했었다. 이미 전쟁을 도발하기전, 북한의 기술자들을 소련으로 보내 軍需産業의 기술적 훈련과정을 1-6개월간 수료하게 했으며, 전쟁전까지는 남침에 필요한 무기제작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게하여 이 시기를 軍需産業의 準備期로 볼 수 있겠다.

나. 軍需産業의 基盤造成期(1950년대)

전쟁이 시작된후, UN 조사반은 중공군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시의 북한이 보유한 각종의 軍需産業 施設을 검사하였는데, 그 대상은 북한의 28개 軍需工場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다량으로 자체생산 가능한 품목은 7.62밀리 PPSH41 소총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기타 軍需品 生産에 필요한 물자는 소련이나 중공에 의하여 공급되었다.

1955년에 작성된 미국 육군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軍需産業의 상대적 소규모성, 전문인력의 부족,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7.62밀리 기관단총 제작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보병 무기 제작에도 성공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수년내에 북한은 자체적 軍需産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소형무기 생산이나 소규모 軍需品 보급은 완전히 독자적인 라인을 밟게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⁴⁾

전쟁직후의 戰後復舊 3個年 計劃(1954-56년)에서는 軍需産業의 복구에 주력하는 한편, 重工業의 核을 機械工業에 두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즉, 1953년 8월 黨中央委員會 제 6차 전원회의에서 北韓은 전후 복구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基幹路線을 重工業의 우선적인 발전에 두고 그중에서도 機械製作工業을 중심으로 하여 장래 공업화의 기본조건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軍備指向型 重工業最優先政策(3개년 계획기간중 工業部分 투자 총액의 81%를 重工業에 투자)은 그후 第 1次 5個年計劃(1957-61년)에서도 지속되었으며, 19개의 兵器工場을 건설함으로써 軍需産業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⁴⁾ 김일성은 당시 重工業은 인민경제발전의 기반이다. 重工業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輕工業과 農業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人民經濟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없다. 특히 重工業은 나라의 政治, 經濟的 독립의 물질적 기반으로서 그것 없이는 독립적 민족경제란 말할 수 없고 國防力도 강화할 수 없다⁵⁾고 강조하면서 經濟成長型 보다도 軍備指向型 工業化를 추구함으로써 軍需産業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1950년대 北韓의 兵器生産은 소련의 기술과 자재원조에 의한 개인 기본화기를 중심이었으며 이때 대상이 된 품목은 1937년형 82밀리 迫擊砲와 38/43년형 120밀리 迫擊砲였다. 그외 7.62밀리 데그티아레프 小銃과 칼라스니코프 小銃을 개량한 62타입 소총과 같은 輕步兵武器들은 54-55년 사이에 생산이 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후 58년부터 59년 사이에 北韓은 소련과 합작 라이선스 생산품목의 수

4) G. Jacobs, <Asia Defense Journal>, 1989.3, pp. 19-25,

작은기획, <비전>, 1989.6, p.144.

5) 극동문제 연구소, <북한전서>, 中권, 1974, p.54.

6)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학 사전 II>, 사회과학출판사(평양), 1970, pp.555-556.

를 증가 시켰는데 이때 계약된 라이선스 품목들은 7.62밀리 TT1 933 피스톨 (68타입), 7.62밀리 칼라스니코프 일반 소총, 40밀리 RPG-2 대전차 무기, 82밀리 B-10 무반동총, 그리고 2.5톤 GAX-54 4x4 트럭등이었다.

1958년의 라이선스 계약은 1967년 3월 까지의 계약으로 연장, 갱신됨으로써 北韓의 武器, 軍需産業의 기반을 완전히 마련하게 하였다.⁷⁾

다. 軍需産業 基盤 擴大期 (1960년대)

北韓은 1958년 10월 北韓에 주둔하고 있던 中共軍이 철수하게 되자 병력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1959년 1월에 노동적위대를 창설하였는데, 이때부터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정부에서는 1954년 11월 미국정부와 「韓·美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여, 전후 미국의 대한 안보지원과 방위공약을 공고히 하는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였고 1961년 5월 16일 軍事革命이 일어나 반공태세의 강화와 대북 군사태세를 정비하는 변화가 있었다.

김일성은 이와같은 狀況變化에 대응함과 아울러 제 2의 6.25를 획책키 위하여, 소련 및 중공과 1961년 7월에 각각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쌍무적 軍事同盟을 결성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새로운 武器體系의 도입을 확대 하였고 또한 생산기술을 지원받아 軍需産業의 기반을 확대시켜 갔다.

1960년 10월 쿠바사태시 소련은 미국에 굴복 하였으며, 平和共存과 戰爭가피론을 표방하면서 중공과는 이념분쟁을 유발함으로써 北韓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1961년 12월 김일성은 평남 강서군 소재의 「대안전기공장」 방

7) 작은기획, <비전> 1986.6, p.144. 및 김영태, '북한의 군수산업',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89.5, p.41.

문시 戰時轉換體制 發展政策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소련이나 중공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만은 없다고 판단되자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軍事路線을 설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1962년 12월에 「勞動黨 第 4期 5次 全員會議」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이른바 「經濟·國防 竝進」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國防政策 基本方針은 1966년 10월 5일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우리당은 이 회의에서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竝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國防力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웠다.”⁸⁾라고 하면서 4大 軍事路線으로 보다 구체화 되었다. “우리의 防衛力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인민을 政治, 思想的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우리당의 군사노선을 관철해야 한다. 우리당은 軍隊의 幹部化, 군대의 現代化, 전체 人民의 武裝化, 전국의 要塞化를 군사노선의 基本內容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관철해야 하겠다”⁹⁾

한편 이 대표자 회의에서 경제를 언제든지 戰時體制로 개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戰時 轉換工場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복귀는 이미 1967년에 종업원 5백 50명 이상 규모의 제조공장 1백 14개를 戰時 軍需物資 生産工場으로 지정한바 있다.¹⁰⁾

기간중 특히 제 11차 7개년 계획(1961-67) 기간중에도 工業部門에 대한 投資중 75%가 重工業에 할당하였으며, 실제로 經濟, 國防 竝進政策 발표후에는 예정했던 것보다 더많은 자원을 軍需産業 확대에 투자하였다. 이시기의 武器生産 실태를 보면 소화기등 개인화기는 물론 非反衝砲, 迫擊砲, 放射砲

8) 조선 노동당 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평양, 제 20권, 1982, p.418.

9) 상계서, p. 426.

10) 북한연구소, <북한총감>, 1983, p.1574.

등 重火器의 생산체제를 갖추기 시작 하였다.

특히 1963년 부터는 소련제 시모토프 小銃을 模倣生産하는 한편, 1962년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7.62밀리 RPD 輕機關銃(62식과 64식)을 제작하였으며, 소련제 모델인 KPV 14.5밀리 重機關銃도 模倣生産 하였다. 그리고 對戰車火器에 있어서는 중공과 소련으로 부터 지원 받아왔던 40밀리 RPG-2는 自體生産으로 충당하고 소련제를 模倣製作한 82밀리 B-10 非反衝砲는 63년 부터 裝備하였다. 迫擊砲에 있어서는 82밀리와 120밀리를 역시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생산하여 노후화된 迫擊砲와 대체하는 한편 大口徑化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對空火器로서는 14.5밀리 高射機關銃을 자체생산하고 그밖에 로켓트포에 있어서는 중공제 107밀리 로켓트포(12발)를 模倣生産하여 裝備하였다.¹¹⁾ 이와같이 60년대 전반기에는 지상군 연대급 작전이 가능한 武器體系를 개발하였고 후반기에는 사단급 작전이 가능한 武器體系를 자체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시기에는 현대적인 自動化 武器를 생산할 수 있는 전자공학분야 등의 기술은 미흡했으며 따라서 자동화 계통에 속하는 현대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들의 생산기반을 충분히 확대 되었다는 것을 여러가지 자료¹²⁾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軍需産業의 擴張期 (1970년대)

70년대에 들어 北韓은 60년대 시작한 1차 7개년 계획에 이어 6개년 계획(1971-1976)을 수립하여 소위 「社會主義 물질, 기술적 토대 확립」을 목표로 내세워 추진하였다. 6개년 계획도 生産手段의 생산을 중심으로 한 工業爲主와 함께 軍需工業에 대한 성장계획이었다.

6개년계획에서 제시된 重工業 기본과업 8개 사항은 電力工業, 採掘工業,

11)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中卷, 1974, pp. 89-101.

12) 중앙정보부, 전계서, "1968년 10월의 김일성의 김책공대 연설문", 1979.

冶金工業, 機械製作工業, 船舶工業, 化學工業은 兵器 및 兵器生産 機器部門으로서 船舶工業은 軍艦生産, 化學工業은 火藥生産, 그리고 採掘工業은 兵器生産을 위한 素材의 확보수단으로서 각각 軍需生産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船舶工業(1992.12 정무원에 船舶機械工業부가 설치됨)을 基本課業의 하나로 제시한 점으로 보아서 軍艦艇의 건조를 重點事業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개년 계획 추진에 앞서 김일성은 지금 있는 軍需工業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군수공장들을 더 건설하여 여러가지 軍需品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人民軍隊의 기술장비를 개선하며 전체 인민을 武裝하기 위한 현대적 무기와 戰鬪技術·科學技材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軍需品 생산을 높이는 것과 함께 일단 유사시에 도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필요한 重工業品 소비물을 중단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¹³⁾고 하면서 軍需産業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1972년의 이른바 신년사에서 도 「軍需生産能力을 증대시키고 신형장비생산을 강화하라」고 까지 강조한 바 있다.

1970年代에도 '60年代에 이어 軍需産業의 확장을 지속하여 各種 武器의 量的 증가 및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自體 戰術概念에 맞게 개량 및 개조하는 등 獨自的 武器體系를 개발 생산하는데 주력하였다. 中·蘇製를 모방하여 107밀리 및 122밀리 방사포를 생산하였고, 122밀리 및 152밀리 곡사포, 122~180밀리급 5종의 자주포를 생산하였다. 戰車 및 裝甲車 등 機動裝備에 대한 獨自的인 설계능력이 없었으며 '73년에 최초로 中共製 T-59 戰車를 模倣生産하였고, M-1973 장갑차와 K-61 수륙양용 장갑차를 생산하였으며, '78年 중반부터 蘇聯의 기술지원하에 T-62 戰車를 생산하기 시작하였

13)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중권, 1974, p.100.

다. 함정의 경우에도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70年代 기간중에 각종 戰鬪艦艇을 대량 건조하면서 기술을 축적하였다. 소련제 KOMAR급 誘導彈艇을 模倣生産하는 등 각종 高速艇을 건조하였고, 1천5백톤급의 경구축함, 그리고 中共의 技術支援으로 1천4백톤급 R급 潛水艦을 건조하였다. 한편 誘導武器의 경우에는 '60年代에 도입한 誘導武器의 倉整備能力을 배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70年代 중반부터는 소련제 對戰車 誘導彈 AT-1을 모방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70年代 말경에는 AT-3를 量産하였으며, 携帶用 對空 誘導彈 SA-7를 생산함과 아울러 SA-2 部品을 도입, 일부를 조립 생산하였다.

다. 軍需産業의 自立 및 先進化期(1980년대 이후)

1980年 10월 金日成은 제6차 당대회에서 2차 7個年 計劃을 조기에 완성하고, '80年代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10대 전망 목표¹⁴⁾를 제시하면서 2차 7개年 계획의 調整을 指示하였다. 기간중 工業 總生産이 2.2배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매년의 工業成長率은 1978年 17%, 1979年 15%, 1980年 17%, 1982年 16.8%임을 고려할 때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1981年, 1983年 및 1984年の 工業成長率은 6.2% 이하가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980年과 1982年을 제외하면 工業成長率이 저조함을 나타낸다. 2차 7개年計劃의 부진한 실적을 2年間 조정보완한후 1987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던 제8기 2차 최고인민회의 의제로서 제3차 7개年計劃('87~'93)을 의결하였다. 이 계획은 基幹産業의 확장과 생산분야의 자동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14)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의 사업총회보고(1980.10.10);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성장시켜 가까운 앞날에 한해 1천억 kwh의 전력, 1억2천만톤의 석탄, 1천5백만톤의 강철, 1백50만톤의 유색금속, 2천만톤의 시멘트, 7백만톤의 화학비료, 15억미터의 천, 5백만톤의 수산물, 1천5백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앞으로 10년동안에 3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야 겠다. 이것이 1980년대에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이다. 조선노동당 출판사, 1980, p. 52.

있으며, 또한 輕工業發展 및 對外經濟協力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北韓은 기간중 武器體系의 질적 개선에 치중하여 精密兵器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각종 誘導武器를 비롯하여 航空機까지 조립생산하는 등 개발 생산기술 향상과 시설 확장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리하여 1980年代에는 총포공장 17개소를 비롯하여 탄약공장 35개소, 전차, 장갑차공장 5개소, 화생무기공장 8개소, 함정 건조소 5개소, 항공기공장 9개소, 유도무기공장 3개소, 통신장비공장 5개소, 기타공장 47개소 등 총 134개소의 兵器工場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AT-3(Sagger) 대전차 미사일과 SA-7 지대공 미사일을 조립생산하는 한편, Scud-B 개량형(사정 320-340km, '85년 생산) 및 Scud-C 개량형(사정 500km, '89년 생산)등 地對地誘導彈을 생산하고 있고, 헬기, 훈련기의 組立 및 模倣生産과 1986년 方峴의 전투기공장 완공으로 MIG-21/29기의 생산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93년에 Scud-D형(勞動 1號: 사정 1000-1300km, 탄약 800kg)의 생산에 들어 갔으며, 오는 '95년에는 Scud-E형(勞動 2號: 사정 1500-2000km)의 시제품이 완성될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93.9.20)가 나오고 있다.

火砲의 경우 自給率은 100%로 보고 있으며, 장갑차, T-62 및 T-72 등 戰車의 경우도 특수장갑, 정밀기기 등을 제외하고는 90%이상 自體의 技術 및 資材로서 제작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戰鬪艦艇의 경우에는 輕驅逐艦을 建造한 이후에는 特殊艦艇으로 수중익선 및 공기부양정을 건조하였다.¹⁵⁾ 航空機는 Mi-2 헬기와 Yak-18 훈련기를 組立生産한바 있는데, 1986年 평북 방현에 전투기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멀지 않아 MIG-21급 전투기도 自體生産할

15) 朴盛根, “북괴의 軍備指向性 공업화정책”, <국방과 기술>,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1990.2. p.32.

것으로 보인다.¹⁶⁾

따라서 1980년대 이후와 1990년대는 北韓의 軍需産業은 在來式 武器의 生産自立이 완성된 시기이며, 나아가 航空機, 艦艇, 誘導武器, 또한 生化學 및 核武器도 自體生産하게 됨으로서 바야흐로 軍需産業의 先進化期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北韓의 주요병기 생산과정을 년도별로 요약하면 <表 1>과 같다.

<表 1> 北韓의 주요 兵器生産 年表

年度	主要 兵器生産 內容	備考
1950年前	평양의 구일본육군조병창, 홍남화학공장등 30여개의 병기병창 복구, 소련의 자재·기술 원조로 소화기·탄약 초보적 생산 기관단총(PPSH), 수류탄, 소총탄, 박격포, 구잠정(130톤)	기본적인 개인 화기 생산 시작
1950年代	자강도 전천에 65호 공장을 건설 가동하여 AK소총(58식 7.62mm) 양상체제 돌입 대전차로켓포(RPG-2)	지상군 중대 단위 기본무기 조달
1960年代 前半	RPD 경기관총(62식, 64식 7.62mm), SG중기관총, B-10 무반동포(82mm), KPV 중기관총(14.5mm), 82mm, 120mm 박격포, RPG-2 대전차로켓포(40mm)	지상군 연대급 화력 유지
1960年代 後半	방사포(107mm, 132mm, 140mm 발사관 12개), AK소총(68식), 평사포(130mm) 곡사포(122mm), 소형어뢰정(p-4, 67.6톤급) 고속경비정, 함포(PGM)	지상군 사단 작전능력 보유, 해군연안 작전 가능

16) 국방부, <국방백서> 1989, p. 99.

年度	主要兵器生産内容	備考
1970年代 前半	T-59전차, RPG-7 대전차로켓포, 자주포(130mm, 180mm), 152mm 곡사포 M-1973 장갑차, 유도탄 경비정, 호위구축함 (1,500톤급), R급 잠수함(1,400톤급)	본격적인 군수 산업 토대 구축
1970年代 後半	130mm, 180mm 자주포, K-61 수륙양용 장갑 차, T-62전차(T-55 개량형), MIG기 면허 생산 추진, 고속상륙정, FROG 5/7 모방생산	외국과의 기술 제휴로 전술단위 작전 가능
1980년대	쌍동함, 수중익정, 공기부양정 SA-7 지대공미사일, SCUD 지대지미사일 모방생산, MI-2 헬기, MIG-15, 21 YAK-18 조립생산	북한형 무기 개 발 항공기 조립 생산 기반 구축
1990년대	M-1989 대구경(240mm) 자주포 모방생산 노동 1호 미사일(사정 1,000km) 자체개발 * 핵 재처리공장 완공 예상	해외무기시장 개척, 제품정밀 화 주력

資料: '92 북한개요, 통일원, 1992.12, pp.482-483.

2. 軍需産業 政策

北韓의 軍需産業(北韓은 兵器工業 또는 國防工業이라는 용어 사용)은 戰鬪機資材들과 軍人들의 必需品 등 軍事目的에 필요한 諸般 製品을 生産하는 工業部門을 말하는 것이며 이 개념은 다시 銃砲, 彈藥, 地雷, 手榴彈, 戰車, 軍艦, 軍用航空機 등 戰鬪裝備과 함께 通信, 輸送, 工兵裝備 등의 戰鬪支援裝備 生産部門과 軍服, 軍靴, 個人長驅, 化學裝備 등 軍需品 生産部門의 2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⁷⁾

이와같이 戰鬪 및 戰鬪支援裝備 생산과 一般軍需品 생산의 2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軍需産業에 대한 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金

17) 金永圭, “북한의 군수산업과 무기체계”, <북한>, 북한연구소, 1990.8, p.66.

日成의 교시로서 그 내용은 “現代戰에서의 승패는 戰爭遂行에 필요한 人的, 物的資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軍事戰略上 중요한 地帶들을 잘 보호하고 軍需工業을 발전시켜야 하며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조성해야 한다. 또 유사시에는 모든 經濟를 급속히 戰時體制로 개편하며 戰時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平時부터 준비해야 한다”¹⁸⁾고 한 것이다.

이와같이 金日成의 敎示와 기타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北韓의 軍需産業의 基本政策은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軍事機資材의 자급자족체계 확립
- 둘째, 軍事機資材에 대한 연구발전책 강구
- 셋째, 軍需産業施設의 전략적 배치
- 넷째, 軍需産業施設의 지하화 추진
- 다섯째, 戰時轉換體制 확립
- 여섯째, 戰略物資의 비축 등이다.

이러한 基本政策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당면 軍需産業政策은 군수산업시설의 증설 및 기존시설의 확장, 군수품 품종확대, 군수물자 및 장비의 대외 의존 탈피, 전략물자 비축량 증대, 주요 산업시설의 전시생산대비책 강구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최근 北韓이 시도하고 있는 軍需産業의 重點施策은 첫째, 신예 장비 및 전자장비개발시도 둘째, 北韓의 지형, 체질에 맞는 무기의 개발 셋째, 비정규전용 및 대남침투장비 생산, 넷째, 化學 및 生物學武器 生産, 다섯째, 핵무기 개발 시도 등이다.¹⁹⁾

18)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20권, 평양, 1982, p. 428.

19) 金永圭, 전게서, p. 66.

이와같이 北韓은 「社會主義 經濟建設」이라는 대명제 아래 확대재생산 법칙에 입각하여 생산수단을 위주로 생산하는 重工業部門에 집중투자해 왔다. 더군다나 「國防·經濟 並進」 정책하에 군비증강을 위한 군수산업 부문에 과중한 투자를 해온 결과 産業間 不均衡이 심화되었고, 경공업 분야 특히 消費財 생산부문이 극히 낙후된 것은 물론 에너지, 수송 등 社會間接資本이 만성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北韓의 軍需産業 政策은 군수산업 육성 즉 軍事力 建設과 그 잠재력의 증대에는 소기의 목적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重工業 發展이 경공업, 농업,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주의 경제발전 이론은 矛盾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다.

3. 軍需産業의 運營體系

社會主義 국가에서의 軍需産業과 國防研究開發은 당 및 중앙정부기관이 전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국가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서방국가에 있어서는 防衛産業과 國防 研究開發에 민간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소들(産·學·研)이 광범위하게 참가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의 요구에 따르는 모든 개발이나 생산이 黨과 中央政府機關에 의해서 운영되어 진다.

북한도 구소련이나 중공과 같이 사회주의 건설을 내세워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體制下에 사회주의 공업화 인민경제의 기술적 건설에 그들의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두고, 科學技術 및 産業政策은 군수산업을 중심으로한 重工業優先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북한의 軍需産業運營은 그들 체제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 군수산업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하에서 운영감독되고 있으며, 黨·軍·行政系統이 동

시에 참여하는 3원화체계를 이루고 있음이 특이하다.

즉 군수산업은 勞動黨 中央軍事委員會와 黨中央委員會의 人民武力部, 그리고 정무원산하의 機械工業委員會(또는 정무원보다 상위급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제 2경제위원회)등 3개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며, 군수산업 정책수립 및 결정, 군수산업지도등의 조정·통제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군수산업관련기술지도, 시설의 경계 및 보안통제, 그리고 생산품의 성능검사등은 人民武力部가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산하의 국방과학원(일명: 제2자연과학원)은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며, 병기학·유도무기·일반과학·군사과학 등 연구소를 설치하여 兵器開發과 兵器素材 등에 관한 연구와 함께 군수산업체의 技術指導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군수산업전반에 관한 생산관리, 요원확보 및 교육훈련, 원료, 원자재조달, 시설 및 정비관리등 생산과 직접관계되는 업무는 정무원 산하 機械工業委員會(또는 제 2경제 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軍需産業製品 生産體系를 보면 대체로 3대 계열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전문생산체계, 전시전환생산체계, 그리고 간이생산체계등이며, 이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專門生産體系는 공장설립 당시부터 특정한 군수품만을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생산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병기공장, 군수품공장, 중장비공장, 화약공장, 군함건조용 조선소등이고, 생산공정별로 분류하면 종합공장, 부분품공장, 조립공장으로 구분할 수있다.

둘째, 戰時轉換生産體系는 당국에서 지정한 특정공장에서 군수품을 생산토록하는 체계로서 통상 기존 생산시설의 일부를 이용, 평시에도 군수품을 생산하거나 유사시 즉시 군수품을 생산할 수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셋째, 簡易生産體系는 지역별로 필요시 실탄, 지뢰, 수류탄 등 탄약류를 생산할 수있는 준비를 갖춘 공장을 말한다.

북한은 機密維持와 專門化를 요하는 군수산업분야의 人力管理를 위해 독특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직업선택이나 轉業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 종업원 선발로부터 교육, 거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하에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軍需産業體의 종업원 선발도 천성이 온순하고 신체 건강한 20세 전후의 무의탁 남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관찰을 통해 적합성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확정된 인원은 65호 병기공장에 부설된 工場大學에 입교시켜 10개월 내지 1년간의 기본교육을 거친후 현장에 배치토록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분야 종업원에 대한 대우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파격적으로 좋은데, 예를 들면 1일 배급기준이 700그램에 전량 백미인데다 매주 肉類를 공급하고, 임금도 일반공장의 기사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며, 주택도 고급아파트를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수산업분야 종업원은 파격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많은 統制와 制約을 받고있는데 그것은 외출 및 외부인과의 접촉제한, 개인행동금지, 규정 위반시 벌칙강화등이다.

이처럼 북한은 군수산업분야의 機密維持, 專門化를 기하기 위해 종업원 선발부터 독특한 제도를 창안, 특혜와 제재를 동시에 가하고 있어 전문화와 보안유지에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人權的 側面에서 본다면 문제점이 많은 국가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Ⅲ. 北韓의 軍需産業 實態

1. 軍需産業의 現況

북한의 군수산업은 輕工業段階를 거치지 않고 국가 전략상 重工業爲主로 추진했으며, 대부분 多品種 小量의 武器所要를 가지고 自力更生의 기치아래 '自衛的 國防建設'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 이러한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1954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부문에 매년 공업투자액의 80%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주로 화포, 탄약, 기동장비등 무기를 제작하는 기계공업분야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수산업은 급속한 속도로 生産能力과 技術水準을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북한은 이미 60년대 후반에 평사포, 곡사포, 어뢰정, 고속경비정등 육군 사단급부대와 해군연안작전부대가 사용할 수있는 전술무기를 시험생산하게 되었다. 이어 70년대에는 본격적인 군수생산체제에 돌입 전차, 자주포, 유도탄, 경비정, 구축함, 잠수함, 고도정밀무기등을 組立生産할 수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80년대에 들어서서는 기본 재래식무기의 일괄생산능력을 갖추어 화포의 경우 100% 자체기술 및 자재만으로 제작이 가능해졌고 전차 및 장갑차도 특수 장갑판과 정밀제어장치를 제외하고는 자체제작이 가능해져 「國産化率」이 90%에 가깝게 되었다.

한편 이시기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誘導武器와 航空機 生産능력 확보에도 힘써 AT-3 대전차유도탄, SA-7 지대공유도탄을 조립생산하게 되었으며, 특히 구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을 이집트로부터 導入, 模倣 生産하는데 성공하기까지 했다.

또한 항공기의 경우 Mi-2 헬기, 미그 21전투기, 야크 18훈련기등의 조립

생산체제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생·화학무기 개발도 적극 추진했는데 지난해 국감 당시 안기부가 제출한 「北韓의 생·化學武器 위협실태」에서 드러났듯이 89년말 현재 북한은 生物武器(전염병세균)는 연간 1톤, 化學武器는 연간 5천톤씩을 생산 비축할 수 있게 되는등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세계 3위의 생·化學戰力 보유국으로 떠올랐다.

한편 經濟難과 脫冷戰의 도전에 직면한 90년대의 북한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 또는 시위하는등 이른바 「핵카드」를 교묘히 이용하며 在來式 戰爭 수행능력을 증강하는데 열을 올린결과, 量的으로는 2배 質的으로는 1.3배의 對南 優位戰力(92년말 기준)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우리 國防部가 '92년 10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 1992-1993」²⁰⁾는 북한이 90년대 들어 군사력의 量的 증강뿐만아니라 質的 보강에도 꾸준히 노력했음을 <表 2>를 보아 알 수 있다.

<表 2> 北韓의 最近 主要 戰力增強 現況

구 분	91 년말	92 년말	증 감
병 력(만명)	99.5	101	+1.5
전 차 (대)	3,600	3,700	+100
화 포 (문)	9,500	9,800	+300
전투함(척)	460	470	+ 10
전술기(대)	850	850	0
미사일(기)	352	370	+ 18

資料 : 國防白書, 1992-1993.

20) 국방부, <국방백서 1992-1993>, 1992.10.

國防白書에 의하면 북한은 기존의 T-62 전차를 개량한 「천마호」를 시험생산한데 이어 각종 전차에 反應裝甲을 부착했고, AT-4(TOW형) 대전차 미사일을 새로이 생산하고 있으며, 防空武器도 현대화하여 우리의 발칸포와 비슷한 23밀리 및 37밀리 자주 고사포를 생산배치하는 한편, 後尾攻擊만이 가능한 SA-7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이어 全方向에서의 공격이 가능한 SA-16미사일을 생산배치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최대탑승병력 50명 최대시속 50km이상으로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공기부양고속 상륙정 1백척을 건조, 작전배치했으며 SW지대함미사일 발사대를 자주화했고, AN-2기의 개량생산과 「革新2」헬기 및 MIG 21/29전투기의 생산을 추진화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潛水艦 誘導彈艇 등 전투함정을 계속 건조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 76년부터 구소련방제 스커드-B미사일을 제3국인 이집트를 통해 도입, 자체 개발해 현재는 연간 약 1백여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정거리 900-1000KM인 신형스커드 미사일 「勞動1號」를 개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밖에 北韓軍이 보유하고 있는 長距離 誘導火器로는 프로그-5로켓 및 240밀리 방사포(사정거리 40-50km)와 프로그-7로켓 및 170밀리 자주포(사정거리 70km)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휴전선 근접지역에서 우리의 수도권지역까지 재래식포탄과 화학·전술핵탄 사격이 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北韓의 軍需工場들은 총포, 탄약 등 무기를 생산하는 兵器工場, 군피복이나 군화 등 一般軍需物資를 생산하는 一般軍需工場 그리고 일반 機械工場 가운데 戰時에 무기 부품생산을 위한 轉換工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兵器工場은 완성정비 및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專門工場과 구성품, 소부재를 생산하는 部品工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北韓의 軍需工場은 17개의 銃砲工場을 비롯하여 35개의 彈藥工場, 5

개의 전차 및 장갑차 공장, 5개의 함정건조소, 9개의 航空機工場, 3개의 誘導武器工場, 5개의 통신장비공장, 8개의 화생무기공장 등 총 134개이다.²¹⁾ 北韓의 무기생산 공장의 특징은 전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이 가능하도록 완전지하화 또는 반지하화되어 있으며, 공장 명칭이 숫자로 되어있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은폐시키고 있다.

北韓의 주요 兵器工場, 戰時轉換 준비완료공장, 그리고 一般軍需工場들의 현황을 보면 <表 3>, <表 4>, <表 5>와 같으며 총포분야 全擔工場은 개인 소화기를 생산하는 65號(자강 전천), 기관총을 생산하는 67號(평남 강동), 박격포와 대전차무기를 생산하는 81號(자강 전천) 등이 있으며, 곡사포, 자주포를 수리 및 생산하는 평남 덕천 工場 등 17개가 있다. 그리고 탄약의 경우 13號(자강 만포: 야포탄), 17號(함남 함릉: 다이내마이트), 26號(자강 강계: 박격포탄), 66號(자강만포: 자주포탄) 등 17개 專門工場이 있다.

그리고 기동장비의 경우 구성 戰車工場과 신형 裝甲車工場 등 5개工場에서 생산하고 있고, 誘導武器는 工場 등 3개, 항공기는 박천工場 등 9개, 그리고 5개의 通信電子裝備 工場과 8개의 生·化學工場 등에서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艦艇은 동해안의 나진과 6大造船所에서 호위구축함과 潛水艦을 건조하고 있다. 특히 北韓은 1967년 종업원의 규모가 550명 이상인 일반 民需用機械工場등 생산공장 114개를 전시에 軍需工場으로 전환하도록 지정하는 등 일단 유사시 무기부품 생산시설로 바꿀수 있는 轉換工場이 2백여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²²⁾ 각 군단위 농기구 공장도 전시에 수류탄과 대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작방법과 기술을 평시에 숙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21) 국방부, 「국방백서 1989」, 1988, p. 89

22) 통일로, “北韓의 武器生産實態”, 93년 3월호, 1993, pp 190-191.

〈表 3〉 北韓의 主要裝備 및 兵器工場

工場名	位置	從業員數(人)	主要生産品 및 能力	備考
65號 兵器工場	자강전천	12,000	AK소총(연12-20만정), TT권총, ZPU-2/4, 박격포, 수류탄, 지뢰	최대의 소화기 專門工場
67號 兵器工場	평남강동	7,500	고사기관총, RPD 및 RP-46경기관총, SG중기관총, AK소총, 수류탄, 포탄	기관총 專門工場(1952년 건설)
81號 兵器工場	자강진천	2,500	82mm무반동포, 박격포, 對전차로켓RPG-7, 기관총, 곡사포, 자주포	중구경화포 專門工場
덕천砲수리工場	평남덕천		야포탄, 발사약	수리 및 생산
13號 兵器工場	자강만포			
17號 兵器工場	함남함흥	3,500	다이너마이트, 도화선, 초안 폭탄, 각종 실탄, 탄약(연4,400톤)	1965년에 시설확장
26號 兵器工場	자강강계	3,000	박격포탄, 對전차포탄	
32號 兵器工場	자강강계	2,000	포탄	
42號 兵器工場	자강강장	1,000	소구경탄, 지뢰, 수류탄 박격포탄 및 케이스	소구경탄 專門工場
61號 兵器工場	자강강계		지뢰	
66號 兵器工場	자강만포		소총탄, 박격포탄, 자주포탄, 지뢰, 기관단총	
82號 兵器工場	자강강계	2,500	박격포탄, 수류탄, 지뢰	
93號 兵器工場	자강강계	10,000	소구경탄, 수류탄, 포탄 지뢰	최대의 소구경탄 專門工場
101號 兵器工場	평남강동	2,000	소총탄(연400만발), 수류탄(연73만발), 지뢰	
191號 兵器工場	황북신계	1,000	박격포탄(연18만발)	
용암포兵器工場	평북용천	300	소구경탄, 지뢰, 수류탄	
경원 兵器工場	함북경원	300	수류탄(연21만발), 지뢰(연18만발)	
종성 兵器工場	함북종성	1,000	수류탄(연109만발), 지뢰(연73만발)	
신흥 탄약工場	함남신흥		야포탄 등 대구경탄	최대의 대구경탄 專門工場
영풍 兵器工場	평북삭주	1,000	지뢰(연36만발), 수류탄(연70만발)	
황철 兵器工場	황북송림	200	지뢰(연 127만발)	

資料 :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p.1573.

〈表 4〉 北韓의 戰時轉換準備完了工場

工場·企業所名	主要製品	軍需生産可能な品種
金星트랙터工場 德川自動車工場 皮川自動車工場 萬景臺 불도저工場 元山鐵道工場	트랙터 군용 「승리」61형, 승리415지프 불도저(300마력) 화차, 객차, 냉동차량	전차 및 부속품, 대형포차, 군용차량 및 기타 수송장비
聲仙製鋼聯合企業所 龍城機械工場	壓延鋼材, 합금강, 공구강, 강관 대형 프레스, 압축기	각종 포
熙川工作機械工場 龜城工作機械工場 2月26日工場(舊熙川 精密機械工場) 平壤精密機械工場 江東精密機械工場	각종 선반, 연소기 각종 선반 유압기계, 포크리프트, 피스톤 고속베어링, 자동차부속품 미싱, 시계, 베어링, 저울	소화기 및 군용차량 부속품
南浦通信機械工場 平壤通信機械工場 安川通信機械工場 朱乙通信機械工場	TV, 전화기, 무선기, 레이더유선 유선설비 전화기 스피커, 소형변압기	각종 통신장비
樂元機械工場 北中機械工場	대형굴착기, 대형기증기, 대형디젤엔진, 전동기, 냉동기, 냉장고	각종 병기부속품 및 공병장비품
羅津造船所 淸津造船所 南浦造船所 元山造船所	군용선박 화물선(1.4만톤급), 여객선(5,000톤급) 화물선(2만톤급) 화물선(1.4만톤급), 선미트물선(3,750톤급)	각종함정
2·8비닐론聯合企業所	비닐론, 농약	화학장비

資料: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中卷, 1974, pp.100-101 및 「北韓全書」 1945-1980, 1980, pp.342-394,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大辭典」, 1974, pp.248-249

〈表 5〉 北韓의 一般軍需工場

工場名	位置	從業員數(人)	主要生産品
철 산 軍需工場	평북 철 산	1,000	軍被服, 천막
115號 軍需工場	평북 신의주	2,000	軍被服 일체
315號 軍需工場	평북 신의주	2,000	軍被服 일체
145號 軍需工場	평북 신천	300	軍被服 일체
205號 軍需工場	평북 삭주	300	軍用靴
은 성 被服工場	함북 은 성	1,000	軍被服, 내의, 양말
915 탱크修理所	평북 염주	미 상	탱크수리

資料 :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9, pp.1572-1573.

2. 軍需産業의 立地

北韓의 軍需産業 立地는 북한의 공업화 정책이 軍備指向的인 重工業 優先에 있었던 것인만큼 軍備指向的인 立地政策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생산비용의 최소원칙보다는 軍事戰略·戰術의 원칙에 입각한 軍需産業의 배치가 다른 공업의 배치에 우선하였다.

다시 말하면 北韓은 기계공업입지 우선에 軍需工業 立地의 종속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軍需工業立地 우선에 기계공업 입지의 종속이라는 政策을 추구하였으며, 이 때문에 兵器系列工場은 兵器工場과 함께 집중배치하였으며, 그 사례는 江界工業地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江界工業地區는 군수공업지대인 동시에 工作機械의 주생산지대라는데 특징이 있다. 江界工業地區는 행정구역상 중부 내륙의 오지산간지대인 자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6·25동란 이후 형성되었다. 이 地區에는 AK-47自動步銃과 각종 銃砲彈生産工場이 집중건설되었으며, 그후 이들 兵器工場의 계열공장들이 건설되었는데, 이들 계열공장에는 熙川工作機械工場을 비롯하여 2월 26일 공장, 江界트랙터공장, 鴨綠江타이어공장, 9月紡織工場 등이 있으며 이들 工場의 거의 대부분도 전시생산을 보장할 목적에서 지하

에 건설하였다. 1978년에 건설된 5만정의 江界紡織工場도 지하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²³⁾

이러한 北韓의 軍需工場의 분포상황을 보면 <그림 1>과 같으며, 대부분의 무기생산 전담공장은 江界工業地區에 위치하게 했고 戰時轉換工場은 平壤工業地區에, 그리고 일반군수공장은 新義州工業地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新義州 공업지구는 經工業 중심지대로서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일반 軍需工場이 이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그리고 平壤 공업지구는 北韓 최대의 공업지구로서 經工業에서 重工業에 이르기까지 종합산업지대인 만큼 전시전환을 위한 待機工場(stand by factory)²⁴⁾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공업지구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3개 공업지구 이외에도 다른 공업지구 일부 軍需産業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전시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선정된 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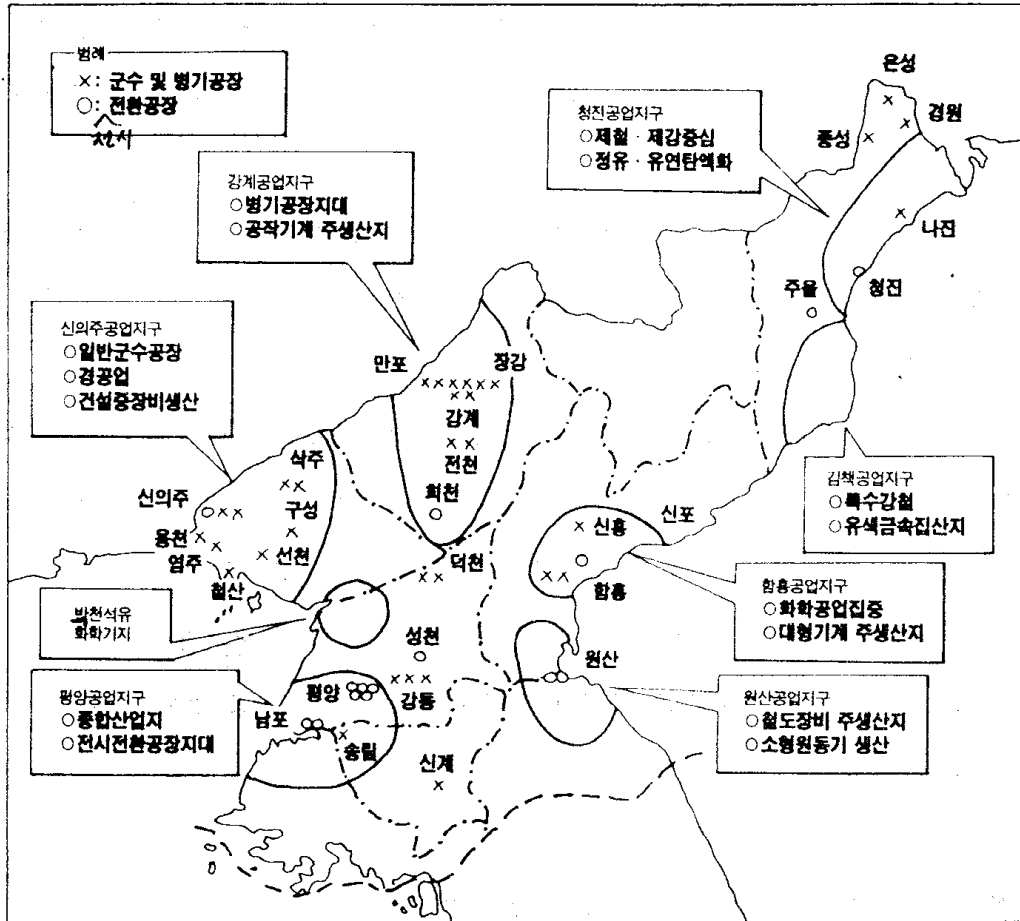
또한 北韓의 경제권과 관련된 공업지구와 軍需産業 시설을 보면, 平壤 공업지구, 박천공업지구, 新義州 공업지구 그리고 江界 공업지구들은 서부경제권에 속하고 淸津 공업지구, 金策 공업지구, 함흥공업지구, 그리고 元山 공업지구는 동부경제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23) 極東問題研究所, <북한전서 1945-1980>, 1980. p.343

24) 白桓基, '북한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제4집, 1980, p.74

待機工場이란 미래의 생산에 종사하면서도 기계설비면에서 완전한 군수품제조의 능력을 보유하고있다가 전시에 군수생산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말하며, 일명 豫備工場이라고도 한다.

<그림 1> 北韓 工業地區別 軍需工場의 分布



資料: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p.1575와 방위년감(1945-1989)

國際問題研究所, 1989 p.246, 그리고 중앙일보(93.3.18, 11면)

3. 北韓의 武器體系

北韓의 무기체계 특징으로는 첫째 在來式武器體系, 둘째 攻擊用的 武器體系, 셋째 蘇聯式 武器體系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가. 在來式 武器體系

北韓의 武器體系는 대부분 2차대전 당시의 在來式 武器體系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최근 서방의 무기체계가 尖端科學技術을 도입하여 컴퓨터화, 전산화 되어 있는데 반해 北韓의 무기는 상대적으로 電子 및 自動化가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지상군의 주력장비인 戰車나 裝甲車, 각종 野砲와 迫擊砲, 機關銃과 小銃, 對戰車火器 등이 모두 모델이나 성능면에서 6·25 당시의 수준이나 비슷한 실정이다.

따라서 北韓은 질적으로 떨어지는 武器體系의 性能을 보완하기 위해 數量的 優位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실례로서 지상군의 장비중 戰車가 韓國은 1500대인데 비해 北韓은 3500대나 되고, 野砲가 우리는 4천문인데 비해 北韓은 무려 9000문이나 되는 것이고, 공군도 戰術航空機가 우리는 400대인데 비해 北韓은 700대, 해군에서 우리는 戰鬪艦이 170척이나 北韓은 460척이나 되는데서 엿볼 수 있다.

나. 攻擊用 武器體系

北韓의 무기체계는 다분히 攻擊用 武器體系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장비되어있는 北韓 지상군의 무기는 戰車, 裝甲車 등 기동성 장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다량의 상륙주정인 水陸兩用車(K-61), 위력 및 충격화기인 放射砲 등이 대량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군에서도 戰鬪機와 爆擊機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해군에서도 潛水艦을 비롯하여 KOMMA, OSA급 미사일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地對地 미사일과 長距離 平射砲, 후방지역 은밀침투용 輕飛行機인 AN-2 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北韓의 군사목표가 防禦가 아닌 攻

25) 金永圭, “북한의 군수산업과 무기체계”, <북한>, 북한연구소, 1991. 8, pp. 70-73.

擊이라는 것이고 무기체계상으로 攻擊用 武器體系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北韓軍이 보유한 3,500대의 탱크와 1,960대의 裝甲車는 高度의 機動性を 동반한 衝擊用 攻擊裝備이고 이들 장비를 토대로 기동화부대를 대거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北韓의 공격의지를 잘 말해준다 하겠다. 그 외에도 北韓은 해안방어용 大口徑 平射砲를 지상군에 배치한 것이나 野砲의 대부분이 平射砲(直射砲)이고 大口徑 迫擊砲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해군이 潛水艦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北韓軍이 武器體系는 攻擊用 武器體系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北韓은 땅굴, 공중, 해상 등을 통해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浸透 後方攪亂作戰을 전개할 10만여명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上陸作戰에 이용될 陸戰隊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모두가 北韓軍의 목적이 攻擊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 蘇聯式 武器體系

현재 北韓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나 자체에서 생산하는 무기는 거의가 소련의 무기이거나 이를 그대로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간혹 중공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소련 무기의 모방생산물이다. 北韓의 武器體系가 蘇聯式 체계이기 때문에 北韓의 軍事的 環境에 부적합한 부문은 상당히 많다.

따라서 '主體 思想'과 '國防에서의 自衛'등을 내세우는 北韓이 武器體系에서는 주체성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이는 무기체계에 관련한 蘇聯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라. 北韓의 武器體系 保有現況²⁶⁾

26) 안보연구원, <통일로>, 1992. 4, pp.150-155 및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991. 4, pp. 37-38.

이러한 北韓 主要武器體系의 보유현황을 5개분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첫째, 地上裝備 分野로 戰車는 主力戰車인 T-54계열의 T-54/55/59등 2800여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T-62 400여대와 구형인 T-34 400여대를 포함하여 총 36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T-62를 모방하여 北韓 自體모델 開發한 <천마호> 탱크도 보유하고 있다.²⁷⁾

裝甲車는 BTR계열 및 M1973형 등 2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砲兵은 76.2밀리/100밀리/122밀리/130밀리/152밀리/160밀리 등 다양한 口徑의 曲射 및 平射砲 7200여문과 107밀리/122밀리/140밀리/240밀리 放射砲 2200여문포함, 총 9400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野砲 47%, 放射砲 52%가 자주화 및 차량에 탑재되어 있어 기갑부대의 대한 近接支援能力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放射砲는 다발집중 능력과 20km이상의 長距離 射擊이 가능하여 戰鬪地域 깊숙히 표적을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다량 보유한 化學彈 공격에 적합한 投發手段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海上裝備 分野로 戰鬪艦 420여척은 警備艦·誘導彈艇·魚雷艇·火力支援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潛水艦은 W급 및 R급으로 27척을 보유하고 있다. 支援艦은 240여척으로 掃海艇·上陸艦·空氣浮揚艇·潛水艇·救助艦으로 편성되어 있어 총 690여척에 이른다. 특히 空氣浮揚艇은 북한이 자체 건조한 것으로 地上軍 1個 小隊級 무장병력을 목표지역에 奇襲 上陸시킬 수 있는 高速 上陸舟艇으로 현재 40여척을 보유중에 있다. 최근에는 서해에 각각 전진배치 함으로써 개전초 동시 다발적인 奇襲攻擊 力量을 가일층 강화시키고 있다.

셋째, 航空裝備 分野로 전술기 840여대중 最新銳機인 MIG-23/29 60여대, 主力機種인 MIG-19/21·IL-28·SU-7/25 등 460여대 MIG-15/17계열의 戰術機 320여대와 AN-2기를 비롯한 지원기 480여대 헬기 280여대를 포함하여 총

27) 중앙일보(93. 3. 18, 11면), 1993.

1600여대로 구성되어 있다. MIG-15/17戰鬪機는 1950년대에 생산된 구형戰鬪機로 보유전술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품을 北韓으로 直接生産하고 정비가 쉬워 가동율이 높다. 또한 MIG-21/23/29, SU-7/25기는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발진 공격이 가능하고, IL-28 폭격기와 일부 戰術機는 제한된 후방차단 작전이 가능하며, 각종 전술기 및 AN-2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지상군·해군에 대한 제한된 近接支援도 가능한 수준이다.

넷째, 電子 및 通信裝備分野는 군보유 장비중 가장 낙후된 분야로서 아직도 진공관식 통신장비를 생산하고 있어, 주요 부문에 사용되는 通信 및 電子裝備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소련 및 중국제 유무선 통신장비의 模倣生産을 추진하여 현재 지상군통신장비중 有線裝備로는 전화기나 교환대를, 無線裝備로는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사용하는 소출력의 무전기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전자전 관련 기술도입과 개발로 電子戰 能力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근 夜視裝備, 誘導武器의 통제장비, 정밀레이다 등 고도의 신뢰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비의 도입과 병행하여 높은 질의 原資材와 部品の 自給을 목표로 先進技術의 導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⁸⁾

다섯째, 化生放武器 分野는 6.25의 경험을 통하여 향후 전쟁양상은 산악지역에서 化學武器 사용이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인민무력부 산하에 '化學局'을 신설하고 化學參謀部와 전후방군단에 化學中隊를 편성하여 化學戰 攻撃訓練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에는 신경성, 질식성, 구토성, 수포성, 최루성, 혈액성 등 각종 化學作用劑를 약 10여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細菌武器인 콜레라, 페스트, 탄저균, 유행성 출혈열등 전염병 작용제까지 배

28) 崔聖彬, 北韓의 防衛産業現況, <북한연구>1992, P.122,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1990-1991, 1991-1992, IISS, 그리고 SIPRI yearbook 1989, 1990, 1991, 1992.

양, 생산하여 생체실험을 한바 있다. 이들 化生作用劑는 박격포, 야포, 방사포 등을 이용한 短距離 撒布能力과 항공기, 스커드 유도탄등을 이용한 長距離 撒布가 가능한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保護 및 除毒裝備의 자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보호장비 전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북한의 化生戰 遂行能力(보유 화학무기 1천톤)은 세계 3위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주, 해주, 함흥, 평양등에 세균 생산 연구시설이 있다.

북한은 化生武器와 함께 核武器 開發에도 주력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원자력 개발을 시도하여 1964년부터 평북 영변지역에 대규모 원자력 연구단지들을 조성하였으며 우라늄 광산, 제련 및 핵연료 가공시설을 설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5년에 소련으로부터 試驗用原子爐 1기를 도입,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축적한 결과 독자적으로 第 2 原子爐를 완공하여 현재 가동중이며, 제 3의 原子爐도 1992년부터 본격 가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 시설로부터 다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있어 1990년대 중반기에는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⁹⁾

특히 尖端武器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化生防武器와 함께 스커드 B 지대지미사일, 개량형 스커드미사일, SA-5 지대공미사일, SA-7 지대공미사일, T-72 탱크, MIG-29기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의 주요성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커드-B 지대지 미사일로서, 이는 길이 11.5m, 직경 85cm, 중량 900kg 사정거리 약 300km, 오차 450-900m로 성능이나 제원이 소련제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移動式 發射臺를 사용하기 때문에 탐지 및 공격이 곤란하고, 핵 및 화학탄두도 장착할 수있게 되어 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83년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 몇기를 샘플로 도입 自體모델 개발을 시작했으며, 84년부터 3년간 동해에서 수차례 시험발사 끝에 개발했다. 현재

29)상계서, PP 122-123

평양근처의 공장에서 연간 50기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휴전선 근방 50 km이내에 전진배치된 移動式 發射臺 12기가 확인된바 있다.

둘째,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로서 이는 북한이 8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이 미사일은 길이 15.1m, 직경 130cm, 사정거리 600km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美 情報機關에 의하면 90년 5월 평양 북쪽의 軍事實驗施設에서 적재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함북연안지방에서 試驗發射를 준비중에 있다고 확인한 바있다. 92년에 생산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南韓 全域이 그 射程圈에 들어가고 있다.

셋째, SA-5 地對空 미사일로서 이는 상승고도 30-300km, 사정거리 300km, 순항속도 마하 4.5-6에 이르는 최신예 전략방어용 미사일로, 87년이후 소련으로부터 30여기를 도입했다. 이 미사일은 防禦用이라고는 하지만 군산, 울진 이북 상공의 우리 항공기 활동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공격용에 가깝다.

넷째, SA-7 地對空 미사일로서 이는 사정거리 500km, 최고속도 마하 1.5 적외선 유도방식의 개인 携帶用 미사일로 주로 저속, 低空航空機를 공격하는데 쓰인다. 74년 소련으로부터 처음 도입하였으며, 1979년부터 청진에 공장을 세워 자체생산하고 있다. 연간 최대 생산능력이 1백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前方全域과 特殊部隊에 배치완료 했다.

다섯째, T-72 戰車로서 250mm 포를 장착한 소련제 최신형 탱크로 赤外線 透視裝備 및 自動裝彈裝置, 障礙物 除去裝置 및 渡河潛水裝備까지 갖추고 있다. 시속 80km, 항속거리 450 km로 미군이 보유한 M1A1-에이브럼즈 탱크에 못지않다. 미국의 토우미사일과 105mm 전차포에 약한 이 탱크는 아직 북한이 실전에 배치하지는 못했다.

여섯째, MIG-29 戰鬪機로서 이는 적외선 탐지장치, 레이저 거리측정장치등 최신의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어 F-16보다 조금 빠른 소련의 최신예 전투기이

다. 최대 항속거리 1천 1백마일로 휴전선 발진후 再給油없이 제주도 오키나와 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련도 85년에 실전에 배치했으며, 북한은 88년초 약 25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北韓의 武器輸出實態

북한은 60년대 중반부터 「國防에서의 自衛」라는 구호아래 GNP의 20-25%를 軍事費에 투입하면서 軍需産業을 중점육성한 결과 60년대 후반에 중국과 소련제 무기를 모방생산하여 지상군 사단급의 기본화기를 자체조달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60년대 후반에는 주로 소화기, 박격포, 소구경포 및 탄약류를 수출했다. 70년대에는 다연장 방사포, 122mm 야포, 고사포, 어뢰정 및 고속정으로 수출이 늘어났고, 販賣對象地域도 아시아, 중동에서 아프리카, 중남미국가로 확대됐다.

북한은 특히 1970년대 이후 攻勢志向的 軍費增強段階에 진입하면서부터 兵器生産을 확대함과 동시에 兵器輸出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1975년부터 병기수출은 <表 6>에서 보는바와 같이 급속히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80년대에는 더욱 확대되어 MIG 전투기, 전차, 초계정까지 수출하게 되었으며, 北韓의 總輸出에 대한 兵器輸出의 比率은 1982년의 경우 무려 36.8%로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지난 74년부터 84년사이에 10년동안 북한이 무려 42개국에 24억달러 상당액의 총포 및 군사장비를 수출했다는 지난 86년 3월 1일자 인도네시아 일간지 <A.B 자카르타>의 보도만 보아도 북한이 세계 최대의 武器密賣國 가운데 하나임을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84년 한해동안 이란에만도 8억달러 이상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폭로한 지난 85년 4월 16일자 <워싱턴 타임즈>기사에 의해서도 이같은 사실은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첫 수출한 87년에는 武器輸出額이 7억 7천만 달러에 이르러 전체 수출액 15억불에 무려 51%(세계일보, 93.5.12자 8면)를 차지하게 되었으며³⁰⁾ 1988년에는 19.6%로서 개발도상국 전체 0.9%(세계 전체는 1.7%)보다도 18.7% 포인트나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의 貿易構造面에서 軍事化程度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동안 북한이 추진하여 온 경제계획이 軍備志向的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表 6> 北韓의 武器輸出入 推移

(단위: 100만 달러, %)

年度	總輸出 (A)	總輸入 (B)	武器輸入 (C)	武器輸出 (D)	C/A (%)	D/A (%)	開途國 全體(%)	
							兵器輸入 /總輸入	兵器輸出 /總輸出
1975	1,090	758	140	10	12.8	1.3	4.3	0.3
1976	850	605	80	80	9.4	13.2	5.3	0.3
1977	미상	미상	140	20	미상	미상	6.3	0.3
1978	902	967	80	90	8.9	9.3	6.6	0.4
1979	1,300	1,320	210	90	16.2	6.8	6.8	0.3
1980	미상	미상	90	220	미상	미상	5.4	0.3
1981	1,645	1,410	200	500	12.2	35.5	6.2	0.5
1982	1,600	1,700	340	625	21.3	36.8	7.4	1.2
1983	1,500	1,400	190	220	12.7	15.7	7.7	0.9
1984	1,360	1,600	120	575	8.8	35.9	8.4	1.4
1985	1,720	1,380	380	350	22.1	25.4	7.2	0.8
1986	2,000	1,700	420	240	21.0	14.1	7.1	0.8
1987	미상	1,500	420	400	미상	51.0	7.7	1.0
1988	3,100	2,900	1,000	470	32.3	19.6	5.6	0.9

資料: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89.

3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북한해외무기수출 세계 7위, <국방과 기술>, P. 66, 1992.12.

그리하여 미국의 軍備管理軍縮局(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88년에 북한은 세계 제 9위의 兵器輸出國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도 무기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3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海外武器輸出 세계 7위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³¹⁾

北韓의 主要 武器輸出은 <表 7>외에도 이란에 대하여서는 1983년부터 88년 사이에 Towed Gun(59/1 130mm형)360개를 비롯하여 T-62전차 150대, 스킵 B형 미사일 100기, 그리고 이밖에 함대함 미사일 발사대 및 함대함 미사일등 상당량을 수출한 바 있으며 '91년에 들어와서도 北韓은 스킵 미사일을 이라크에 100기, 시리아에 24기를 각각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의 무기수출 대상국은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월맹, 이집트, 북예멘등 일부 非同盟 신생국에 이른바 '反帝, 反植民 共同鬭爭'을 명분으로 소화기, 야포등 소형의 무기들을 공급했었다. 그러다 70년대 부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지역 등지로 대상국을 확대해 가면서, 대상국의 정치적 지지도에 따라 有償 또는 無償으로 공여하며 지원무기의 종류와 수량을 대폭 증가시켜 왔다.

특히 '89년 北韓의 무기 종류별 輸出數量과 輸出對象國을 보면 <表 7>과 같이 이란, 이집트, 리비아등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北韓의 무기수출 초기에는 小型火器나 個人裝備에 머물던 무기의 종류도 그동안 軍需産業 重點 育成政策으로 미그전투기, 전차, 초계정까지 자체제작하는 수준에 오르자, 외화 획득률이 높은 이들 중무기의 수출에 주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란 대 이라크戰에 사용하고 있는 地對地 미사일이 바로 北韓製 武器라고 88년 3월 25일 AFP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31) 상계서, P.66.

〈表 7〉 北韓 武器輸出 現況

(89 年末 現在)

武 器	種 類	單 位	數 量	輸 出 國
地 上 武 器	AK 소총	정	189,605	이 란등 32개국
	기관총	정	2,125	이집트등 16개국
	RPG-7	정	4,050	파키스탄등 4개국
	대공포	문	3,155	시리아등 14개국
	박격포	문	1,588	우간다등 13개국
	방사포	문	344	리비아등 5개국
	야포	문	2,632	이라크등 13개국
	전차장갑차 각종탄약	대 1만발	660 5,178	이 란등 14개국 리비아등 48개국
艦 艇	경비정등	척	59	베냉등 8개국
航 空 機	MIG-17	대	11	이 란등 3개국
	MIG-19	대	86	이 란등 3개국
誘 導 武 器	AT-3	기	300	이 란
	SA-7	기	629	이 란, 우간다
	실크웜	기	207	이 란
	스커드-B	기	164	이 란, 시리아

資料: 통일한국, "걸프전을 계기로 본 北韓의 尖端 軍事力", ('91.4), p. 38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 걸프전 이후에 北韓이 개량·개발하고 있는 Scud-D형 (勞動 1號: 射程 1000-1300Km, 彈頭 800Kg)이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이라크, 이란등 중동지역 국가에서 輸出協商 사절단이 빈번하게 北韓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오는 '95년에는 Scud-E형 (勞動 2號: 射程 1500-2000Km)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수출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 (동아일보, '93.9.20)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北韓이 이와같이 武器輸出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북한외교정책 기조 가운데 '全韓半島 共產化 統一을 위한 國際革命力量 強化',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 堅持', 그리고 '帝國主義를 반대하는 人民들의 民族解放鬪爭과 革命支援'이라는 외교원칙들과 이에 수반된 폭력혁명 수출을 시작한데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즉, 世界革命의 일환으로 한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좌익 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무기 및 인적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北韓은 오랫동안 전쟁준비 강화를 위한 군수산업 위주의 공업정책으로 상당한 수준의 武器生産體系를 갖추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당면한 經濟難局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된 막대한 外債를 이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外貨獲得에 狂奔하고 있는 맥락에서 무기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北韓의 입장을 간파할 수 있다.

결국, 北韓이 分爭地域을 대상으로 武器密賣를 비롯한 폭력혁명 수출을 예사로 자행하는 北韓外交의 배경과 진의는 시종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는 國際革命力量과의 연대성 강화에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國際法에 어긋나는 國家와 단체간의 武器輸出은 그 성격상 음성적인 뒷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와 실태가 파악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北韓의 武器密賣 규모가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은 지난 82년도의 경우 연간 수출액 14억달러 규모의 무기수출액이 무려 4억 5천만달러 상당액이었다. 이로 미루어 北韓의 무기밀매의 규모와 실태는 밝혀진것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5. 軍需産業의 展望

한 나라의 軍需産業은 그 나라의 科學技術 水準과 産業能力에 따라 결정되는데, 北韓의 경우에도 그들의 科學技術 수준이나 産業能力은 최신형 병기류를 생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결함을 강력하고 집중적인 當局의 支援과 政策的

관심으로 극복하고 오늘의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때 北韓의 軍需産業 수준을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北韓은 다른 경제부분은 침체되고 낙후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當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적용하고 있는 한 軍需産業 분야는 비정상적이거나 발전될 수 있는 체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北韓은 정권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軍需産業에 치중하는 重工業 優先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이 다소 늦어지고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國防力을 튼튼히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金日成의 교시를 보면 軍需産業에 대한 金日成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짐작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北韓은 현재 軍需産業에 있어서는 완벽한 先進國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尖端의 복잡한 장비는 아니며, 電子分野의 발달이 미미하여 未來戰에 필요한 尖端 電子部品 개발에는 뒤떨어진다는 것이 약점이다.

지금까지 제3세계 國家群의 武器供給者로서 많은 무기를 생산해온 北韓으로서, 그러한 각국의 무기 주문이 종결되면서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며, 그 대체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물론 몇가지 무기체제는 北韓軍에 수용될 수 있으나, 이란-이라크 전쟁종결과 이스라엘과 PLO간의 평화회담의 성공으로 인한 北韓 軍需産業에의 영향력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투자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北韓은 현재 아시아 國家들사이에서 소외되어 있는 입장이며, 蘇聯과 中國側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革命的인 중동지역 국가나 아시아 지역의 반정부적인 집단들에 의하여 北韓側 입지를 높여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90년대의 北韓 軍需産業이 보장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Ⅳ. 北韓 軍需産業의 民需轉換 可能性

북한의 軍需産業이 民需産業으로의 전환가능성을 살펴보기 전에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概念과 그 類型, 그리고 북한과 체제가 유사했던 사회주의 국가(구소련)의 民需轉換 事例를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1. 民需轉換의 概念

군수산업의 民需轉換(Conversion)은 軍需部門의 潛在力을 民需部門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문제로서, 이와 같은 轉換問題는 경제학적으로는 거시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미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즉, 군비감축은 노동자, 기업, 지방 및 지역경제 등에 영향을 주지만, 불안정한 기간 동안에 거시경제정책으로는 위와 같은 분야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³²⁾ 군수산업의 轉換問題는 우선적으로 産業構造의 조정, 企業의 再組織(分權化) 관리, 市場 및 消費者의 양상과 정부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産業施設 및 研究開發의 활용과 군수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職業轉換에 따른 재교육 등이다.³³⁾

러시아의 경우 軍需産業의 民需轉換에 관한 연방법 제1조1항에서는 軍需産業의 民需轉換을 “군수산업체와 이에 관련된 기업들의 勞動力, 科學技術的 潛在力과 生産能力을 군수에서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민간수요로 轉換함을 의미한다³⁴⁾”

32) Walter Isard and Charles H. Anderton, Editors, <Economics of arms reduction and the peace process> New York: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mpany INC., 1992, p.29.

33) Seymour Melman,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conversion problem,” The Defense Economy:Conversion of Industries and Occupation to Civilian Needs, Praeger Publishers, Inc., 1970, pp.3~17.

34) 朴濟勳,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政策研究> 93-08,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3, p.193.

라고 정의하고 있다.

轉換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활동영역에서 變用(transformation) 혹은 交替(substitution)를 의미하지만 轉換前의 동일한 목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거나 군수산업의 特權(prerogative)을 확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반면 再轉換(reconversion)의 의미는 “以前의 形態 혹은 機能 . . . 등으로 다시 變更”하는 것을 의미한다. 轉換은 메카니즘의 독특함을 함축하고 있으며 결코 以前의 形態로 적용하지는 않는 반면 再轉換은 以前의 狀態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하거나, 이미 적용한 메커니즘을 再使用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⁵⁾

우선 民需轉換 개념 정립에 앞서 民需轉換에 관련되는 主要政策을 보면 國防政策, 産業政策, 技術政策, 財政政策 등이 있다.

國防政策 次元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정부가 民需轉換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의 새로운 외교, 안보, 군사 독트린, 대외군사협정에 따른 새로운 국방정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國防豫算(병력규모, 무기획득수준 등)은 軍事戰略·戰術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국가투자재원의 배분 및 국가예산결정에 우선순위를 받으면서 확정된다. 社會保障 및 雇傭 次元에서의 民需轉換정책은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나 民需轉換으로 인한 실업이 가장 큰 문제이며, 유희 병력 및 실직자의 재취업과 재교육의 문제가 제기된다.

産業政策 次元에서 살펴보면, 民需轉換政策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군수산업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최근 東歐 및 中國과 戰後의 日本과 같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民需轉換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나, 미국 및 서방의 경우는 민간주도의 民需轉換으로 기업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産業政策은 단순히 산업별 지원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開發·成長政策과 經濟改革 등에 있어 정부의 役割問題(즉 정부주도인지, 또는 민

35) Thierry Malleret, “Conversion of the Defense Industry in the former Soviet Union” New York: Institute for East-West Security Studies, 1992, p. 3.

간주도인지의 문제), 所有問題(즉 군수산업을 사유화시켜야 되느냐의 문제), 수입대체나 수출주도냐의 문제(즉 무기수출을 병행하느냐의 문제) 등등 여타의 주요한 경제관련 정책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³⁶⁾

科學技術政策 次元에서 살펴보면 국방기술을 민수부문에 技術應用(spin-off)함으로써 민수생산을 증대시키고 상업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으로 첨단상품의 生産과 技術競爭力을 달성하여 國家利益을 창출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財政政策 次元에서 중요한 부분은 財源調達이며, 財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국내와 국외가 있을 수 있다. 국내조달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상업은행 및 투자기관으로부터의 민간조달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해외조달은 海外借入이나 外國人 投資誘致가 있을 수 있다. 재원조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는 군수기업이 생산하는 무기수출을 증대함으로써 民需轉換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으며, 民需轉換을 추진하면서 생산된 경쟁력 있는 생산재를 수출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군수산업의 民需産業化 또는 군사기술의 민수전환 개념은 <그림 2>와 같이 군수산업의 노동력, 기계설비, 군사기술등의 對象이, 여러가지 주위여건 또는 환경요소에 따라 부분 또는 완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며, 이때 轉換方式은 산업설비에 개체/생산라인을 설치하거나, 技術의 파급효과(spin-off), 또는 합병과 인수(M&A)나, 불하 혹은 사유화 또는 집단화 등의 經營方式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민수생산이나 호환성분야의 민수생산 등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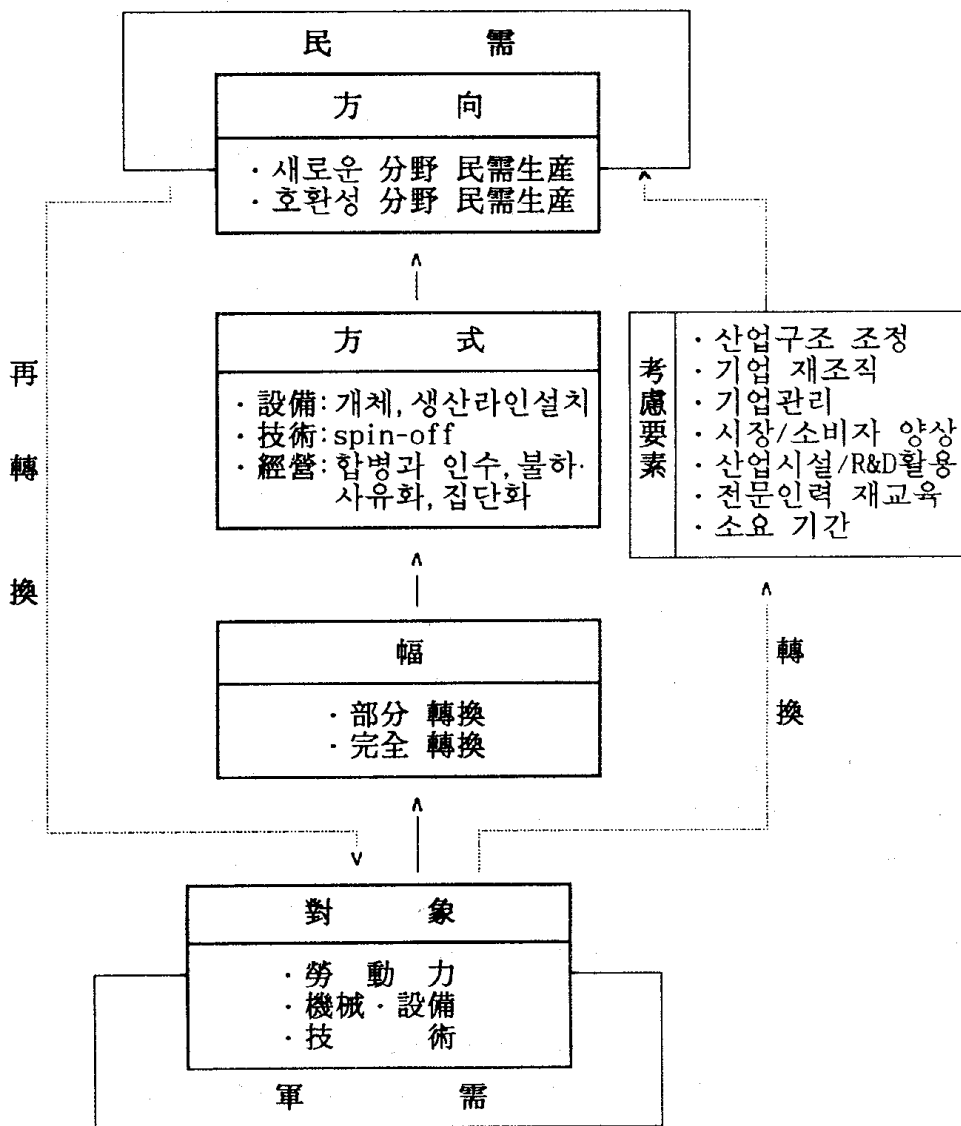
지금까지 설명한 군수산업의 민수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民需轉換의 對象問題이다.

36) 朴濟勳, 前掲書, p. 20.

이는 군수산업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민수부문으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軍需産業體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잠재력이 대상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勞動力, 機械·設備 등으로 나타나는 자본, 기초·응용과학 및 첨단技術,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들 수 있다. 노동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再敎育訓練(retraining)을 통하여 전환이 가능하며, 기계·설비는 改替(reprofiling)하거나 신규생산라인을 설치하는 것이며, 그리고 國防技術은 민수부문으로 技術應用(spin-off)하는 것이다.

〈그림 2〉 民需轉換 概念圖



둘째, 民需轉換의 幅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部分轉換(partial conversion)은 전환대상인 軍需生産施設의 一部를 民需生産으로 전용 또는 개체하는 것으로 군수산업체가 군수물자생산을 줄이고 민수생산량을 늘이도록 하는 것이다.³⁷⁾ 軍需生産과 民需生産을 並行하여 온 특정 군수업체가 軍需生産을 계속하면서 民需生産 活動의 범위를 증대시키는 것도 부분전환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多角化(diversific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軍需産業體들은 2 가지의 多角化 戰略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첫째는 民需産業體와의 合併을 통해 軍需市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둘째는 기존의 生産設備를 全面 民需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³⁸⁾

完全轉換(complete conversion)은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再組織化와 機械·設備의 全面 改替 또는 새로운 생산라인설치, 軍需生産으로부터 民需生産으로 全面 轉換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활동 영역 및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이 수반되며, 광범위한 再敎育訓練, 비용을 절감시킬 경영방식의 도입,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完全轉換은 호환성 있는 민수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전혀 새로운 종류의 민수품 생산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호환성있는 民需品 生産을 위한 完全轉換은 전통적인 제품과 관계 있는 민수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지만 生産技術과 조직의 변경 및 조정의 문제가 당연

37) 舊蘇聯의 軍需産業體들은 비군사목적용 품목들을 상당한 기간동안 생산하여 왔으며 또한 군수산업부문은 국가경제의 총생산량중 거의 40%를 차지하여 왔다. 民需轉換 프로그램은 현재 90%이상 점유하고 있는 군수물자 생산라인을 점진적으로 민수품 생산라인으로 전환시켜 民需品 生産比率을 60%까지 上向 調整하는 것이다. Lauren Van Metre, "Defense Conversion: Last Trump or Last Rights?," Susan L. Clark, <Soviet military power in a changing world> Westview Press, Inc., 1991, pp.156~157.

38) 鄭聖哲, "군축시대 선진국 동향과 우리의 안보전략," <國防과 技術> 1993. 7, p. 27.

히 따른다는 것이다. 일정한 범위내에서 종업원에 대한 재교육의 실시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생산라인의 신규건설을 하지 않아도 현존 생산부지와 생산설비를 이용 또는 개체하여 민수품 생산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전혀 새로운 種類의 民需品 生産을 위한 完全轉換은 기존 군수기업에서 새로운 민수품 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설비 및 시설이 필요함으로 지금까지의 전문技術이나 생산설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공통의 설비나 技術은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종업원들을 새로운 전문적 技術도입을 위해 再教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동안 업종전환에 필요한 설비의 구입, 신규시설의 건설과 본격적 조업개시를 위하여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³⁹⁾

셋째, 民需轉換의 방식에 대한 問題이다.

이것은 設備, 技術, 企業經營을 어떤 방식으로 轉換하느냐의 문제이다.

設備를 轉換하는 방식은 소비재 등과 같이 새로운 생산계통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생산라인을 설치하는 수가 많으며, 호환성 있는 분야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계·설비를 개체하는 수가 많다.

技術을 轉換하는 방식은 技術應用(spin-off)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이나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 연구소 등에 의해 개발된 군사技術의 상업적 성공을 「스핀 오프」라고 한다. 즉, 국방목적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민간기업의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토대로 市場生産用 製品들을 발명해 내는 과정을 통해 국방부문에서 민수부문으로, 연구실험실에서 공장으로서의 spin-off가 이루어 진다.⁴⁰⁾

39) 崔乘熙, 「러시아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現況과 課題」 조사보고 92-0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1992.12, pp.51~52.

40) 洪性範, “국방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최근동향(1),” <國防과 技術> 1993.3., p.25.

企業經營的 次元에서의 轉換은 기업개편을 의미하며, 企業改編은 대체로 경제 체제와 군수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라 3 가지로 나누어 진다.

우선 합병과 인수(M&A) 方式⁴¹⁾으로서 市場經濟體制가 발달된 국가에서 防衛産業의 需要가 줄어들면서 적자 군수기업을 다른 군수업체나 민수업체에서 吸收·合併하여 민수부문의 제품 다양화, 생산규모 및 고용 축소, 尖端技術 무기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흡수·합병을 통해 防衛産業體間的 경쟁을 줄이고, 시장집중도를 높여, 감소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동구기업에 대한 M&A 方式은 서구기업들의 투자진출에서 보듯이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영기업 사유화 방식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으로 拂下·私有化 方式은 군수업체가 국영기업인 경우 이를 민간에게 불 하하거나 사유화시킴으로써 군수산업의 민수화를 기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集團化 方式은 군수기업들을 집단화시킴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일부를 민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중국 등이 대표적이다.

軍需産業體가 전환을 수행할 경우 정부간의 관계, 기업내의 생산조직 및 인 력, 노동관행, 科學技術의 變化, 재원, 마케팅 등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환은 정부의 노력과 기업내부의 고용인들의 기여와 외부의 실 제적인 도움 및 자문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참여나 조언 은 기업내 최고경영진들의 권한과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되어 전환과정의 주도권

41) M & A는 「mergers(合併) and acquisitions(引受)」의 약자로 「企業引受合併」으로 번역된다. 합병이란 기업의 외적 성장(external growth)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수단으로, 서로 독립된 2개 이상의 기업이 완전히 一體化함으로써 새로운 하나의 기업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 존속관계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consolidation)이 있다. 引受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狹義의 인수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각각 법률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존속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廣義로는 여기에 단일기업이 되는 합병(merger)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인수에는 주식취득, 자산취득, 영업인수 등이 있다. 文元洙, 「M & A 理論과 實際」 상지문화사, 1992, pp. 21~27.

을 둘러싸고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최고경영자로서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의 유지, 이윤성 및 재산성 유지, 적자기업 매각 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넷째, 民需轉換의 方向을 설정하는 問題이다.

이는 기존 군수공장에서 전혀 새로운 생산계통(민수품)분야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환하는 경우와 互換性이 있는 분야나 기계, 부품 등의 중간재나 생산재 같이 동일 계통의 민수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民需轉換 問題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누가 주도적인 推進 主體가 되느냐의 문제이다.⁴²⁾ 轉換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며 武器輸出의 規制와 解雇勞動者들의 再訓練 계획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하고 단호한 政府의 政策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 없이는 民需轉換은 성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需要 側面에서 공공지출(소비자 욕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供給 側面에서는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政府政策은 군수생산 탈피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장메커니즘과 시장의 국제적 개방성이 중요시되는 환경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政府主導의 民需轉換 推進의 대표적인 예가 戰後 日本과 최근의 中國을 들 수 있다. 日本은 종전 직후 정부주도로 배상문제, 통제완화, 민영화 등 정부와 군수산업 사이에 존재하는 전시특수관계를 청산하는데 주력했으며, 소위 傾斜生産方式(기간산업 육성정책: priority production system)을 골자로 한 “産業 合理化 政策”이라는 산업정책을 취함으로써 戰後 日本 산업의 자립·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中國도 政府主導下에 民需轉換을 추진하여

42) 朴濟勳은 민수전환의 추진 주체를 정부, 기업, 지역경제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朴濟勳, 前掲書, pp.15~18.

당초부터 軍需産業과 民需産業의 연계를 원칙으로 삼고 軍需生産 기준량을 달성한 후에 여력을 민수품 생산에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⁴³⁾

지방정부가 推進主體일 경우는 정부와 개별기업 사이의 중간적인 것으로서 지역적 차원에서 고려되어 추진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수산업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나 군수생산의 결집의 성격과 기업간 관계의 유형은 국가나 부문에 따라 상이하다. 航空 및 電子 등 미국의 “gunbelt : 尖端軍需技術集團”에 있는 大企業의 轉換인 경우에는 생산혁신의 도입, 신시장 선택, 지방경제 체제 개편, 산업구조 조정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地方政府는 지역당국, 생산자조직, 노조 및 사회운동 세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경우보다 利害集團間의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커서 대안추구가 쉬울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적 선전, 노조압력 및 지역경제 개발전략 등을 합칠 지역경제기구의 출현이 용이하다.

2. 民需轉換 類型 및 限界

가. 民需轉換 類型

民需轉換의 類型은 전환방식에 따라 民·軍共同研究開發型, 工場統合型, 그리고 軍規格 緩和型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차이와 이에따른 국가구집적 측면에서 <表 8>과 같이 資本主義型和 社會主義型으로 구분하고, 자본주의형은 다시 미국형과 일본형으로, 사회주의형은 중국형과 동구형으로, 그리고 이들의 혼합형인 러시아형과 舊蘇聯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3) 中國은 '78年 國防體制改革 이후 군수기업의 생존수단으로 「以民養軍」 즉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시도했다. 民需轉換의 課題는 ① 군사공업의 생산능력 이용, ② 군사시설과 설비의 이용 ③ 삼선기업의 이전 ④ 군사과학기술 성과의 이용 ⑤ 군사공업부문의 인재 활용 등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러시아·중국의 軍民轉換,” <北方通商情報> 통권91호, 1993. 5., p.103.

우선 자본주의형에서 美國型은 大規模 軍備減縮下에서 기업이나 지방정부 주도로 주로 밑으로부터 多角化에 의하여 民需轉換이 이루어졌으며, M & A 방식에 의해 군수산업이 개편된다는 데 특성이 있다. 미국은 제2차대전 후에는 大規模 軍備減縮下에서 전환이 이루어졌는 반면 탈냉전 후에는 小規模 軍備減縮下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日本型은 종전 후 배상문제의 해결, 전시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군수공장은 대규모 軍備減縮下에서 政府主導로 위에서부터 完全轉換方式의 民需轉換이 이루어졌으며, 拂下나 私有化 방식에 의해 군수공장 및 민간군수공장이 해체되는 방법으로 군수산업이 개편되었다.

한편 社會主義型에는 중국형과 동구형이 있는데 中國型은 大規模 軍備減縮이 없는 상황에서 政府主導로 위에서부터 多角化에 의한 民需轉換이며, 이는 군수산업들을 집단화시킴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배양시키는 개편방식이다. 동구형은 大規模 軍備減縮下에서 기업주도로 아래로부터 대체로 다각화방식의 民需轉換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私有化나 M & A 방식에 의해 군수산업을 개편하고 있다.

〈表 8〉 民需轉換 類型

類	型	特	性*	비 고
자본주의형	미 국 형	군비감축 대, 아래로부터 다각화, M&A		2차대전후
		군비감축 소, 아래로부터 다각화, M&A		탈냉전후
	일 본 형	군비감축 대, 위로부터 완전전환, 사유화		2차대전후
사회주의형	중 국 형	군비감축 소, 위로부터 다각화, 집단화		탈냉전후
	동 구 형	군비감축 대, 아래로부터 다각화, 사유화, M&A		탈냉전후
조 합 형	구소련형	소규모 군비감축, 위로부터의 다각화, 군수산업 개편없음		
	러시아형	대규모 군비감축, 아래로부터 부분/완전전환, 집단화, 불하, 사유화		

* 위로부터란 추진 주체가 政府라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로부터란 추진주체가 企業 혹은 地域經濟란 의미이다.

끝으로 舊蘇聯은 소규모 군비감축하에서 위로부터의 다각화에 의한 점진적 民需轉換이라는 면에서 중국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대규모 군비감축하에서 아래로부터의 부분/완전전환을 시도한 점은 제2차대전후의 미국과 일본형, 즉 자본주의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시킬 경우 그 체제의 특성으로 보아 중국형, 즉 소규모 군비감축하에서 당 또는 정부당국이 위로부터 다각화하는 유형(일명 구소련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 民需轉換의 限界

民需轉換은 軍需産業의 높은 技術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는 民需 消費財의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轉換時 民需品 생산에 대한 경쟁력, 채산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軍事技術(武器體系의 特殊性)은 軍産複合體의 속성상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며, 군수산업의 技術이 쉽게 민간부문과 공유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民需轉換에 따른 限界를 자본주의형측과 사회주의형측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사회주의 국가로 볼 수 있는 구소련관련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칼을 쟁기”로 전환한다는 “콘베르시야”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官僚主義 方式에 길들여져 있는 사회구조의 메커니즘 때문에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⁴⁴⁾ 또한 軍需部門의 人力(특히 기득권 세력)이 民需轉換에 대하여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반발함에 따라 추진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舊蘇聯과 같은 社會主義國家에서는 軍備指向型 重工業優先政策으로 軍需産業이 사회 총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콘베르시야가 당면하고 있듯이,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

44) 李淳一, “소련의 국방 및 경제 이슈(1),” <국방과 기술> 1991.5., p.19.

코 아니다. 예를 들어 T-22 탱크 조립공장을 해체하여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즉, 計劃經濟下의 민수산업으로 쉽게 轉換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⁴⁵⁾

舊蘇聯의 科學技術은 세계적 수준의 技術과 낙후된 技術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軍事技術은 발달되어 있으나 民需轉換의 주요 대상인 소비재 생산技術 등의 民需技術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基礎技術分野는 강한 반면 應用技術分野는 弱하여, 科學技術과 生産技術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舊共產國家(북한포함)의 군수기업의 技術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한사람의 고객(정부)을 대상으로 상업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가격의식이 거의 없다. 수요자의 필요에 기민하게 응하기 위한 마케팅 및 서비스技術도 부족하다. 따라서 軍需企業들은 생산, 경영, 판매 경험부족으로 자립경영상의 한계를 노출하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생산력 감축, 전문인력의 이직현상 등으로 기업운영의 애로와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지원의 감축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舊蘇聯의 민수품 생산은 군수품 생산과 연계없이 군사기술 위주의 생산체제이었다. 따라서 軍需專用技術 및 裝備의 民需轉用에의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잠수함, 미사일 등의 전용공장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며, 전환품목에 대한 民需에의 活用도와 이에 대한 採算性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3. 社會主義國家의 民需轉換 事例

1980년대 말에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디노스트라”라는 두 개의 신용어가 일상용어에 등장하게 되었다. 첫번째 용어는 “再編”(restructuring), 두번째 용어는 “開放”(openness)으로 번역된다. 재편과 개방은 1980년대 말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주도된 정책이며 舊蘇聯체제의 운영방법을 급진적으로 변화

45) 李亨純, <軍縮의 經濟學> 을유문화사, 1992., p.194.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舊蘇聯은 수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침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는 브르즈네프시대에 생겨난 20년간의 경제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제의 急進的 再編을 위한 정치권력 토대로 구축하기 시작하여 신사고 개념하에서 정치·경제적 개혁을 시도했다. 이것은 경제분권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려는 대규모 경제실험이며, 소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는 경제개혁인 新經濟政策(NEP)의 이행의 서초를 이루는 것이다.

1980년 초반의 經濟成長은 더욱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고르바초프의 경제발전촉진계획은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쳐 1980년도 후반에 들면서 경제침체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國家統計委員會가 발표한 '89년' 소련의 사회·경제 발전'에 의거하여 '89년 소련의 경제실적을 살펴보면, GNP성장율은 '88년의 5.5%에서 3%로, 생산국민소득 증가율은 1988년 4.4%에서 2.4%로, 공업생산액의 증가율은 3.9%에서 1.7%로 그 성장추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대했던 經濟改革의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⁴⁷⁾

구소연방에서 최근에 民需轉換이 시작된 것은 냉전의 종식과 신뢰조성, 서방국과의 협력 등의 “新思考” 외교하에서의 고르바초프의 1988년 10월 7일 유엔연설에서 “武器備蓄”(stockpiling of weapons)원칙에서 “合理的 充分性”(reasonable sufficiency)원칙으로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군사비 지출에 대한 14.2%의 일방적인 감축과 군수장비 획득의 19.5%의 감축은 군수산업의 자본과 자원을 민수생산부문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西方國의 이권을 얻기 위한 극적인 시도인 전환구상은 군산복합체에 축적된 科學潛在力을 민수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민수품의 품질을 높이고 민수부문을 군

46) Paul R. Gregory and Robert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한종만 편, 「구조와 전망」, 열린책들, 1992, pp.35-39.

47) 朱炫과 李潤, 「蘇聯의 産業生産 體制와 合作投資 制度」, 산업연구원, 1990.9., pp. 35-44

수관련부처에 뚝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데에 목적이 있었으나,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軍需生産技術을 民需에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원자재 공급구조나 전반적 경영·관리체제의 개선없이 군수산업체의 민수품 생산은 극히 비효율적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결국 계획·명령식의 구체적 방식을 답습함에 따라 그에 내재한 비효율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여러 유형의 부품공급 및 생산의 조직까지 포함하는 대형 프로젝트와 집중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國家主導의 종합적인 民需轉換 국가프로그램 작성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그 준비가 시작되었다.

구소련의 民需轉換 國家計劃(民需轉換 5個年 計劃 : 1991-1995)은 군수산업 국가위원회는 소련 국방부 및 국가계획위원회(Gosplan)과 함께 「'95년까지의 군수산업 民需轉換計劃」을 작성하였다. '90년 12월 5개년 계획으로 채택된 동계획은 군산복합체의 대표적 장관인 “벨로우소프”(Belousov)의 이름을 따서 “벨로우소프 플랜”(Belousov Pla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탈군사화, 유휴 산업시설의 사용, 군사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산복합체 산업과 군사임무를 띠고있는 민간산업을 망라한 군수분야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國際市場에서의 競爭力을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의 운용이 경제의 구조적인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9월에 채택된 야브린스키 및 페드로브 그리고 샬타린에 의한 “500Days Program”에서는 軍需轉換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군사 프로그램의 축소로 국가소비지출을 절감시키며, (2) 향상된 기술수준, 기술축적 Know How 그리고 품질이 우수한 원자재를 제공하여 민간생산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3) 資源(물적 및 인적)을 국방부문으로부터 민간경제부문으로 再分配, (4) 잉여수용능력을 활용하고 또한 방위산업체를 통해서 민간생산품의 산출량을 증가시키며, (5) 새로운 최신 기술을 지향하는 輸出資源(국방산업의 고도기술의

이용확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었다.⁴⁸⁾

구소련의 民需轉換 특징을 위로부터의 명령 행정방식에 의한 多角化를 주내용으로 하는 소위 “物理的 轉換”方式에 의해 시행되어졌다. 民需轉換은 고르바초프의 성명 이후 즉각적으로 단순한 행정적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단지 사전에 필요한 수단을 계획하지 못하고 군수생산을 감소시켜야 했다. 전환이 ‘위로부터 아래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전환분야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과제와 결정을 정부와 부처가 담당하고 단지 그 결과만을 기업에게 하달하였다.

轉換方式은 위로부터의 기계적인 연계방식으로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부처간 책임의 모호함과 民需轉換에 있어 소위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군수기업의 도움으로 단지 경제의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로서 이에 따른 기회비용 및 실제 그 現實性을 도외시한 정책이며, 소비재 생산설비의 전환의 경우에 기술적으로 뒤진 제품을 생산하게되며 대형 군수기업의 경우 소규모 민수품 생산을 하는데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轉換過程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민수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축적된 생산적 경험, 기존기술 및 조직의 이용가능성, 전문성있고 능력있는 노동력 유지 등의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구소련의 民需轉換은 민수생산과 전통적 군수품 생산 사이의 技術的 兩立性 추구의 노력이 부족했으며, 투자장비의 기술·품질 개선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또한 多角化로서의 성격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이것은 특별분과가 주생산공정에서 분리되어 훨씬 낮은 기술과 저질의 원자재 및 노동력을 활용하는 部分轉換(partial conversion)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구소련의 民需轉換은 사회주의 체제내에서의 다각화에 의한 漸進的 民

48) 崔乘熙,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수산업 민수전환 현황과 과제」 조사보고 9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1992. 12., pp. 26-27.

需轉換이라는 면에서 中國類型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시기의 다른 경제 개혁과 마찬가지로 구체제의 틀 내에서의 위로부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民需轉換으로 획기적인 탈군사화(demilitarization)를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있다.

4. 軍需産業의 民需轉換 可能性

北韓의 計劃經濟에 대한 기본원리는 욕구충족 보다는 軍事力強化를 위한 自給自足體制(Autarky)의 현실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것도 中·蘇間의 대립 와중에서 생존하기 위한 政治的 動機에서의 自主路線의 채택임과 동시에, 외부의 지원없이 自力으로 건설하기 위한 經濟的 動機에서의 自力更生路線의 채택이었던 것이다. 다시말하면 계획의 원리를 내향적이며 閉鎖的인 自己保存性에 두고 있었고, 이러한 自己保存性向이 主體思想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특유의 經濟運營原理는 矛盾과 無視 또는 強行과 後退라는 惡循環만을 되풀이 시켰으며, 그리고 그 원리 자체가 순리와 시류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自己崩壞의 위기국면만을 조성하여 왔다. 이러한 발전의 한계성이 노출된 것은 主體經濟의 非現實性으로 인한 결함은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蘇聯型 經濟(STEs : Soviet Type Economies)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결함에 의한 것이었다. 즉 意思決定權의 과도한 中央執權化,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인센티브」결여와 創意性不在, 지나치게 강요되는 과중한 目標量設定, 垂直的 命令體系와 水平的 協力の 결여,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價格과 비현실적 가격체계, 계획수립의 政治性化와 복잡한 行政體系 등이 바로 그것이다.⁴⁹⁾

49) 辛昇哲,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와 協力推進의 基本方向”, 統一院, 1989.12, p.74.

北韓經濟는 이러한 발전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對內外的으로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經濟構造의 재조정과 經濟管理體制의 현실화, 大衆生活의 향상을 통한 낙후된 生産性的의 제고, 그리고 各種 瓶陸現狀 (bottleneck)의 해소와 經濟運用의 伸縮性提高 등을 위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對外的으로는 經濟의 활성화를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고, 不足의 經濟를 모면하기 위한 經濟交流를 확대하고, 獨立化에서 벗어나 相互利益을 증진하기 위한 經濟協力の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改革과 開放에 대한 요구는 한국의 北方政策推進이나 中國과 蘇聯의 새로운 정책노선으로부터 커다란 영향과 자극을 받으면서 더욱더 증폭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開發戰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상을 타파하려는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고 있는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개혁파의 세력은 미진하며 경제가 막다른 위기국면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변환은 지연되고 있다.

즉 北韓의 計劃經濟는 정치가 경제를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그 자체의 자율성이나 합리성은 매우 낮다. 더욱기 主體思想體系가 철저히 고수되고 있기 때문에 체제수정에 대해서는 극히 외면적이며, 비록 체제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獨裁型的의 강제적 사회주의체제가 갖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그 격이 좁고 제한적이며 體制內的이고 저속한 변동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北韓에 있어서 정치적 변혁이 없는 경제적 개혁은 기대할 수 없으며, 經濟的 改革이 없는 對外開放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의 모든 변혁이나 개혁은 정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근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태진전은 主體思想體制가 더욱 더 견고하게 강화되는 逆現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하면 政治的 變革이 최후의 「마지노선」(Maginot Line)과 같은 難攻不落의 아성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다. 이와같이 개혁과 개방을 지연시키는 근원은

主體思想 강화에 있으며, 이는 곧 시류에 역행하는 비현실적인 처사인 것이다.

北韓이 改革과 開放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改革과 開放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①經濟的 成長을 희생시켜서라도 政治的 團合(Political Integrity)을 보존하려는 의욕이 더욱 강하며 ②改革과 開放이 閉鎖社會에 대하여 끼칠 엄청난 충동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며 ③아직까지 對南適化라는 地上目標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공업화의 강행과 軍備擴充이 위기국면에 이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당국은 經濟發展과 政權維持라는 양자택일적인 관계에서 후자를 택하고 있다.

최근 북한 내부에는 主體思想과 對外協力, 중공업우선과 경공업, 과중한 군사비와 경제발전, 集中化와 分權化 등 4대기본노선에 대한 理念的 保守派(Ideological conservatives)와 實用主義的 接近派(Pragmatic approaches)간에 찬반의 논쟁으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⁵⁰⁾.

重工業優先政策을 자립적 경제개발의 추구하고 自衛的 軍需産業의 육성이라는 두가지 동기에서 불가피하게 채택된 것이었다. 따라서 重工業과 輕工業간의 논쟁은 경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항시 국제적 주변환경이나 국내 정치적 요건에 의하여 존재되어 왔다. 그러기 때문에 重工業 優先政策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국민 經濟의 파행성은 심화되었고, 국민의 勞動意慾은 저하되었으며, 발전의 원동도 감퇴되었다.

그러나 89년초부터 “勤勞者”라는 당헌론지에서 북한경제는 벌써 資本蓄積만을 추구할 단계를 지났으므로 이제부터는 消費財 生産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重工業과 輕工業간의 경제적 논쟁은 한차원 높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서히 輕工業 重視見解가 상대적인 우세경향을 보일

50) John Merrill, "North Korea's Economy Today: The Limit of Juche",
韓國共產圈研究委員會 主催 第 4次 韓美 北韓學會 資料集, 1989. 8.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北韓은 對南 赤化統一에 대하여 과도한 집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항상 對南 軍事力의 優位를 유지하는데에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에는 軍事力 增強 優先主義에서 經濟發展 優先主義로의 방향선회를 주장하는 징후가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중공업우선정책에서 輕工業 重視 政策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평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美蘇間의 軍備縮小會談의 성공적 진행과 中蘇間의 화해적 정상관계의 재개 그리고 한국의 북방정책과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즉, 북한도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희생시켜 가면서 과대한 軍事化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지탱하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군사력 경쟁을 늦추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소련으로부터 最新 武器를 도입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核武器 製造能力까지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아직까지 赤化 統一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은 矛盾이 無理를 낳고, 無理가 矛盾을 낳는 惡循環을 되풀이 하면서 「強行과 後退」라는 혼미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順理와 時流에 逆行하는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후퇴하게 되는 自己崩壞의 危機局面을 조성하여 오고있다.

이러한 軍事 및 經濟的인 여건 때문에 북한은 상당기간(대략 2-3년)동안은 軍需産業의 民需化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측 할 수있다. 이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는 충분히 많다. 예를 들면 '93년 金日成의 新年辭에서는 그들의 「4大軍事路線」을 재확인하였고, 軍事力增強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동 1호와 노동 2호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있다.

또한 92년이후 일부 戰時轉換工場과 一般民需産業工場에서 방사포 시험을 시행하게 하고 彈藥 및 軍需品을 제작하게하는 많은 사례등을 볼때 軍需産業의 민수화 보다는 오히려 戰爭準備를 완료하기 위해 民需産業을 軍需産業으로 전환케 하는 모습을 엿볼 수있다.

5. 北韓의 軍需産業 民需化 展望

1970년대 중반이후 構造的 沈滯를 보이기 시작한 북한 경제는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對外經濟與件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91년에는 對外交易의 50% 이상을 차지해오던 對蘇交易이 전년대비 68%나 대폭 감소하였고 92년 1월에는 중국마저 硬貨결제와 國際市場價格 適用을 요구함으로써 북한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對外開發推進은 이와같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대외개방을 통한 先進國의 資本, 技術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움직임은 UNDP의 「두만강 流域開發計劃」과 관련하여 1991년 7월 「先鋒 經濟貿易地帶」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동년 12월 「나진, 선봉 自由經濟貿易地帶」 설치를 공표하면서부터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은 외국의 資本과 技術留置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4월 헌법개정시 외국인 투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1992년 10월 「外國人 投資法」, 「合作法」 및 「外國人 企業法」을 제정하였으며 「合營法 施行細則」을 개정하였고, 1993년 1월에는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을 제정하고 4월에는 「地下資源法」을 제정하는 등 대폭적인 법적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북한은 外國人 投資家의 입국절차, 토지이용, 은행, 회계, 세무, 노동관

리, 공업소유권 등 관련 법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나진.선봉 自由經濟 貿易地帶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동지역을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화물의 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국제적 관광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일본, 필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방 각국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開放은 중국의 개방과는 달리 對內經濟의 改革이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개방전략도 全方位的 開放이 아니라 나진.선봉에 국한된 制限的 性格의 開放이기는 하지만 主體經濟와 自力更生의 原則을 주장해 오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⁵¹⁾

남북한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1991년 12월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 協力에 관한 合意書」에서 南과 北은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이어서 1992년 5월에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南北經濟交流 協力 共同委員會」를 구성하는데 합의 하였다. 또한 1992년 들어 북한은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1992년 10월 제정된 「外國人 投資法」, 「合作法」, 「外國人 企業法」에는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과 관련하여 종전의 「合營法」에 비해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⁵²⁾

북한의 南北經濟協力요청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및 미일과의 경협을 위한 전략의 성격이 짙고, 당국을 배제한 채 남한의 民間企業을 대상으로 하고

51) 全洪澤, 「北韓의 投資環境과 對北投資戰略」, 제 3회 국제학술회의;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3. 9. 13.

52) 1984년 제정된 「合營法」에서는 “재일 상공인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合營法에 근거하여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남한 기업의 투자를 사실상 배제하였으나, 1992년 10월 제정된 「外國人 投資法」, 「合作法」 및 「外國人 企業法」은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축적인 법해석에 따라서 남한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있어서 북한의 對南戰略은 별로 달라진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經協을 통하여 平和共存을 추구하고 統一基盤을 구축할 수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남북 모두 실익을 얻을 수있기 때문에 南北經協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核査察問題가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經濟狀況을 감안할 때 핵문제를 장기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核問題가 해결되면서, 북한은 開放과 함께 외국자본과 투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脫冷戰 이후 舊蘇聯邦이나, 경제상황이 나빠진 美國등 과거의 超強大國들도 최근들어 국방비를 삭감함과 동시에 국방기술의 民需轉換을 서두르는 것은 군수산업에 편중된 기술투자를 민수분야로 적극 유치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건하려는 것이다. 즉, 군수산업의 민수화 정책은 尖端科學技術分野가 접목된 군수산업을 바탕으로 민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민간분야의 投資擴大를 유도하자는 것이며, 군사비 지출 삭감으로 國家豫算支出을 줄이고 민수산업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방부문의 물적, 인적자원을 민수부문으로 이동시켜 國防部門에서 군수품 생산을 증대하여 高度尖端 軍事技術을 이용한 민수품 수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를 위해 「軍需産業의 民需轉換法(Law on Conversion of Defense Industries)」을 만들어 지금까지 축적해온 첨단기술, 고급인력, 최신설비들이 들어있는 軍産複合體의 효율적인 민수화 정책을 국가 기간정책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美國도 방위산업의 民需轉換法案(Defense Conversion Bill)을 제정하여 민수화를 촉진하는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군수산업의 민수화 방향전환을 종용하고 있으며, 군사기술의 개발보다는 民軍兼用技術(Dual-use Technology)의 개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러한 세계 技術環境의 변화물결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도 制度變化나 開放政策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이 舊蘇聯이나 東歐圈 국가들의 붕괴와 변화모습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의 가속되는 經濟沈滯 상태를 개선할 방법중의 하나는 바로 軍需産業의 民需化 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舊蘇聯과 中國 및 東歐圈 국가들의 군수산업 민수화 유형과 과정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나, 社會主義 經濟體制하의 사고와 관념의 틀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며, 특히 金日成이나 金正一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준비와 이를 실현가능케 하는 고정된 「軍備增強政策」의 틀을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상당기간 최소한 戰爭準備 완료시기로 예상되는 95년까지는 군수산업을 확장하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中東이나 파키스탄등 東南아시아, 南美국가와 아프리카 국가군 또는 아시아지역 反政府軍과 세계 테러국가들에게 스커드 미사일과 자주포등 在來式 武器는 물론 필요시 化生武器를 포함한 무기 수출전략을 강화하면서 군수산업의 민수화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北韓도 戰爭準備 완료시기와 그들의 赤化統一의 적기라고 보는 95년까지는 군비를 증강하고, 동시에 무기수출에도 역점을 둘 것이나, 美 러시아 및 中國 사이에 국제 평화무드가 익어간다면 95년 이후 북한도 점차 군수산업의 민수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북한의 군수산업 민수화 방향을 예측하여 본다면 世界政勢 變化와 북한의 입지를 고려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그들의 군수산업중 수출성향이 크고 자체 북한의 戰力 構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무기분야는 확장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며, 반면에 수출전망이 적고, 자체의 군사력건설에 적게 영향을 주는 무기분야는 선별적으로 민수화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아, 북한의 군수산업 민수화는 2元化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우 中東이나 第 3世界에 수출이 잘되면, 북한 자신의 전력보강에도 큰 도

음이 되는 誘導武器 분야는 더욱더 확장 할 것이고, 수출전망이 없는 구소련식 火砲體系는 점차 축소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북한이 開放과 세계평화무드에 동승하면서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90년대말 또는 2000년대 초)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第 I 段階：輕工業擴張 關聯 軍需産業의 民需化 段階

북한은 두만강유역의 개발 및 나진·선봉 自由貿易地帶 공표와 연계하여 청진 공업지구내의 청진, 나진 지역의 공장에서 鐵鋼産業과 석유화학공업 중심으로 민수부분을 증가시키고, 또한 人民生活의 生必需品 생산의 量과 質을 개선키 위해 신의주 工業地區의 경공업 중심 산업과 남포를 중심으로 한 평양공업지구의 경공업 분야를 증가시키면서 관련 軍需工場에서 미미한 민수전환을 推進할 것으로 예측된다.

第 II 段階：戰時轉換工場의 民需化 段階

北韓이 러시아 및 中國과 같이 市場經濟體制의 부분적 도입과 개방정책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軍事路線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戰時轉換工場의 부분적인 民需轉換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는 西部經濟圈의 평양공업지구를 중심으로 평양과 남포지역, 그리고 신의주와 희천, 성천지역등의 戰時轉換工場들이 민수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東部經濟權의 원산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원산, 함흥, 청진, 그리고 주율지역등의 戰時轉換工場들이 부분적으로 민수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第 III 段階：軍需 및 兵器工場의 民需化 段階

北韓當局의 개방정책이 무르익어 全面的인 開放이 이루어지고, 시장경제 논리

를 수용하면서 세계 평화공존의 분위기에 同參하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對南 赤化統一路線과 4對 軍事路線의 포기과 함께 각종 軍需 및 兵器工場들의 民需化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경우에는 최근의 러시아와 또는 중국같은 유형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때 民需化政策의 추진과 전환속도 및 규모는 상당히 빠르며, 大規模的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북한의 政治指導體制와 推進力은 방대하고 산만한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보다 조정·통제의 강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민수전환은 북한이 國內는 물론 國外로 부터의 經濟協力과 지원에 의한 財源의 조달과 軍需産業技術의 민수전환시 산출되는 民需品の 질과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따른 海外競爭力과 수출시장 확보능력에 따라 민수화 規模와 범주 및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투자환경과 관련된 외국의 資本留置와 技術留置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外國人 投資法」 「合作法」 및 「外國人 企業法」과 함께 그 관련시행세칙들까지 더 開放的이며 信賴性있게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북한의 軍需産業 建設은 해방 이후부터 소련의 技術 및 資材 支援으로 출발하였으며 6.25 남침시까지 군사소요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準備期를 거쳐, 1950년대에 세로이 19개의 병기공장을 건설하고, AK소총 및 대전차무기 등을 생산하는 基盤構築期, 1960년대에는 각종 기관총을 비롯하여 박격포, 방사포 등 지상군 師團級編制 기본화기를 자급하는 중화기 중심의 基盤擴充期,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전차, 함정 및 항공기 등 주요 군사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擴張期를 거쳤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스커드(Scud-B형) 지대지미사일 등 고도정밀 병기 중심

를 수용하면서 세계 평화공존의 분위기에 同參하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對南 赤化統一路線과 4對 軍事路線의 포기과 함께 각종 軍需 및 兵器工場들의 民需化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경우에는 최근의 러시아와 또는 중국같은 유형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때 民需化政策의 추진과 전환속도 및 규모는 상당히 빠르며, 大規模的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북한의 政治指導體制와 推進力은 방대하고 산만한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보다 조정·통제의 강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민수전환은 북한이 國內는 물론 國外로 부터의 經濟協力과 지원에 의한 財源의 조달과 軍需産業技術의 민수전환시 산출되는 民需品の 질과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따른 海外競爭力과 수출시장 확보능력에 따라 민수화 規模와 범주 및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투자환경과 관련된 외국의 資本留置와 技術留置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外國人 投資法」, 「合作法」 및 「外國人 企業法」과 함께 그 관련시행세칙들까지 더 開放的이며 信賴性있게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북한의 軍需産業 建設은 해방 이후부터 소련의 技術 및 資材 支援으로 출발하였으며 6.25 남침시까지 군사소요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準備期를 거쳐, 1950년대에 세로이 19개의 병기공장을 건설하고, AK소총 및 대전차무기 등을 생산하는 基盤構築期, 1960년대에는 각종 기관총을 비롯하여 박격포, 방사포 등 지상군 師團級編制 기본화기를 자급하는 중화기 중심의 基盤擴充期,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전차, 함정 및 항공기 등 주요 군사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擴張期를 거쳤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스커드(Scud-B형) 지대지미사일 등 고도정밀 병기 중심

의 自立期,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사정 1,000km 이상의 勞動 1號(Scud-D형)과 勞動 2號(Scud-E형) 미사일과 생화학 및 핵무기를 개발하는등 군수산업 先進化期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총포공장 17개소를 비롯하여 탄약공장 35개소, 전차·장갑차공장 5개소, 함정건조소 5개소, 항공기 공장 9개소, 유도무기공장 3개소, 통신장비공장 5개소, 화생무기공장 8개소, 기타 공장 47개소 등 총 134여 개소의 兵器工場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이밖에도 대부분 군장비 部品生産工場 114개소 그리고 군단위 中小地方工場들이 유사시에 수류탄·탄약 등의 軍裝備와 軍需品을 제작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이같은 군수산업 건설의 확장은 북한이 그동안 軍備指向型 重工業 優先政策을 강력한 中央執權的 經濟運用方式에 의해서 추진하여 온 결과이며, 현재 군수산업에 있어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첨단·복잡한 장비는 아니며, 전자·통신 분야의 발달이 미비하여 미래전에 필요한 전자부품 개발에는 뒤떨어진다는 것이 약점이다.

또한 북한은 한때 第3世界 국가 군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많은 무기를 생산해 왔으나 각국의 무기주문이 중단된다면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소련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하고있는 입장이며 기타 지역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동지역 및 남미 일부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서 북한측 입지를 늘려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90년대의 북한 군수산업의 미래는 보장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中東의 革命國家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지역 反政府軍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는 전략이 90년대 북한의 지역적 역할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제한적이거나 對外開放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1992년 10월 이후의 대폭적인 外國人 投資法制의 개편내용은 이와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의지를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는 10년 이상 開放·改革을 추진하여 온 중국이나 1987년 부터 중국식 개방·개혁을 모방하여 빠른 속도로 '도이모이' 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1984년의 합영법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편된 外國人投資法制는 외국인 단독투자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하고 노동력의 고용·해고는 노동행정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작기업은 중국과 달리 북한측이 경영을 담당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투자신청후 북한당국이 承認與否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등 투자절차,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 존속 및 해산절차 등에서 투명성과 구체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동구의 극적인 정치적 변화와 蘇聯의 崩壞, 그리고 강대국들 간의 무기통제 협상의 진전등 세계적인 和解雰圍氣의 확산과 북한자체의 經濟的 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앞으로 高度精密 武器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사용한 것보다도 훨씬 우수한 스커드 D형 미사일(사정거리 1,000km)과 화생무기들을 개발하고 核武器의 제조 가능성을 보임으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이러한 世界技術 環境의 변화물결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도 체제변화나 개방정책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이 구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와 변화모습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을 것이며, 북한의 가속되는 경제침체 실태를 개선할 방법중의 하나는 바로 軍需産業의 民需化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의 군수산업 민수화 유형과 과정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사고와 관념의 틀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며, 특히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對南赤化統一을 위한 전쟁준비와

이를 실현가능케 하는 고정된 「軍備增強政策」의 틀을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따라서 세계정세 변화와 북한의 입지를 고려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그들의 군수산업중 수출성향이 크고 자체전력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군수산업분야는 확장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며, 반면에 수출전망이 적고, 자국의 군사력건설에 적게 영향을 주는 군수산업분야는 선별적으로 민수화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아, 북한의 군수산업 민수화는 2원화 정책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개방의 물결을 타면서 세계평화무드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이때부터는 북한은 단계적으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들이 추진할 軍需産業의 民需化 可能性은 첫째, 輕工業 확장관련 軍需産業의 民需化, 둘째 戰時轉換 工場의 民需化, 셋째 軍需 및 兵器工場을 민수화하는 3단계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參 考 文 獻

1. 金鐵煥,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 국토통일원, 1990. 6.
2. 崔秉熙,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수산업 민수전환 현황과 과제”, 군사보고 9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1992.
3. 韓國開發研究院,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제13회 국제학술회의자료집, 1993. 9.
4. 統一院, 「'92 북한개요」, 1992. 12.
5. 金鐵煥, “북한의 군사 과학기술 현황”, 「육사신보」, 1988. 8. 30.
6. 國土統一院, “동북아 경제권과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1989. 12.
7. 國際問題研究所, “방위연감(1945-1989)”, 1989.
8. 李亨純, “군축의 경제학”, 을유문화사, 1992.
9. 共產圈問題研究所, 「북한 대사전」, 1974.
10. 極東問題研究所, 「북한전서」, 중·하권, 1974.
11. 極東問題研究所, 「북한전서 1945-1980」, 1980.
12. 北韓研究所, 「북한총람」, 1983.
13. 白桓基, “북한의 경제실상과 경제적 딜레마”, 「국제문제」, 국제문제 연구소, 1986. 9월호, pp. 68-75.
14. 白桓基, “북한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북한연구소, 제4집, 1981, pp. 57-82.
15. 白桓基, “북한의 군수산업 어디까지 왔나”, 「향군」,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1991년 8월호, pp. 58-67.
16. 金瑩泰, “북한의 군수산업”, 「국방과 기술」, 한국 국방산업 진흥회, 1989년 5월호, pp. 38-45.

17. 朴盛根, “북괴의 군비지향성 공업화 정책”,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0년 2월호, pp. 26-33.
18. 金永圭, “북한의 군수산업과 무기체계”, 「북한」, 북한연구소, 1990년 8월호, pp. 65-81.
19.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과 미래, 「비전」, 작은기획, 1989년 6월호, pp. 143-148.
20. 金鐵煥,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과 현황”,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1993년 4월호, pp. 20-26.
21. 강석윤, “걸프전을 계기로 살펴 본 북한의 첨단군사력”,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1991년 4월호, pp. 36-39.
22. 白桓基, “북한의 경제실상과 경제적 딜레마”, 「국제문제」, 국제문제연구소, 1986. 9월호, pp. 68-75.
23. 崔聖彬,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북한연구」, 1992, pp. 108-124.
24. 安保問題研究院, “북한 무기생산실태”, 「통일론」, 1993년 3월호, 1993, pp. 190-193.
25. 작은 기획,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과 미래, 「비전」, 1989년 6월호, pp. 143-148.
26. 金鐵煥, “군수산업 계속 재미보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1991년 3월 20일, pp. 70-74.
27. 朴濟勳,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93-08,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3. 3, p. 193.

北韓의 軍備統制 推進與件 評價 及
政策方向 判斷

研究責任者：李 圭 烈(韓國國防研究院)

< 要 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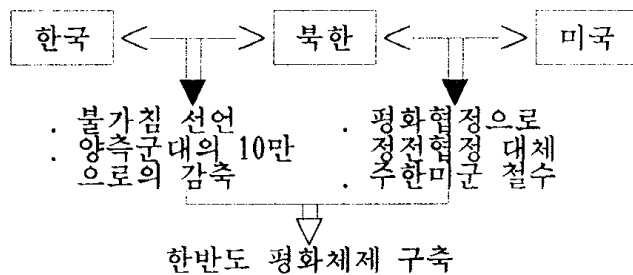
1. 問題의 提起

최근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군비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상대방], 즉, 북한의 입장에 대한 분석은 무모할 정도로 미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작업의 일환으로서 ① 향후 북한의 군비통제정책의 결정여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② 향후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이 지향할 방향과 내용 및 수준에 대한 전망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③ 우리의 대응방향을 가름해 보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2. 既存의 北韓 軍備統制 政策 評價

본고는 향후 북한이 취할 군비통제 정책에 대한 전망을 시도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분단이후 90년대 초까지 군비통제와 관련된 북한의 대남 협상제안을 총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북한의 대남 군사제안은 그것이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건 간에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직접협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절대로 대등한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노선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제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논리적 구조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볼 때, 북한은 아직까지 군사력에 관한 통제적 조치를 한국과 합의하고 또 실천에 옮길 아무런 의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사실상 현재, 그리고 앞으로 대북 군사정책을 수립해 나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나 그만큼 면밀하게 다루어지지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도 않은 문제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점에 대한 부정확성은 모든 대북정책 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3. 向後 北韓의 軍備統制政策의 決定與件

본고는 향후 북한이 한국과의 군비통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환경적 여건을 ① 군사적 여건, ② 경제적 여건, ③ 정치적 여건 및 ④ 외교적 여건이라는 네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던 바, 향후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당면할 상황적 여건은 대략 두가지 방향에서 상충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내적 상황은 어떤 수준에서건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권 담당자들의 존립기반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군비통제의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한편으로 외교적 상황등 외부적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개방과 체제변혁을 요구함으로써 한국과의 군비통제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을 매개로 극도의 억압적이며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의 사회운영 메카니즘은 군비통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북한의 긴장완화 또는 대외적 개방과 체제개혁이라는 문제를 북한 집권층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직결시킴으로 인해 향후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사실상 대외적 여건이 제기하는 긴장완화를 향한 압력의 성격 자체에 대한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객관적인 북한의 생존 여건에 대한 판단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만큼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당면하게 될 상황적 여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외부적 상황이 제기하는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인 내부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4. 向後 北韓의 軍備統制 政策方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북한의 제반 여건은 북한의 군비통제정책을

극도로 제한적이며 피상적이고 간접적인 차원에 국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향후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은 북한 집권층의 존립기반 자체의 붕괴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북한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약]과 [기회] 양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 첫째는 앞서 강조된 바와 같이 군비통제를 추진함으로써 체제붕괴 또는 최소한 정치적 통제력의 취약화가 초래될 가능성이며, 두번째 측면은 북한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의존해야 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결국은 군비통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핵무기 개발, 또는 개발과정을 통해 군비통제에 대한 외부적 압력을 핵개발 중지라는 문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다.

요컨대, 향후 북한의 군비통제정책의 방향을 가름할 유인요인과 제약요인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핵문제는 유인요인을 상쇄시키는 방향에서 작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속되는 한 향후 북한의 대남 군비통제 정책은 정치적, 외교적 방편의 차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실질적인 군비통제정책의 추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5. 我國의 對應政策方向

● 政策目標

본 연구는 현재, 또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남북한간에는 [감축지향적인 군비통제] 보다는 한국측의 군사력 증강을 통한 [균형지향적인 단계]가 필연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군비통제를 군비축소와 직결시키는 기본적인 개념상의 오류부터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우리의 대북 군비통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을 달성하여 상호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수준을 균형시키고, 그 이후 균형된 위협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다]는 선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당면 목표로서는 [북한에 대한 군비통제 추진 압력을 우리의 대북 협상입지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군비통제에 대한 협상창구를 유지하며, 이를 비군사적인 대북관계의 제부문과 긴밀히 연계시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대북관계 운영체제에 편입시킨다]는 데 두어져야 할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推進戰略

군비통제의 목표를 단순한 감축지향적 차원이 아닌 북한과의 군사적 위협의 균형에 설정할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전략은 ① 남북한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의 균형의 달성과 ② 이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상태를 근간으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압력의 가중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순차적으로 연계시키는 선에서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요컨대, 이러한 기본적인 대북 군비통제 추진전략의 요체는 군비경쟁을 지속시켜 궁극적으로 군비경쟁에서 북한의 패배를 도출하는 데 있으며,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북한과의 제반 기존의 군사협상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군사관계를 군비통제의 맥락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외부로부터 북한에게 가해지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압력을 대북관계에 유입시킬 수 있는 연결통로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 軍備統制와 관련된 主要 懸案에 대한 對應方向

[合意書] 이행 문제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남북합의서에 의한 군사분야에서의 합의사항은 사실상 그 이행이 중단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은 남북한관계에서 [제도화]라는 과정이 가지는 중요성과, 우리의 군비통제 추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협상통로를 유지시킬 필요성을 전제로 북한과 합의된 제반 협상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군사적 의사소통 통로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여타 비군사적 부문에서의 대북관계 운영과 총체적인 차원에서 연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核開發 문제

북한의 핵개발이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의 성격은 북한의 핵개발이 ①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② 남북한 관계 자체를 우리의 관할 영역에서 이탈시킬 것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표면적인 대북관계, 그리고 대 국제관계의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감추는] 선에서 추진되는 일종의 외교적 공세를 말한다. 외부의 압력과 북한의 저항이라는 길항관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압력의 수준별로 일정한 시점, 시점을 통해 통합되어 집중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외교적 압력의 단계적 집중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계적인 외압의 집중적 행사를 통해 핵개발 문제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결의 흐름을 북한의 취약성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두번째 방법은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가지는 전략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들 주변 강대국들을 일정한 수준의 제도적 틀로 엮어 실질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제도적 압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대응능력이라는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는 세번째 대안으로서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적 발달수준을 활용하여 핵무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래식 폭탄보다는 수십배 강력한 기체폭탄, 또는 액체폭탄 등 고성능 폭발물질을 개발해 전력화하는 방안이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 이상의 비상수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의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북 핵협상 추진과 함께 외교적 압력의 활용과 지역차원의 협력체 구성, 그리고, 끝으로 핵무기가 아닌 전략차원의 고성능 무기의 개발이라는 세가지 방안의 병행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執筆者 紹介(掲載順)

1. 朴 珠 植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 고려대 정치학 석사, 미국 Ohio 주립대 정치학 박사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Rationality in Nuclear Deterrence」 등 다수
2. 全 雄 : 연세대 강사
 - 조지아대 정치학 석사, 동대학원 정치학 박사
 - 인하대, 건국대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학위논문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등
3. 姜 太 勳 : 단국대 정외과 교수
 - 미국 Long Island대 정치학 석사, New York대 정치학 박사
 - 한국 국제정치학회 편집이사, 일본동경대 객원연구원 등 역임
 - 연구실적 : 저서 「인간과 사회」 및 논문 다수
4. 최 증 철 : 연세대 정치외교과 강사
 - 연세대 정치학 석사, 펜실베니아 주립대 정치학 박사
 - 명지대, 이화여대, 육사 강사역임
 - 연구실적 : 논문 「U.S.Arms Transfers and Global Hegemony」 등 다수
5. 金 鐵 煥 : 국방대학원 교수
 - 미국 Purdue대 공학 석사, 동대학원 공학 박사
 - 국방과학연구소 위촉연구원, 서울대, 한양대 강사 등 역임
 - 연구실적 : 저서 「현대무기론」 등 논문 다수
6. 李 圭 烈 : 국방연구원 군축환경 연구실장
 - 고려대 정치학 석사, 동대학원 정치학 박사
 - 국방연구원 군비통제 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전문위원 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남북한 군비경쟁의 형태 및 동인에 관한 연구」 등

'93 北韓 · 統一研究論文集(IV)

北韓의 軍事分野

인 쇄 : 1993. 12. 10

발 행 : 1993. 12. 15

발행처 : 통일원 정보분석실

인쇄처 : 강 문 인 쇄 사
